# 貧富隔差 擴大要因의 分析과 貧困·庶民生活 對策

朴純一壽等銅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리말

1997년 후반부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대불황, 1998년 하반기의 가파른 경기회복, 그리고 2000년 후반 들어 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에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1999년의 GINI 계수는 0.320으로서 1998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1997년의 0.283보다는 현저히 크다. 특히, 도시가구 하위 50% 이하의 소득 및 소비 점유율이 1997년 이후 감소되어 왔는데 반해, 최상위 5%의 소득 및 소비 점유율은 1998년과 1999년 동안 크게 올랐다. 이는 경제의 급격한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간의 이동 가운데 중상위층에서 중하위로 하향하는 도시가구의 비율이 중상위로 상승하는 가구비율보다 크고, 특히 상대적 빈곤층 및 서민층의 계층 이동율이 크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배상태의 악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경제위기라는 각박한 상황에서도 절대적 빈곤층 및 실업자에 대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왔지만, 아직도 상대적 빈곤층이나 서민층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과 부문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빈부격차확대로 인해 나타나는 계층 이동의 실태와 그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빈곤탈피와 중산층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김행진 국장과의 연구협의와 원내의 워크숍에 참여한 많은 연구자의 비평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구의 중간단계부터 검독하여주신 본 연구원의 김미곤 부연구위원 및 정영호 박사의 조언에 대해연구진은 깊이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 2000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鄭 敬 培

## 目 次

要	約15
Ι.	貧困 및 所得分配의 變化와 展望 25
	1. 貧困 및 所得分配 實態의 變化 25
	2. 貧富隔差의 展望36
	3. 先行 研究 및 分析方法
Π.	階層別 家口生活 特性分析 43
	1. 經濟危機 前後(1996~1999)의 階層別 家口特性 變化 44
	2. 2000年 2/4分期 階層別 家口特性
Ш.	階層間의 移動(流入 및 脫出)實態 및 特性 79
	1. 階層間 家口移動 實態79
	2. 階層 移動 및 殘留 經驗家口의 特性
IV.	階層歸屬 및 移動의 原因 및 期間 分析 147
	1. 패널資料를 利用한 階層 歸屬에 대한 要因分析 147
	2. 階層 移動의 要因 分析153
	3. 階層 經驗期間의 實態 및 期間 決定要因 分析 171

V. 貧富隔差 緩和 政策 現況 및 改善方案	189
1. 階層別 租稅·福祉·勞動政策事業의 現況	189
2. 政策方向	202
3. 硏究의 制限點	239
參考文獻	240
附 錄	245

### 表目次

〈表 I - 1〉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 推移26
〈表 I-2〉	全 家口의 20分位別 消費支出 占有比率 分布31
〈表 I-3〉	都市勤勞者 家口의 20分位別 所得 占有比率 分布 32
〈表 I-4〉	消費支出額 20區間別 全 家口(員) 占有比率 34
〈表 I-5〉	所得額 20區間別 都市勤勞者의 家口(員) 占有比率 35
〈表 I-6〉	인터넷 利用率의 變化38
〈表 Ⅱ- 1〉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別 家口主 性別 分布의 變化 45
〈表 Ⅱ- 2〉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年齡 分布의
	變化46
〈表 Ⅱ- 3〉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教育水準 分布의 變化47
〈表 Ⅱ- 4〉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類型 分布의 變化 … 49
〈表 Ⅱ- 5〉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世代構成 分布의 變化 … 50
〈表 Ⅱ- 6〉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別 就業人員
	分布의 變化
〈表 Ⅱ- 7〉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從事産業
	分布의 變化53
〈表 Ⅱ-8〉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職業
	分布의 變化
〈表 Ⅱ- 9〉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住宅所有與否의 變化 … 60
〈表 Ⅱ-10〉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居住住宅 形態의
	變化61

〈表 Ⅱ-11〉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住居占有形態
	分布의 變化62
〈表 Ⅱ-12〉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傳貰 및 保證金
	分布의 變化63
〈表 Ⅱ-13〉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月貰額 分布의 變化 … 65
〈表 Ⅱ-14〉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性別 分布
〈表 Ⅱ-15〉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年齡 分布
〈表 Ⅱ-16〉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類型
	分布
〈表 Ⅱ-17〉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世代構成 分布・68
〈表 Ⅱ-18〉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 大小洲
	教育水準69
〈表 Ⅱ-19〉	
〈表 Ⅱ-19〉	
〈表 Ⅱ-19〉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就業人員數 ···········7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就業人員數
〈表 Ⅱ-2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就業人員數
〈表 Ⅱ-2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70         就業人員數
〈表 Ⅱ-2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70         就業人員數
〈表 Ⅱ-2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7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1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4
〈表 Ⅱ-20〉 〈表 Ⅱ-21〉 〈表 Ⅱ-2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7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1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4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居住住宅 形態 … 74
〈表 Ⅱ-20〉 〈表 Ⅱ-21〉 〈表 Ⅱ-22〉 〈表 Ⅱ-23〉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7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1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4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居住住宅 形態 … 74       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居住住宅 形態 … 74       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住居 占有形態 · 75
〈表 Ⅱ-20〉 〈表 Ⅱ-21〉 〈表 Ⅱ-22〉 〈表 Ⅱ-23〉 〈表 Ⅱ-24〉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7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1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74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居住住宅 形態 … 74       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居住 形態 … 75

〈表 Ⅱ-26〉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月貰額 分布·77
〈表 Ⅱ-27〉	消費水準別 住居 使用面積 78
〈表 Ⅲ- 1〉	都市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所得 總額의 區間別
	家口占有 比率82
〈表 Ⅲ- 2〉	都市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所得 總額의 區間別
	家口員 占有率83
〈表 Ⅲ- 3〉	'98年 및 '99年의 階層移動 實態(1) 84
〈表 Ⅲ- 4〉	'98年 및 '99年의 階層移動 實態(2)86
〈表 Ⅲ- 5〉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就業人員數 87
〈表 Ⅲ -6〉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種形態
〈表 Ⅲ- 7〉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産業 … 89
〈表 Ⅲ- 8〉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職業 91
〈表 Ⅲ- 9〉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規模94
〈表 Ⅲ-10〉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配偶者 形態 94
〈表 Ⅲ-11〉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의 性別95
〈表 Ⅲ-12〉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年齡96
〈表 Ⅲ-13〉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類型96
〈表 Ⅲ-14〉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同居世代數97
〈表 Ⅲ-15〉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教育水準 97
〈表 Ⅲ-16〉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所有 與否98
〈表 Ⅲ-17〉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住宅 形態 99
〈表 Ⅲ-18〉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形態99
〈表 Ⅲ-19〉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 専用面積 100
〈表 Ⅲ-20〉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 評價額 - 月貰
	家口 以外100

〈表	Ⅲ-21〉	絶對貧	困層 移	動 및	殘	留家口의	月	貰額 -	
		保證부	月貰 写	見 月費	該	口	••••	1	01
〈表	Ⅲ-22〉	絶對貧	困層 移	動 및	殘	留家口의	傳	貰	
		또는 생	R證金額	•••••			••••	1	02
〈表	Ⅲ-23〉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就業人員數 1	04
〈表	<b>Ⅲ-24</b> 〉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主	
		從事 鵈	娥種 形息	£			••••	1	05
〈表	Ⅲ-25〉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主	
		從事 產	<b>雀業</b>				••••	1	06
〈表	Ⅲ-26〉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主	
		職業形	態		••••		••••	1	08
〈表	Ⅲ-27〉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規模1	10
〈表	Ⅲ-28〉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同居世代數 1	11
〈表	Ⅲ-29〉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配偶者 形態 1	11
〈表	Ⅲ-30〉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主의 性 1	12
〈表	Ⅲ-31〉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主 年齡 1	13
〈表	Ⅲ-32〉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類型1	13
〈表	Ⅲ-33〉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家口主 教育水準 1	14
〈表	<b>Ⅲ-34</b> 〉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居住 形態 1	15
〈表	Ⅲ-35〉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住宅所有 與否 … 1	15
〈表	Ⅲ-36〉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居住 住宅 形態・1	16
〈表	Ⅲ-37〉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住宅 專用面積 … 1	16
〈表	Ⅲ-38〉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月貰 評價額 1	17
〈表	Ⅲ-39〉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月貰額1	17
〈表	<b>Ⅲ-40</b> 〉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	의	傳貰 또는	
		保證金	液	•••••	••••		••••	1	18

〈表 Ⅲ-41〉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職種形態 120
〈表 Ⅲ-42〉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就業人員數 121
〈表 Ⅲ-43〉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産業 122
〈表 Ⅲ-44〉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業形態…123
〈表 Ⅲ-45〉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規模125
〈表 Ⅲ-46〉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同居世代數 125
〈表 Ⅲ-47〉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配偶者 形態126
〈表 Ⅲ-48〉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의 性126
〈表 Ⅲ-49〉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年齡127
〈表 Ⅲ-50〉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類型 128
〈表 Ⅲ-51〉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教育水準 129
〈表 Ⅲ-52〉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形態130
〈表 Ⅲ-53〉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所有 與否130
〈表 Ⅲ-54〉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住宅 形態 131
〈表 Ⅲ-55〉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 専用面積 131
〈表 Ⅲ-56〉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評價額-月貰家口
	除外132
〈表 Ⅲ-57〉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額132
〈表 Ⅲ-58〉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傳貰 또는 保證金液 133
〈表 Ⅲ-59〉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就業人員數 135
〈表 Ⅲ-60〉	中上位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種 形態・135
〈表 Ⅲ-61〉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産業 136
〈表 Ⅲ-62〉	中産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業 形態・137
〈表 Ⅲ-63〉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規模139
〈表 Ⅲ-64〉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同居世代數140

〈表 Ⅲ-65〉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配偶者 形態 140
〈表 Ⅲ-66〉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의 性 140
〈表 Ⅲ-67〉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年齡 141
〈表 Ⅲ-68〉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類型142
〈表 Ⅲ-69〉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敎育水準 142
〈表 Ⅲ-70〉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形態 143
〈表 Ⅲ-71〉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所有 與否 144
〈表 Ⅲ-72〉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住宅 形態 144
〈表 Ⅲ-73〉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 專用面積 145
〈表 Ⅲ-74〉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 評價額 145
〈表 Ⅲ-75〉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額145
〈表 Ⅲ-76〉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前世 또는 保證金液 … 146
〈表 IV- 1〉	階層 歸屬에 대한 家口特性의 影響度 推定 149
〈表 IV- 2〉	絶對貧困層의 貧困脫皮確率에 대한 寄與效果 156
〈表 IV- 3〉	相對貧困層의 移動確率에 대한 寄與效果160
〈表 IV- 4〉	庶民層의 移動確率에 대한 寄與效果164
〈表 IV- 5〉	中上位層의 下位移動確率에 대한 寄與效果 170
〈表 IV- 6〉	패널家口의 各 階層 經驗 分期回數(期間) 172
〈表 IV- 7〉	絶對的 貧困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175
〈表 IV-8〉	相對的 貧困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178
〈表 IV- 9〉	庶民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181
〈表 IV-10〉	中上位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184
〈表 V-1〉	俸給生活者의 年間 總 所得稅 輕減效果(1999) 190
〈表 V-2〉	中産層과 庶民層의 生活安定 豫算(1999)191
〈表 V-3〉	福祉部 一般會計 社會保障豫算의 構成(2000年) 193
〈表 V-4〉	政府 部處別 社會保障關聯 特別會計(2000年) 194

/#. V <b>5</b> \	八孙殿虎伊险加工老司 插准日外电ේ 宜期则 伊险料
〈衣 V - 3〉	公教醫療保險加入者의 標準月給與額 區間別 保險料
	診療件數, 診療費 및 給與費(1997) 196
〈表 V-6〉	行政自治部 社會保障部門 一般會計 豫算198
〈表 V-7〉	所得階層 및 支援類型別 福祉事業 關聯事業의
	比較199
〈表 V-8〉	階層別 政府支援 豫算 및 對象規模202
	附表 目次

〈附表 1〉	保健福祉部 保健部門 一般會計 豫算(歲出)245
〈附表 2〉	保健福祉部 社會保障部門 一般會計 豫算(歲出) 247
〈附表 3〉	勞動部 勞動事業部門 一般會計 豫算(歲出)251

### 要約

### 1. 貧富隔差 實態 및 展望

1997의 환란에 따른 대불황, 1998년 이후의 가파른 경기회복, 그리고 2000년말 이후의 경기침체의 급변 속에서 국민생활도 총체적 및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고, 분배상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에 있다.

소득통계의 입수가 가능한 도시근로자가구의 분배 상태를 보면 1999년 1/4분기의 최악의 분배상태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99년의 GINI 계수는 0.320으로서 98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증가하였고 '97년의 0.283 보다는 현저히 크다. '99년의 GINI 계수는 88년 0.336 이래 가장 커진 값이다. '99년 1/4분기 이후에는 다소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4/4분기 다시 증가하였고 2000년 2/4분기 지니계수도 0.317로서 작년 동기 0.311보다 증가함으로서 분배개선이 되어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분위별로 분포의 변화를 보면, 중하위 계층에서는 '99년에도 계속 감소세를 보여,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50% 이하의 소득 점유율은 97년 30.1%에서 '99년 27.8%까지 감소하였고 전 도시가구의 소비점유율도 28.1%에서 27.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근로자 소득 최상위 5%의 소득점유율은 '98년 및 '99년 크게 올랐고, 소비지출 최상위 10%이상특히 5% 이상 계층에서도 '99년 소비점유비중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특히 최상위 1.6%의 가구가 전소비의 25%를 보이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층별 가구특성을

2000년 2/4분기 자료를 통하여 보면, 도시가구의 하위 5%에서는 노인가구 및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현저히 크다. 또한 하위 20% 이하의 계층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주나 다세대 가구의 비율이 상위 계층에 비해 다소 크지만, 하위 5% 이하와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하위 20% 이상의 가구특성은 비슷하여 상대적 빈곤층이나 서민화된 계층은 일반가구와 동질적인 가구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에서는 하위 10% 수준 이하의 가구가 대졸 이상에서는 중상위 수준의 가구가 점유하는 비율이 현저히 크다.

계층별 경제 특성을 종합하면, 하위 5% 이하의 극빈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취업인 규모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상대적 빈곤층 (하위 10~20%) 및 하위 30% 이하의 서민계층은 상위 50% 이상의 중상위 계층과 거의 비슷한 취업가구원수, 주로 제조업에의 종사 등과 같은 거의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위 10~30%의 빈곤화 및 서민화의 주요 경제적 원인은 자산소득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취약한 직업 및 근로상태(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와 다소취약한 지적기반 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階層移動의 實態 및 特徵

중하위층을 절대빈곤층(하위 10% 이하), 상대빈곤층(하위 10~20%), 그리고 서민층(하위 20~50%)으로 구분하고 그 이상을 중상위층으로 할 때, '98년에 비해 '99년 상향 이동한 패널가구는 18.5%, 이동 없는 가구는 61.3%이고 하향 이동한 가구는 20.2%이다. 그리고 98년 중상 위층의 76.5%와 하위 10%의 소비계층의 57.8%는 '99년에도 계층변동이 없어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절대빈곤에서의 탈출가구(42.2%)보다 이입가 구(46.2%)가 컸고, 상대적 빈곤층 및 서민층에서도 상향 이동한 가구 보다 하향 이동한 가구가 더 많았다. 또한 중하위 계층에서 위로의 상방 이동(20.4%)보다는 중상위층에서 하향 이동한 가구(23.5%)가 더 많아 중 하위층화를 더욱 심화하였다.

그리고 패널가구의 서민층 이하의 경험기간이 10분기 중 5분기 이상 인 가구비율이 29.0%이며, 상대적 빈곤 이하의 경험기간이 5분기 이 상인 가구의 비율도 8.5%에 이른다.

계층귀속, 이동과 경험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가구주 종사 직종을 중심한 경제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변수 중에서도 임시/일용직, 무직, 상인 등의 직종이 기준변수인 공무원 등 사무직에 비한 계층 귀속, 이동 및 경험기간에의 기여도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경제변수는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계층이동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서민 및 중상위층에서는 계층 귀속 및 경험기간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도시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서민층에의 귀속 및 중상위층에의 귀속 그리고 이 계층의 경험기간에서는 경제변수보다 더 중요한 혹은 비슷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 특히 중상위층에서 중하위로의 하향이나 서민층의 계층 이동에서도 일반가구 특성은 경제변수 보다 중요한 기여 를 하고 있다. 기타 유의할 특징은 배우자와의 별거 가구와 30대에 비 한 50대 및 40대 가구주, 자가에 비한 사글세 및 월세의 거주형태 가구 의 계층 귀속 및 이동 그리고 경험기간에서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가구특성은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 귀속 및 경험기간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빈곤 층은 경제 특성뿐 아니라 일반 가구특성에서도 취약한 상태임을 실증 하고 있다.

넷째, 서민층은 계층귀속, 이동 및 경험기간에서 경제 및 가구 특성 과 유의한 관계도가 네 계층에서 가장 적다. 그러나, 서민층에의 계층 귀속 및 타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경제변수 보다는 가구의 일반특성의 영향도가 크고, 경험기간에서도 경제변수 보다는 일반가구의 특성변 수의 유의도가 크고 다양하다.

다섯째,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귀속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 구주 종사 직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연령, 가족관계, 주택, 교육에 걸쳐 전반적인 가구특성에 대한 대책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 3. 貧困 및 庶民生活 政策의 實態 및 政策方向

정부정책은 이에 대응하여 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의 총 직·간접 투입 예산약 6조 6000억원 중 2조 2000억원은 극빈층의 생활보호 그리고 3조 6000억원은 주로 중상위층에게 급여가 귀속되는 사회보험 및 소득세경감사업에 나누어 투입되고 있어, 상대적 빈곤층 및 서민층에 대한지원이 미약하다. 예컨대, 극빈층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포함하여 총 예산 2조 1666억원과 대상규모가(중복을 고려하지 않음) 233만 2천명에 이르러 정부의 사회보험관리 및 급여 지원금과 소득세경감 조치는 주로 혜택이 중상위층에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층과 서민층 크게 적고 예산의 약 80% 이상은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복지부 공공근로사업의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서민층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 수용시설, 경노당 지원 ,기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이용되고 있고, 대상자들도 주로 이들이다.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대상은 극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 가. 巨視的 經濟・社會政策

지난 20년간 빈부격차 확대과정을 경험해 온 구미 선진국에서 유럽 대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영미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국가에서는 교육 및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빈부격차 확대, 즉, 중하위 계층으로의 귀속이나, 차상위로의 상향 혹은 하위층으로의 전략에 있어서 가구의경제적 상태가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상태 변화가 사회문제와 독립적으로 계층화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보았다. 따라서 복지 분야 이외에도 노동, 조세, 자산과 같은 경제대책은 물론, 가족, 교육, 주거 등과같은 사회정책적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

# 1) 統合的 豫算政策과 效率的 傳達體系의 推進을 통한 資源利用 의 效率成 増大

첫째, 중상위층에의 급여규모가 큰 사회보험급여, 근로소득세 경감, 그리고 생활안정 융자 등에서 보편적인 정책적용보다는 2~3단계의계층별로 차등화하고 계층에 대한 체계적 시각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관련 부조정책과 각종 현물급여 및 수당제도도통합적으로 정비하여 복지 및 노동의 전반적 체계를 기초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하는 부처 및 관리기관간의 이해대립을 극복 조정하여 예산을 효과적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의 사회정책조정기구의 설치, 지역단위의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단위의 민간 참여 평가단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전문성이 부족한 복지부의 조건부 급여사업을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부조제도를 신설하여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기타의 각종노동관련 지원제도를 흡수하고, 이 제도에 의한 부조는 가능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여되도록 한다. 넷째, 복지대상자에 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활성화와 민간들의 복지서비스에의 경쟁적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결정의 민간에의 개방 등과 같은 혁신적 정책전환이 긴요하다. 다섯째, 시민의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와고발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 보수적 관료체제를 정보화 및 시민화의 새 흐름에의 적응을 촉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모든 국민에게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의 지원아래 지역 정부, 단체 및 주민이 지도록 한다(지역의 자치적 노력 강화).

### 2) 所得 및 資産政策

첫째, 대규모 일시적인 주식거래의 억제 및 일일거래와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주식시장에서의 정보의 부족 및 국내외의 큰손의 횡포 및 투기꾼들의 주가조작 등에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여야한다. 둘째, 서민 자산 증대를 위해 우량기업의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재정 부실 대기업의 부동산의 피고용자들에의 분할 매각 등 중산층및 서민들의 자산증대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봉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이 파트타임의 직업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원 사이에의임금격차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상시화될 구조조정과정의 급속한 진행에서 실직 혹은 고용불안상태를 보호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립이 중요하다.

### 3) 家族政策 및 民間 役割의 强化

첫째,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보장이 생활 공동체에서부터 이루어지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컨대, 가족부양 공제비율을 정할 때도 동률이 아니라 평균을 1로 할 때, 노부모 2, 아동 1.5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면 가족복지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가족 및 친지, 지역 및 직장 단위의 복지 및 사회활동에 대해 정부가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셋째,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험에서 장애급여, 유족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 등을 대폭 강화한다. 넷째, 각 가정 및 개인의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주의적 복지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문제에 대한 지역 및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방법의 발견과 적절한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부금문화의 정착이 어려운 환경에서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나. 階層別 對策

### 1) 絶對貧困層 對策

첫째, 현행의 높은 임금수준이나 작업환경의 열악(예, 3D업종)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의 실직자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지 모르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이 긴요하다. 셋째, 높은 실직률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은 일시적 대책보다는 장기의 상시적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직업훈련 능력 및 사업 발견능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보다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 산하의 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 등과 연결된 종합적인 실직자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의 사정에 밝은 민간기관 혹은 실직자 자신들이 설립할 자활공동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하려는 허가 중심의 행정보다는 사후관 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섯째, 빈곤층에게의 현금 급여 제도를 효율화하고, 현물급여 중심의 선진적 부조체계로 전환해 야 복지효과의 증대 및 근로의욕의 감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 곱째, 의료빈곤층으로의 보호대상을 넓히되 경질환 및 약의 이용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을 강화하고, 고액진료 등에서는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료서비 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의료시장의 독점에 따른 경제 및 사 회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 다른 서비스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자격증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시도하여 의료인의 국제시장 이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가족의 분리 및 해체의 원인이 경제 문제일 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제의 가정에 대한 장기적 생활비 융자나 각종 사회부조제동에의 우선적 편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모 부자가구는 다른 계층에 비해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기관의 교육자의 수를 대폭 증대시켜, 정규수업 이후의 개인적 과외를 학교 밖에서 해결하 기보다는 교내에서 다른 학교 및 학원의 교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2) 次上位(相對的) 貧困層 對策

첫째, 이 계층은 절대빈곤층보다는 전문성 및 숙련도가 크고 직업 경험기간이 길 것이므로, 단순한 공익서비스보다는 전문적인 성격의 공익서비스나 민간기업에의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경 쟁력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공익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생산성만큼만 근로부조제도에서 지급하고, 경쟁력이 있으나 실현되지 못한 근로자 들에게는 시장임금에서 기업에의 생산성 기여분 만큼을 제외한 임금 보조를 지원한다. 임금보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안정센 터 등에의 전문 및 전담인력의 확대 공급과 보조금의 지급과 고용 및 근무상태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셋째, 말기환자 및 치매환자 등의 노인보호를 위한 간병비의 지원을 포함하여 본인부담 절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화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빈 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지역 및 농어촌 학교에 컴퓨터의 완 전공급은 물론 정보화 및 어학 교육시스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庶民生活 對策

첫째, 주식의 구입 및 판매단계에서 거래 이익에 대한 누진과세뿐 아니라, 편법에 대응한 조세법의 운용의 미를 발휘하여 상식에 부합 되는 과세가 되도록 방안을 찾는 노력이 크게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조세 부담률을 30%대로 올리려면 간접세의 획기적 인상 방안이 가장 분명한 방법일 것이므로, 소득세 과표의 현실화나 세원의 확대 등 탈루 방지 이외에도 특별소비세 특히 최상위 5~10% 가 주로 구입하는 고가의 사치성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 다. 그리고 특별소비세 혹은 복지세의 수입은 생활안정기금으로 조성 하여 서민들의 일시적 생활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의 월세 보조금은 극빈층에게만 적용하고, 기 타의 차 상위 빈곤층 및 서민층은 임대주택의 공급증대 및 주거서비 스 가격의 하락을 통한 시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30대 가구 주 가구에 대해서는 임금보조제도의 적용 시 우선 순위를 높이어 지 식기반의 경제에서 이들 가구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여야 한 다. 그리고, 모자가구 및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 출과 근로부조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높게 책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제도를 빈부격차 축소 및 생활안정의 증대를 위한 효율적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 전면 재편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의 사회보장 부담률이 15%를 크게 넘기는 어려우므로 지금까지의 복지투자 속도로 보아 시일 내에 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경제와 복지의 상합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I. 貧困 및 所得分配의 變化와 展望

### 1. 貧困 및 所得分配 實態의 變化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발생된 대량실업은 실직자 및 불안정 취업자의 증가, 임금구조의 양극화, 빈곤층의 급증,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의 저하와 같은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98년 말 이후의 경제회복 및 경제성장이 성장구조 및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빈부격차의 확대문제가 2000년에도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1999년 들어서는 환란 이후 처음으로 가파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지만, 분배계수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소득통계가 가능한 도시근로자가구의 분배 상태를 보면 1999년 1/4분기의 최악의 분배상태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99년의 GINI 계수는 0.320으로서 '98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증가하였고 '97년의 0.283 보다는 현저히 크다. '99년의 GINI 계수는 88년 0.336이래 가장 커진 값이다. '99년 1/4분기 이후에는 다소 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4/4분기 다시 증가하고 있고, 2000년 2/4분기 지니계수도 0.317로서 작년 동기 0.311보다 증가하였다.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의 소득 점유 비중도 '97년 3/4분기의 4.2에서 '99년 동 분기에는 5.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99년 4/4분기에도 역시 상·하위 20%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00년 2/4분기 5.28로서 '99년 동기 5.24보다 크다. 또한, 2000년에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상위 10%의 소득(607.84만원)은 하위 10%의 9배에 이르고 특히 최상위 10%의 재산소득은 동 분기에 최하위 10% 재산소득의 21.3

배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26.07%로서 1/4분기의 26.01%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최상위 10%를 제외한 중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하여 중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은 1/4분기의 72.34%에서 71.62%로 감소하여 중하위층의 점유율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중산층의 생활수준 후퇴는 평균소비성향에도 영향을 주어 2/4분기의 평균소비성향은 75.9%로서 1/4분기 79.4%는 물론 '99년 2/4분기의 76%보다도 낮아졌다. 그리고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수준은 낮아져 1/4분기의 234.9만원보다 적은 소득 233.1만원을 기록하였고, 이의 '95년 가치는 193.9만원으로서 작년 동기보다는 증가하였지만 환란 전인 '97년의 실질소득 203.1만원의 95.5% 수준이고 '96년 동기 194.8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

〈表 Ⅰ-1〉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 推移

 구분	'96	'97	'98	'99	'99.1/4	2/4	3/4	4/4	00.1/4	2/4
소득점유(%)										
· 상위20%	37.9	37.2	39.8	40.2	41.3	39.5	39.0	41.1	40.7	40.4
· 하위20%	8.2	8.3	7.4	7.3	7.1	7.5	7.4	7.4	7.3	7.7
소득배율	4.63	4.49	5.41	5.51	5.85	5.24	5.29	5.55	5.57	5.25
GINI계수	0.291	0.283	0.316	0.320	0.333	0.311	0.310	0.327	0.325	0.317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및 통계청 보도자료 활용

이와 같은 분배계수의 악화는 경기회복이나 성장이 적어도 초기에는 분배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sup>1) 2000</sup>년도 분기별 10분위 도시근로자 소득분포는 다음과 같다. 1/4분기 1~10 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분위 2.73%, 2분위 4.60%, 3분위 5.72%, 4분위 6.79%, 5분위 7.82%, 6분 위 9.05%, 7분위 10.40%, 8분위 12.13%, 9분위 14.73%, 10분위 26.01%이며, 2/4분기에는 1분위 2.90%, 2분위 4.75%, 3분위 5.91%, 4분위 6.92%, 5분위 7.90%, 6분위 9.01%, 7분위 10.31%, 8분위 11.87%, 9분위 14.32%, 10분위 26.07%를 나타냈다.

<sup>2)</sup> 디지털 조선일보, 2000년 9월 20일자.

보다는 1990년대 후반 특히 1997년이래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의 부도, 실직의 증대 등의 고용불안, 불완전 취업의 증대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란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가의 몰락, 주택 등 부동산가치의 하락과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중산층의 쇠퇴, 그리고 벤처라고 불리는 첨단산업 자본가의 급속 성장과 참여자들의 부의 집중화와 정보산업에 빨리 적응한새로운 지식계급의 경제적 우위의 확보 등으로 기존의 중산층의 쇠퇴는 촉진되어 왔다.

구미 선진국에서도 역동적인 산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그리고 국가간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비록 미국의 경제가 1980년대이래 호황을 맞이하여 경쟁력을 되살려 또 다시 세계를 제패하는 위력을 보이고 있지만, 빈곤율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미국 경제가 위기이던 1983년 빈곤율은 15.2%이었는데 1986년 13.5%(존 나이비스트, 1990:57), 1997년 13.3%, 1998년 12.7%(D. H. Weinberg, 1999:Annex p.1)에 머물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2000년 1월 18일 발표 자료에 의하면3) 1988년에 비해 1998년 상위 20%소득계층의 소득(가구당 13만 7480달러)은 15% 증대하였는데 하위 20%계층의 소득은 불과 1%(1만 2990달러)도 증가하지 못하였다4). 미국 전체의 2/3의 주에서 양 계층 사이에의 소득격차는 벌어졌고, 15개 주에서는 상위 20%의 평균가구소득은 증가하였는데 반해 하위 20%의 소득은 감소하였고, 양 계층 사이에서 소득격차가 현저히 감소한 주는 3개 주뿐이다. 빈부격차 확대현상은 1980년대에도 심각하게 나타났었는데, 1979년부

<sup>3)</sup> 미국 상무성 자료

<sup>4)</sup> 뉴욕주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은 1만 9680달러 증가하였는데 반해 하위 20%계층 의 소득은 평균 1만 770달러 줄었음.

터 1989년까지의 소득비중의 변화는 상위 20%에서는 39.0%에서 42.1%로 증가한데 반해 하위 20%는 6.4%에서 5.6%로 감소하였다5). 이상에서 미국의 경우 벤처산업에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경제적 풍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도 발견된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영국에서의 소득비중은 상위 20%의 경우 36%에서 42%로 증가하였는데 반해 하위 20%는 9%에서 8%로 감소하였다. 동일기간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영국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세계화의 여파로 IMF관리체제를 경험한 중남미 등에서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이 세계화 과정에서 과거 20년간 경험한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의 성장잠재력과 국민의 생활능력이 매우 강력하여도 세계적 추세인 구조적 불평등 문제와 분배악화의 문제가 시장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극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경제위기 전후 나타난 소득분배 변화를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전 가구에 대한 소득분포의 자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전 가구 소비지출 20분위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이, 1996년부터 외환충격에 의한 경제위기첫 연도인 1998년까지 전 도시가구의 하위 25%는 '97년 소비지출 점유비중이 증가하다가 '98년에는 감소하고 '99년에는 동일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위 50% 이상은 소비지출 점유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최상위 5%는 1999년에 소비지출 점유비중이 크게증가를 하여 상위소득계층에서도 최상위층으로 소비가 이전되고 있음

<sup>5)</sup> Townsend, P., p.15.

<sup>6)</sup> 소비와 소득 분포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Kakwani(1999) 참조

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20분위 분포를 보면, 상하계층의 양분화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배의 변화를 정리하면, 첫째, 도시근로자가구 최하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98년에 크게 감소하였고 '99년에도 감소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위 10% 이하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1997년 3.3%에서 1998년 및 1999년 2.7%로 0.6% 감소하였다. 전가구 소비지출의 분포는 다소 그 경향이 덜 하지만 역시 '98년에 최하위 10% 소비지출 가구의 소비점유 비율은 감소하였고 '9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중하위 계층에서는 '99년에도 계속 감소세를 보여,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50% 이하의 소득 점유율은 '97년 30.1%에서 '99년 27.8%까지 감소하였고 전 도시가구의 소비점유율도 28.1%에서 27.4%로 감소하였다. 근로자가구의 소득 점유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계층은 1998년 하위 10%와 15~45% 구간과 1999년의 25~55% 구간이어서중하위층의 소득 및 소비 점유율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중상위계층의 가구에서는 중상위 50% 이상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최상위 5%의 점유비율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전 도시가구의 최상위 5%의 점유비율은 '99년 18.4%에 이르러 근로자가구의 16.0%를 능가하지만, 최상위 5% 근로자가구의 점유비율은 1996년의 13.6%에서 1999년 16.0%까지 계속증가되어 IMF 관리 이전의 임금 분배구조보다 악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전 가구의 중상위층의 소득 혹은 소비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98년의 전반적으로 감소된 소득 및소비수준에 비해 상위 계층의 소득 및소비는 유지 혹은 상대적으로 달 감소되어 상위층의 점유비율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98년의 일인당 평균소비는 '97년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다.

넷째, 경기가 회복된 '99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최상위 15%의 소득

점유율만 증가하였는데, 전 도시가구의 소비에서 최상위 5%를 제외한 중상위층의 소비점유율은 감소하여 중하위 계층의 감소추세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근로자가구 소득이 15% 및 5%의 최상위계층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전 도시가구의 소비는 5%의 최상위층으로의 집 중현상이 더욱 강력함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소득 최상위 5%의 소득점유율은 '98년 및 '99년 계속 올랐지만, 소비지출 최상위 10% 이상특히 5% 이상 계층에서도 '99년 소비점유비중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따라서, 한편에는 '98년에의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10% 및 50% 이하의 소득점유율 감소와 전가구 하위 35%의 소비점유율 감소, 그리고 다소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99년의 계속적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고, 다른 한편 최상위 15%의 '98년 '99년의 근로자가구의 소득점유율 증대 및 '99년의 전가구 최상위 5%의 소비점유율의 급속한 상승현상으로 말미암아 소득 및 소비분포의 양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상위 및 최하위 5% 에서는 계층간 소비 및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表 Ⅰ-2〉 全 家口의 20分位別 消費支出 占有比率 分布

(단위:%)

								(단위:%)	
	전가구 소비지출 분포								
소비지출	1990	1996년		1997년		3년	1999년		
구간 <sup>1)</sup>	점유	누적	점유	누적	점유	누적	점유	누적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5%	1.3	1.3	1.3	1.3	1.2	1.2	1.2	1.2	
5~10%	1.8	3.1	1.9	3.1	1.8	3.0	1.8	3.0	
10~15%	2.2	5.3	2.2	5.4	2.2	5.1	2.1	5.1	
15~20%	2.5	7.7	2.5	7.9	2.4	7.6	2.4	7.5	
20~25%	2.7	10.4	2.8	10.7	2.7	10.3	2.7	10.2	
25~30%	3.0	13.4	3.0	13.7	3.0	13.3	2.9	13.2	
30~35%	3.2	16.6	3.3	16.9	3.2	16.5	3.2	16.3	
35~40%	3.4	20.0	3.5	20.4	3.5	20.0	3.4	19.8	
40~45%	3.7	23.7	3.7	24.2	3.7	23.7	3.7	23.5	
45~50%	3.9	27.6	4.0	28.1	4.0	27.7	3.9	27.4	
50~55%	4.2	31.8	4.2	32.4	4.3	32.0	4.2	31.6	
55~60%	4.5	36.3	4.5	36.9	4.6	36.6	4.5	36.1	
60~65%	4.8	41.1	4.8	41.7	4.9	41.5	4.8	40.9	
65~70%	5.1	46.2	5.1	46.8	5.3	46.7	5.2	46.1	
70~75%	5.6	51.7	5.6	52.4	5.7	52.4	5.6	51.7	
75~80%	6.1	57.8	6.0	58.4	6.2	58.6	6.1	57.8	
80~85%	6.7	64.5	6.7	65.1	6.8	65.4	6.7	64.6	
85~90%	7.7	72.2	7.6	72.7	7.7	73.2	7.7	72.2	
90~95%	9.4	81.6	9.3	82.1	9.5	82.6	9.4	81.6	
95% <	18.4	100.0	17.9	100.0	17.4	100.0	18.4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註: 1) 전 가구의 소비지출을 20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소비지출을 가구규모에 관계 없이 가구단위로 설정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원자료, 1996~1999.

〈表 Ⅰ-3〉 都市勤勞者 家口의 20分位別 所得 占有比率 分布

(단위: %)

							(٢	t위: %)	
	근로자가구 소득분포								
소득 구간 <sup>1)</sup>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점유 비율	누적 비율	점유 비율	누적 비율	점유 비율	누적 비율	점유 비율	누적 비율	
≤5%	1.2	1.2	1.2	1.2	0.9	0.9	1.0	1.0	
5~10%	1.9	3.2	2.1	3.3	1.8	2.7	1.7	2.7	
10~15%	2.4	5.6	2.3	5.6	2.2	4.8	2.1	4.8	
15~20%	2.7	8.3	2.7	8.3	2.5	7.4	2.5	7.3	
20~25%	2.8	11.1	3.0	11.3	2.8	10.1	2.8	10.1	
25~30%	3.2	14.3	3.3	14.5	3.1	13.2	3.0	13.1	
30~35%	3.4	17.7	3.5	18.1	3.4	16.6	3.3	16.4	
35~40%	3.7	21.4	3.8	21.8	3.6	20.2	3.5	20.0	
40~45%	3.9	25.4	4.2	26.0	3.9	24.0	3.9	23.8	
45~50%	4.2	29.6	4.1	30.1	4.1	28.1	4.0	27.8	
50~55%	4.5	34.1	4.6	34.7	4.5	32.6	4.4	32.2	
55~60%	4.8	38.9	4.9	39.6	4.7	37.3	4.7	36.9	
60~65%	5.1	44.1	5.2	44.8	5.1	42.4	5.1	41.9	
65~70%	5.5	49.6	5.6	50.3	5.5	47.8	5.4	47.4	
70~75%	6.0	55.5	6.0	56.3	5.9	53.7	5.9	53.3	
75~80%	6.5	62.0	6.5	62.8	6.4	60.1	6.4	59.7	
80~85%	7.1	69.1	7.1	69.8	7.1	67.2	7.1	66.8	
85~90%	8.0	77.1	7.9	77.7	7.9	75.1	8.0	74.7	
90~95%	9.3	86.4	9.1	86.8	9.2	84.3	9.2	84.0	
95% <	13.6	100.0	13.2	100.0	15.7	100.0	16.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註: 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20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소득을 가구규모에 관계 없이 가구단위로 설정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원자료, 1996~1999.

소득 및 소비의 양극화 특히 최상위층 계층으로의 소득 및 소비의 집중화, 중상위층의 소득 및 소비점유율의 감소추세, 서민층의 소득

및 소비점유율의 감소추세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소득층화의 현상은 소득 및 소비총액의 분포에서 점유된 가구의 비율에서 더욱 분명해진 다. 일반적으로 소득분포가 왼쪽으로 편의된 분포곡선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왼쪽으로의 편의도의 증대와 더불어 최상위 5% 혹 은 적어도 15%의 범위에서의 또 다른 峰이 이루어지는 雙峰을 취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表 I-4, I-5 참조). 소비지출 및 소 득 총액의 20구간별 가구분포에 의하면 전 도시가구의 지출분포도의 편의가 '98년과 '99년 계속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지출 총액의 20구 간별 분포는 '98년 하위 5%와 '99년 하위 15% 이하의 점유 가구비율 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99년에는 가구점유율이 하위 50%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하위계층의 소비수준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반면에 상위 50% 이상의 점유가구비율은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최상위 1.6%의 가구가 전 소비의 25%를 보이는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지출 면에서 빈곤화의 확대, 중산층의 중 하위화가 '99년에 들어 와서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하위 10%와 상 위 40%에서 생활수준의 빈곤화 및 부유화가 심화되고 있다.

근로자 가구에서는 상위 20% 소득액 점유가구비율의 지속적 감소와하위 20%의 증가추세로 소득분포가 양극화 되어왔다. 특히 '99년 최상 위 5%의 점유가구비율은 '96년 및 '97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여 상위층의 점유가구비율의 감소를 주도하였고, '99년 최하위 5%의 점유가구비율은 '96년 및 '97년에 비해 현저히 커 근로자가구의 중하위화를 주도하였다. 그럼으로, 상위 20%의 점유가구비율의 감소세와 하위 20% 점유가구비율의 증가세에 따른 중산층으로의 중하위로의 전략과 최상위 및 최하위로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Ⅰ-4〉 消費支出額 20區間別 全 家口(員) 占有比率

(단위: %)

도시 전 가구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4.4	11.7	14.2	9.0	16.1	13.2	19.9	15.3
9.8	8.9	9.6	7.9	9.8	8.8	12.9	11.4
8.3	7.9	8.2	7.6	8.3	7.9	10.7	10.2
7.4	7.3	7.3	7.2	7.3	7.1	9.4	9.5
6.7	6.7	6.7	6.9	6.5	6.6	8.3	8.8
6.2	6.3	6.2	6.4	6.3	6.5	7.5	8.1
5.7	5.9	5.7	6.2	5.5	5.8	6.7	7.4
5.3	5.6	5.3	5.9	5.1	5.4	6.0	6.9
5.0	5.3	5.0	5.6	4.9	5.2	5.3	6.3
4.6	4.9	4.6	5.2	4.4	4.8	4.6	5.5
4.3	4.7	4.3	5.0	4.3	4.7	3.8	4.8
4.0	4.3	4.0	4.7	3.7	4.1	1.7	2.2
3.6	4.0	3.7	4.4	3.4	3.8	0.7	0.9
3.3	3.7	3.4	4.1	3.1	3.4	0.5	0.6
3.0	3.3	3.0	3.7	2.9	3.3	0.4	0.5
2.6	3.0	2.7	3.3	2.4	2.8	0.4	0.4
2.2	2.6	2.3	2.8	2.2	2.5	0.4	0.4
1.8	2.0	1.9	2.3	1.8	2.1	0.4	0.4
1.2	1.3	1.3	1.5	1.2	1.3	0.3	0.3
0.5	0.6	0.5	0.6	0.6	0.7	0.1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비會 14.4 9.8 8.3 7.4 6.7 6.2 5.7 5.3 5.0 4.6 4.3 4.0 3.6 3.3 3.0 2.6 2.2 1.8 1.2 0.5	기구 기구원 비율 비율 14.4 11.7 9.8 8.9 8.3 7.9 7.4 7.3 6.7 6.7 6.2 6.3 5.7 5.9 5.3 5.6 5.0 5.3 4.6 4.9 4.3 4.7 4.0 4.3 3.6 4.0 3.3 3.7 3.0 3.3 2.6 3.0 2.2 2.6 1.8 2.0 1.2 1.3	기구 기구원 비율 비율 비용 비율 비율 14.4 11.7 14.2 9.8 8.9 9.6 8.3 7.9 8.2 7.4 7.3 7.3 6.7 6.7 6.7 6.2 6.3 6.2 5.7 5.9 5.7 5.3 5.6 5.3 5.0 5.3 5.0 4.6 4.9 4.6 4.3 4.7 4.3 4.0 4.3 4.0 3.6 4.0 3.7 3.3 3.7 3.4 3.0 3.3 3.0 2.6 3.0 2.7 2.2 2.6 2.3 1.8 2.0 1.9 1.2 1.3 1.3 0.5 0.6 0.5	1996년 1997년 기구 기구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4.4 11.7 14.2 9.0 9.8 8.9 9.6 7.9 8.3 7.9 8.2 7.6 7.4 7.3 7.3 7.2 6.7 6.7 6.7 6.9 6.2 6.3 6.2 6.4 5.7 5.9 5.7 6.2 5.3 5.6 5.3 5.9 5.0 5.3 5.0 5.6 4.6 4.9 4.6 5.2 4.3 4.7 4.3 5.0 4.0 4.3 4.0 4.7 3.6 4.0 3.7 4.4 3.3 3.7 3.4 4.1 3.0 3.3 3.0 3.7 2.6 3.0 2.7 3.3 2.2 2.6 2.3 2.8 1.8 2.0 1.9 2.3 1.2 1.3 1.3 1.5 0.5 0.6 0.5 0.6	1996년 1997년 19 기구 기구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4.4 11.7 14.2 9.0 16.1 9.8 8.9 9.6 7.9 9.8 8.3 7.9 8.2 7.6 8.3 7.4 7.3 7.3 7.2 7.3 6.7 6.7 6.7 6.9 6.5 6.2 6.3 6.2 6.4 6.3 5.7 5.9 5.7 6.2 5.5 5.3 5.6 5.3 5.9 5.1 5.0 5.3 5.0 5.6 4.9 4.6 4.9 4.6 5.2 4.4 4.3 4.7 4.3 5.0 4.3 4.0 4.3 4.0 4.7 3.7 3.6 4.0 3.7 4.4 3.4 3.3 3.7 3.4 4.1 3.1 3.0 3.3 3.7 3.4 4.1 3.1 3.0 3.3 3.7 3.4 4.1 3.1 3.0 3.3 3.7 3.4 4.1 3.1 3.0 3.3 3.7 3.4 4.1 3.1 3.0 3.3 3.7 3.4 4.1 3.1 3.0 3.3 3.0 3.7 2.9 2.6 3.0 2.7 3.3 2.4 2.2 2.6 2.3 2.8 2.2 1.8 2.0 1.9 2.3 1.8 1.2 1.3 1.3 1.5 1.2 0.5 0.6 0.5 0.6 0.6	1996년 1997년 1998년 가구 가구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4.4 11.7 14.2 9.0 16.1 13.2 9.8 8.9 9.6 7.9 9.8 8.8 8.3 7.9 8.2 7.6 8.3 7.9 7.4 7.3 7.3 7.2 7.3 7.1 6.7 6.7 6.7 6.9 6.5 6.6 6.2 6.3 6.2 6.4 6.3 6.5 5.7 5.9 5.7 6.2 5.5 5.8 5.3 5.6 5.3 5.9 5.1 5.4 5.0 5.3 5.0 5.6 4.9 5.2 4.6 4.9 4.6 5.2 4.4 4.8 4.3 4.7 4.3 5.0 4.3 4.7 4.0 4.3 4.0 4.7 3.7 4.1 3.6 4.0 3.7 4.4 3.4 3.8 3.3 3.7 3.4 4.1 3.1 3.4 3.0 3.3 3.0 3.7 2.9 3.3 2.6 3.0 2.7 3.3 2.4 2.8 2.2 2.6 2.3 2.8 2.2 2.5 1.8 2.0 1.9 2.3 1.8 2.1 1.2 1.3 1.3 1.5 1.2 1.3 0.5 0.6 0.5 0.6 0.6 0.6	1996년 1997년 1998년 1998년 1998년 19을 비율

註: 1) 전 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누진비율을 이용하여 20구 간으로 구분함.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원자료, 1996~1999.

〈表 Ⅰ-5〉 所得額 20區間別 都市勤勞者의 家口(員) 占有比率

(단위: %)

								(인기: /0)	
	도시 근로자 가구								
구간 <sup>1)</sup>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5%	14.0	12.2	13.9	11.9	15.4	13.6	15.3	12.8	
5~10%	9.2	8.5	9.0	8.5	9.5	8.7	9.5	8.5	
10~15%	8.0	7.8	7.8	7.5	7.8	7.4	8.1	7.4	
15~20%	7.2	7.1	6.9	6.9	7.1	7.0	7.2	6.9	
20~25%	6.2	6.1	6.4	6.5	6.5	6.4	6.5	6.4	
25~30%	6.2	6.1	5.9	5.8	5.9	5.8	6.0	6.0	
30~35%	5.2	5.3	5.5	5.5	5.5	5.7	5.5	5.6	
35~40%	5.1	5.2	5.1	5.2	5.1	5.2	5.1	5.3	
40~45%	4.8	4.9	4.8	4.9	4.7	4.9	4.7	4.9	
45~50%	4.5	4.7	4.5	4.7	4.4	4.6	4.4	4.8	
50~55%	4.2	4.5	4.2	4.4	4.1	4.5	4.1	4.5	
55~60%	3.9	4.2	4.0	4.1	3.9	4.1	3.9	4.3	
60~65%	3.7	4.0	3.8	4.0	3.6	3.8	3.5	4.1	
65~70%	3.4	3.7	3.4	3.7	3.3	3.6	3.3	3.8	
70~75%	3.2	3.5	3.2	3.5	3.1	3.4	3.1	3.5	
75~80%	2.9	3.1	3.0	3.2	2.8	3.1	2.8	3.2	
80~85%	2.7	2.9	2.7	3.0	2.6	2.8	2.5	3.0	
85~90%	2.4	2.7	2.5	2.8	2.2	2.5	2.1	2.5	
90~95%	2.0	2.2	2.1	2.4	1.8	2.0	1.7	1.8	
95% <	1.3	1.4	1.3	1.4	0.7	0.8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전 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누진비율을 이용하여 20구 간으로 구분함.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원자료, 1996~1999.

### 2. 貧富隔差의 展望

지금까지 빈부격차를 확대시켜왔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동인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중산층의 자산력 쇠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실직 및 실업의 정도, 불완전취업의 정도 및 규모가 중하위 소득계층의 생활수준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2000년 3/4분기 현재 3.6%까지 감소하였으나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상용직 비율을 초과하는 현상이 1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2001년의 실업률 전망은 더욱 좋지않다. '99년 3월을 기점으로 임시 및 일용직(31.4%)의 비율이 상용직 (31.4%)의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2000년 7월 현재, 상용직 29.3%에 비해 임시 및 일용직은 31.4%, 자영업주 29.3%, 무급가족 종사자 9.5%로서가 상용직이 세 유형의 불완전 취업상태로 전환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률 감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분배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확대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분배악화의 요인의 하나이었던 금융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관련 중소업체들의 쇠퇴가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뒤이어 따르면 이로부터 방출될 실직자들은 급속히 증대될 것이고, 이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벤처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고용도 단기에는 기대하기 힘들어 중하위층이 더욱 두터워지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에 중상위층에서는 근로소득의 불평등보다는 증권 및 부동산 등의 자본시장에서의 소득 변화가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지식산업으로의 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 사양화되는 기업들이 늘 어 실직자 및 불완전취업자를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sup>7)</sup> 문화일보 2000년 9월 6일 인터넷 기사

의 강력한 임금유지 및 고용조정에의 저항운동은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을 피할 수 없이 확대할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종사자와 기존산업 및 불완전 고용에의 참여자 사이에 임금구조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에는 빈곤 확대의 구조적 요인이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계층간의 정보활용 능력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99년 말 미 상무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전년대비 29% 늘었다. 상무성은 인터넷 등 정보 이용빈도가 소득격차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양 계층간의 컴퓨터 보유대수와 인터넷 접속 비율이 7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속도가 소득이 많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도시일수록 커서, Digital Divide 현상이사회 각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률이 최고 서울 7.51%에서 최하위인 경남 2.12%로 분포되어 있고, 광역 시 평균 가입률은 6.26%이나 도 지역은 3.06%있어 각 분야별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정보산업 등에서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기술 후행국인 한국의 산업구조개편을 끊임없이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 디바이드는 물론 구조조정의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반도체생산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PC보급률, 인터넷 이용자수, 전화회선수 등을 종합 평가한 국가정보화 종합지수는 '98년 기준 세계 22위이어서 진보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종합지수 1위인 미국의 775의 절반도 안되는 312이어서 싱가폴(6위, 570)이나 일본(12위, 479)에 뒤져있어의 세계화의 선도국가가 되기에는 요원하며 구조조정의 대세

<sup>8)</sup> 중앙일보, 2000년 2월 9일자 '디지털 시대 : 정보=돈'

<sup>9)</sup> 대한매일 IT, 2000년 10월 18일자

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表 I-6〉 인터넷 利用率의 變化

(단위: %)

	1999년 5월	2000년 5월
월 소득 400만원 이상	34.1	53.4
월 소득 100만원 이하	8.3	24.5
 대졸 이상	31.3	62.4
중졸 이하	0.4	1.9
 20대 연령	26.8	60.0
50대 연령	2.9	4.9

資料: 동아일보, 2000년 10월 1일자 기사.

따라서, 단기의 금융 및 산업의 구조조정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화 및 정보화사회에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장기화시켜 중산층의 쇠퇴가 촉진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힘의 불균형, 즉, 정보와 자금력 면에서 거대기관과 개인 그리고 국제자본과 국내자본의 불균형으로 증권시장은 중산층의 부를 거대자본이나 해외로 유출시키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식기반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간의 임금격차의 확대 등으로 자본 및 임금 측면에서 빈부격차는 확대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레스터 서루우 교수는 '자본주의 미래'라는 저서에서 과거 로마제국이 붕괴되고 천년의 중세 암흑시대가 계속 되었듯이, 새 천년에는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곤과 무질서 등 사회의 혼란과 해체의 길로 들어서 제2의 중세 암흑시대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10).

따라서 한국은 아직도 개발국에 비해 값싼 노동과 이미 개발된 기

<sup>10)</sup> 신동욱, 1999년 11월 발표문, p.1.

술의 습득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 강력한 성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빈부격차의 확대 가능성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크게 증대된 저소득층과 위축된 중산층의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빈곤층 및 서민층의 중산층화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정보화 및 세계화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3. 先行 研究 및 分析方法

빈부격차 확대 문제와 관련된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준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통계청의 1997년, 1998년 및 1999년 상반기의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 자료 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분포의 변화를 추적하고 중하위층과 상위층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 자료를 이용 하여 빈곤증가의 요인을 세계은행의 모형에 의해 경제성장 요인과 분 배요인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하고 분배악화 요인이 49.8%를 설명하 고 있음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분배문제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영 미형과 유럽형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개괄적인 정책성격을 설명하고 미국의 1996년 정책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본 연구의 포괄성 및 분석성에도 불구하고 계층의 구분에서 OECD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150%를 중심으로 구분함으로써, 50% 이하는 빈곤층 이지만 상대적 빈곤층을 대표하는 선을 선택한 것이 되었고, 150% 이 상을 상위층으로 분류한 것도 매우 자의적이고 실제로 그 수준은 평 균소득가구 보다 크게 나은 가구가 되지 못하여 상류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50~70%를 중하위층 70~150%를 중간층으로 분류

하는데도 자의성이 크다. 즉, 중위소득의 70%에 의한 중상하위의 구분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10분위별혹은 그 이상의 분류법을 이용하여 계층의 분배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무리를 피하고 보편적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 보고서는 분위별계층 분석을 시도하였다<sup>11</sup>). 또한, 분배격차의 원인 분석에서도 빈곤율 증가의 원인을 분해하였으나, 분배악화의 요인이 무엇인지가 분석되지 못하였으며, 정책대안도 분석에 바탕을 둔 정책제시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의 분석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제한이 있어, 본 보고서는 유경준의 논문과는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빈곤요인 분석보다는 더 확대된 분배의 영역에서분배악화 및 계층 귀속, 이동, 기간과 관련된 분석을 시도하였다<sup>12</sup>).

또한, 최근의 한국의 분배구조에 관한 실증분석으로는 Kakwani교수 등의 논문이 있다. 그들은 한국 및 태국에서 '97년 경제위기 전후의 분배지수인 지니계수와 빈곤지수의 변화를 소득과 지출의 측면에서 보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소비기준의 분배계수의 차이는 주로 소비와 소득의 관계 특히 저축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분석하고 있다(Kakwani et al., 1999:22.). 또한 그들은 소득 및 소비기준의 빈곤율 변화의 차이를 저축효과 및 분배효과로 나누고 주로 저축행위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분석하여, 위기에 직면한 계층간의 저축을 이용하는 소비행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권순원(1992) 교수의 실증자료 분석은 1989년 한양대학교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및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후에 전국적인 단위의 분배에 대한 분석은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소득조사의 최근치인 1996년의자료 이외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의 분석은 없고 오직

<sup>11)</sup> 유상영 박사의 연구도 계층 구분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를 가짐.

<sup>12)</sup> 빈곤요인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것은 박순일(2000년 7월), 세계은행보고서 참조

도시근로자 소득에 의한 분석만이 있어 왔다. 그리고 부의 계층별 분포에 대한 자료는 이 자료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전혀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지니계수를 통한 분배상태만이 분석되어 있어, 분배악화의 원인 및 이에 근거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빈부격차에 대한 최근의 분석방법으로 유경준이 이용한 세계은행의 분해 방법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빈곤격차의 요인을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배적 요인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Mookherjee & Shorrocks 등(1982)은 영국의 소득의 불평등계수(지니)를 분해하여 연령집단별 분배 차이를 구하여 연령의 분배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Shorrocks(1980)의 분해방법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발전되어 왔다. 예컨대, Schwarze(1996)는 같은 방법으로 통일 독일 이후의 지역간의 분배의 변화 및 지역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특성에서 가구의 차이가 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할 수 있으나, 상이한 여러 특성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해하지는 못한다.

계층이동과 관련된 분석은 특히 빈곤지속기간과 관련되어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빈곤으로 들어가는 이유와 탈출하게 되는 요인의 분석과 더불어 향후 어느 시기 내에 빈곤으로 들어 갈 확률을 찾는 분석(Hazard Rate Approach) 등이 개발되어 왔다. 예컨대, Stevens(1999)는 향후 5년 내 혹은 10년 이상 내에 흑인이 빈곤화될 확률은 50%인데비해 백인은 30%임을 추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나(박순일, 2000. 6.; 1993) 대부분정태적 분석에 그쳤다. 계층이동 분석과 관련하여, Oxley(2000)의 분석은 경제 및 사회변화가 없을 때에 비해서 빈곤의 탈피와 빈곤화 확률에 대한 영향도를 추정하였다. 추정기법은 Logit Model이며,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및 캐나다 등 5개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피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빈곤으로의 진입가구가 탈피할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빈곤탈피가구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통계처리에 편의를 지닐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빈곤뿐 아니라 모든 계층이동에서 진입, 이탈 및 잔류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였으며, 계층이동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들의 영향정도를 추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계층화의 요인의 분석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계층의 귀속뿐 아니라, 어떤 계층에서 상위로의 탈출 및 하위로의 전략의 요인, 그리고 계층에 지속되는 경험기간의 요인 등을 분석코자 하였다. 그리고 계층의 동태적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자료의 Panel 구성이 불가피함으로 패널화가 가능한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도시가계조사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동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교체된 가구들이 있으므로 패널화 될 수 있는 가구는 크게 줄었다. 조사가구의 이탈 및 교체는 '98년부터 '99년까지의 연간자료의 패널화 및 1998년 1/4분기부터 2000년 2/4분기까지 분기 자료의 패널화 과정에서 감소된 표본의 적절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Lillard, 1999).

정책분석과 관련되어서는 먼저 빈부격차 및 전망을 근거로 한 거시적 시각에서 일반론적 정책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본 보고서의 계층분석에 따라서 발견된 사실 예컨대, 가구주의 취업여부 및 종사직종과 같은 경 제적 변수와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가구주 연령, 거주형태 및 학력과 같 은 주요 특징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기초로 정책 안을 유 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안들은 우리의 현재 및 미래의 복지환경 에서 추구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책기조 내에서 구성 제시되었다.

# Ⅱ. 階層別 家口生活 特性分析

계층별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계층구분을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의 가구소득 및 소비에 의한 계층간 분포는 일상적으로 이 용되고 있는 통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계층구분은 가구규모나 생활 필요에 비한 소득수준 등의 계층에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구규모의 차이는 동일한 소득 및 소비가구의 생활수준을 전 혀 다르게 하므로, 가구원 1인당 소득 및 소비수준에 의한 생활수준 이 보다 정확한 계층 구별기준이 된다. 물론 가구원 1인당 소득 및 소비수준도 가구규모에 따른 필요소비의 감소경향이나 질환자, 학생 등이 있는 가구의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나 단순 가 구기준보다는 정확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계층을 일반 사회의 통념에 따라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 서민층, 중하위층, 중상위층으로 나누고, 빈곤층은 주로 정부의 사회부조대상이 되는 범 주에 있는 극빈층과 차상위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으로 나누고, 중상 위층도 최근 부를 급속히 쌓고 있는 최상위 계층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I장에서와 같이 20구간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계층별 이동 실태 나 각 계층의 특성 및 변화를 보기 위하여, 모든 계층을 사회부조대 상 극빈층, 비 대상인 절대빈곤층, 상대적 빈곤층, 저소득층, 서민층, 중상위층으로 나누어 하위 5%, 하위 5~10%, 10~20%, 20~30%, 30~50%, 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가구는 근로자가구에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소득은 최근에 주요 관심 계층으로 부상되고 있는 비 근로자가구의 저소득 계층이나 신산업 및 금융시장 등에서의 경쟁에서 승리자와 같은 최상위 계층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전 가구에 대해서는 소비지출수준에 따라 계층별 가구생활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 및 소비지출에 따라 구분된 각계층에 있어서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6~1999년의 기간동안 나타난가구특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00년 2/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계층별 가구특성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 經濟危機 前後(1996~1999)의 階層別 家口特性 變化

# 가. 人口學的 特性

### 1) 家口主 性別

경제위기 전후인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가구주 성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하위 계층에서 약 10%정도 낮아진 것을 알 수있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대량실업 사태로 인해 남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상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나빠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한 시점인 '99년 들어 다시 이전의 경향으로 높아지고 있어 경제상황에 따라 빈곤가구의가구주 성별 분포가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층별 가구주 성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소득 또는 소비지출이 낮은 계층일수록 크며, 특히 5% 및 10% 이하의 근로자가구계층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류인 편모

가구의 경우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Ⅱ-1〉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別 家口主 性別 分布의 變化 (단위: %)

												· -	111 717
	분	소비	·소득										
	正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도	성별	전 가구	근로자										
'96	남	78.8	68.5	81.8	79.2	84.2	84.8	85.4	87.8	86.7	89.0	85.6	88.1
96	여	21.2	31.5	18.2	20.8	15.8	15.2	14.6	12.2	13.3	11.0	14.4	11.9
'97	남	78.9	73.2	82.7	79.0	83.8	82.6	84.5	86.8	86.0	87.4	85.2	87.3
97	여	21.1	26.8	17.3	21.0	16.2	17.4	15.5	13.2	14.0	12.6	14.8	12.7
'98	남	84.4	78.6	83.6	80.5	85.2	85.5	87.3	88.7	87.0	89.5	86.1	90.8
98	여	15.6	21.4	16.4	19.5	14.8	14.5	12.7	11.3	13.0	10.5	13.9	9.2
'99	남	75.3	71.1	77.2	73.4	82.0	82.0	83.4	84.5	83.6	86.5	84.2	88.8
99	여	24.7	28.9	22.8	26.6	18.0	18.0	16.6	15.5	16.4	13.5	15.8	11.2

#### 2) 家口主 年齡

경제위기 이후 도시전가구의 최하위 5%에서 가구주 연령 60대 이 상인 가구의 비율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증가하고, 근로자가구에서는 30대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상 위층에서는 30대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감소세이고 고 연령 가구주 가 구 특히 40대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든 계층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으며, 이들 은 전 계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50대의 경우에는 소득계층이 높 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 이 60대 이상인 가구들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0% 이하의 계층에서 60대 이상의 연령비율이 현저히 크며,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表 II-2〉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年齡 分布의 變化 (단위: %)

	7 11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득
	구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도	연령	전 가구	근로자										
	10대	1.0	1.3	0.8	0.9	0.7	0.6	0.5	0.4	0.4	0.1	0.2	0.2
	20대	11.9	15.8	10.4	13.0	10.0	12.3	10.4	12.1	10.5	13.8	10.8	16.2
	30대	39.8	38.4	43.2	43.2	44.8	46.6	43.5	47.1	41.9	43.8	33.4	36.3
'96	40대	23.6	28.9	24.5	24.6	24.4	24.9	25.1	24.4	26.9	26.1	28.9	23.1
	50대	10.0	9.8	11.9	11.2	12.9	9.8	12.8	11.0	14.3	12.9	19.6	19.3
	60대	7.7	4.8	6.2	5.3	5.4	5.4	6.2	4.8	5.2	3.3	6.2	4.8
	70대 이상	6.0	1.0	3.0	1.9	1.9	0.3	1.4	0.2	0.8	0.0	0.9	0.1
	10대	1.1	0.2	0.4	0.0	0.3	0.5	0.3	0.2	0.3	0.4	0.2	0.2
	20대	10.9	11.4	10.7	13.1	10.2	14.1	9.7	12.0	9.8	12.8	11.0	16.5
	30대	41.3	42.0	42.2	43.1	42.9	45.6	41.8	47.9	39.2	43.6	30.3	33.4
'97	40대	20.8	29.4	23.7	25.8	25.3	24.8	26.8	24.9	28.3	25.5	29.6	24.0
	50대	9.7	9.5	11.3	12.4	12.6	9.5	14.3	11.1	15.1	14.3	20.9	20.0
	60대	10.4	7.3	7.5	5.2	6.8	5.2	6.1	3.7	6.2	3.3	7.1	5.8
	70대 이상	5.9	0.3	4.2	0.4	1.9	0.2	1.0	0.2	1.0	0.1	1.0	0.1
	10대	0.9	0.5	0.4	0.9	0.4	0.4	0.2	0.1	0.3	0.2	0.2	0.0
	20대	10.3	11.8	11.7	10.1	12.1	12.3	10.8	13.6	10.8	14.4	10.4	15.1
	30대	38.8	43.9	40.9	46.8	42.7	46.8	42.3	45.6	41.0	45.3	32.7	36.6
'98	40대	21.8	26.4	23.4	22.5	22.9	24.4	24.8	24.3	26.2	24.8	30.7	26.4
	50대	11.7	10.4	12.5	10.4	12.7	10.7	13.0	11.6	14.6	12.1	19.0	17.5
	60대	12.0	7.0	8.5	8.8	7.0	5.3	7.3	4.7	5.9	3.0	6.2	4.2
	70대 이상	4.6	0.0	2.7	0.4	2.1	0.2	1.5	0.2	1.2	0.2	0.8	0.2
	10대	0.5	0.3	0.4	0.7	0.3	0.4	0.2	0.1	0.2	0.2	0.1	0.1
	20대	8.0	9.6	9.5	10.2	9.9	13.1	9.5	12.2	9.6	13.6	9.0	12.8
	30대	36.4	43.2	38.5	43.2	41.6	43.8	42.2	47.0	40.0	43.0	31.3	36.9
'99	40대	21.8	25.0	24.0	29.3	23.8	25.9	24.3	23.8	26.5	26.1	31.4	28.1
	50대	14.1	13.0	14.5	11.8	13.4	10.6	13.4	12.4	15.2	13.3	19.3	17.6
	60대	12.3	8.4	9.1	4.4	8.4	6.0	7.8	4.2	6.6	3.7	7.8	4.4
	70대 이상	6.8	0.5	4.0	0.3	2.7	0.3	2.5	0.3	1.8	0.2	1.1	0.2

또한, 일반적으로 30~40대 가구주의 비율은 근로자가구와 전 가구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60대 및 70대 이상인 경우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家口主의 教育水準

〈表 Ⅱ-3〉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教育水準1 分布의 變化

(단위: %)

													- 11. 70)
	구분	소비	l·소득	소비	·소득	소비	l·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1 1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교육	전	근로자										
도	수준	가구											
	초등	18.8	20.1	15.8	18.7	12.7	12.9	12.5	11.1	10.4	9.8	7.6	7.5
	중등	18.8	25.6	18.1	19.6	18.7	19.3	17.7	16.6	16.0	14.0	11.8	9.3
'96	고등	47.5	42.6	48.7	47.8	46.8	47.0	46.3	45.5	46.3	45.7	41.9	39.0
90	전문대	4.2	2.6	5.3	4.2	6.4	6.2	6.3	6.1	6.7	7.7	6.3	7.9
	대학	10.4	8.8	11.2	8.7	13.9	13.4	15.9	19.3	18.5	20.3	27.7	30.3
	대학원	0.2	0.4	0.9	1.0	1.4	1.2	1.4	1.4	2.1	2.5	4.7	6.0
	초등	21.3	20.2	16.4	17.9	12.6	12.2	11.9	10.8	10.6	9.6	7.2	7.6
	중등	19.5	26.5	18.0	20.1	19.6	19.5	17.7	17.2	16.9	15.5	13.4	11.7
,97	고등	46.3	42.8	47.9	48.1	46.9	45.0	47.0	47.8	46.3	43.8	41.0	37.8
91	전문대	4.4	3.6	6.0	4.3	6.4	8.5	6.7	6.9	7.0	9.1	7.1	8.4
	대학	7.7	5.9	10.4	8.6	13.2	13.3	15.2	15.8	17.1	18.7	25.9	27.7
	대학원	0.7	0.9	1.3	1.0	1.4	1.5	1.6	1.5	2.0	3.4	5.4	6.8
	초등	19.3	15.5	12.9	10.1	11.1	9.4	10.3	8.3	8.7	7.3	6.2	5.4
	중등	21.3	21.7	21.3	22.3	16.9	17.0	15.5	17.3	14.8	12.2	10.8	8.1
'98	고등	43.2	47.8	50.1	52.8	52.0	52.0	49.1	48.7	48.7	48.1	41.0	38.4
90	전문대	5.0	4.4	5.4	4.8	5.4	6.6	6.7	6.9	6.3	7.5	6.1	7.2
	대학	9.9	8.4	9.7	9.1	13.8	14.1	17.4	17.2	20.0	23.3	31.2	34.9
	대학원	1.3	2.2	0.6	0.8	0.9	0.9	1.0	1.6	1.5	1.6	4.7	6.0
	초등	21.1	16.4	16.0	13.3	12.7	10.7	10.7	9.1	8.7	8.1	5.7	4.7
	중등	23.4	26.3	21.2	20.8	18.6	16.4	15.1	14.8	15.1	13.8	10.7	8.0
,99	고등	40.8	41.9	47.5	48.7	48.4	51.8	49.0	50.0	48.3	46.3	41.7	39.5
99	전문대	4.4	5.4	5.3	7.0	6.6	6.9	7.1	7.7	7.6	9.5	6.7	8.1
	대학	9.7	8.3	9.5	8.7	12.6	13.2	16.8	17.2	18.3	20.3	29.7	32.8
	대학원	0.7	1.7	0.6	1.5	1.1	1.0	1.3	1.2	1.9	2.0	5.6	6.9

註: 1) 졸업과 관계없이 재학, 중퇴, 휴학도 포함.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해볼 때,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 등으로 인 해 고학력 수준의 빈곤계층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것이라 는 일반적인 예상은 두드러지게 실증되고 있지 않지만, '98년 이후 최 하위 5%에서 가구주 학력 대졸이상의 가구의 비율이 '97년에 비해 증 가하고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이 가장 많으며, 전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수준의 저학력 가구주의 비율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점유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수준의 격차가 소득 또는 소비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와같은 사실은 소비지출보다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4) 家口類型

전체적인 가구유형별 분포는 전가구의 경우 '98년에 노인가구 2.9%, 모자가구 2.8%, 맞벌이가구 21.5%, 일반가구 72.8%, '99년에 노인가구 3.6%, 모자가구 3.0%, 맞벌이가구 21.2%, 일반가구 72.2%로 나타났다.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98년에 노인가구 1.1%, 모자가구 1.7%, 맞벌 이가구 28.6%, 일반가구 68.6%로, '99년에 노인가구 1.0%, 모자가구 1.8%, 맞벌이가구 28.4%, 일반가구 68.8%로 나타났다.

가구유형 분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노인 및 모자가구의 비율이 계층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며, 하위 10% 이하의 절대빈곤 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전 가구에서 노인가구의 비율은 근로자가구에 비해서 전 소득계층에서 크며, 특히 하위 5% 이하의 가구에서 '99년에 11.2%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유형에 있어서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한 노인 가구와 모자가구의 빈곤계층의 귀속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점을 보여주고 있다.

'98년과 '99년을 비교해보면, '98년에 비해 최하위 계층에서 노인가 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근로자가구 중 하위 5% 이하와 5~ 10%의 가구를 보면 '98년에 비해 모자가구의 비율이 각각 3.1%와 4.6%로 높아져 모자가구의 경제사정이 경제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Ⅱ-4〉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類型 分布의 變化 (단위: %)

	구분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l·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干七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가구유형	전	근로자										
도	\\\\\\\\\\\\\\\\\\\\\\\\\\\\\\\\\\\\\\	가구											
	노인가구	7.5	1.4	4.2	2.9	3.6	1.6	3.1	0.9	2.5	0.8	2.4	1.0
'98	모자가구	3.1	2.5	2.8	2.5	2.4	2.3	2.6	1.4	2.4	1.7	3.1	1.4
90	맞벌이	11.6	13.3	15.2	14.8	17.5	15.8	19.2	21.4	22.1	24.5	24.1	37.1
	일반가구	77.8	82.8	77.9	79.8	76.5	80.2	75.1	76.3	73.0	73.0	70.4	60.5
	노인가구	11.2	1.5	6.1	1.8	4.1	1.6	3.5	0.9	2.6	0.5	2.9	0.9
,99	모자가구	2.5	3.1	4.1	4.6	2.5	2.3	2.6	2.1	2.8	1.6	3.1	1.2
99	맞벌이	11.3	12.3	15.3	18.5	18.0	16.3	20.4	20.3	21.2	25.0	23.6	36.4
	일반가구	74.9	83.1	74.4	75.1	75.5	79.8	73.4	76.8	73.4	72.8	70.4	61.5

## 5) 世代構成

세대구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부모 및 자식의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세대의 가구는 상위 50% 이상의 가구에서 그 비율이 현저히 크지만, 반면 하위 5% 및 10% 이하에서도 중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1세대 가구가 상 당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98년과 '99년을 비교해보면, 전 가구 중 하위 5% 이하의 계층에 1 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노 인가구의 빈곤화 현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表 Ⅱ-5〉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世代構成 分布의 變化 (단위: %)

	그님	소비	]·소득	소비	·소득								
	구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도	세대구성	전 가구	근로자										
	1세대	11.8	9.2	10.5	7.9	8.7	6.6	9.2	6.1	10.6	7.9	18.5	21.1
	2세대	53.1	62.0	56.0	60.0	59.4	64.4	60.3	68.0	62.7	68.7	59.6	59.9
'98	기타 2세대	17.3	13.5	16.7	15.2	16.8	14.6	15.6	13.5	14.7	13.9	14.2	11.5
	3세대	17.5	14.9	16.2	16.6	14.7	14.1	14.5	12.3	11.8	9.2	7.5	7.5
	4세대 이상	0.4	0.4	0.6	0.3	0.4	0.3	0.4	0.1	0.2	0.2	0.1	0.0
	1세대	13.3	7.6	10.8	8.5	8.9	5.5	9.8	6.5	10.1	8.3	18.1	19.8
	2세대	48.5	59.0	54.3	56.7	56.8	60.1	59.8	66.2	61.1	67.6	58.7	60.1
'99	기타 2세대	19.0	18.3	19.1	20.8	19.2	18.8	17.5	15.5	17.3	14.0	15.7	13.0
	3세대	18.6	14.6	15.4	13.7	14.5	15.5	12.0	11.6	11.0	9.8	7.4	7.0
	4세대 이상	0.5	0.4	0.4	0.3	0.5	0.1	0.9	0.2	0.5	0.3	0.1	0.1

註: 기타 2세대가구는 부모와 자식의 2세대 가구를 제외한 2세대 가구임.

## 나. 就業關聯 特性

## 1) 家口別 就業人員數

가구별 취업인원수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볼 때, 전 가구에 있어서 취업인원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경제위기 전후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이러한 증가추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가구별 취업인원수를 보면, 취업인원이 없거나 1명인 가구의 비율은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 득원이 없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취업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구내 소득원의 존재가 가구의 소득계층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전후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 취업인원이 없는 가구가 하위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 한, 취업인원이 1명도 없지만, 상위 50% 이상의 계층에 포함되는 비율도 '97년 5.8%에서 '99년 9.1%로 경제위기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취업인원수가 1명 또는 2명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에 속해있는 가구의 비율이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5% 이하의 극빈층만 보더라도 '99년에전 가구의 약 68%가 취업인이 있고, 특히 21.6%는 2명 이상의 소득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에 속하고 있어, 이른바 근로 빈곤계층 (working poor)의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취업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로서 취업인원이 전혀 없으면서도 상위 50% 이상의 계층에 속해있는 계층의 비율이 약 1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96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소득 등 비근로소득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구의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비근로소득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Ⅱ-6〉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別 就業人員 分布의 變化

(단위: %)

												( -	- 11. 70,
	713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구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취업	전	7 2 7	전	7 2 7	전	7 2 7	전	7 2 7	전	7 2 7	전	7 2 7
도	인원	가구	근로자										
	0명	16.0	0.0	8.5	0.0	7.1	0.0	5.9	0.0	4.6	0.0	6.5	0.0
'96	1명	52.2	82.1	55.8	74.8	52.5	69.9	51.3	67.3	48.5	57.1	45.2	42.7
	2명	27.0	17.4	30.3	23.0	33.3	27.0	34.4	28.2	37.6	34.9	39.6	45.1
	0명	18.7	0.0	11.4	0.0	7.7	0.0	5.9	0.0	5.1	0.0	5.8	0.0
'97	1명	49.5	79.4	50.9	76.6	51.6	73.2	49.6	65.8	48.0	56.3	45.0	41.6
	2명	27.4	19.7	31.6	21.5	33.8	23.3	35.9	29.4	37.6	35.5	40.4	46.1
	0명	27.7	0.0	15.8	0.0	11.5	0.0	10.3	0.0	8.9	0.0	8.2	0.0
'98	1명	48.0	81.5	52.4	77.3	52.3	74.4	50.7	67.1	49.0	63.2	49.8	50.2
	2명	20.9	16.5	26.5	20.4	30.1	22.3	33.4	27.4	34.4	31.6	36.1	41.6
	0명	28.3	0.0	18.8	0.0	13.2	0.0	10.6	0.0	9.1	0.0	9.1	0.0
'99	1명	46.8	80.8	48.9	74.7	49.0	73.2	49.1	68.0	49.6	62.8	49.1	49.4
	2명	21.6	17.9	26.7	22.8	30.9	21.8	32.8	26.5	33.8	30.2	35.4	42.5

註: 점유비율이 100%에서 부족한 부분은 취업인수 3인 이상인 경우임.

# 2) 家口主 從事産業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구주의 제조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 도소매업 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교육, 행정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분포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도시 전 가구에 있어서 실업 및 기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하위 5% 이하의 계층에서 이 비율은 '96년의 17%에서 경제위기 이후 32.6%까지 증가되고 있다. 반대로 5% 이하 계층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의 비율은 경제위기 직후인 '98년부터 급격하게 낮아져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위의 실업 및 기타 부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Ⅱ-7〉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從事産業 分布의 變化

	 구분		이하	5~	10%	100	-20%	20.0	-30%	20.0	-50%	5007	이상
- 연	가군 가구주	- 3% 전	근로	전	10% 근로	10··	20%	<u>20</u> 전	30%	- 30··· 전	30%	<u>30%</u> 전	91.9
년 <u>도</u>	산업	가구	자	가구	자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A	0.4	0.6	0.2	0.6	0.1	0.2	0.2	0.3	0.1	0.2	0.1	0.1
	В	0.1	0.5	0.3	0.4	0.2	0.3	0.1	0.2	0.1	0.4	0.1	0.1
	C	0.4	0.2	0.1	0.1	0.3	0.1	0.2	0.2	0.1	0.1	0.1	0.1
	D	23.7	26.8	28.1	26.1	26.4	30.3	25.5	33.3	26.6	34.0	22.8	30.5
	Е	0.0	0.1	0.2	0.5	0.3	0.4	0.4	0.6	0.3	0.6	0.8	1.3
	F	19.5	32.3	15.8	23.1	14.7	19.1	14.1	15.4	13.9	14.7	12.1	12.8
	G	16.6	7.9	16.5	12.2	17.4	10.8	17.7	12.1	16.7	11.3	18.0	9.3
	Н	2.9	5.5	3.7	3.5	3.9	4.8	4.5	4.8	4.4	3.8	4.0	3.3
'96	I	8.0	8.2	8.8	13.0	9.1	11.7	8.8	8.8	10.0	8.5	7.9	7.5
90	J	0.8	2.5	1.5	3.0	2.1	2.6	2.1	3.0	2.6	2.5	4.3	6.1
	K	3.2	4.2	5.3	4.6	5.7	7.8	6.3	7.6	6.3	8.3	6.4	7.0
	L	1.8	1.1	2.7	3.3	3.8	4.1	4.1	5.3	4.5	7.0	4.3	8.1
	M	1.1	2.9	2.7	2.9	3.0	2.3	3.1	3.8	3.3	3.8	5.9	8.9
	N	0.8	2.1	1.1	2.4	1.1	1.8	0.7	1.3	1.1	1.2	0.8	1.0
	0	3.1	3.4	2.7	2.2	3.2	2.6	4.4	2.7	3.9	2.6	4.0	3.0
	P	0.4	1.8	0.9	2.0	0.5	1.0	0.7	0.5	0.4	0.6	0.4	0.5
	Q	0.1	0.0	0.1	0.0	0.1	0.0	0.1	0.2	0.0	0.2	0.2	0.4
	R	17.0	0.1	9.4	0.0	8.2	0.1	6.9	0.1	5.6	0.0	7.6	0.1
	Α	0.2	0.8	0.1	0.6	0.3	0.3	0.3	0.3	0.2	0.4	0.1	0.1
	В	0.2	0.6	0.1	0.2	0.1	0.3	0.1	0.2	0.1	0.1	0.1	0.1
	С	0.1	0.3	0.3	0.2	0.3	0.2	0.2	0.1	0.1	0.1	0.0	0.0
	D	24.0	27.9	25.3	30.4	27.7	31.0	25.4	33.9	25.2	30.9	22.0	29.0
	Е	0.2	0.2	0.2	0.3	0.2	0.3	0.3	0.3	0.5	0.6	0.6	1.2
	F	14.7	29.4	14.1	21.3	13.6	17.3	13.9	16.5	13.0	14.0	11.0	11.6
	G	16.4	9.9	18.6	11.8	16.4	12.3	17.9	11.1	17.7	11.7	17.4	9.0
	H	4.0	6.2	4.2	6.0	4.1	5.8	5.5	3.3	4.7	5.1	4.8	3.9
'97	I	6.4	8.0	8.9	10.2	9.6	9.0	10.1	8.8	9.4	9.9	7.9	7.1
71	J	1.4	1.6	1.9	1.8	2.0	3.8	1.6	3.5	2.4	3.3	3.9	5.4
	K	4.5	5.2	4.5	7.7	5.1	7.4	6.0	9.1	7.2	7.6	7.5	9.2
	L	1.9	1.6	2.7	3.6	3.3	4.3	3.7	5.0	4.7	7.2	5.1	9.2
	M	1.5	0.9	1.9	1.6	2.5	2.4	2.9	3.1	2.7	4.2	5.9	9.2
	N	0.6	0.7	0.7	1.2	0.9	1.2	0.8	1.5	0.9	1.6	1.0	1.1
	0	2.6	4.3	3.3	2.2	3.8	3.3	3.4	2.7	4.2	2.8	4.5	3.0
	P	0.9	2.3	0.4	0.9	0.5	0.9	0.7	0.5	0.4	0.5	0.2	0.3
	Q	0.0	0.1	0.1	0.0	0.0	0.0	0.0	0.2	0.1	0.1	0.2	0.3
	R	20.5	0.3	12.7	0.1	9.4	0.0	7.1	0.0	6.6	0.0	7.6	0.0

〈表 Ⅱ-7〉 계속

	구분	50/	시쉬	<b>5</b> _ 1	007	10	2007	20	2007	20	5007	5007	<u></u> 이상
	, -		이하 「	5~1		10~		20~		30~			
연	가구주	전	근로	전	근로	전	근로	전	근로	전	근로	전	근로
도	산업	가구	자	가구	자	가구	자	가구	자	가구	자	가구	자
	A	0.2	0.8	0.4	1.2	0.5	0.6	0.3	0.7	0.2	0.3	0.2	0.3
	В	0.2	0.2	0.1	0.4	0.1	0.2	0.1	0.2	0.1	0.2	0.0	0.0
	C	0.1	0.2	0.2	0.2	0.1	0.2	0.1	0.1	0.1	0.2	0.1	0.2
	D	17.6	27.5	22.4	26.9	22.8	29.3	23.0	33.1	24.0	31.1	18.8	24.5
	Е	0.1	0.1	0.2	0.2	0.1	0.2	0.2	0.2	0.3	0.5	0.5	0.8
	F	12.0	32.8	12.2	19.1	12.1	18.0	12.3	16.1	11.8	14.5	10.0	10.5
	G	13.2	9.7	15.4	9.3	17.0	11.1	16.8	12.7	17.2	13.3	18.7	10.0
	Н	4.8	4.7	5.4	6.0	4.9	3.8	4.1	3.8	3.8	3.9	2.9	2.4
'98	I	5.0	7.2	8.4	10.9	9.1	13.1	9.5	11.6	9.6	11.3	8.7	9.8
90	J	1.7	2.1	1.6	2.2	1.6	2.8	1.9	2.2	2.9	3.3	4.2	6.0
	K	5.1	3.6	4.7	10.8	6.0	9.6	5.6	7.8	6.6	6.6	7.1	8.5
	L	1.5	2.2	2.0	3.4	3.1	3.5	3.9	4.1	4.2	6.8	5.5	10.9
	M	1.4	1.2	1.5	2.1	2.1	2.0	1.7	2.8	2.6	3.0	5.7	9.2
	N	0.3	0.7	0.2	1.1	0.3	1.0	0.7	0.5	0.7	1.6	1.9	2.0
	0	4.1	4.6	4.9	4.8	4.5	4.3	5.0	3.6	4.1	3.1	4.4	4.0
	P	0.6	2.4	0.6	1.6	0.6	0.3	0.5	0.6	0.3	0.3	0.1	0.2
	Q	0.0	0.0	0.1	0.0	0.0	0.0	0.0	0.1	0.1	0.0	0.3	0.6
	R	32.2	0.0	19.8	0.0	14.9	0.0	14.2	0.0	11.6	0.0	10.8	0.0
	A	1.0	0.8	0.3	1.5	0.2	0.5	0.1	0.2	0.2	0.2	0.2	0.3
	В	0.2	0.3	0.0	0.3	0.2	0.5	0.1	0.2	0.1	0.1	0.1	0.1
	C	0.0	0.2	0.0	0.2	0.1	0.1	0.2	0.1	0.1	0.3	0.1	0.2
	D	14.7	25.3	19.9	26.3	21.6	27.9	23.8	30.9	23.3	31.3	20.4	27.8
	Е	0.0	0.0	0.0	0.1	0.2	0.3	0.1	0.1	0.2	0.3	0.4	0.8
	F	10.7	25.8	8.6	19.7	10.5	15.7	10.3	14.2	10.0	12.7	8.4	8.9
	G	12.1	9.7	16.8	10.7	17.7	13.8	17.0	13.0	16.9	11.2	18.1	9.8
	Н	5.9	6.5	5.8	5.8	5.1	5.3	4.3	5.7	4.8	4.4	3.4	2.9
<b>'99</b>	I	5.3	7.8	6.6	10.3	8.4	10.9	9.8	11.1	9.8	11.6	8.7	9.7
99	J	0.8	0.4	1.5	1.2	1.4	1.0	2.3	1.7	2.4	2.5	4.0	5.9
	K	5.9	8.3	5.5	7.5	6.7	10.6	6.9	9.9	7.3	8.5	7.6	9.2
	L	3.5	6.3	3.5	6.6	3.3	5.6	3.7	5.0	4.6	7.4	5.4	10.3
	M	1.1	1.5	1.8	2.6	1.8	2.2	1.9	3.0	2.6	3.6	5.6	9.0
	N	0.1	0.3	0.3	1.1	0.6	1.6	0.8	1.1	1.3	1.8	1.8	2.2
	0	4.5	4.7	5.2	4.8	5.0	3.6	3.7	3.0	3.5	3.3	3.6	2.5
	P	1.4	2.0	1.0	1.3	0.5	0.4	0.8	0.7	0.5	0.6	0.2	0.2
	Q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0.3	0.6
	R	32.6	0.0	23.1	0.0	16.8	0.0	14.0	0.0	12.3	0.0	11.9	0.0
⊒+. A	. 노리어		101	C. 71.0					, , ヘー	61 E.	7) 23 63	- C -	- 스페스

註: A: 농림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수도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음식/숙박업, I: 운수/통신/창고업, J: 금융/보험업, 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L: 행정 및 국방 M: 교육, N: 보건 및 복지, O: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P: 자영업, Q: 전국적 조직 및 단체, R: 실업 및 직업분류 불능

# 3) 家口主 職業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계층별 분포의 차이가 종사산업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전문가, 준전문가, 그리고 관리자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혹은 기능직, 조작원 등은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유형이 계층구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96년부터 '99년까지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직업유형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 5%에 속하는 계층 가운데 행상 및 단순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96년 7.6%에서 '99년 16.3%로 2배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 직업의 분포는 <表 Ⅱ-8>13)과 같다.

<sup>13) &</sup>lt;表 Ⅱ-8>의 직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11: 입법가 및 입법 공무원, 12: 법인관리자, 13: 일반관리자,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23: 교육전문가, 24: 기타 전문가, 31: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33: 교육 준전문가, 34: 기타 준전문가, 41: 일반사무직, 42: 고객 봉사 사무직,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62: 농어업 보조근로자, 7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3: 정밀, 수공업, 인쇄 및 관련 기능자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자,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82: 기계조 작원 및 조립원,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92: 농림어업 관련노무자,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노무자

〈表 Ⅱ-8〉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家口主 職業 分布의 變化 (단위: %)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u></u> 소비·	소득
	구분		이하	5~		l	20%	20~		30~			이상
연	가구주	전	근로	전	근로								
도	직업	가구	자	가구	자								
	11	0.0	0.0	0.0	0.1	0.0	0.1	0.0	0.0	0.0	0.1	0.2	0.2
	12	0.3	0.1	0.3	0.1	0.3	0.0	0.4	0.4	0.4	0.4	1.9	1.4
	13	1.6	0.3	1.4	0.3	1.8	0.9	2.5	0.8	2.8	1.6	6.1	2.3
	21	0.4	0.5	0.9	0.9	1.3	1.9	1.5	2.6	2.1	3.1	2.7	3.7
	22	0.0	0.3	0.2	0.1	0.2	0.1	0.1	0.2	0.3	0.3	0.8	0.7
	23	0.3	0.7	1.0	0.5	1.0	0.6	1.1	1.3	1.7	2.0	4.2	6.5
	24	0.1	0.4	0.2	0.5	0.4	0.4	0.5	0.4	0.4	0.6	1.3	1.2
	31	0.7	0.6	1.5	1.5	1.3	1.3	1.8	1.6	2.3	2.2	2.1	3.5
	32	0.3	0.1	0.1	0.2	0.1	0.1	0.1	0.0	0.1	0.2	0.2	0.1
	33	0.3	0.4	0.6	0.8	0.6	0.3	1.0	0.6	0.8	0.4	0.9	0.7
	34	4.6	3.0	5.4	3.6	6.9	5.6	7.8	6.9	9.2	11.4	12.3	15.2
	41	4.9	5.3	5.8	7.4	8.7	12.2	9.7	15.4	9.8	15.4	10.8	16.0
	42	1.9	2.3	1.5	2.0	1.4	1.6	1.6	1.6	1.7	2.4	1.8	2.5
'96	51	6.0	9.7	6.0	5.1	7.1	7.0	7.9	6.4	7.2	4.8	6.7	5.0
	52	12.1	3.4	11.5	6.2	10.9	3.7	10.9	4.5	10.3	2.9	10.5	1.7
	61	0.2	0.8	0.3	0.5	0.2	0.2	0.1	0.3	0.1	0.4	0.1	0.1
	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1	13.5	19.4	11.1	13.4	10.0	11.6	8.6	8.6	8.9	8.9	7.0	6.9
	72	10.5	8.7	10.8	7.8	8.6	9.3	8.7	11.1	8.5	10.0	6.5	7.3
	73	3.0	1.1	2.8	1.1	2.6	2.1	2.2	1.6	1.6	1.2	1.2	1.1
	74	5.4	6.8	6.8	6.0	6.1	5.3	5.0	4.4	4.4	4.5	3.3	2.8
	81	1.2	0.7	1.2	1.2	1.4	1.0	1.1	1.7	1.2	1.9	1.1	1.9
	82	5.1	5.4	5.4	4.3	5.6	5.1	5.5	6.4	5.9	6.3	3.7	4.9
	83	11.5	8.7	11.4	15.2	10.4	13.6	10.6	10.4	11.0	9.0	8.0	5.7
	91	7.6	9.4	9.3	12.0	9.0	10.4	7.7	8.1	6.5	7.1	4.9	6.4
	92	0.5	0.4	0.1	0.5	0.0	0.1	0.1	0.1	0.0	0.0	0.0	0.0
	93	8.1	11.7	4.4	9.0	4.0	5.4	3.4	4.5	2.7	3.1	1.5	2.3

〈表 Ⅱ-8〉 계속

	友 川一		게속										
	구분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이하		10%		-20%		-30%		-50%		이상
연 도	가구주 직업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 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11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2
	12	0.1	0.0	0.0	0.1	0.2	0.2	0.1	0.3	0.4	0.2	1.5	1.1
	13	1.0	0.1	0.8	0.3	1.2	0.8	1.8	0.6	2.6	0.9	5.2	1.5
	21	0.5	0.4	0.7	1.5	1.2	1.7	1.4	2.5	2.5	2.4	2.6	3.8
	22	0.0	0.0	0.1	0.1	0.2	0.0	0.2	0.1	0.2	0.3	0.9	0.7
	23	0.7	0.1	0.8	0.4	1.1	0.4	0.9	1.0	1.5	2.1	4.2	6.6
	24	0.2	0.5	0.3	0.6	0.6	0.1	0.4	0.5	0.5	0.6	1.3	1.4
	31	1.3	0.9	1.4	0.6	2.1	2.1	1.9	2.6	2.3	2.7	2.4	3.8
	32	0.3	0.0	0.0	0.2	0.2	0.1	0.2	0.1	0.3	0.3	0.2	0.2
	33	0.7	0.0	0.6	0.4	0.6	0.7	0.9	0.9	0.5	0.5	0.8	0.8
	34	4.8	4.9	5.8	4.1	7.0	6.8	8.3	8.0	9.3	10.7	12.8	15.1
	41	3.7	3.5	6.2	6.4	7.5	11.8	8.0	13.9	9.3	14.9	10.3	14.9
	42	1.4	2.9	1.5	3.4	1.9	2.5	1.3	1.9	1.8	1.9	1.8	2.5
'97	51	7.3	9.4	6.5	7.3	7.0	7.7	8.5	4.5	8.0	6.5	7.8	5.5
	52	12.4	2.8	13.2	3.3	10.0	3.8	10.5	2.8	10.6	3.4	9.9	1.5
	61	0.4	0.9	0.2	0.3	0.3	0.4	0.2	0.2	0.1	0.1	0.1	0.1
	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1	11.1	17.8	9.0	13.3	9.4	10.7	9.7	10.7	9.0	8.8	6.7	7.0
	72	10.1	8.0	10.1	7.6	9.0	8.1	8.5	10.4	8.3	8.5	6.6	8.0
	73	3.3	0.9	3.4	1.5	1.9	2.7	1.9	2.0	1.7	1.3	1.1	1.0
	74	5.9	7.9	5.2	5.1	6.0	4.5	5.8	4.7	5.0	4.6	3.4	2.8
	81	1.6	2.1	1.7	2.8	1.9	1.8	1.8	2.6	1.2	1.8	1.1	1.8
	82	6.9	5.0	6.6	7.1	6.9	5.7	6.1	7.9	5.4	6.4	4.5	5.7
	83	9.3	9.7	12.0	14.8	11.4	12.4	11.8	8.8	10.8	10.3	8.2	5.1
	91	9.4	10.6	8.5	11.2	8.0	8.0	6.6	9.3	6.3	7.5	5.2	6.7
	92	0.0	0.4	0.1	0.3	0.1	0.0	0.1	0.1	0.0	0.1	0.0	0.0
	93	7.9	11.5	5.1	7.6	4.2	6.7	3.1	3.7	2.4	3.2	1.3	1.9

〈表 Ⅱ-8〉 계속

\3	友 川一	5/ /	11 十										
	구분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丁七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도	가구주 직업	전 가구	근로자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12	0.0	0.0	0.0	0.0	0.1	0.0	0.1	0.0	0.2	0.1	2.0	1.1
	13	0.9	0.5	1.4	0.8	2.0	0.5	2.2	0.9	2.4	1.0	5.7	2.1
	21	0.3	0.4	0.4	0.2	0.8	0.6	1.4	1.7	1.7	2.6	3.3	4.4
	22	0.0	0.0	0.5	0.1	0.3	0.1	0.3	0.0	0.2	0.2	1.5	1.0
	23	0.2	0.2	0.4	0.1	0.4	0.2	0.5	0.6	1.3	1.2	4.3	6.7
	24	1.9	1.7	0.9	1.0	0.8	0.9	0.6	1.3	0.7	0.7	1.8	2.2
	31	0.9	1.2	1.7	1.5	1.6	1.1	2.0	1.7	2.1	2.0	2.1	3.3
	32	0.0	0.0	0.0	0.0	0.1	0.0	0.1	0.1	0.2	0.2	0.3	0.2
	33	0.4	0.8	0.7	0.5	1.1	1.2	1.0	0.7	1.0	0.9	0.9	0.9
	34	4.5	3.4	4.7	3.0	7.4	5.8	8.1	8.6	10.0	11.1	12.6	15.4
	41	5.2	4.8	5.9	5.6	6.9	12.9	9.3	12.9	9.5	16.2	11.0	16.4
	42	1.2	0.6	1.8	2.0	1.2	2.3	1.2	1.2	1.8	2.2	1.9	2.8
'98	51	10.1	7.8	8.9	9.1	8.9	5.9	9.1	5.2	8.2	6.3	7.1	6.0
	52	8.6	1.5	9.3	3.2	10.2	2.1	9.4	3.1	9.9	2.8	10.3	1.9
	61	0.3	0.3	0.2	0.4	0.1	0.2	0.1	0.1	0.1	0.1	0.1	0.2
	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1	11.0	19.5	9.6	12.6	9.5	11.3	8.7	9.4	7.9	7.8	4.9	4.7
	72	9.4	8.1	8.9	9.8	8.6	9.0	8.4	9.7	7.8	9.9	6.5	6.4
	73	1.9	1.7	1.5	1.2	1.7	1.0	1.8	1.4	1.6	1.2	0.6	0.4
	74	5.7	6.0	5.8	5.2	5.3	5.0	5.0	4.4	4.8	3.5	3.0	2.0
	81	0.8	1.5	0.4	0.8	0.8	1.1	0.7	1.7	1.2	1.2	0.9	1.5
	82	8.7	7.5	9.8	7.7	7.9	9.5	6.9	9.4	7.1	7.7	4.2	5.2
	83	8.9	9.1	11.9	11.9	11.4	12.4	11.9	11.4	10.5	10.6	7.8	7.1
	91	12.8	11.8	10.5	16.4	9.1	11.0	7.8	9.9	7.3	6.9	5.8	6.1
	92	0.4	0.8	0.3	0.8	0.5	0.4	0.4	0.6	0.2	0.5	0.1	0.1
	93	5.8	11.0	4.5	6.5	3.2	5.4	3.1	4.0	2.4	3.1	1.3	1.7

〈表 Ⅱ-8〉 계속

\ <del>-</del>	表Ⅱ⁻	8> -	계쪽										
	구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득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전	근로자										
도	직업	가구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	0.1	0.0	0.1	0.0	0.1	0.1	0.1	0.2	0.2	0.2	2.0	1.0
	13	0.8	0.4	1.2	0.4	1.2	0.7	2.1	0.7	2.6	1.2	5.4	1.7
	21	0.9	0.5	0.7	0.0	0.7	0.3	1.3	1.7	1.7	2.7	2.6	3.5
	22	0.0	0.1	0.4	0.1	0.2	0.1	0.2	0.1	0.3	0.2	1.2	0.8
	23	0.0	0.1	0.2	0.1	0.3	0.1	0.7	0.9	1.3	1.3	4.1	6.5
	24	0.6	1.5	0.7	1.5	0.7	0.7	0.8	0.7	0.7	0.7	1.7	1.6
	31	0.4	1.7	1.0	1.6	2.3	1.4	2.6	3.0	2.9	4.1	2.8	4.0
	32	0.0	0.0	0.1	0.0	0.1	0.1	0.2	0.1	0.4	0.4	0.3	0.3
	33	0.5	0.2	0.5	0.7	0.9	1.5	0.6	1.2	1.1	1.2	1.2	0.9
	34	3.9	4.4	5.6	4.0	6.8	5.2	9.2	7.2	10.8	11.8	15.9	19.2
	41	2.9	2.5	4.4	5.5	5.0	9.7	6.6	9.2	7.5	12.5	9.1	13.7
	42	1.0	1.1	1.4	1.6	1.3	1.8	1.3	1.5	1.2	1.3	1.6	2.5
'99	51	14.3	9.5	12.1	8.6	10.3	7.2	9.0	7.1	9.3	6.7	7.3	5.8
	52	9.1	3.9	9.9	4.0	10.5	2.9	10.2	3.1	9.1	2.5	9.5	1.6
	61	0.3	0.3	0.0	0.3	0.2	0.1	0.2	0.1	0.1	0.1	0.0	0.2
	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1	9.7	16.0	8.0	12.4	8.2	11.2	7.3	8.6	6.8	6.7	4.7	5.0
	72	7.6	5.9	8.5	7.2	9.3	10.1	7.8	10.3	7.9	9.1	6.1	6.3
	73	1.8	2.7	1.7	1.8	2.3	1.5	1.6	1.7	1.3	1.2	0.6	0.6
	74	6.8	7.9	8.1	5.4	5.6	6.6	4.9	5.5	5.4	3.9	3.0	2.4
	81	0.8	0.7	0.5	0.9	0.6	1.9	0.9	1.7	1.3	1.6	1.1	1.5
	82	5.7	6.1	6.5	6.8	7.9	7.6	7.5	8.1	7.1	7.7	4.9	6.3
	83	8.7	8.0	10.0	12.1	10.6	10.1	12.0	12.3	10.3	9.6	7.5	6.6
	91	16.3	14.8	13.5	14.0	10.9	13.6	9.7	10.8	8.2	9.6	6.0	6.1
	92	1.6	1.1	0.5	2.0	0.6	0.6	0.2	0.5	0.2	0.4	0.2	0.2
	93	6.1	10.6	4.4	8.9	3.1	4.9	3.2	3.7	2.3	3.3	1.4	1.8

#### 다. 住居關聯 特性

# 1) 住宅所有與否

주택소유여부를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 10%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무주택가구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상위 50%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주택소유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택소유여부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8년과 '99년을 비교해보면, 전 가구 중에서는 하위 5% 이하의 계층에서만 주택소유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근로자가구에 있어서는 하위 30%를 기준으로 그 이하 계층에서는 주택소유 비율이 낮아졌으며, 그 이상의 계층에서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Ⅱ-9〉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住宅所有與否의 變化

(단위: %)

구분		·소득 이하		·소득 10%		·소득 ·20%		·소득 ·30%		·소득 ·50%	,	·소득 이상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소유('98)	45.2	39.5	47.5	41.6	51.3	48.7	53.8	52.6	57.7	55.5	66.8	63.5
소유('99)	44.6	39.1	47.9	39.4	51.6	48.0	54.7	51.2	60.1	56.8	67.8	65.4

## 2) 居住住宅 形態

거주주택의 형태 역시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위 50% 이상의 계층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산가치에서 볼 때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높 다는 점과 최근의 아파트 규모의 대형화와 고급화 등을 감안할 때, 상위 계층의 점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表 Ⅱ-10〉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居住住宅 形態의 變化 (단위: %)

	713	소비	·소득										
	구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거주주택	전	근로자	전	근로								
도	기구구력	가구	근도사	가구	モ모자	가구	근도사	가구	근도사	가구	근도사	가구	자
	단독주택	69.1	69.3	66.6	66.8	62.0	58.4	57.7	54.3	53.8	50.7	45.0	44.8
,98	아파트	13.0	15.2	16.1	16.2	20.4	26.3	23.6	26.7	27.5	30.8	39.6	41.0
90	연립주택	16.5	14.8	15.7	15.7	16.3	14.8	17.4	18.4	16.7	17.4	13.8	13.6
	기타	1.4	0.8	1.6	1.3	1.3	0.5	1.4	0.5	1.9	1.0	1.6	0.7
	단독주택	67.1	70.1	65.7	68.6	61.0	61.0	56.0	55.3	52.2	49.8	44.6	41.7
,99	아파트	15.5	14.7	15.2	16.6	19.6	22.0	24.4	23.8	28.6	31.5	40.0	42.9
99	연립주택	15.9	14.7	18.1	13.8	17.8	15.9	17.9	19.9	17.4	17.3	13.5	14.6
	기타	1.5	0.4	1.0	1.0	1.7	1.1	1.6	0.9	1.8	1.4	1.8	0.9

# 3) 住居 占有形態

전반적인 분포를 보면, 자가와 전세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자가의 비중이, 하위 계층일수록 전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월세(보증부 포함) 및 사글세 의 비율이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율은 경제 위기 이후 더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상위 50% 이상의 계층에 있어 자 가의 비율은 점차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위 10% 이하의 계층에서는 '97년을 기점으로 자가의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表 II-11〉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住居占有形態 分布의 變化 (단위: %)

	구분		·소득		l·소득		l·소득		·소득		·소득		·소득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 도	점유형태	전 가구	근로자										
	자가	44.9	35.9	41.3	33.7	43.4	37.9	43.8	41.5	46.4	47.3	55.2	49.8
	무상주택	1.7	2.0	2.7	2.8	2.1	2.4	1.6	1.2	1.2	1.3	1.0	0.8
	사택	0.8	0.2	1.2	1.1	1.1	1.2	1.5	2.3	1.6	1.5	1.1	2.4
'96	전세	37.6	30.1	38.4	38.5	36.9	41.1	36.6	39.8	34.8	36.7	29.1	36.1
	보증부월세	11.8	25.4	13.3	20.1	13.7	14.9	13.9	12.3	13.5	11.3	11.6	9.4
	사글세	1.3	2.7	1.8	2.8	1.7	1.8	1.8	1.8	1.8	1.3	1.6	1.1
	월세	1.9	3.7	1.2	1.1	1.2	0.8	0.8	1.2	0.8	0.6	0.4	0.4
	자가	42.9	38.5	45.2	40.4	45.4	38.9	45.2	42.6	47.2	45.1	55.2	51.3
	무상주택	3.1	3.2	2.3	2.8	2.3	2.0	1.7	1.4	1.5	1.6	1.1	1.1
	사택	0.6	0.3	0.8	0.6	1.3	1.3	1.3	1.3	1.8	1.8	1.1	2.7
'97	전세	41.2	36.3	37.0	33.6	36.3	39.2	36.8	39.8	35.0	38.6	29.8	35.8
	보증부월세	10.3	17.4	12.9	18.0	12.5	16.1	12.5	13.4	12.4	11.2	11.0	7.8
	사글세	1.0	3.0	1.3	3.0	1.4	1.9	1.6	1.1	1.5	1.3	1.6	1.2
	월세	0.9	1.3	0.5	1.7	0.9	0.6	0.8	0.4	0.7	0.4	0.3	0.3
	자가	40.1	34.1	42.3	38.5	45.0	44.6	47.5	46.2	50.2	46.6	57.7	52.9
	무상주택	1.9	2.3	2.5	2.3	2.2	1.7	1.5	1.6	1.4	1.3	1.1	0.9
	사택	0.4	0.7	0.9	0.8	1.0	1.3	0.9	1.4	0.9	1.4	0.6	1.2
'98	전세	43.8	40.1	40.8	41.4	38.3	39.6	37.6	38.9	35.2	40.0	30.9	37.5
	보증부월세	11.1	17.2	10.4	13.2	11.1	9.9	10.4	9.9	10.3	9.4	8.4	6.4
	사글세	1.6	3.6	1.6	2.6	1.8	1.5	1.4	1.4	1.3	0.9	1.0	0.6
	월세	1.0	2.2	1.4	1.1	0.6	1.3	0.7	0.5	0.7	0.5	0.4	0.3
	자가	40.0	34.2	42.2	34.6	44.9	42.0	46.7	44.0	51.5	47.4	58.5	53.9
	무상주택	3.7	4.6	3.1	2.4	2.0	2.3	1.9	2.2	1.8	1.9	1.4	1.0
	사택	0.4	0.4	0.8	1.7	1.1	1.3	0.9	1.0	0.6	1.2	0.7	1.4
'99	전세	40.1	35.6	38.8	39.9	38.2	39.8	37.6	39.0	34.0	39.6	30.7	36.7
	보증부월세	11.8	17.1	11.5	16.1	11.2	11.3	10.2	10.8	9.9	8.3	7.2	6.1
	사글세	1.4	3.6	1.7	2.6	1.3	1.7	1.3	1.1	1.1	0.8	1.0	0.6
	월세	2.6	4.5	1.8	2.7	1.4	1.5	1.4	1.9	1.1	0.9	0.6	0.3

# 4) 傳貰, 保證金 및 月貰額

소득계층별 전세 및 보증금 규모는 아래 <表 Ⅱ-12>와 같다.

〈表 Ⅱ-12〉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傳貰 및 保證金 分布의 變化

(단위<u>: %)</u>

전체 및 전체 및 보증급(만원) 가구 으로자 전 기계													(단	위: % <u>)</u>
변화 보증급(만원) 기구 (도로사 기구) (도로사 기		구 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300~500   6.4   8.2   5.7   7.8   5.4   4.2   7.0   3.9   5.4   4.0   4.1   3.9	연도		_	근로자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300 이하	13.9	24.3	12.2	19.1	13.3	12.9	11.6	11.3	12.2	10.0	10.8	8.8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300~500	6.4	8.2	5.7	7.8	5.4	4.2	7.0	3.9	5.4	4.0	4.1	3.9
1,000~1,200   4.7   3.2   5.3   3.0   5.2   4.1   3.1   5.4   3.5   3.3   1.9   3.1		500~700	7.3	8.3	5.3	7.5	4.1	4.0	3.8	3.9	2.7	3.3	2.2	1.6
1,200~1,500   13.1   10.4   13.1   9.2   10.8   10.6   10.9   11.6   8.8   10.1   9.1   7.9     1,500~2,000   15.9   16.2   16.2   12.8   14.0   16.9   15.0   15.8   15.5   16.6   13.0   15.8     2,000~2,500   12.8   7.8   14.8   12.1   15.5   15.0   14.3   14.2   13.8   12.9   11.4   12.3     2,500~3,000   6.7   5.4   6.9   7.5   11.0   9.5   11.1   8.3   10.3   11.5   12.8   13.2     3,000~3,500   2.3   4.0   4.3   6.1   4.8   5.1   6.8   5.4   7.2   7.2   7.2   7.2   8.6     3,500~4,000   1.6   0.5   2.3   0.6   2.4   2.4   3.5   4.0   4.9   4.3   5.8   6.2     4,000~4,500   0.3   1.1   0.9   2.0   1.0   2.5   2.4   2.7   2.8   2.6   3.8   3.5     4,500~5,000   0.7   0.3   1.3   0.6   1.1   0.9   1.2   1.7   1.1   1.7   2.0   1.3     5,000이 상   0.1   0.5   0.2   0.0   0.5   0.6   0.8   2.3   1.8   3.0   7.0   5.7     300 이하   9.9   16.1   10.5   17.9   11.3   12.2   11.5   9.6   10.1   10.6   9.4   7.6     300~500   7.1   6.8   7.2   9.8   6.3   6.8   6.2   5.6   5.3   4.0   4.3   3.4     500~700   4.3   5.7   3.9   2.8   4.0   6.0   2.7   3.4   3.1   3.0   2.2   1.3     700~1,000   10.8   12.4   6.2   9.5   7.7   7.0   7.8   7.1   7.4   6.6   7.9   6.4     1,000~1,200   5.6   3.4   4.1   3.6   3.8   2.8   3.1   3.0   3.5   3.5   2.9   4.6     1,200~2,500   13.0   10.5   11.1   5.5   10.4   8.1   8.4   8.9   7.0   6.6   7.0   5.8     1,500~2,000   16.8   17.8   18.2   16.6   16.5   15.3   15.1   18.9   14.1   17.2   11.0   13.0     2,500~3,000   6.6   4.9   9.7   6.6   8.8   8.4   10.9   8.9   12.4   12.6   13.4   14.8     3,000~3,500   2.5   4.8   4.9   7.7   5.4   6.2   7.3   6.8   8.6   8.1   8.4   9.3     3,500~4,000   1.9   1.3   3.9   2.1   3.6   6.3   4.8   5.1   5.9   4.9   7.5   7.5     4,000~4,500   0.3   1.3   1.4   0.9   2.0   1.6   3.2   3.2   3.1   2.6   4.3   3.5     4,500~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700~1,000	14.3	9.9	11.6	11.8	10.8	11.3	8.5	9.4	9.9	9.5	9.0	8.1
1,500 ~ 2,000   15.9   16.2   16.2   12.8   14.0   16.9   15.0   15.8   15.5   16.6   13.0   15.8   2,000 ~ 2,500   12.8   7.8   14.8   12.1   15.5   15.0   14.3   14.2   13.8   12.9   11.4   12.3   2,500 ~ 3,000   6.7   5.4   6.9   7.5   11.0   9.5   11.1   8.3   10.3   11.5   12.8   13.2   3,000 ~ 3,500   2.3   4.0   4.3   6.1   4.8   5.1   6.8   5.4   7.2   7.2   7.2   8.6   3,500 ~ 4,000   1.6   0.5   2.3   0.6   2.4   2.4   3.5   4.0   4.9   4.3   5.8   6.2   4,000 ~ 4,500   0.3   1.1   0.9   2.0   1.0   2.5   2.4   2.7   2.8   2.6   3.8   3.5   4,500 ~ 5,000   0.7   0.3   1.3   0.6   1.1   0.9   1.2   1.7   1.1   1.7   2.0   1.3   5,000   3   0.1   0.5   0.2   0.0   0.5   0.6   0.8   2.3   1.8   3.0   7.0   5.7   1.0   300 ~ 500   7.1   6.8   7.2   9.8   6.3   6.8   6.2   5.6   5.3   4.0   4.3   3.4   500 ~ 700   4.3   5.7   3.9   2.8   4.0   6.0   2.7   3.4   3.1   3.0   2.2   1.3   700 ~ 1,000   10.8   12.4   6.2   9.5   7.7   7.0   7.8   7.1   7.4   6.6   7.9   6.4   1,000 ~ 1,200   5.6   3.4   4.1   3.6   3.8   2.8   3.1   3.0   3.5   3.5   2.9   4.6   1,200 ~ 1,500   13.0   10.5   11.1   5.5   10.4   8.1   8.4   8.9   7.0   6.6   7.0   5.8   1,500 ~ 2,000   16.8   17.8   18.2   16.6   16.5   15.3   15.1   18.9   14.1   17.2   11.0   13.0   2,500 ~ 3,000   6.6   4.9   9.7   6.6   8.8   8.4   10.9   8.9   12.4   12.6   13.4   14.8   3,000 ~ 3,500   2.5   4.8   4.9   7.7   5.4   6.2   7.3   6.8   8.6   8.1   8.4   9.3   3,500 ~ 4,000   1.9   1.3   3.9   2.1   3.6   6.3   4.8   5.1   5.9   4.9   7.5   7.5   4,000 ~ 4,500   0.3   1.3   1.4   0.9   2.0   1.6   3.2   3.2   3.1   2.6   4.3   3.5   4,500 ~ 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4.5   4,500 ~ 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4.5   4,500 ~ 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4.5   4,500 ~ 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4.5   4,500 ~ 5,000   1.4   1.6   0.6   0.8		1,000~1,200	4.7	3.2	5.3	3.0	5.2	4.1	3.1	5.4	3.5	3.3	1.9	3.1
'96		1,200~1,500	13.1	10.4	13.1	9.2	10.8	10.6	10.9	11.6	8.8	10.1	9.1	7.9
2,500 ~ 3,000   6.7   5.4   6.9   7.5   11.0   9.5   11.1   8.3   10.3   11.5   12.8   13.2     3,000 ~ 3,500   2.3   4.0   4.3   6.1   4.8   5.1   6.8   5.4   7.2   7.2   7.2   8.6     3,500 ~ 4,000   1.6   0.5   2.3   0.6   2.4   2.4   3.5   4.0   4.9   4.3   5.8   6.2     4,000 ~ 4,500   0.3   1.1   0.9   2.0   1.0   2.5   2.4   2.7   2.8   2.6   3.8   3.5     4,500 ~ 5,000   0.7   0.3   1.3   0.6   1.1   0.9   1.2   1.7   1.1   1.7   2.0   1.3     5,000   장   0.1   0.5   0.2   0.0   0.5   0.6   0.8   2.3   1.8   3.0   7.0   5.7     300   장   9.9   16.1   10.5   17.9   11.3   12.2   11.5   9.6   10.1   10.6   9.4   7.6     300 ~ 500   7.1   6.8   7.2   9.8   6.3   6.8   6.2   5.6   5.3   4.0   4.3   3.4     500 ~ 700   4.3   5.7   3.9   2.8   4.0   6.0   2.7   3.4   3.1   3.0   2.2   1.3     700 ~ 1,000   10.8   12.4   6.2   9.5   7.7   7.0   7.8   7.1   7.4   6.6   7.9   6.4     1,000 ~ 1,200   5.6   3.4   4.1   3.6   3.8   2.8   3.1   3.0   3.5   3.5   2.9   4.6     1,200 ~ 1,500   13.0   10.5   11.1   5.5   10.4   8.1   8.4   8.9   7.0   6.6   7.0   5.8     1,500 ~ 2,000   16.8   17.8   18.2   16.6   16.5   15.3   15.1   18.9   14.1   17.2   11.0   13.0     2,000 ~ 2,500   19.6   12.8   17.5   15.0   17.1   14.8   15.3   15.5   12.9   14.5   10.9   12.3     2,500 ~ 3,000   6.6   4.9   9.7   6.6   8.8   8.4   10.9   8.9   12.4   12.6   13.4   14.8     3,000 ~ 3,500   2.5   4.8   4.9   7.7   5.4   6.2   7.3   6.8   8.6   8.1   8.4   9.3     3,500 ~ 4,000   1.9   1.3   3.9   2.1   3.6   6.3   4.8   5.1   5.9   4.9   7.5   7.5     4,000 ~ 4,500   0.3   1.3   1.4   0.9   2.0   1.6   3.2   3.2   3.1   2.6   4.3   3.5     4,500 ~ 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1,500~2,000	15.9	16.2	16.2	12.8	14.0	16.9	15.0	15.8	15.5	16.6	13.0	15.8
3,000~3,500   2.3   4.0   4.3   6.1   4.8   5.1   6.8   5.4   7.2   7.2   7.2   8.6	'96	2,000~2,500	12.8	7.8	14.8	12.1	15.5	15.0	14.3		13.8	12.9	11.4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2,500~3,000	6.7	5.4	6.9	7.5	11.0	9.5	11.1	8.3	10.3	11.5	12.8	13.2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3,000~3,500	2.3	4.0		6.1	4.8	5.1	6.8	5.4	7.2	7.2	7.2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					2.4		3.5		4.9			
$\begin{array}{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 ,	0.3				1.0		2.4	2.7	2.8	2.6		3.5
300   3   9.9   16.1   10.5   17.9   11.3   12.2   11.5   9.6   10.1   10.6   9.4   7.6		4,500~5,000							1.2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5,000이상	0.1	0.5	0.2	0.0	0.5	0.6	0.8	2.3	1.8	3.0	7.0	5.7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300 이하	9.9	16.1	10.5	17.9	11.3	12.2	11.5	9.6	10.1	10.6	9.4	7.6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300~500	7.1	6.8	7.2	9.8	6.3	6.8	6.2	5.6	5.3	4.0	4.3	3.4
$\begin{array}{c} 1,000 \sim 1,200   5.6   3.4   4.1   3.6   3.8   2.8   3.1   3.0   3.5   3.5   2.9   4.6 \\ 1,200 \sim 1,500   13.0   10.5   11.1   5.5   10.4   8.1   8.4   8.9   7.0   6.6   7.0   5.8 \\ 1,500 \sim 2,000   16.8   17.8   18.2   16.6   16.5   15.3   15.1   18.9   14.1   17.2   11.0   13.0 \\ 2,000 \sim 2,500   19.6   12.8   17.5   15.0   17.1   14.8   15.3   15.5   12.9   14.5   10.9   12.3 \\ 2,500 \sim 3,000   6.6   4.9   9.7   6.6   8.8   8.4   10.9   8.9   12.4   12.6   13.4   14.8 \\ 3,000 \sim 3,500   2.5   4.8   4.9   7.7   5.4   6.2   7.3   6.8   8.6   8.1   8.4   9.3 \\ 3,500 \sim 4,000   1.9   1.3   3.9   2.1   3.6   6.3   4.8   5.1   5.9   4.9   7.5   7.5 \\ 4,000 \sim 4,500   0.3   1.3   1.4   0.9   2.0   1.6   3.2   3.2   3.1   2.6   4.3   3.5 \\ 4,500 \sim 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 \end{array}$		500~700	4.3	5.7	3.9	2.8	4.0	6.0	2.7	3.4	3.1	3.0	2.2	1.3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700~1,000	10.8	12.4	6.2	9.5	7.7	7.0	7.8	7.1	7.4	6.6	7.9	6.4
$\begin{array}{c} {}^{2}97 \\ \hline \\ 2,000 \sim 2,500 \\ \hline \\ 2,000 \sim 2,500 \\ \hline \\ 2,000 \sim 3,500 \\ \hline \\ 2,00$		1,000~1,200	5.6	3.4	4.1	3.6	3.8	2.8	3.1	3.0	3.5	3.5	2.9	4.6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1,200~1,500	13.0	10.5	11.1	5.5	10.4	8.1	8.4	8.9	7.0	6.6	7.0	5.8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07	1,500~2,000	16.8	17.8	18.2	16.6	16.5	15.3	15.1	18.9	14.1	17.2	11.0	13.0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91		19.6	12.8	17.5	15.0	17.1	14.8	15.3	15.5	12.9	14.5	10.9	12.3
3,500~4,000 1.9 1.3 3.9 2.1 3.6 6.3 4.8 5.1 5.9 4.9 7.5 7.5 4,000~4,500 0.3 1.3 1.4 0.9 2.0 1.6 3.2 3.2 3.1 2.6 4.3 3.5 4,500~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2,500~3,000	6.6	4.9	9.7	6.6	8.8	8.4	10.9	8.9	12.4	12.6	13.4	14.8
4,000~4,500     0.3     1.3     1.4     0.9     2.0     1.6     3.2     3.2     3.1     2.6     4.3     3.5       4,500~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3,000~3,500	2.5	4.8	4.9	7.7	5.4	6.2	7.3	6.8	8.6	8.1	8.4	9.3
4,500~5,000 1.4 1.6 0.6 0.8 1.0 2.0 1.1 1.4 2.5 2.5 2.7 2.6		3,500~4,000	1.9	1.3	3.9	2.1	3.6	6.3	4.8	5.1	5.9	4.9	7.5	7.5
		4,000~4,500	0.3	1.3	1.4	0.9	2.0	1.6	3.2	3.2	3.1	2.6	4.3	3.5
5,000이상 0.4 0.3 0.8 1.1 2.0 2.5 2.6 2.7 4.2 3.3 8.1 7.8		, ,	1.4						1.1	· ·				
		5,000이상	0.4	0.3	0.8	1.1	2.0	2.5	2.6	2.7	4.2	3.3	8.1	7.8

〈表 Ⅱ-12〉 계속

	Х Ц 12/	711 —	1										
	구 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연도	전세 및 보증금(만원)	전 가구	근로자										
	300 이하	8.9	14.6	9.0	12.3	10.0	8.2	7.3	7.8	7.9	6.4	6.1	4.9
	300~500	6.2	8.7	6.0	6.1	4.6	4.3	4.6	5.5	4.8	2.9	5.1	3.3
	500~700	2.5	1.8	1.9	2.5	1.8	1.8	1.4	1.5	1.4	1.5	2.3	1.6
	700~1,000	10.4	7.7	6.5	6.1	7.6	6.0	6.9	7.0	7.4	6.4	5.5	4.4
	1,000~1,200	3.2	1.9	3.7	3.9	3.3	4.9	3.1	2.9	2.7	2.4	2.5	2.8
	1,200~1,500	12.9	9.6	9.9	10.2	10.1	8.9	7.6	8.0	7.0	5.5	4.9	5.6
'98	1,500~2,000	18.8	16.3	20.2	16.7	18.1	19.0	17.0	16.8	13.6	15.6	10.2	12.6
90	2,000~2,500	15.7	11.3	17.2	14.4	13.6	14.4	14.2	14.4	14.2	16.4	11.0	10.7
	2,500~3,000	8.3	13.7	10.9	12.4	12.2	10.8	14.8	13.9	14.1	14.3	14.2	15.5
	3,000~3,500	4.6	4.8	6.6	6.1	6.9	9.0	7.8	8.8	9.5	9.2	9.1	11.6
	3,500~4,000	4.1	5.7	4.7	5.9	5.8	5.0	6.6	4.2	5.6	7.1	6.6	6.9
	4,000~4,500	0.5	0.4	0.4	0.8	1.0	1.7	2.1	1.8	2.8	2.6	3.9	4.7
	4,500~5,000	1.8	1.2	1.6	0.6	2.8	2.2	3.4	4.2	3.8	4.2	3.9	3.2
	5,000 이상	2.3	2.4	1.5	2.0	2.3	3.8	3.4	3.1	5.3	5.2	14.7	12.3
	300 이하	11.8	17.4	11.3	13.3	8.4	8.9	7.9	8.4	7.7	5.7	5.8	4.7
	300~500	5.1	12.0	6.3	7.9	6.2	4.4	5.1	3.6	4.7	3.4	5.0	4.0
	500~700	3.2	2.9	3.4	3.8	2.3	3.5	1.2	1.8	2.0	2.3	1.5	0.6
	700~1,000	9.7	3.6	6.7	5.8	6.8	6.1	6.4	5.4	7.5	5.6	5.8	5.1
	1,000~1,200	2.9	3.8	2.6	2.7	3.6	3.0	3.7	3.9	2.4	2.8	2.5	2.7
	1,200~1,500	10.3	7.4	10.2	10.7	9.5	8.6	7.9	8.2	7.2	5.8	5.5	5.8
'99	1,500~2,000	20.2	19.1	19.2	14.1	18.6	13.4	15.9	16.9	14.7	16.8	10.7	13.2
22	2,000~2,500	14.0	8.5	14.1	13.7	14.5	18.2	16.5	20.3	15.6	18.4	12.1	10.9
	2,500~3,000	12.4	13.4	12.5	12.2	13.3	16.2	13.8	13.2	14.2	17.0	14.9	15.7
	3,000~3,500	3.1	3.6	5.6	7.3	7.7	8.9	8.8	7.1	8.4	8.2	9.3	10.5
	3,500~4,000	4.9	5.8	5.5	3.8	5.0	4.3	5.4	6.1	5.4	5.8	6.7	6.6
	4,000~4,500	0.4	0.3	0.2	1.3	0.5	1.1	1.2	0.8	2.1	2.2	3.5	4.0
	4,500~5,000	0.5	1.2	1.2	1.7	1.9	1.4	2.6	2.0	3.1	2.5	3.1	3.3
	5,000 이상	1.5	1.0	1.3	1.6	1.5	2.0	3.5	2.3	5.0	3.6	13.6	12.9

계층별 전세 및 보증금 부담은 1,500~2,000만원에서 전 계층에 대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이하에서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그이상에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 계층에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계층별 월세액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부담액이 높기는 하지만, 전 계층에서 상당히 고르게 분

포되어 있으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게 있어서 주거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된다.

〈表 Ⅱ-13〉 消費支出 및 所得水準에 따른 月貰額 分布의 變化 (단위: %)

												(51,	TI. 70)
	구분	소비	l·소득	소비	]·소득	소비	l·소득	소비	l·소득	소비	l·소득	소비	]·소득
	1 &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5 이상
연도	월세액	전 가구	근로자										
	5만원 이하	12.9	11.8	20.9	12.7	13.5	10.2	13.4	14.4	9.8	14.2	9.5	13.2
	5~10만원	38.5	38.8	35.7	30.0	35.3	30.1	28.9	31.1	28.8	23.4	24.3	29.2
	11~15만원	29.8	24.2	22.1	24.5	22.7	20.7	24.5	18.5	23.0	26.8	21.6	23.9
'96	16~20만원	12.9	16.3	16.1	20.9	18.3	25.3	21.7	19.9	23.9	21.5	23.1	16.9
	21~25만원	2.7	5.0	2.1	4.7	4.6	7.1	4.5	8.4	7.0	7.1	9.1	6.0
	26~30만원	1.7	3.7	1.9	4.4	4.0	3.2	5.8	4.3	4.7	3.9	7.0	6.0
	30만원이상	1.5	0.3	1.2	2.7	1.7	3.4	1.1	3.5	2.8	3.1	5.3	4.8
	5만원 이하	14.0	10.4	19.0	10.7	16.7	18.2	12.1	18.0	12.5	15.9	10.3	15.1
	5~10만원	28.0	25.4	30.1	25.7	31.1	28.2	32.6	26.0	26.6	28.0	20.6	23.6
	11~15만원	27.5	29.6	26.8	24.2	24.2	25.2	21.9	21.2	20.6	20.0	19.2	24.7
'97	16~20만원	19.3	17.7	16.0	23.5	19.2	16.7	21.2	20.1	24.9	20.0	20.3	16.1
	21~25만원	6.1	5.7	4.1	5.3	3.7	3.5	6.8	6.9	9.0	7.7	13.7	8.6
	26~30만원	3.2	6.0	2.2	7.3	3.2	4.8	3.1	4.8	3.7	4.1	8.5	7.7
	30만원 이상	1.9	5.2	1.7	3.4	1.8	3.4	2.3	3.0	2.7	4.1	7.5	4.3
	5만원 이하	20.8	12.5	15.9	12.0	17.5	18.9	15.1	10.2	10.7	13.4	6.3	8.7
	5~10만원	23.9	18.4	29.3	22.2	27.8	21.1	31.8	27.4	28.7	23.2	22.4	23.1
	11~15만원	19.2	17.7	17.8	19.9	18.9	14.7	14.5	20.6	17.3	27.5	16.0	17.9
'98	16~20만원	24.8	34.3	24.0	28.2	27.1	26.8	26.0	25.4	24.9	23.2	29.0	29.3
	21~25만원	7.4	10.4	8.3	7.0	5.9	6.4	6.2	6.3	6.6	5.0	7.0	7.8
	26~30만원	2.7	5.0	2.5	7.3	1.4	9.4	2.7	7.9	7.6	6.1	10.3	8.2
	30만원 이상	1.1	1.7	2.1	3.5	1.4	2.8	3.7	2.0	4.1	1.6	9.1	5.1
	5만원 이하	14.5	10.9	15.7	8.6	12.3	12.0	11.6	12.6	8.8	10.1	5.2	7.9
	5~10만원	24.1	26.1	28.9	24.9	32.6	28.2	29.6	28.5	30.2	25.7	22.9	29.9
	11~15만원	25.6	21.0	21.4	18.4	17.7	19.7	19.5	22.7	17.2	20.0	14.8	16.5
'99	16~20만원	26.6	26.3	24.2	28.9	23.2	23.9	24.3	24.4	25.2	29.0	27.0	23.7
	21~25만원	5.8	9.8	3.2	4.5	5.1	4.9	5.7	4.8	6.7	5.0	8.7	5.3
	26~30만원	2.8	3.8	4.5	8.8	6.0	9.3	7.0	5.6	8.0	7.8	9.8	8.4
	30만원 이상	0.6	2.0	2.1	5.9	3.1	2.0	2.2	1.4	3.9	2.4	11.6	8.3

# 2. 2000年 2/4分期 階層別 家口特性

# 가. 人口學的 特性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크며, 특히 5% 및 10% 이하의 계층에서 근로자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크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도시 근로자가구(총 8,908가구) 중 하위 10% 이하의 가구에서 30.0%이고, 전 도시가구(총 15,721가구) 중 하위 10% 이하의 가구에서는 23.2%로서, 전체 가구에서 비율인 각각의 15.6% 및 17.4%에 비해 현저히 크다.

〈表 Ⅱ-14〉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性別 分布 (단위: %)

7 H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전체
구분	5% 이하	5~10%	10~20%	20~30%	30~50%	50% 이상	신세
남자	65.6	74.1	79.6	83.2	84.2	88.5	84.4
급사	(75.3)	(78.2)	(79.1)	(82.4)	(82.4)	(84.7)	(82.6)
여자	34.4	25.9	20.4	16.8	15.8	11.5	15.6
۳۸۲	(24.7)	(21.8)	(20.9)	(17.6)	(17.6)	(15.3)	(17.4)

註: ( )안은 도시 전 가구의 비율임.

모든 계층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30대 및 40대가 가장 많으나 40~50대 연령가구의 계층 점유비율은 소득계층이 오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30~40대 가구주의 비율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서 도시 전 가구에 비해 현저히 크다. 반면에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의 가구들에서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점유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보이고 있고, 60대 및 70대의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도시 근로자가구보다는 전 가구에서 현저히 크다.

특히 10% 이하의 계층에서 60대 이상의 연령비율이 현저히 크며, 20% 이하에서도 차 상위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위 50% 이상의 가구주 연령은 전 가구에서는 40대가 가장 크고, 근로자 가구에서는 30대가 가구주가 가장 많다.

〈表 Ⅱ-15〉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年齡 分布 (단위, %)

											( -	- 11, 70,
コフス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가구주 연령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건녕	전가구	근로자										
10대	0.5	0.0	0.6	1.1	0.4	0.6	0.2	0.6	0.6	0.1	0.1	0.1
20대	7.6	5.4	9.3	13.8	8.5	10.0	9.9	10.0	8.4	11.5	8.2	12.7
30대	26.8	41.7	35.2	32.1	36.1	41.3	39.7	45.7	35.8	41.2	29.8	34.5
40대	25.3	29.3	21.4	26.0	25.1	27.1	24.7	26.5	29.4	29.0	32.8	30.2
50대	14.8	14.0	16.0	16.1	16.0	9.5	14.9	12.2	17.0	14.4	19.4	18.0
60대	16.4	9.0	11.5	9.0	10.6	11.3	8.1	4.4	7.5	3.7	8.2	4.1
70대	8.5	0.7	6.0	1.8	3.3	0.2	2.5	0.7	1.4	0.1	1.5	0.4

노인가구의 비율은 하위 10% 이하의 절대 빈곤계층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구에서 노인가구의 비율은 근로자가구에 비해서 크고, 특히 하위 5% 이하의 가구에서 15.7%나 되어, 근로자가구의 비 율 4.3%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또한, 도시 전 가구의 노인가구 비율 은 평균 4.4%이나 하위 10% 이하에서는 11.9% 이고, 20% 이하에서는 6.8% 이어서 상대적 빈곤층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서는 노인가구의 비 율이 현저히 크다. 또한, 전 노인가구의 18.0%는 하위 5% 계층에 그 리고 27.1%는 하위 10%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41.2%는 상위 50% 이 상에 분포되어 있다.

〈表 Ⅱ-16〉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類型 分布 (단위: %)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전	체
구 분	전 가구	근로자												
노인	15.7	4.3	8.0	4.5	4.5	4.2	4.0	2.3	2.7	0.7	3.6	0.7	4.4	1.6
모자	2.9	3.6	1.8	2.3	2.9	4.4	2.4	1.5	3.5	2.9	3.2	1.2	3.1	2.1
	9.3	8.1	11.8	13.4	20.0	15.8	21.4	20.8	22.3	23.5	26.1	40.3	22.7	29.6
일반	72.0	83.9	78.3	79.8	72.7	75.6	72.3	75.5	71.4	72.9	67.1	57.8	69.9	66.7

모든 계층에서 부모 및 자식의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가장 크지만, 저소득층일수록 3세대 가구 비율이 현저히 크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닌 2세대의 가구비율도 일인당 가구소비가 중상위인 가구보다 중하위 가구에서 크다.

〈表 Ⅱ-17〉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世代構成 分布 (단위,%)

<del></del>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十七	전체	근로자										
1세대	17.5	9.5	11.3	12.2	9.6	7.1	10.6	6.9	9.9	8.5	19.7	20.9
2세대	42.8	54.6	53.9	51.1	53.7	59.8	57.4	67.1	61.4	65.8	58.1	60.1
기타 2세대 <sup>1)</sup>	19.2	17.6	20.5	18.8	21.7	16.2	19.4	14.6	18.2	16.6	14.9	13.6
3세대	19.6	18.3	14.1	17.9	14.8	16.9	12.3	11.1	10.5	9.0	6.8	5.4
4세대 이상	0.8	0.0	0.1	0.2	0.2	0.4	0.3	0.2	0.1	0.2	0.1	0.1

註: 1) 부모와 자식의 2세대 가구를 제외한 2세대 가구임.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자가 가장 많으나 전도시가구 중 하위 10% 이하의 계층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자가 현저히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 전가 구 중 중상위 이상 및 그 이하의 계층 사이에는 4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

및 중졸 이하의 비율에서 현저한 비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表 Ⅱ-18〉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教育水準<sup>1)</sup> (단위, %)

												. 17 7
	소비	·소득	소비	<u></u> ·소득								
구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전체	근로자										
초등	22.5	16.0	16.8	15.5	13.8	13.2	9.1	7.1	8.3	7.6	6.3	6.1
중등	23.8	26.2	20.4	22.4	17.5	17.5	17.1	14.3	14.6	12.5	10.9	8.7
고등	40.9	44.2	45.7	47.1	50.4	45.0	48.4	46.9	49.0	44.9	40.1	38.8
2년대	5.7	6.9	6.9	5.3	4.6	7.0	7.0	9.7	7.6	8.7	7.1	7.8
4년대	7.0	6.3	9.0	9.2	12.7	15.6	17.0	17.3	19.0	24.1	28.9	30.0
대학원	0.1	0.5	1.2	0.5	1.0	1.8	1.4	1.1	1.5	2.2	6.7	8.5

註: 1) 졸업, 재학, 중퇴, 휴학을 포함.

종합하면, 하위 5%에서는 노인가구 및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크다. 하위 20% 이하의 계층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주나 다세대 가구의 비율이 상위 계층에 비해 다소 크지만, 하위 5% 이하와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하위 20% 이상의 가구특성은 비슷하여 상대적 빈곤층이나 서민화된 계층은 일반가구와 동질적인 가구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에서는 하위 10% 수준 이하의 가구가 대졸 이상에서는 중상위 수준의 가구가 점유하는 비율이 현저히 크다.

## 나. 就業關聯 特性

전 도시가구에서 하위 5% 이하의 가구의 평균 취업인수는 1.04명이고, 하위 10% 이하는 1.21명이다. 그러나, 하위 10~30%의 가구의 취업인수는 1.34~1.41명으로서 전 가구 평균 1.4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위 5% 가구에서 취업인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25.9%이다. 전체적으로 전 도시가구에서 가구원 중 취업인 없는 가구의 비율은 10.2%이며, 상위 50% 이상에서도 취업인 없이 사는 가구가 8.5%나 된다.

반면, 하위 5% 이하의 전 도시가구에서도 74.1%가 취업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2명 이상의 취업인이 있는 25.6%의 가구가 극빈층에 속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취업상태가 매우 불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10% 이하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전 도시가구 중 28.5%가 2인 이상의 취업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취업상태가 매우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表 Ⅱ-19〉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 就業人員數 (단위: %, 명)

												,		
취업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전	[체
인원	전 가구	근로자												
0명	25.9	0.0	16.9	0.0	11.8	0.0	9.4	0.0	8.5	0.0	8.5	0.0	10.2	0.0
1명	48.5	82.6	51.8	78.7	47.9	73.6	49.4	68.4	49.0	63.1	46.5	44.9	47.8	57.4
2명	21.9	16.0	25.7	19.0	32.1	22.3	32.6	26.3	33.5	30.4	38.2	45.8	34.7	35.6
3명	2.8	1.1	4.8	2.3	7.1	3.3	7.8	4.4	7.8	5.6	5.7	8.0	6.3	6.1
4명	0.1	0.2	0.1	0.0	1.2	0.1	0.7	0.8	1.1	0.7	0.9	1.0	0.9	0.8
5명	0.0	0.0	0.0	0.0	0.0	0.0	0.1	0.1	0.2	0.1	0.2	0.2	0.1	0.2
평균	1.04	1.19	1.21	1.24	1.34	1.31	1.41	1.38	1.44	1.44	1.44	1.66	1.40	1.51

취업불안 상태는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이들의 하위 10% 이하 가구에서 19.4%가 2인 이상 취업인이 있으면서도 근로 빈곤계층(working poor)에 속하여 있다. 그리고 소득계층이높을수록 가구원 중 취업인수가 많아지며, 특히 상위 50% 이상의 근로자가구의 평균 취업가구원 수는 1.66명이나, 하위 5% 이하의 근로자가구에서는 1.19명뿐이다.

가구주 종사산업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제조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하위 10% 이상의 계층에서는 전체 도시가구의 20~25%, 근로자가구의 27~32%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表 Ⅱ-20〉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從事産業 (단위, %)

_1 _ 7	소비·소득수준		소비 소득수준		소비	소비 소득수		· 득수준	소비·	소득수	소비·소득수준	
가구주	5% 이하		5~10%		준 10~20%		20~30%		준 30~50%		50% 이상	
산업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A	0.3	0.7	0.3	0.5	0.1	0.8	0.1	0.1	0.2	0.2	0.1	0.1
В	0.0	0.2	0.1	1.1	0.1	0.1	0.2	0.0	0.1	0.1	0.1	0.1
C	0.0	0.2	0.0	0.2	0.1	0.1	0.1	0.1	0.0	0.1	0.1	0.1
D	15.9	26.4	19.8	24.4	21.6	31.0	21.7	29.4	24.8	31.8	20.2	27.0
Е	0.0	0.0	0.0	0.0	0.0	0.0	0.0	0.3	0.2	0.5	0.2	0.2
F	11.7	25.5	11.6	16.0	11.1	15.1	10.3	14.0	9.1	11.6	9.1	10.2
G	15.6	9.5	17.2	16.7	17.0	8.4	17.8	13.4	17.1	12.6	17.0	9.5
Н	2.8	9.3	4.7	4.1	5.0	5.8	5.0	5.9	5.0	3.4	4.0	3.0
I	5.1	5.9	9.1	9.7	9.2	10.0	9.7	10.5	8.0	9.1	9.2	10.1
J	0.4	1.4	0.8	0.7	2.0	1.8	2.4	1.0	2.5	2.7	4.4	6.1
K	7.7	5.4	4.7	11.3	6.9	13.0	7.6	10.2	7.9	8.9	8.3	10.7
L	4.5	6.1	1.7	4.1	3.1	6.3	3.5	4.9	4.0	6.2	4.6	8.7
M	0.8	2.5	3.3	3.2	1.8	1.7	1.8	3.6	2.0	3.4	5.7	8.6
N	0.4	1.4	1.0	2.0	1.2	1.8	1.3	1.7	2.0	3.0	1.2	1.5
0	5.9	4.1	5.5	5.4	5.5	3.6	5.9	4.5	4.5	5.0	3.8	3.0
P	0.8	1.6	0.3	0.0	0.5	0.3	0.7	0.0	0.4	0.5	0.3	0.5
Q	0.1	0.0	0.0	0.7	0.1	0.2	0.2	0.2	0.1	0.6	0.2	0.3
R	28.2	0.0	20.2	0.0	14.8	0.0	11.6	0.0	12.2	0.3	11.6	0.0

註: A: 농림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수도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음식/숙박업, I: 운수/통신/창고업, J: 금융/보험업, 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L: 행정 및 국방 M: 교육, N: 보건 및 복지, O: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P: 자영업, Q: 전국적 조직 및 단체, R: 실업 및 직업분류 불능

가구주 종사 직업에 있어서는 계층별 차이가 더 크다. 하위 30% 이상 계층에서 가장 큰 가구주 직업비율은 기타 준 전문가(예컨대, 상업중개 인, 세무공무원, 상품디자이너 등)인데 비해, 하위 20% 이하의 계층의 가 구주 직업은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저 소득층화 혹은 서민화에 제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20% 계층 이하의 가구주가 두 번째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 업은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직업이다. 특히 하위 5% 계층 가구주에 서는 행상 및 단순서비스 직업,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직업 그리고 대인 및 보호서비스 종사 직업(가사 및 음식서비스, 여행, 소방관, 개인보호 및 관련자 등)의 비율이 크다. 그러나, 도시 전 가구의 하위계층 특히 5% 이하에서는 실업 및 기타 산업에의 종사 비중이 약 30%에 이르고 있어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위 5%계층 근로자가구의 25.5%가 건설업에 종사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도시 전 가구의 하위 5~10%계층의 19.8% 및 17.2%가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에 참여하여 가장 높은 종사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하위 10~30%의 서민계층은 차 상위계층과 종사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계층별 가구의 일반특성 및 경제 특성을 종합하면, 하위 5% 이하의 극빈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취업인 규모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극빈층은 취약한 지식기반과 가구 특성으로 빈곤을 피할 수 없었지만, 상대적 빈곤층(하위 10~20%) 및 하위 30% 이하의 서민계층은 상위 50% 이상의 중 상위 계층과 거의 비슷한 가구특성, 취업가구원수, 주로 제조업에의 종사 등과 같은 거의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있다. 따라서 하위 10~30%의 빈곤화 및 서민화의 주요 원인은 취약한 직업 및 근로상태(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와 다소 취약한 지적기반 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Ⅱ-21〉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家口主 職業 (단위, %)

구분	5% 이하		5~10%		10~20%		20~30%		30~50%		50% 이상	
丁亚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11	0.0	0.4	0.2	0.0	0.1	0.1	0.0	0.0	0.0	0.0	0.0	0.0
12	0.2	0.4	0.3	0.0	0.1	0.5	0.1	0.0	0.4	0.4	1.8	1.0
13	0.9	0.0	0.5	0.0	1.4	0.3	1.2	0.1	2.0	0.3	5.1	1.5
21	1.2	0.0	0.0	0.0	0.4	1.1	1.4	0.6	1.7	2.4	3.1	4.4
22	0.0	0.0	0.0	0.0	0.1	0.2	0.0	0.0	0.1	0.1	1.9	0.4

〈表 Ⅱ-21〉 계속

126	. ш 2	.1/ /	11 ¬									
구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50%		50% 이상	
1 1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23	0.2	0.0	0.3	0.5	0.4	0.8	0.6	0.3	0.7	1.5	4.3	6.3
24	0.0	0.4	1.3	1.0	0.4	1.3	1.4	13.8	1.0	1.1	2.0	1.8
31	2.3	2.0	1.3	2.0	1.3	2.4	2.2	4.3	3.6	3.5	2.4	3.7
32	0.0	0.0	0.0	0.0	0.1	0.1	0.2	0.2	0.5	0.2	0.1	0.2
_33	0.7	0.7	2.4	1.8	0.9	0.7	0.6	2.6	0.7	0.6	1.0	0.6
34	2.5	2.0	3.5	1.8	7.9	6.3	8.1	9.9	9.9	12.2	15.8	16.4
41	3.5	1.8	4.3	2.9	6.5	8.2	7.0	10.5	6.9	13.2	8.6	13.2
42	1.6	1.8	1.9	2.5	0.8	1.6	1.4	1.5	1.4	1.6	1.8	2.6
_51	11.2	15.5	9.3	7.7	11.5	8.0	11.7	7.9	9.9	6.8	7.1	5.3
52	12.4	3.1	8.8	3.2	12.0	1.5	9.9	2.4	9.7	3.3	8.8	2.2
61	0.0	0.2	0.5	0.7	0.1	0.5	0.1	0.0	0.1	0.1	0.1	0.1
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1	11.5	16.2	10.0	10.9	9.0	10.2	7.3	9.0	6.2	6.9	5.5	6.1
72	6.0	4.5	9.3	12.2	7.0	8.1	7.9	9.0	7.5	7.8	6.1	7.0
73	0.9	1.6	1.9	1.4	1.6	1.1	2.0	1.8	2.0	1.9	0.6	0.4
_74	5.3	7.9	7.8	7.3	6.6	6.4	4.8	7.2	5.7	4.5	3.1	1.9
81	0.2	0.7	0.0	2.0	1.4	2.3	2.1	0.7	1.9	1.9	1.1	2.1
82	9.6	6.5	6.7	4.3	6.8	6.8	6.1	7.6	6.3	7.0	5.0	6.7
83	6.9	5.8	11.8	12.5	12.6	11.7	10.2	8.9	10.2	7.8	7.4	6.9
_91	16.5	14.4	12.8	18.4	9.1	14.9	10.7	10.2	8.7	10.4	6.6	6.2
92	0.5	1.1	0.0	0.5	0.1	0.5	0.2	0.2	0.2	0.2	0.1	0.1
_93	6.0	12.8	5.3	6.6	3.7	4.7	2.8	3.0	2.9	5.9	1.5	2.4

註: 11: 입법가 및 입법 공무원, 12: 법인관리자, 13: 일반관리자,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23: 교육전문가, 24: 기타 전문가, 31: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33: 교육 준전문가, 34: 기타 준전문가, 41: 일반사무직, 42: 고객봉사 사무직,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62: 농어업 보조근로자, 7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3: 정밀, 수공업, 인쇄 및 관련 기능자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자,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82: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92: 농림어업 관련노무자,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노무자

## 다. 住居關聯 特性

외형적으로는 전 도시가구에 비해 근로자가구의 거주형태가 보다

열악하고 특히 하위 10% 계층에서 현저하다. 먼저, 주택소유상태는 하위 10% 이하의 전 도시가구와 근로자가구 소득계층에서는 무주택가구의 비율이 50%를 넘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주택소유비율이 50%를 넘는다, 특히 상위 50%의 소득계층에서는 주택소유 비율이 60%를 크게 넘는다.

〈表 Ⅱ-22〉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住宅所有與否 (단위,%)

구분	소비·소득 5% 이하		소비·소득 5~10%		소비·소득 10~20%		소비·소득 20~30%		소비·소득 30~50%		소비·소득 50% 이상		전체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소유	47.8	37.9	49.7	49.4	52.0	52.1	56.0	51.2	59.1	54.9	68.5	64.1	61.8	57.7

거주 주택의 형태는 저소득층일수록 단독주택의 비율이 크고, 특히하위 20% 이하에서는 60% 이상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50% 이하의 계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단독에서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상위 50% 계층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40%대로 크게 오르고, 단독 및 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크게 적었다.

〈表 Ⅱ-23〉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居住住宅 形態 (단위,%)

구분	소비 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 소득	
	5% 이하		5~10%		10~20%		20~30%		30~50%		50% 이상	
<b>丁</b> ゼ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가 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전 가구	근로자
단독주택	71.4	65.6	64.4	62.9	61.5	60.0	57.0	54.8	53.3	50.8	43.8	44.2
아파트	11.7	15.2	17.0	15.4	19.8	23.7	24.5	26.5	30.2	30.9	40.0	42.1
연립주택	15.5	17.6	16.3	20.8	16.7	15.9	16.8	17.3	14.9	16.9	14.4	12.4
기타	1.4	1.6	2.3	0.9	2.0	0.3	1.8	1.5	1.6	1.4	1.9	1.3

도시 근로자가구에서도 월세(보증부 포함) 및 사글세의 비율은 소득 계층이 낮을수록 크며, 하위 5%의 계층에서 그 비율은 25.3%이며, 무 상주택과 전세를 합하면 66.5%에 이른다. 이는 하위 5% 전 도시가구 의 월세 및 사글세 비율 14.9% 보다 현저히 크다. 그러나, 전 도시가 구의 전세비율은 도시근로자보다 월등히 크다.

〈表 Ⅱ-24〉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住居 占有形態 (단위, %)

점유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형태	전체	근로자										
자가	42.1	33.4	42.1	46.2	45.0	44.3	48.2	41.9	51.0	44.9	58.9	53.3
무상	4.5	2.9	2.8	2.9	2.4	1.8	1.6	2.4	1.7	1.5	1.6	1.2
주택												
사택	0.3	0.2	1.0	0.5	0.6	1.7	1.0	1.1	0.9	1.8	0.9	1.7
전세	38.3	38.1	37.9	33.9	39.1	36.8	35.2	39.4	32.8	40.6	29.7	36.3
보증부	11.6	17.6	13.2	12.0	10.5	11.6	10.9	12.6	11.5	10.0	7.4	6.3
월세												
사글세	1.0	2.7	1.8	2.3	1.6	2.4	1.1	1.0	1.3	0.7	1.1	0.8
월세	2.3	5.0	1.1	2.3	0.9	1.4	1.9	1.6	0.9	0.5	0.5	0.4

계층별 평균 전세 및 보증금액을 보면, 하위 5%의 평균 전세 및 보 증금액은 1886만원이나 되어 하위 30~50%의 2218만원이나 전체 평 균 2577만 원과 큰 차이가 없어, 월세부담에서 보나 전세부담에서 보 나 극빈층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30% 이 하의 서민계층에서 전세 및 보증금의 부담은 2000천만 원을 넘고 있 어 서민층의 최저주거 유지 부담이 매우 큰데 비해, 상위 50% 계층의 부담도 평균 3000만원을 조금 넘어서 세입 부담의 계층간 차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고소득층이 선진국에서와 달리 전 월 세 보다는 자가를 선호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表 Ⅱ-25〉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傳貰 및 保證金 (단위,%)

전세 및 보증금	소비	l·소득	소비	l·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소비	·소득
전세 옷 모등 <sub>요</sub> (만원)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단전)	전체	근로자										
300 이하	12.2	13.8	13.0	16.1	9.9	10.5	9.0	9.8	8.9	6.4	7.3	4.8
300~500	3.5	6.1	7.2	3.8	5.0	8.7	5.7	2.6	5.9	4.0	4.4	3.8
500~700	5.0	5.0	0.5	2.4	0.4	1.1	1.9	1.7	2.1	1.2	0.9	0.3
700~1,000	7.5	13.0	10.8	10.4	8.2	8.7	9.0	8.1	9.2	6.8	6.1	6.2
1,000~1,200	3.5	3.4	1.9	1.9	2.0	1.8	2.7	2.1	3.2	3.0	1.9	2.4
1,200~1,500	10.5	9.2	8.4	8.1	8.5	7.6	7.7	7.5	7.2	8.7	6.5	5.9
1,500~2,000	18.7	14.2	13.5	11.4	19.9	19.4	14.7	16.0	13.8	18.9	10.6	11.0
2,000~2,500	14.2	14.2	17.1	14.7	18.1	14.5	12.0	20.5	14.1	13.0	13.5	14.0
2,500~3,000	15.7	10.7	12.5	14.2	9.9	11.6	15.9	11.1	12.7	17.9	15.1	15.3
3,000~3,500	3.7	1.9	8.7	10.0	9.2	8.0	7.7	9.4	7.6	5.3	7.2	8.7
3,500~4,000	2.5	6.9	2.9	2.8	3.7	4.7	8.1	5.5	7.2	4.8	5.5	7.9
4,000~4,500	0.7	0.0	0.7	0.0	1.1	0.0	1.2	1.7	1.8	1.4	3.5	3.9
4,500~5,000	0.0	0.8	0.7	1.4	1.5	1.6	1.3	0.4	2.8	1.7	3.1	2.8
5,000 이상	2.7	0.8	1.9	2.8	2.7	1.8	3.2	3.6	3.5	6.7	14.4	13.0
평균액(만원)	1,886	1,696	1,933	1,944	2,128	1,955	2,189	2,258	2,218	2,400	3,022	3,065

빈도를 보면,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계층에서는 전세 및 보증금액이 1500~2000만원대가 가장 많으나, 50% 이상의 중위 이상의 계층에서는 2500~3000만원대가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계층별 평균 월세액은 하위 5% 이하의 계층에서도 11만 3천원에 이르러 하위 30~50%의 평균 월세액 16만 5천원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이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도시 빈곤가구의 월세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빈도를 보면, 월세액은 하위 50% 이하의 계층에서는 5~10만원이 가장 많고, 그 비율이 30% 이하의 계층에서는 30%를 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위 50% 이상의 계층에서는 평균 월세액이 16~20만원이 가장 많다.

〈表 Ⅱ-26〉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 所得水準別 月貰額 分布 (단위: %)

	소비・소득		소비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소비·소득	
구분	5%	이하	5~	10%	10~	~20%	20~	-30%	30~	-50%	50%	이상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5만원이하	22.2	10.8	21.9	5.6	11.2	15.6	10.0	18.7	8.1	8.4	7.1	8.8	
5~10만원	32.5	33.3	29.7	29.2	36.6	17.0	26.8	20.1	22.0	21.7	20.2	20.6	
11~15만원	23.1	15.3	14.8	18.1	14.1	16.3	20.5	9.7	17.4	26.1	17.3	16.5	
16~20만원	17.9	25.2	24.2	19.4	20.0	41.5	24.5	33.6	31.2	23.6	23.5	23.0	
21~25만원	0.9	10.8	8.6	12.5	9.3	5.9	6.8	8.2	8.3	6.9	8.8	9.1	
26~30만원	0.9	3.6	0.8	15.3	8.3	3.7	4.5	9.0	8.6	6.9	12.6	13.9	
30만원 이상	2.6	0.9	0.0	0.0	0.5	0.0	6.8	0.7	4.4	6.4	10.6	8.0	
평균(천원)	113	146	123	170	142	143	156	153	165	165	187	177	

다음으로 주거 사용면적을 살펴보면, 하위 10% 이하 계층의 평균거 주 평수는 15평에 못 미치어, 이들의 가구규모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도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30% 이하에서도 평균 거주 평수는 11~15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6~20평이어서 대부분의 서민은 정부의 서민주거 기준 25평에 크게 못 미치는 공간 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전 도시가구의 평균 거주평수가 18.2평에 불 과하고, 상위 50% 중 25평 이상의 거주 비율은 22.3%에 불과해 중 상 위 계층 사이에서도 거주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 Ⅱ-27〉 消費水準別 住居 使用面積

〈表 Ⅱ-2/〉 消費水準別 任居 使用面槓							
						(단 <u>·</u>	위: %, 평)
주거면적	5% 이하	5~10%	10~20%	20~30%	30~50%	50% 이상	전체
5평 이하	3.8	3.9	2.7	1.8	1.9	1.1	1.7
5~10평	25.8	21.6	20.2	17.5	17.4	10.6	14.9
11~15평	32.1	29.4	32.2	30.5	27.3	20.5	25.0
16~20평	26.7	30.3	27.8	30.2	29.8	29.1	29.2
21~25평	7.8	11.3	11.8	12.8	14.1	16.5	14.5
26~30평	2.9	3.2	3.8	6.2	7.0	14.0	9.7
31~35평	0.6	0.1	0.7	0.5	1.5	3.0	2.0
36~40평	0.3	0.1	0.4	0.5	0.5	1.3	0.8
41~45평	0.0	0.0	0.1	0.1	0.4	1.6	0.9
46~50평	0.0	0.0	0.5	0.1	0.0	1.9	1.0
50평 이상	0.0	0.0	0.0	0.0	0.2	0.5	0.3
평균평수	14.9	15.5	15.0	16.3	16.6	18.7	17.3

# Ⅲ. 階層間의 移動(流入 및 脫出)實態 및 特性

# 1. 階層間 家口移動 實態

#### 가. 階層의 分配狀態의 變化

계층간의 이동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하여 계층을 6단계로 재분류하였다: 극빈층(≤5%정도의 수준)이나 일반 빈곤층(5%정도의 수준< 빈곤율≤10%정도의 수준)은 절대빈곤층을 의미하므로 일정수준의 빈 곤선 이하의 계층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층(10%<빈곤율≤ 20%), 하위 서민층(20%<빈곤율≤30%), 상위 서민층(30%<빈곤율≤ 50%)은 그에 상응하는 절대적인 소득 혹은 소비수준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사람에 비한 상대적 열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총 소비의 일정비율을 소비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분포구조의 변화를 보면, 첫째, 절대 빈곤선 이하의 계층은 '97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表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 가구원 일인당 소비가 18만 2천원 이하인 가구가 총 소비 중 5%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극빈층으로 보면, 그리고 '97년, '98년, '9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4.5%, 7.5%, 0.8%임을 감안하면 '96년의 최하위 소비수준 5% 경계선과 동일한 '97~'99년간의 값은 일인당 19만원, 20만 4천원, 20만 6천원이 된다. 이때 극빈가구 비율을 <表 Ⅲ-1>에서 추정해 보면, '96년 13.72%에서 '97년에는 13.39% 이하로 감소하지만, '98년의 극빈층 비율은 22.45%보다 조금 작은 비율(총 소비의 10% 구간의 경계값이 극빈선보다 4천원이 크므로)로 급

증한다. 그러나, '99년에는 13.02%를 넘는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하나 '97년의 비율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96년 하위 10%의 소비를 점유하는 계층의 일인당 소비의 경계값인 21만 9천원을 빈곤선으로 가정하면 '97년에서 '99년까지의 빈곤선도 22만 9천원, 24만 6천원, 24만 8천원이 되어 각 연도의 가구 빈곤율도 '96년 23.10%에서 '97년에는 22.78% 이하로 감소하나 '98년에는 약 3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9년에는 다시 약 25% 정도까지 감소하여, 역시 '97년의 빈곤율보다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99년의 빈곤율의 증가추세는 '96년의 자활보호선정기준 일 인당 21만원을 빈곤선으로 하고 그 이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96년가치 빈곤선을 '97년 219.5천원, '98년 235.9천원, '99년 237.8 천원을 이용하면 빈곤율의 변화가 더욱 분명해진다. 빈곤가구의 비율은 '96년 20.7%, '97년 19.2%로 감소하였다가 '98년에는 30.3%로 크게 증가하고 '99년에는 23.3%로 크게 감소하나 '97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은 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가구원 빈곤율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 각각 22.4%, 20.8%, 32.2%, 25.2%이었다. 또한 빈곤선의 최저선으로 생각되는 94년 추정 최저생계비의 실질 값(GDP 디플레이터 활용)을 적용하였을 때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빈곤율도 '96년 1.7%, '97년 2.9%에서 '98년 6.2%로 급증하고 '99년에는 6.5%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전국빈곤율로 확대할 때도 비슷하여 '96년 4.3%, '97년7.4%에서 '98년 16.5%로 급증하고 '99년에는 14.9%로 약간 감소하였다나).

둘째, 전체소득 특히 소비지출의 분포가 양극화되어 중산층의 감소가 '97년 이후 심해지고 있다. 빈곤층과 특히 중상위층의 가구의 타계층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表 Ⅲ-1>에 의하면 총 소비의 하위 50%가 점하는 가구의 비율은

<sup>14)</sup> 박순일, 세계은행보고서2, 2000.7.

'97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반해 상위 50%가 점유하는 가구비율은 감소함으로써, 소득 및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다만, '98년 소비지출자료는 예외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98년의 평균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50%의 일인당 경계소비수준도 '97년에비해 약 10% 감소한 수준이어서 '97년의 중하위 소비수준에 맞춘 '98년 중하위 소비계층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97년 이후 중하위층의 생활수준 계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중상위의 비율은 감소하는, 즉, 중상위 계층에서 중하위로의이동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장기실직자 및 불완전취업자가 '99년에도 증가하여 과거 중산층의 소득수준을 감소시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가들의 몰락 및 집 등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으로 소득과 소비능력을 감소시킨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하위층에서는 빈곤층보다는 상대적 빈곤층 내지는 서민층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총소비하위 10~20% 점유가구의 비율은 '99년에도 '98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가구의 경우는 '97년에 비해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구의 소득 점유 가구 비율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현재의 경기회복이 빈곤층을 다소 감소시키더라도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表 III-1>과 <表 III-2>의 가구 및 가구원의 분포에서 알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소득 및 소비의 하위 20~50%의 서민층 점유가구 및 가구원의 비율은 '98년은 물론 '96년부터도 증가하고 있어 '97년의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와 이어지는 환란에 따른 대기업의 부도 및 구조조정, 즉, 세계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체제로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영세민 및 서민계층의 비율은 늘고 중상위 계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하위층의 지출점유비율의 감소는 경기회복이 구조조정, 불안정한 노동 및 자본시장의 효과와 더불어 중상위층의 지불능력 증가와 서민들의 지불능력의 감소라는 현상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Ⅲ-1〉 都市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所得 總額의 區間別家口占有 比率

(단위: %, 천원)

							(	-,,
71		도시 전가구	(경계소비집	도시근로자가구				
구분	1996	1997	1998	1999	1996	1997	1998	1999
5% 이하	13.72(182)	13.39(195)	13.37(172)	13.02(194)	14.0	13.9	15.4	15.3
5~10%	9.38(219)	9.38(234)	9.08(208)	9.00(233)	9.2	9.0	9.5	9.5
10~20%	15.46(273)	15.09(290)	14.74(260)	15.10(290)	15.2	14.7	14.9	15.3
20~30%	12.58(321)	12.87(341)	12.77(306)	12.90(341)	12.4	12.3	12.4	12.5
30~50%	20.89(430)	20.92(450)	21.03(406)	21.37(458)	19.6	19.9	19.7	19.7
50% 이상	27.97	28.35	29.01	28.61	29.6	30.2	28.1	27.7
평균소비액	(388.45)	(409.88)	(363.51)	(412.85)				
표본수	62,799	61,143	64,435	62,946	39,000	37,304	36,992	35,120

- 註: 1) 계충분포는 일인당 가구소비(소득)수준이 적은 가구에서 많은 가구로 배열하여 최하위부터 가구의 소비(소득)를 누계하여 총 가구소비지출의 5%, 10% 구간에서 분류하여 얻은 것임.
  - 2) () 안은 구간을 구분하는 일인당 소비의 경계 값이나 연도별 평균 소비액임
  - 3) 20구간의 자세한 자료는 부표 참조

〈表 Ⅲ-2〉 都市 全家口 消費 및 勤勞者家口所得 總額의 區間別 家口員 占有率

(단위: %, 명)

							( = 1	• /0, 0)
7.11		도시 2	전가구		도시근로자가구			
구분	1996	1997	1998	1999	1996	1997	1998	1999
5% 이하	14.94	14.57	14.36	14.03	12.2	11.9	13.6	13.3
5~10%	10.01	10.09	9.70	9.68	8.5	8.5	8.7	8.9
10~20%	16.22	15.99	15.48	15.84	14.9	14.4	14.4	14.9
20~30%	12.92	13.17	13.09	13.19	12.2	12.3	12.2	12.4
30~50%	20.39	20.35	20.87	21.12	20.1	20.3	20.4	20.4
50% 이상	25.52	25.83	26.50	26.14	32.1	32.6	30.7	30.1
표본수	230,601	222,879	233,312	225,480	142,177	135,265	133,908	126,058

#### 나. 階層移動의 程度

동일 가구의 계층이동 실태를 보기 위하여 먼저 '98년 '99년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Panel화하였다. '99년의 전 가구 표본은 5,246가구이었으나 Panel화된 가구는 4,352가구로 줄었다. 이들은 '98년에 이어'99년에도 조사된 가구들이어서 계층이동 실태 및 특징을 볼 수 있다. 다만 계층이동을 보기 위하여 소득 및 소비 총액을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구간별로 나누어 분포의 변화를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계층이동은 현재의 절대적 생활수준의 위치보다는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의 전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층분석에서 이용되고 있는 최하위 소득 및 소비가구에서 최고의 가구까지의분포를 나타내는 분위별 분포가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해하기쉽기 때문이다.

< 表 Ⅲ-1> 및 <表 Ⅲ-2>의 전체 도시가구 소득 및 소비총액의 구간 별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은 중하위 및 저소득생활수준으로의 분배구조 의 하향 편의화 현상은 '98/'99년의 연간 패널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表 Ⅲ-3〉 '98年 및 '99年의 階層移動 實態(1)

(단위, %, 가구)

	1999년도 소비지출 분위							
		≤10%	10~20%	20~50%	>50%	계(가구)		
	≤10%	57.8	19.6	18.3	4.2	100.0		
	≥10%	(274)	(93)	(87)	(20)	(474)		
1998년도	10 - 20%	17.6	28.9	36.1	10.0	100.0		
소비지출		(158)	(136)	(170)	(47)	(471)		
분위	20- 50%	6.9	13.5	49.5	30.1	100.0		
		(89)	(175)	(641)	(389)	(1,294)		
	>50%	1.3	2.0	20.2	76.5	100.0		
		(28)	(43)	(426)	(1616)	(2,113)		

註: 1) 각 년도의 weight가 고려되어 있음.

첫째, <表 Ⅲ-3>은 패널가구를 10분위별 분포보다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재편성한 것으로서 저소득 및 중상위계층의 상향이동 혹은 중하위로의 전략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상위층의 76.5%는 '98년에 이어'99년에도 일인당 소비지출 분위에서 가구소비지출이 중상위 50% 이상에 머물고 있고, '98년 하위 10%의 소비계층의 57.8%는 '99년에도하위 10%의 분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빈곤층의 빈곤잔류기간은 길고, 중상위층의 경제적 위치의 유지능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증강되어 생활수준의 하향계층화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表 Ⅲ-1> 및 <表 Ⅲ-2>의 분배의 전반적 악화는 계층의 하향 이동이외에도 기존 빈곤층 및 중하위층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점유비중은 감소하고 부유층의 비중은 증가한 결과로 볼수 있다. 즉,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욱 빈곤해졌으며, 중산층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하위층에서는 그 동안의 빈곤층의 자구노력과 사회안전망 정

<sup>2) ( )</sup>안은 가구 수이고, 총 패널가구 수는 4,352임.

책효과 등으로 특히 극빈층의 계층이동이 가장 적으며, 일인당 가구소비지출분포에서 가구소비지출 하위  $10\sim20\%$ 에 속하는 상대적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상위이동을 하였다. 이에 반해  $5\sim10\%$ 의 빈곤층과 20-30%의 하위 서민층 가구들도 하향이동 보다는 상향이동이 많았다.

셋째, <表 Ⅲ-3>에서 보면, 중하위 계층의 중상위층으로의 이동은 20.4%(2,238가구 중 456가구)에 그쳐 중상위층의 중하위로의 하향이동 23.5%(2,113가구 중 497가구)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패널가구 전체적으로는 '99년에는 '98년에 비해 생활수준이 하향이동 하였고, 특히 중산층의 감소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넷째, 중산층의 감소와 더불어 빈곤에서의 탈출가구(474가구 중 200 가구인 42.2%)보다 이입가구(509가구 중 235가구인 46.2%)가 커서 패널가구의 절대 빈곤층 비율을 증대시켰다.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층 가구(10~20%)에서도 상방 이동한 가구(217가구 46.1%)보다 하방 이동하여 진입한 가구(218)가 더 많으며, 서민층(20-50%)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즉, 상방 이탈가구 389와 하방 진입가구 426) 모든 하위 계층에서 위로의 상방 이동보다는 위 계층에서 하방 이동하여 유입된가구가 더 많아 패널가구의 중 하위층화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98년에 비해 '99년 상향 이동한 패널가구는 18.5%, 이동 없는 가구는 61.3%, 그리고 중하위층 이하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20.2%이다.

〈表 Ⅲ-4〉 '98年 및 '99年의 階層移動 實態(2)

(단위, %, 가구)

							( = .1, ,	
				1999년도	소비지출분	-위		합계
		≤5%	5~10%	10~20%	20~30%	30~50%	>50%	
1998년도	≤5%	50.2	23.6	14.3	6.3	3.4	2.1	100.0
소비지출		(119)	(56)	(34)	(15)	(8)	(5)	(237)
분위	5~10%	25.7	16.0	24.9	16.0	11.0	6.3	100.0
		(61)	(38)	(59)	(38)	(26)	(15)	(237)
	10~20%	10.2	14.9	28.9	18.0	18.0	10.0	100.0
		(48)	(70)	(136)	(85)	(85)	(47)	(471)
	20~30%	2.8	6.6	21.9	21.9	27.8	19.1	100.0
		(12)	(28)	(93)	(93)	(118)	(81)	(425)
	30~50%	2.0	3.7	9.4	14.0	35.4	35.4	100.0
		(17)	(32)	(82)	(122)	(308)	(308)	(869)
	>50%	0.6	0.7	2.0	4.8	15.4	76.5	100.0
		(13)	(15)	(43)	(101)	(325)	(1,616)	(2,113)

註: 각 년도의 weight가 고려되어 있음. 계층구분의 경계 값은 부표 참조 ()안은 가구 수이고, 총 패널가구 수는 4,352임.

지금까지의 실태 분석에 의하면, 빈부격차는 두 가지 현상의 복합적 결과이다. 첫째, 사회의 총 소득 및 소비에서 상위 50%를 점유하는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表 III-1 참조). 특히 최상위 5~10% 분위의 가구가 점유하는 소득 및 소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이러한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패널가구의 분석에서보듯이 중하위층으로의 이동가구 수가 중 상위층으로의 이동가구 수보다 커서 중하위권의 가구가 두터워졌다는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상위층의 가구는 대부분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부유층이 점유하는 소득 및 소비의 비중은 증가하고, 기존의중하위층이 점유하는 비중은 감소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즉,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階層 移動 및 殘留 經驗家口의 特性

## 가. 絶對貧困層15) 貧困 脫皮 家口의 特性

## 1) 經濟活動의 特徵

생활수준이 탈피한 가구에는 취업인수가 많고, '99년 빈곤을 탈피한 가구 중 취업인수가 없는 가구는 '99년 절대빈곤층 잔류가구의 13.1% 보다 8.1%포인트가 적었다. 취업인이 없는 가구의 빈곤 탈피율은 32.6%('99년 기준 21.7%)이었지만 취업인이 있는 가구의 탈피율은 43.2%('99년 기준 40.1%)이었다.

〈表 Ⅲ-5〉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就業人員數

(단위: %)

취업인원수	유지	상향이동
게임인전구		<u> </u>
0	11.3( 13.1)	7.5( 5.0)
1	59.5( 55.5)	60.0( 59.0)
2	23.0( 26.3)	29.5( 30.5)
3	5.5( 3.6)	2.5( 5.5)
4	0.4( 1.1)	0.5( 0.0)
5	0.4( 0.4)	0.0( 0.0)
표본 계	274(100.0)	200(100.0)

註: ()안은 '99년의 비율임.

절대빈곤층에서 상향 이동은 1인, 2인 및 3인의 가구원이 취업한 가구에서 커서 각각의 빈곤탈피율은 42.4%, 48.4% 및 25.0%('99년 기 준 각각 43.7%, 45.9%, 52.4%)이었다. 또한 절대빈곤층 잔류가구에서 '99년 1인 및 3인의 취업인이 있는 가구비율은 '98년에 비해줄고 취업 인이 없는 가구원의 비율은 늘어 빈곤 탈피를 어렵게 하는 데 기여하

<sup>15) 1</sup>인당 가구소비분위 최하위 10%인 가구

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상태와 더불어 취업인 규모가 절대 빈곤층의 탈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 정규 생산직, 1~4인 피고용자가 있는 상인의 구성비율은 계층 잔류가구에서 보다 절대빈곤을 탈피한 가구에서 크다. 반면에 임시 및 일용직과 무직자의 구성비율은 잔류가구에서 훨씬 커서, 무직 및 취업 불안이 절대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임시 및 일용직의 구성비율은 '99년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빈곤탈피를 더욱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보인다.

〈表 Ⅲ-6〉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種形態 (단위: %)

	유지	상향이동
공무원	0.4( 0.4)	2.0( 1.5)
위 외에 사무직	4.0( 4.0)	8.0( 9.0)
생산직(정규직)	33.2( 32.8)	37.5( 35.5)
생산직(임시&일용직)	12.8( 15.3)	9.5( 12.5)
상인(피고용자없음)	22.6( 22.3)	23.0( 22.0)
상인(1~4인의 피고용자)	2.9( 2.9)	3.5( 4.0)
개인경영자	-	0.5( 0.5)
법인경영자	-	- ( 0.5)
무직	24.1( 22.3)	16.0( 14.5)
표본 계	274(274)	200(200)

註: () 안은 '99년의 비율임.

각 종사 직종형태의 빈곤 탈피율을 보면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의 62.5%('99년 기준 75.0%)는 '98년의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났고, 정규 생산직은 45.2%('99년 기준 44.1%), 임시 및 일용직은 35.2%('99년 기준 37.3%), 상인은 43.1%('99년 기준 41.9%), 경영자는 100%, 무직은 32.7%('99년 기준 32.2%)이어서, 빈곤 탈피 가능성은 경영자, 공무원

및 사무직에서 50%를 넘고, 기타 정규 생산직, 상인 가구의 빈곤 탈피율은 40%를 넘는데 반해, 무직 및 임시 및 일용직의 탈피 가능성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表 Ⅲ-7〉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産業 (단위: %)

	( = 11. /
유지	상향이동
0.4( 0.7)	0.0( 0.0)
0.7( 0.7)	0.0( 0.0)
18.6(18.2)	25.0(27.0)
0.4( 0.0)	0.0( 0.0)
12.4( 9.5)	13.5(12.5)
18.6(19.0)	12.5(14.0)
4.7( 8.4)	7.5( 7.0)
4.7( 4.7)	11.5(10.5)
1.8( 1.1)	1.0( 1.0)
4.7( 4.4)	4.5( 4.0)
1.1( 2.6)	3.5( 3.0)
1.1( 1.5)	3.0( 3.0)
0.4( 0.0)	0.0( 0.5)
5.5( 4.7)	3.5( 4.0)
1.5( 0.4)	0.0( 0.0)
23.4(24.1)	14.5(13.5)
	0.4( 0.7) 0.7( 0.7) 18.6(18.2) 0.4( 0.0) 12.4( 9.5) 18.6(19.0) 4.7( 8.4) 4.7( 4.7) 1.8( 1.1) 4.7( 4.4) 1.1( 2.6) 1.1( 1.5) 0.4( 0.0) 5.5( 4.7) 1.5( 0.4)

註: ()안은 '99년의 비율임.

취업을 하였어도 절대빈곤층에의 잔류 및 상향이동가구 사이에는 종사하는 산업에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은 모두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이지만, 절대빈곤층 잔류 가구에비해 상향 이동한 가구의 가구주 종사 산업은 빈곤 탈피율이 큰 제조업('98년 기준 탈피율 52.1%, '99년 기준 51.9%), 운수/창고/통신업, 음식/숙박업('98년 기준 탈피율 66.3%, '99년 기준 탈피율 61.8%), 행정및 교육업('98년 기준 탈피율 70.9%, '99년 기준 탈피율 52.2%) 등에

서 비율이 현저히 크다.

반면에 주로 절대빈곤층에 잔류한 가구에서는 빈곤 탈피율이 적은 산업의 종사 비율이 크다. 무직 및 분류 불능산업에서의 빈곤탈피율 은 33.3%('99년 기준 29.0%)이고, 도소매업 35.2%('99년 기준 35.0%),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1.8%('99년 기준 38.1%) 등으로서 적은 탈피율을 보였다. 특히 농림어업 및 자영업의 종사 가구주 가구의 빈 곤 탈피율은 0이었다.

소비수준이 빈곤을 탈피한 가구의 가구주 직업은 운전기사 및 이동 장치 조작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자 가구 등에서 1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99년에도 절 대빈곤충을 벗어나지 못한 가구에서는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 판매원, 모델 및 선전원,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 금속, 기계 및 관련기능 근로,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종사하는 주요 직업형태에도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잔류가구 가구주의 종사 비율이 '98년에 비해 '99년에 현저히 증가한 직업은 빈곤 탈피율이 39.2%('99년 기준 35.5%)에 불과한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가구이다.

절대빈곤층에서 탈피한 가구의 주요 직업인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 직업에서는 '98년 및 '99년 기준 탈피율이 각각 60% 및 51.9% 이었고,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직업에서는 '98년 및 기준 탈피율이 각각 56.6% 및 56.5%이었다. 종사자는 적어도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교육 전문가의 절대빈곤 탈피율은 100%('99년 기준 80.0%)이었다.

〈表 Ⅲ-8〉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職業

(단위: %)

	유지	상향이동
종합 관리자	1.3( 0.4)	1.7( 2.2)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0.0( 0.0)	0.6(0.5)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0.4( 4.0)	0.0(0.0)
교육 전문가	0.0( 0.0)	1.7( 1.6)
_ 기타 전문가	0.4( 0.4)	1.1( 1.1)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0.4( 0.4)	0.6(0.0)
교육 준전문가	0.4( 0.0)	0.6(1.1)
기타 준전문가	4.2( 3.4)	3.3( 3.8)
일반 사무직	2.5( 2.1)	5.5( 3.8)
	0.8( 1.3)	0.0( 0.0)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11.8(14.6)	9.4(10.8)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11.8(12.0)	7.2( 8.6)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8( 0.9)	0.0( 0.0)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자	10.1( 9.4)	11.0( 9.7)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1.4( 9.9)	8.3(7.5)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2.1( 1.7)	2.8( 2.2)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관련자	5.1( 5.6)	5.0( 3.8)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0.0( 0.4)	0.0( 0.5)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7.2( 7.3)	11.6(12.9)
	8.0( 9.0)	14.9(13.4)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11.4(10.3)	9.9(10.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0.4( 1.3)	0.0( 0.0)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노무자	9.3( 8.6)	5.0( 6.5)
# (\d\d\ 10014d\ H\d\d\	•	

註: ()안은 '99년의 비율임.

이에 반해, 농림어업 관련 직업 및 자영업에 가구주가 종사하는 절 대 빈곤층의 빈곤 탈피율은 0이다. 대인 및 보호서비스 직업에서의 탈피율은 '98년 및 '99년 기준 각각 39.2% 및 35.5%이었고, 판매원, 모델 및 선전원 직업에서는 각각 33.1% 및 35.3%이었고,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직업에서는 37.8% 및 35.7%이었다.

빈곤 탈피율이 큰 직업의 주요 순위를 '98년 기준으로 보면,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교육 전문가(100%), 일반 사무직(63.9%),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60%),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56.6%), 기타 전문가 및 준 전문가 직업에서는 50% 이상의 탈피율을 보이고 있고, 기타, 추출 및 건축기능 관련자(47.0%), 행상 및 단순 서비스(41.7%), 대인 및 보호서비스(39.2%), 금속, 기계 및 관련기능(37.8%),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33.1%),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노무(23.3%), 농림어업 관련(0%) 등이다.

절대빈곤층의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절대빈곤 탈피층과 잔류층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절대빈곤을 탈피한 가구는 잔류한 가구에 비해가구주의 무직, 가구원의 취업여부의 비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취업인이 1~3인이 있는 가구에서 절대빈곤 탈출률이 가장크고, '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인이 있는 절대빈곤가구의 43.2%는 빈곤을 탈피하였다. 반면에 취업인이 없는 가구의 67.4%는 절대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셋째, 취업인 있으면서도 절대빈곤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임시직 및 일용직이 잔류가구에 많고, 둘째, 절대빈곤층 잔류 가구가 종사하는 산업 및 직종에 있어서도 도소매업,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 스업, 자영업 및 농어업 등의 산업에의 종사비율이 빈곤 탈피가구보 다 크고, 셋째,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도 대인 및 보 호서비스, 판매원 및 선전원, 행상 및 단순서비스, 채광, 건설 및 운수 관련 노동 등이다.

넷째, 정부의 사회정책적 지원 없이도 빈곤을 탈피할 가능성은 가구주가 경영자, 사무직, 정규 생산직인 가구에서 가장 크고, 가구주가무직 및 임시 및 일용직인 가구의 탈피율이 가장 적다.

다섯째, 산업 및 직업에 있어서도, 빈곤층을 탈출한 가구는 탈피율

이 높은 산업 및 직업에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 및 교육업, 운수/창고/통신업, 제조업의 산업과 일반 사무직,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의 직업은 모두 탈피율이 '98년 기준 50%를 넘는데 반해, 절대빈곤충 잔류가구의 가구주의 주요 직업은 탈피율이 30% 대인 도소매업,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산업이나 대인 보호 서비스,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행상 및 관련 단순 노무, 금속, 기계 및 관련기능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빈곤충 탈피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一般的 特性

3~4인의 평균적 가구는 빈곤탈피 비율이 높아 전 탈피 가구의 '98 년 65.5%, '99년 62.0%에 이르렀다. 3인 가구의 '98년 기준 빈곤 탈 피율은 51.7%('99년 기준 48.8%)이었고 4인 가구는 44.3%('99년 기준 45.4%)이었다. 반면 2인 가구 및 5~6인 이상 가구의 전 탈피가구에서의 점유율은 절대빈곤층 잔류가구에서의 점유율보다 적다. 이는 노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취약성과 대규모 가구의 가구원 일인당 소비수준의 저하로 절대빈곤층 잔류 가능성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구규모 자체가 절대빈곤 탈피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99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빈곤 탈피율은 44.9%로서 3 및 4인 가구의 탈피율 보다 적었다. 그러나 3인이상의 가구에서 탈피비율은 3인 가구의 최고 탈피율 이후 6인가구 21.7%까지 감소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表 Ⅲ-9〉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規模

(단위: %)

	유지	상향이동
2인	13.1(15.7)	10.0(17.5)
3인	15.3(15.3)	22.5(20.0)
4인	39.4(36.9)	43.0(42.0)
5인	20.4(20.8)	16.5( 5.0)
6인	7.7( 6.6)	4.0( 2.5)
7인	2.9( 3.6)	3.0( 2.5)
8인	0.4( 0.0)	0.5( 0.5)
9인	0.4( 1.1)	0.5( 0.0)
10인	0.4( 0.0)	0.0( 0.0)
표본 계	274(274)	200(200)

절대 빈곤층은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절대 빈곤층 잔류가구나 탈피한 가구 모두에서 동거가구 비율은 '99년 감소하였다. 빈곤층의 가구는 동거하지 않거나 배우자 없는 경우에 빈곤탈피율(1999년 기준 각각 42.9% 및 53.4%)이 동거하는 경우의 탈피율 40.1% 보다 커서, 배우자와의 별거 및 이별이 소비생활에는 오히려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Ⅲ-10〉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配偶者 形態

(단위: %)

	유지	상향이동
배우자와 동거	88.0( 84.7)	81.0(77.5)
배우자와 동거안함	1.8( 2.9)	3.0( 3.0)
배우자 없음	10.2( 12.4)	16.0( 19.5)
표본 계	274(100.0)	200(100.0)

배우자와의 별거 및 이별은 결국 여성가구주의 비율을 높이고 이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다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가구주만을 보면, 탈피가능성의 우위가 불확실하다. 즉, '98년 기준 여성가구주의 절대빈곤 탈피율은 46.2%이어서 남성가구주 가구의 탈피율 41.4%보다 크지만, '99년 기준 절대빈곤층 탈피율은 오히려 남성가구주(42.7%)에서 여성가구주(40.4%)보다 크다.

〈表 Ⅲ-11〉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의 性別

(단위: %)

	유지	상향이동
여성가구주 비율	15.7(23.7)	18.5(22.0)

절대빈곤층에서 벗어난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잔류가구 보다적다. 그러나 빈곤탈피 가구에서 40대 연령 가구주 가구의 구성비율은 잔류가구에 비해 현저히 큰 반면에, 30대 연령 가구주 가구는 현저히 적다. 따라서 40대 연령층 가구의 절대빈곤 탈피율이 57.4%('99년 기준 54.0%)로 가장 크고 30대의 탈피율은 38.3%('99년 기준 38.2%)로 상대적으로 적다.

40대 이후는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절대빈곤 탈피율은 감소하여, 50대 36.4%('99년 기준 42.2%), 60대 33.3%('99년 기준 33.3%), 70대 이상 20.0%('99년 기준 26.3%)이고, 반면에 10-20대 가구주의 탈피율은 47.2%('99년 기준 46.0%)이다.

절대빈곤층 중 생활수준이 향상한 가구는 맞벌이 및 일반가구가 대부분이다. 맞벌이 가구는 '99년에 증가하였고 일반가구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맞벌이가구의 절대빈곤 탈피율은 43.5%('99년 기준 50.0%)로서 기타가구의 43.3%('99년 기준 42.7%)보다 크다.

〈表 Ⅲ-12〉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年齡

(단위: 세, %)

유지	상향이동
43.21(43.26)	40.81(41.87)
18(18)	20(21)
82(83)	83(84)
36(37)	43(44)
10.2( 9.9)	12.5(11.5)
45.3(44.8)	38.5(38.0)
16.8(19.0)	31.0(30.5)
10.2( 9.5)	8.0( 9.5)
11.7(11.7)	8.0( 8.0)
5.8( 5.1)	2.0( 2.5)
	43.21(43.26) 18(18) 82(83) 36(37) 10.2( 9.9) 45.3(44.8) 16.8(19.0) 10.2( 9.5) 11.7(11.7)

그러나 모자가구에서 절대빈곤 탈피율도 46.7%('99년 기준 47.1%)이고, 노인가구는 23.3%('99년 기준 19.4%)에 불과해, '99년에 생활수준이 상향 이동한 가구는 잔류 가구보다 훨씬 적다.

〈表 Ⅲ-13〉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類型

(단위: %)

	유지	상향이동
노인가구	8.4(10.6)	3.5( 3.5)
모자가구	2.9( 3.3)	3.5( 4.0)
맞벌이가구	12.8(13.5)	13.5(18.5)
기타	75.9(72.6)	79.5(74.0)

'99년에 절대빈곤층에서 탈피한 가구 중에는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으나, 빈곤탈피 가구 중 3세대가구의 비율이 '98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 세대의 높은 절대빈곤 탈피율('98년 기준 59.5%, '99년 기준 50.0%)을 반영한다. 1세대 및 2세대 가구의 절대빈곤 탈피율은 각

각 40.8%('99년 기준 45.6%) 및 41.7%('99년 기준 44.7%)이어서 3세대 가구보다 절대 빈곤탈피의 가능성이 적었다.

〈表 Ⅲ-14〉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同居世代數

(단위: %)

	유지	상향이동
1세대	10.6(11.3)	10.0(13.0)
2세대	55.1(51.1)	54.0(56.5)
3세대	10.9(14.6)	22.0(20.0)
4세대	21.9(21.5)	14.0(10.5)
5세대 이상	1.5( 1.5)	0.0( 0.0)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절대빈곤 탈피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소비수준이 상향한 가구의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유지가구에 비해 고 졸 혹은 중퇴자 이상이 많다. '98년 기준으로 학력별 절대빈곤 탈피 율을 보면 초등학교 32.2%, 중등학교 41.9%, 고등학교 43.1%, 전문대 학 52.6%, 대학교 54.1%, 대학원 75.0%이었다.

〈表 Ⅲ-15〉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教育水準

(단위: %)

	유지	상향이동
초등학교 졸업 및 중퇴	22.4(20.6)	14.4(13.2)
중등학교 졸업 및 중퇴	19.8(19.5)	19.4(22.8)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48.0(50.0)	49.7(48.7)
전문대학 졸업 및 중퇴	3.4( 4.2)	5.1( 4.5)
대학교 졸업 및 중퇴	6.1(5.3)	9.8( 9.2)
대학원 졸업	0.4( 0.4)	1.5( 1.5)

그러나 '99년 기준으로 탈피율을 보면, 중등학교 학력의 탈피율이 급증하여 상관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99년 기준 탈피율은 초등학교 31.7%, 중등학교 46.5%, 고등학교 41.5%, 전문대학 42.9%, 대학교 54.5%, 대학원 75.0%이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비율은 빈곤탈피 가구에서 크고, 이들이 절대빈 곤을 탈피할 가능성도 45.2%이어서 무주택가구의 탈피율 39.8%를 앞서고 있다. 이는 '99년 기준을 보아도 같아, 각각의 탈피율은 44.8% 및 40.5%이었다.

〈表 Ⅲ-16〉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所有 與否

(단위: %)

	유지	상향이동
주택소유	42.0(42.7)	47.5(47.5)

절대빈곤층 가구의 거주 주택의 형태에서는 '98년에 비해 '99년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빈곤탈피 가구에서 아파트의 점유비율은 잔류가구에서의 비율보다 크다. 일상적 주택이 아닌 기타의 비율은 잔류가구에서 크다.

그러나 절대빈곤 탈피율을 보면, 연립주택 및 다가구(43.1%)가 아파트 42.1% 및 단독주택 41.4%보다 약간 크고, 이는 '99년 기준을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가구의 계층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나, 극빈층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의 대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이어서, 이들 가구의 빈곤탈피 가능성은 오히려 자격미달로 영구입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다가구 및 연립주택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Ⅲ-17〉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住宅 形態

(단위: %)

	유지	상향이동
단독 주택	67.2(67.2)	65.0(65.0)
아파트	16.4(16.4)	20.0(20.0)
연립주택/다가구	13.5(13.5)	14.0(13.5)
기타	2.9( 2.9)	1.0( 1.5)

註: () 안은 '99년의 통계

빈곤을 탈피한 사글세, 월세, 보증부월세, 무상주택 거주가구의 비율 은 잔류가구 비율에 비해 적어, 절대빈곤층 탈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가 거주자는 상향 이동한 가구의 점유비율 이 커서 잔류가구에 비해 상향이동이 보다 활발하였다. 자가의 절대빈 곤 탈피율은 44.0%('99년 기준 43.8%)이어서 월세, 무상주택, 보증부 월 세, 사글세의 탈피율인 각각 41.6%('99년 기준 40.0%), 38.5%('99년 기준 53.3%), 37.9%('99년 기준 42.4%), 18.2%('99년 기준 20.0%)보다 컸다.

'99년 절대빈곤에 잔류한 가구의 주거형태에서 전세비율은 증가하 였고, 빈곤을 탈피한 가구에서는 무상주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表 Ⅲ-18〉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形態

(단위: %)

	유지	상향이동
자가	39.1(38.0)	42.0(40.5)
무상주택	2.9( 2.6)	2.5( 4.0)
사택	0.4( 0.4)	0.5(0.5)
 전세	38.7(40.5)	40.5(38.5)
보증부 월세	13.1(12.4)	11.0(12.5)
사글세	3.3( 2.9)	1.0( 1.0)
월세	2.6( 3.3)	2.5( 3.0)

절대빈곤층의 주거상태는 비록 상향 이동한 가구에서조차 전용 거 주면적이 평균 14.3평에 불과해, 면적으로 본 주거의 질은 절대빈곤층 잔류가구에 비해 향상된 것이 없으며, 최대면적은 일인당 소비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였다.

〈表 Ⅲ-19〉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 專用面積

(단위: 평)

		(2.11. 0)
	유지	상향이동
· 평 균	14.0(14.1)	14.3(14.6)
최소면적	3(2)	4(4)
최대면적	37(37)	32(32)

註: ()안은 '99년의 통계

'99년에 들어와서 절대빈곤층 잔류가구나 탈피한 가구 모두에서 월세 평가액이 '9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거주처의 월세평가액이 감소되지 않았으면, 소득 및 소비수준의 하향화와 더불어주거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수준의 악화로 인해 주거면적의 감소 혹은 전세 및 보증금이 싼 지역으로의 이동 등을통하여 궁핍한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表 Ⅲ-20〉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 評價額 - 月貰 家口 以外

(단위: 천원)

	유지	상향이동
평 균	341.0(328.7)	372.1(355.4)
최소액	0.0(0.0)	0.0(0.0)
최대액	1,350(1,200)	1,500(1,0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빈곤을 탈피한 가구는 주거형편이 잔류가구에 비해 나아서 월세 평 가액이 높다. 그러나 월세 평가액은 최대치가 150만원을 넘고 있어 빈곤탈피 가구에게도 보증금이나 전세비 등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며, 잔류가구의 월세 평가액도 탈피한 가구보다 조금 적은 34.1만 원에 이르러 부담정도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및 보증부 월세 세입가구의 월세액은 월세 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어, 절대빈곤층 잔류가구의 월세액은 '98년 약 12만원이고 '99년 에는 약 13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빈곤탈피 가구의 월세액이 잔류가 구 보다 낮은 것은 <表 Ⅲ-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을 탈피한 보 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액이 큰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 잔류가구의 평균 월세액이 '98년 약 12만원, '99년 약 13만원인 것은 당시 이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경계 값인 일인당 소비지출이 각각 20.8만원 및 23.3만원인 것으로 보아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은 가구규모가 작은 노인 및 모자가구 등 취약계층에서 특히 심하였을 것이다.

〈表 Ⅲ-21〉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額 - 保證附 月貰 및 月貰家口

(단위: 천원)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18.8(130.6)	111.8(108.4)		
최소액	10(20)	20(20)		
최대액	250(250)	270(3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22〉 絶對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傳貰 또는 保證金額 - 傳貰, 保證附 月貰 및 사글貰 家口

(단위: 천원)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5,708(15,688)	17,535(17,132)
최소액	84(100)	130(321)
최대액	60,000(60,000)	56,000(53,0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절대빈곤층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빈곤을 탈피할 가능성이 큰 가구는 가구규모 3인 및 4인 가구, 가구주 연령 40대, 모자 및 맞벌이가구 등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절대빈곤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가구는 2인 가구, 노인가구, 가족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 및 2세대의 일반가구나 5인 이상가구 등이었다.

둘째,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높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절대빈곤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보다 절대빈곤 탈피율이 높았으며, 자가 및 전세입자 등의 절대빈곤 탈피율도 월세형태의 가구 보다 높았다. 특히 사글세 입주자의 '98년 기준 빈곤 탈피율은 18.2%에 불과해이들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넷째, 주거비의 부담은 월세의 형태나 전세의 형태나 절대빈곤 잔류가구는 물론 탈피가구에서도 이들의 소비수준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주거상태도 빈곤탈피 가구에서도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 나. 相對的 貧困層(下位 10~20% 分位家口)의 階層殘留 및 移動家口의 特性

상대적 빈곤층은 절대적 빈곤층에 비해 계층이동이 매우 컸다. '98 년에 이어 '99년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머물고 있는 가구는 28.9%에 불과해 절대빈곤층의 잔류율 57.8%에 비해 현저히 적다. 상대적 빈곤 층의 이동은 특히 차상위층으로의 이동이 커서 상향이동률이 46.1%이 고 절대빈곤으로의 하향률은 25.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 1) 經濟的 特性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가구원의 취업이 1인 혹은 2인인 가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가구의 취업인 수는 상대적 빈곤층이 차상위로 이동하거 나 절대빈곤층으로 하향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어 절대빈곤층 의 탈피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상대적 빈곤층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는데 취업인이 0에서 3인까 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각 취업인 규모에서 절대빈곤층으로의 전 락률은 '98년 기준으로 각각 43.3%, 25.0%, 24.3%, 8.7%로 감소하였고, '99년 기준으로 각각 44.7%, 24.5%, 20.9%, 27.3%로 감소경향을 보였다. 차상위층으로의 상향하는 비율은 0인에서 3인의 취업에 이르기까지 '98 년 기준으로 각각 40.0%, 44.8%, 45.6%, 69.6%, 그리고 '99년 기준으로 36.8%, 43.6%, 51.4% 및 54.5%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어, 취업인 규모 가 계층 향상 및 하향에 일관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9년 기준에서 상대적 빈곤층에서 전락하거나 잔류한 가구 중에서 취 업인이 없는 가구의 구성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상향 이동한 가구에서는 2인 취업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99년 절대빈곤층으로 의 하향 이동가구에서 3인의 취업 가구비율이 '98년 1.7%에서 5.1%까지 증가한 것은 취업 불안정 가구원들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表 Ⅲ-23〉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就業人員數

(단위: %)

취업인수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0	11.0(14.4)	3.7(5.1)	5.5( 6.5)
1	59.3(53.4)	61.8(60.3)	57.6(51.6)
2	28.0(26.3)	30.1(30.1)	28.6(35.0)
3	1.7( 5.1)	3.7( 2.9)	7.4( 5.5)
4	0.0( 0.8)	0.0( 0.7)	0.9( 1.4)
5	0.0( 0.0)	0.7( 0.7)	0.0( 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상대적 빈곤층 가구주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계층이동에 관계없이 정규생산직과 상인이며, 무직인 가구도 매우 높다. 그러나 '98년이어 '99년에도 상대적 빈곤계층에 머물러 있거나 하향 이동한 가구에서는 임시 및 일용직 종사 가구의 비율도 크다.

상대적 빈곤층에서 잔류한 가구의 구성비율의 변화를 보면, 정규생 산직의 구성비율이 '99년에 뚜렷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임시 및 일용 직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상대적 빈곤 층이 '99년에도 동 계층에 잔류한 비율은 임시 및 일용직(44.1%)에서 가장 컸다. 기타 공무원 42.9%, 정규생산직 33.8%, 상인 31.4%, 공무 원 사무직 23.5%, 무직 17.9%의 순이다.

전체의 차상위층으로의 상향 이동률이 46%인 가운데, 상대적 빈곤 층에서 가장 상향이동률이 큰 직종은 '98년 기준으로 자유업자 100%, 공무원 이외의 사무직 60.8%('99년 기준 69.2%)이고 공무원 50%('99년 기준 45.5%)이었다. 기타 무직 47.8%('99년 기준 40.5%), 상인 43.8%('99년 기준 40.2%)이고 임시 및 일용직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가장 적어 35.6%('99년 기준 35.9%)이었다. 무직가구주 가구의 상향이

동이 큰 것은 상대적 빈곤층을 상향 탈피하는 데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주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表 Ⅲ-24〉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種 形態

(단위, %)

			(= 1) 11)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공무원	0.8( 0.8)	4.4( 3.7)	3.2( 2.3)
위 외에 사무직	6.8(4.2)	8.8( 8.1)	14.3(16.6)
생산직(정규직)	33.9(28.8)	33.1(37.5)	31.3(32.3)
생산직(임시·일용직)	12.7(11.9)	16.9( 8.1)	9.7(6.5)
상인(피고용자없음)	22.0(23.7)	24.3(25.7)	21.2(19.4)
상인(1-4인의 피고용자)	3.4( 3.4)	3.7( 3.7)	3.2(5.5)
개인경영자	0.5(0.5)	- ( -)	0.9(0.9)
법인경영자	- ( .5)	- ( -)	- ( -)
자유업자	- ( 0.5)	- ( -)	1.4( 1.0)
무직	19.5(27.1)	8.8(13.2)	14.7(15.7)
표본 계	118(118)	136(136)	217(217)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상대적 빈곤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하향한 가구의 가구주 직종 중에서 무직의 하향률이 가장 큰 34.3%('99년 기준 38.1%)이었고, 기타 상인 24.8%('99년 기준 26.7%), 정규생산직 24.5%('99년 기준 21.9%), 임시 및 일용직 20.3%('99년 기준 35.9%), 공무원 이외의 사무직 15.7%('99년 기준 9.6%), 공무원 7.1%('99년 기준 9.1%), 자유업 및 경영자 0% 등이었다.

〈表 Ⅲ-25〉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産業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농림업	0.8( 0.0)	1.5( 0.0)	0.0( 0.0)
어업	0.0( 0.0)	0.7(0.7)	0.0(0.0)
광업	0.0(0.0)	0.0(0.0)	0.5(0.9)
제조업	23.7(23.7)	26.5(28.7)	22.6(21.7)
전기/ 가스/ 수도업	0.0( 0.0)	0.0( 0.0)	0.5( 0.5)
건설업	20.3(15.3)	13.2(11.8)	12.9(12.9)
도소매업	15.3(14.4)	14.7(12.5)	16.1(16.1)
음식/숙박업	4.2( 3.4)	2.2( 3.7)	6.5( 7.4)
운수/ 창고/ 통신업	7.6( 7.6)	13.2(11.8)	7.8( 8.8)
금융/보험업	1.7( 1.7)	1.5( 1.5)	0.9( 0.9)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3.4(5.1)	2.2( 6.6)	6.0( 6.9)
행정	0.8( 2.5)	3.7( 3.7)	2.8( 2.8)
교육	0.8( 0.0)	3.7( 2.9)	0.9( 1.8)
보건 및 복지	0.0( 0.0)	0.0(0.0)	0.5( 0.5)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	4.2( 3.4)	5.9(5.1)	4.6( 4.6)
자영업	0.0( 0.8)	0.0( 0.0)	0.9( 0.9)
무직 및 분류불능	16.9(22.0)	11.0(11.0)	16.6(13.4)

註: ()안은 '99년의 통계

상대적 빈곤층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이다. 이 중 상대적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의 상향이동이 가장 컸던 산업은 자영업이나 보건 및 복지 등참여율이 매우 적은 직업을 제외하면, 음식/숙박업 63.6%('99년 기준64.0%), 도소매업 47.9%('99년 기준 50.7%), 제조업 43.4%('99년 기준41.2%), 건설업 40.0%('99년 기준 45.2%), 운수/창고/통신업 38.6%('99년 기준 43.2%)의 순이다.

그러나 가구주 종사산업에서는 상대적 빈곤층에서 가장 탈출가능성이 큰 산업은 건설업이어서 '98년이어 '99년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잔류한 가구 비율은 25.8%('99년 기준 25.8%)이었다. 그리고 하향 이동률이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 34.3%('99년 기준 29.0%), 무직 및 분류

불능 28.2%('99년 기준 37.1%)이었고, 기타 제조업 24.8%('99년 기준 24.6%), 도소매업 24.6%('99년 기준 24.6%), 운수/창고/통신 20.4%('99년 기준 20.5%)이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층에 잔류가능성이 큰 종사 산업의 순위는 운수/창고/통신 40.9%('99년 기준 36.4%), 제조업 31.8%('99년 기준 34.2%), 도소매업 27.4%('99년 기준 24.6%), 그리고 건설업 25.8%('99년 기준 25.8%)이다. 농림어업 및 광업은 극히 계층이동이 적은 산업으로 보인다.

상대적 빈곤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에서 '99년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잔류한 가구의 구성비율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추출 및 건축 기능자,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자 등의 순으로 크고, 차상위로 이동한 가구의 구성비율은 추출 및 건축 기능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등의 순으로 크다. 절대빈곤층으로의 하향가구의 가구주 직업은 추출 및 건축 기능자,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등의 순으로 크다.

상대적 빈곤에서 차상위로 상향 이동한 가구비율이 가장 큰 직업의 순위는 관리 및 전문직업을 제외하면, '98년 기준으로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58.1%('99년 기준 59.1%),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56.1%('99년 기준 44.9%), 추출 및 건축 기능자 49.2%('99년 기준 46.8%),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48.9%('99년 기준 50.0%), 운전기사및 이동장치 조작원 37.5%('99년 기준 42.9%) 등이었다.

상대적 빈곤층에서 절대빈곤층으로 전략한 가구비율이 큰 직업은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41.7%('99년 기준 39.3%),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자 37.5%('99년 기준 35.4%) 등이었다. 기타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29.8%('99년 기준 27.3%), 추출 및 건축 기능자 27.9('99년 기준 27.7%)% 등이다.

〈表 Ⅲ-26〉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職業形態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법인관리자	0.0( 0.0)	0.0(0.8)	0.0(0.0)
종합 관리자	2.9( 2.1)	0.0(0.8)	0.5(1.0)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1.9( 1.0)	0.0(0.0)	1.0(1.0)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0.0( 0.0)	0.0(0.0)	0.0(0.0)
교육 전문가	0.0( 0.0)	0.0(0.0)	0.5(0.5)
기타 전문가	0.0( 0.0)	0.8(0.8)	0.5(0.5)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1.0( 1.0)	0.4(0.4)	1.5(2.6)
교육 준전문가	1.0( 0.0)	2.3(0.8)	0.0(1.0)
기타 준전문가	2.9( 3.1)	4.7(4.8)	7.5(7.2)
일반 사무직	4.8( 4.1)	6.2(3.2)	10.5(10.8)
고객봉사 사무직	1.9( 1.0)	1.6(1.6)	0.5(1.0)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9.6( 7.2)	5.4(7.3)	11.5(11.8)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11.5(10.3)	7.0(7.3)	10.5(10.3)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0( 0.0)	0.0(0.0)	0.0(0.0)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자	14.4(11.3)	10.1(8.9)	14.0(10.3)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12.5(14.4)	8.5(12.1)	6.0(6.7)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2.9( 2.1)	4.7(4.0)	1.5(1.0)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관련자	8.7( 9.3)	5.4(8.1)	3.0(2.6)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0.0( 0.0)	0.0(0.0)	0.5(0.5)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8( 8.2)	9.3( 8.1)	6.5(6.2)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7( 8.2)	14.7(12.9)	8.5(9.7)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5.8(10.3)	7.8(11.3)	10.5(10.3)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0.0( 0.0)	2.3( 0.0)	0.0(0.0)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노무자	4.8( 6.2)	7.0( 4.8)	5.0(5.1)
라. ( ) 최 수 100기 회 도 기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이에 반해,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은 41.7%('99년 기준 36.7%) 및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자 26.8%('99년 기준 33.3%)는 높은 잔류율을 보였다.

'98년에서 '99년에 상대적 빈곤층에서 이동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상대적 빈곤층의 가구주는 정규 생산직, 상인, 무직의 직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의 산업, 추출 및 건 축 기능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등의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둘째, '98/'99년의 계층 이동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층에서 차상 위층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은 가구내 취업인이 많을수록 크며, 반 대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은 취업인이 적을수록 크다.

셋째, 상대적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의 상향이동은 자유업,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의 직종, 자영업의 산업에서는 거의 100%에 이르고, 기타 상인 직종, 도소매업, 제조업의 산업과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의 직업에서 가장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절대빈곤층으로의 전락률은 무직 직종, 건설업 등의 산업과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등에서 컸다.

다섯째, 그러나, 가구주가 무직, 상인의 직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상 하향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안정 가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 및 광업, 교육업 등에의 종사 가구는 상대적 빈곤층에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적은 가구들이다.

#### 2) 一般的 特性

계층이동에 관계없이 4인 가구가 주류이다. '98년에 비한 '99년의 가구분포도 비슷하지만, 절대빈곤층으로 전략한 가구에서는 3인 가구는 줄고 4인 가구가 늘었으며, 차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에서는 4인 가구는 줄고 3인 가구는 증가하여, 가구규모의 변화가 일인당 소비수준 및 계층변화에 영향을 부분적으로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상위로의 이동률은 7인 가구를 제외하면 3인 가구에서 가장 큰 48.8%('99년 기준 58.3%)를 보이고 있으며, 2인 가구의 46.0%('99년 기준 56.9%)가 다음으로 크고, 기타 4인 가구 45.7%('99년 기준 30.8%) 5인 가구 45.9%('99년 기준 38.7%), 6인 가구 34.5%('99년 기준 30.8%)

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表 Ⅲ-27〉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規模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2인	12.7(13.6)	8.8( 8.8)	10.6(17.1)
3인	20.3(13.6)	14.7(14.0)	19.4(22.6)
4인	42.4(46.6)	47.1(48.5)	44.2(40.6)
5인	17.8(18.6)	18.4(17.6)	18.0(13.4)
6인	4.2( 5.1)	10.3(8.8)	4.6( 3.7)
7인	2.5( 2.5)	0.7( 2.2)	2.8( 2.3)
8인	0.0( 0.0)	0.0 ( 0.0)	0.5( 0.5)

註: ()안은 '99년의 통계

그리고 2인부터 4인 가구까지는 상향 이동률이 잔류율이나 하향률보다 크지만, 6인 가구에서는 잔류율이 48.3%('99년 기준 46.2%)이어서 가장 크고, 상하이동보다 잔류가능성이 높았다. 4인 및 5인가구의잔류율은 30.5%('99년 기준 31.6%) 및 29.4%('99년 기준 32.0%)이다.따라서 상향이동률은 가구규모가 증대하면서 대체로 하향하는 경향을보였지만, 특히 절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은 가구규모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98년 기준의 절대빈곤층으로의 하향률은 2인 가구 30.0%, 3인 가구 27.9%, 4인 가구 23.8%, 5인 가구 24.7%, 6인 가구 17.2%이어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대규모에서 계층 이동률의 변화는 세대규모가 커짐에 따라 절대 빈곤층으로의 전략률은 감소하였다. 1세대에서 4세대까지 하향률은 각각 35.3%('99년 기준 29.3%), 27.4%('99년 기준 26.1%), 20.7%('99년 기준 22.7%), 16.7%('99년 기준 20.7%)이었다. '98년 기준 상향률은 세 대규모 증대에 따라 증가하여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상향률은 각각 41.2%('99년 기준 51.2%), 43.8%('99년 기준 44.2%), 48.9%('99년 기준 50.0%), 55.6%('99년 기준 46.6%)이었다. 주종 세대인 2세대 가구의 상대적 빈곤에의 잔류율은 28.8%('99년 기준 29.7%)이었다.

〈表 Ⅲ-28〉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同居世代數

(단위: %)

			`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1세대	10.2(10.2)	5.9( 5.9)	6.5( 9.7)
2세대	65.3(62.7)	59.6(61.8)	56.7(57.6)
3세대	14.4(16.9)	18.4(17.6)	18.4(20.3)
4세대	10.2(10.2)	14.7(14.0)	18.4(12.4)
5세대 이상	0.0( 0.0)	1.5( 0.7)	0.0( 0.0)

註: ()안은 '99년의 통계

배우자와의 별거 및 이별이 절대빈곤을 벗어나는데 비슷하게 기여한 것과 달리, 별거 가구의 상대적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의 이동률('98년 기준 50.0%, '99년 기준 64.7%)이 현저히 컸다. 동거가구의 상향 이동률은 '98년 기준 46.0%('99년 기준 44.5%)이었다.

〈表 Ⅲ-29〉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配偶者 形態

(단위: %)

			<u>.</u>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배우자와 동거	83.1(83.9)	85.3(85.3)	83.9(79.7)
배우자와 동거안함	1.7( 1.7)	2.9( 2.9)	2.8( 5.1)
배우자 없음	15.3(14.4)	11.8(11.8)	13.4(15.2)

註: ( )안은 '99년의 통계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상향 이동률도 '98년 기준 46.0%('99년 기준 50.0%)인데 비해, 여성가구주의 차상위로의 상향률은 52.6%('99년 기준 57.1%)로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가구주 상향률보다 클 것이고, 전체 남성가구주 가구의 상향률 44.8%('99년 기준 43.7%)보다 크다.

〈表 Ⅲ-30〉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의 性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여성가구주 비율	16.9(15.3)	11.8(13.2)	18.4(22.1)

註: ()안은 '99년의 통계

고령층에서 절대빈곤층 탈피율이 적었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에서 차상위로 이동률은 가구주 연령 50대 63.3%('99년 기준 58.0%), 60대 이상 48.9%('99년 기준 55.9%)로서 가구주 연령 40대 43.5%('99년 기준 45.9%)와 30대 43.3%('99년 기준 42.0%)보다 오히려 컸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절대빈곤으로의 '98년 기준 전략률이 28.9%('99년 기준 60대 29.4%)로 가장 컸으며 50대는 14.3%('99년 기준 16.0%)로 가장 적었다. 반면 30~40대는 전략률이 25% 정도이고 잔류율이 31% 정도이었다.

마찬가지로 노인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으로의 전략률이 가장 큰 40.0%('99년 기준 37.5%)이고, 차상위로 이동률은 25.0%('99년 기준 33.3%)로 가장 적다. 모자가구는 절대빈곤에서와 같이 차상위로 이동가능성이 가장 커 상향률이 53.8%('99년 기준 64.7%)이었으나, 절대빈 곤으로의 전략률이 30.8%('99년 기준 23.5%)이어서 매우 불안정한 생활상태를 보였다.

〈表 Ⅲ-31〉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年齡

(단위: 세,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균 연령	40.81(41.97)	40.45(41.31)	41.81(43.39)
10대 및 20대(%)	12.7(11.0)	10.3( 7.4)	10.6( 7.4)
30대(%)	47.5(44.9)	49.3(49.2)	43.3(40.1)
40대(%)	22.9(25.5)	25.0(26.5)	21.7(25.8)
50대(%)	5.9( 6.7)	8.0( 9.5)	14.3(13.3)
60대(%)	8.5( 8.5)	3.7( 3.7)	6.9( 8.8)
70대 이상(%)	2.5( 3.7)	3.7( 3.7)	3.2( 4.6)

註: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32〉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類型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노인가구	6.8( 7.6)	5.1( 5.1)	2.3( 3.7)
모자가구	3.4( 3.4)	1.5( 1.5)	3.2( 5.1)
 맞벌이가구	13.6(13.6)	16.9(16.9)	13.8(19.4)
기타	76.3(75.4)	76.5(76.5)	80.6(71.9)

註: ()안은 '99년의 통계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절대빈곤에서의 탈피에서와 같이 상대적 빈곤에서의 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와 표본이 불충분한 대학원을 제외하면,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98년 기준 차상위로의 이동률이 컸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98년 기준 절대빈 곤으로 전략률이 컸다. '98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의 학력별 차상위로의 상승률은 각각 53.4%('99년 기준 57.8%), 34.5%('99년 기준 33.3%), 46.8%('99년 기준 45.1%), 50.0%('99년 기준 43.5%), 51.5%('99년 기준 54.8%), 50.0%이었고, 절대빈곤으로의 전략률은 각각 19.0%, 34.5%, 24.0%, 25.0%, 21.2%, 25.0%이었다.

〈表 Ⅲ-33〉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教育水準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초등학교 졸업 및 중퇴	9.6( 9.6)	12.1(12.0)	14.4(17.2)
중등학교 졸업 및 중퇴	25.2(25.2)	19.7(17.9)	13.8(12.5)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47.8(49.5)	50.0(51.9)	50.3(48.8)
전문대학 졸업 및 중퇴	4.4( 5.3)	3.8(5.2)	4.8( 4.8)
대학교 졸업 및 중퇴	12.1( 9.5)	13.6(12.8)	15.7(15.7)
대학원 졸업	0.8( 0.8)	0.8( 0.0)	1.0( 1.0)

註: ()안은 '99년의 통계

'98년 상대적 빈곤층의 주요 거주형태는 자가와 전세이나 자가의비율은 특히 차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에서 비율이 크고, 절대빈곤으로 전략한 가구에서는 구성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비해 전세가구는 상대적 빈곤층에 잔류가 커 점유비율이 39.0%에 이른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층 중에서 차상위로의 이동률은 표본규모가 적은 사글세 및사택을 제외하면 자가가구에서 가장 큰 42.3%('99년 기준 52.0%)이고, 전세가구는 32.4%('99년 기준 40.4%)만이 상향 이동하였다.

상대적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에서 전세가구 중 48.5%('99년 기준 33.5%)와 월세가구 중 '98년 기준 58.3%는 '99년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머물러 있고, 보증부 월세가구는 잔류율도 43.6%이지만 절대빈곤으로의 전략률도 29.0%에 이르러, 차상위로 이동이 가장 적은 (27.3%) 유형이었다.

〈表 Ⅲ-34〉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形態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자가	40.7(40.7)	43.4(43.4)	53.5(53.5)
무상주택	3.4( 2.5)	1.5( 1.5)	2.8( 3.7)
사택	2.5( 2.5)	0.7( 0.7)	1.8( 1.8)
전세	33.1(35.6)	39.0(39.7)	30.4(30.0)
보증부 월세	13.6(11.9)	9.6( 9.6)	6.9( 7.4)
사글세	4.2( 4.2)	2.9( 2.2)	3.7( 2.3)
월세	2.5( 2.5)	2.9( 2.9)	0.9( 1.4)

註: ()안은 '99년의 통계

주택소유도 상대적 빈곤에서 상향 이동한 가구에서 가장 많으며, 절대빈곤으로 전락한 가구에서 가장 적은 43.2%이었다.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한 상대적 빈곤가구가 차상위로 상향한 비율은 51.2%('99 년 기준 49.8%)이지만 절대빈곤으로 전락한 비율은 20.9%('99년 기준 19.9%)이었다.

차상위로 이동한 가구에서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가구의 상향 이 동률이 50.8%('99년 기준 50.8%)로 가장 커서, 아파트가구의 상향 이 동률 46.5%('99년 기준 46.5%)를 능가하였고, 이것은 절대빈곤층에서 와 같이 입주 아파트가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점유비율이 큰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절대빈곤으로의 전락률은 단독가구에서 가장 큰 27.6%('99년 기준 48.5%)를 보여 주택형태에서 이동률에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Ⅲ-35〉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所有 與否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주택소유	43.2(44.1)	50.0(58.1)	57.6(59.9)

註: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36〉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住宅 形態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단독 주택	68.6(68.6)	58.8(58.1)	60.8(60.4)
아파트	18.6(18.6)	23.5(23.5)	21.7(21.7)
연립주택/다가구	11.0(11.0)	14.0(14.0)	15.2(15.2)
기타	1.7( 1.7)	3.7( 4.4)	2.3( 2.8)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차상위로 이동한 가구의 거주 전용면적도 상대적 빈곤층에의 잔류 가구나 절대빈곤가구로의 전략한 가구에 비해 커서, 절대빈곤층과 같 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층에서 상향한 가구의 거주 평수는 절대빈곤층에 비해 약간 클 뿐이어서 적정 면적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Ⅲ-37〉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 專用面積

(단위: 평)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4.5(14.3)	15.2(15.2)	16.3(16.1)
최소액	4(4)	3(3)	4( 4)
최대액	30(30)	31(31)	35( 35)

註: ()안은 '99년의 통계

거주 평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및 보증금 등의 월세 평가액은 상대적 빈곤층에 머문 가구의 경우에도 약 40만원에 이르러 이 계층의 최고 소비액인 일인당 26만원에 비교할 때, 주거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세 평가액은 절대빈곤으로 전략한 가구도 34.1만원이어서 기존의 절대빈곤층과 같은 부담수준을 보여 이들의 소비수준에 비해 높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99년에 들어와 평균 월세 평가액은 세 유형의 가구에서 모두 감소하여 절대빈곤 계층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의 감소 결과가 아니라면, 이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주 형태를 바꿀 수 있을 것이 다. 예컨대, 상향이동 가구에서 전세 및 보증부 월세의 비율은 '98년 에 비해 '99년에 줄고 월세의 비율은 늘었다.

〈表 Ⅲ-38〉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 評價額 - 月貰家口 以外

(단위: 천원)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341.5(334.4)	399.8(378.8)	433.8(410.2)
최소액	0.0( 0.0)	0.0( 0.0)	0.0( 0.0)
최대액	1,500(1,500)	1,700(1,200)	1,200(1,200)

註: ()안은 '99년의 통계

절대빈곤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층에서도 월세 및 보증부 월세 세입가구의 월세액은 월세 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어, 상대적 빈 곤층 잔류가구의 월세액은 '98년 약 13.8만원이고 '99년에는 약 13.3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98년 상향한 이동가구의 월세액이 잔류가구 보 다 낮고, 전세 및 보증금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잔류가구가 일인당 소비가 적은데도 월세비를 더 냄으로서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表 Ⅲ-39〉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額 - 保證附 月貰 및 月貰家口

(단위: 천원)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25.3(132.6)	138.5(133.3)	137.7(139.0)
최소액	30(30)	25( 25)	20(20)
최대액	350(350)	350(250)	300(3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40〉 相對的 貧困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傳貰 또는 保證金液 - 傳貰, 保證附 月貰 및 사글貰 家口

(단위: 천원)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6,317(15,495)	19,225(19,003)	19,039(19,065)
최소액	255(120)	25(25)	300(80)
최대액	45,000(45,000)	60,000(60,000)	60,000(60,000)

註: ()안은 '99년의 통계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이동에서 일반적 가구 특성을 종합하면, 첫째, 상대적 빈곤층의 차 상위계층으로의 이동률은 절대적 빈곤층의 상승 률 42.2% 보다 큰 46.1%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절대빈곤층으로 의 전락률도 25.1%에 이르러 계층 잔류률이 절대빈곤층(57.8%)에 비해 매우 적다.

둘째, 상대적 빈곤에서 차 상위계층으로의 이동률은 동거 세대수의 증가와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커졌다. 그리고, 가구규모 의 증대에 따라 절대빈곤으로의 전락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차 상위계층으로의 상승률도 어느 정도 감소세를 보였다.

셋째, 절대빈곤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층의 모자가구는 차상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노인가구는 절대빈곤으로 전락할 가 능성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다.

넷째, 절대빈곤으로 전략한 가구에서는 전략률은 단독주택 가구에서 가장 크고, 차상위로 이동한 가구에서는 연립/다가구주택가구의 상향이동률이 아파트 입주가구에서 보다 컸다.

다섯째, 상대적 빈곤층의 거주 평수는 상향이동한 가구에서 조차 적정수준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전세 및 보증금의 월세평가액이 나 월세액도 소비수준에 비해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 庶民層(下位 20~50%)의 殘留 및 移動 家口의 特性

#### 1) 經濟活動의 特性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서민층에 머물고 있는 계층의 비율이 49.5%에 이르고 상대적 빈곤층에 비해서는 계층 잔류율이 매우 크다. 중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30.1%로서, 상대적 빈곤층이하로 내려간 가구비율 20.4%보다는 크지만, 50% 가까이 상향이동을 보인 상대적 빈곤층에서보다는 현저히 낮다.

서민층의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이 가장 큰 가구주 종사직종은 '98년 기준으로는 경영자 및 자유업 39.0%('99년 기준 33.3%)이고 '99년 기준으로는 공무원 이외의 사무직 40.4%('98년 기준 33.3%)이었다. 기타 1-4인 피고용자가 있는 상인 31.7%('99년 기준 27.6%), 정규 생산직 30.7%('99년 기준 28.3%),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 26.5%의 순이고임시/일용직은 15.9%('99년 기준 26.4%)의 낮은 상향률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상대적 빈곤 이하 계층으로의 가장 높은 전략률을 보인 직종은 무직 31.4%('99년 기준 31.6%), 임시/일용직 29.3%('99년 기준 26.4%)이었다. 서민층 잔류율이 가장 큰 가구주 종사 직종은 '98년 기준 정규 생산직 52.0%('99년 기준 53.7%)이고 '99년 기준으로는 공무원 55.6%('98년 기준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 58.1%)이었다. 기타 경영및 자유업자 57.0%('99년 기준 40.0%) 및 임시/일용직 54.9%('99년 기준 47.3%)이었다.

〈表 Ⅲ-41〉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職種形態

	-1-1-1-	<u> </u>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공무원	3.0( 2.7)	5.5( 5.5)	5.1( 5.4)
이외의 사무직	9.5(10.6)	14.0(13.1)	19.5(19.3)
생산직(정규직)	28.0(28.4)	34.6(34.9)	33.7(30.3)
생산직(임시·일용직)	9.1( 9.1)	7.0( 6.7)	3.3(6.2)
상인(피고용자없음)	23.9(23.1)	21.7(23.9)	20.1(19.5)
상인(1-4인의 피고용자)	6.4( 6.4)	6.1( 5.9)	6.7(5.4)
개인경영자	0.8( 0.8)	0.5(0.6)	1.0( 1.3)
법인경영자	0.0( 0.0)	0.2( 0.2)	0.0(0.0)
자유업자	0.8( 0.8)	0.2( 0.2)	0.0(0.0)
무직	18.6(18.2)	10.3( 9.0)	10.5(12.6)
표본 계	264(264)	641(641)	389(389)

註: ()안은 '99년의 통계

가구원의 취업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층에서 상대 및 절대빈곤 층으로의 전략할 가능성은 적어져, 각 취업인원 규모별로 '98년 서민 층이 '99년 그 이하의 계층으로 전략한 비율은 취업인이 없는 가구의 27.9%('99년 기준 31.4%)에서 1인 취업 21.5%('99년 기준 21.1%), 2인 취업 20.0%('99년 기준 19.8%), 3인 취업 10.2%('99년 기준 11.4%), 4인 취업 7.1%('99년 기준 6.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취업인이 없는 가구의 상향 이동률이 24.6%('99년 기준 27.1%)나 되어 취업 이외의 요인이 이들의 계층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향 이동률은 1인 취업가구30.4%('99년 기준 30.5%)나 2인 가구 29.2%('99년 기준 29.4%)이어서 큰 차이가 없으며, 3인 취업가구의 상향 이동률이 '98년 기준 37.2%('99년 기준 27.8%)로 가장 크다. 4인 이상 취업가구에 대해서는 표본규모가 작아 분명하게 논하기 어렵다.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0	6.4( 8.3)	4.5( 4.5)	3.9( 4.9)
1	57.2(54.9)	52.7(52.0)	55.0(54.0)
2	33.0(33.0)	34.6(34.8)	32.6(33.2)
3	3.0( 3.4)	6.4( 7.5)	7.5( 5.7)
4	0.4( 0.4)	1.6( 1.1)	0.8( 1.8)
5	0.0( 0.0)	0.2( 0.2)	0.3( 0.5)

註: ()안은 '99년의 통계

서민층의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 중에서 중상위층으로의 이동은 행정, 교육, 보건 및 복지와 같은 산업이 가장 컸으며, 그 상향 이동률은 각각 35.2%('99년 기준 35.5%)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종사산업인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향 이동률을 보여 각각 32.4%('99년 기준 32.3%), 29.3%('99년 기준 29.1%) 및 29.2%('99년 기준 32.9%)이었다. 기타 음식 숙박업 35.5%('99년 기준 30.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34.2%('99년 기준 31.4%), 금융/보험업 29.4%('99년 기준 24.2%)로 높은 상향 이동률을 보였다.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하향 이동은 표본규모가 작은 자영업을 제외하면 '98년 기준으로는 무직 및 분류불능 산업의 29.9%('99년 기준 32.7%)와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 29.3%('99년 기준 31.6%)이 가장 컸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산업인 건설업 23.8%('99년 기준 20.3%), 도소매업 23.1%('99년 기준 21.1%)이어서 계층 상향에 못지 않은 크기의 하향률을 보였다. 반면에 주요 종사업종인 제조업에서의 하향률은 14.0%('99년 기준 15.3%)에 불과하였다.

〈表 Ⅲ-43〉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産業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농림업	0.0( 0.0)	0.0( 0.2)	0.0( 0.0)
어업	0.0( 0.0)	0.2( 0.2)	0.0( 0.0)
광업	0.4( 0.0)	0.0( 0.2)	0.8( 0.5)
제조업	15.9(17.4)	25.0(24.5)	24.9(24.9)
전기/ 가스/ 수도업	0.8( 0.4)	0.2( 0.0)	0.3( 0.3)
건설업	15.2(11.0)	12.3(10.5)	12.6(12.1)
도소매업	19.6(17.0)	16.7(16.5)	17.0(15.9)
음식/숙박업	5.3( 6.1)	4.1( 4.1)	5.7( 4.6)
운수/ 창고/ 통신업	10.2( 8.3)	11.5(11.2)	8.7( 8.7)
금융/보험업	2.3( 1.9)	2.8( 3.1)	2.6( 2.1)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4.5( 4.9)	6.2( 7.2)	6.9( 6.9)
행정	3.8( 3.4)	4.8( 4.7)	4.9( 4.9)
교육	2.3( 2.3)	2.3( 2.7)	3.1( 3.3)
보건 및 복지	0.4( 0.4)	0.8( 0.9)	1.5( 1.5)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	4.5( 4.5)	3.7( 3.3)	1.3( 1.3)
자영업	0.8( 1.1)	0.3( 0.5)	0.3( 0.3)
무직 및 분류불능	15.2(21.2)	9.0(10.5)	9.3(12.3)

註: ()안은 '99년의 통계

서민층의 상향 이동률이 큰 직업은 일반 및 기타 사무직 43.2%('99년 기준 39.6%), 각종 전문가 40.9%('99년 기준 48.9%), 각종 관리자 38.7%('99년 기준 43.8%) 등이었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많이 종사하는 각종 조작 및 조립 직업 30% 전후이고, 대인 및 보호서비스 30.0%('99년 기준 26.7%),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28.4%('99년 기준 29.7%), 행상 및 단순서비스 27.2%('99년 기준 26.4%)이었다.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이동률은 서민 계층의 주요 종사 직업 중의하나인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자에서 '98년 기준으로 가장 큰 34.5%('99년 기준 27.1%)이었고, 다음으로 주요 직업군인 대인 및 보호서비스 및 행상 및 단순서비스는 각 25.6%('99년 기준 28.3%), 및 25.4%('99년 기준 23.1%)이어서 비교적 상하 이동률이 높은 직업으로 판단된다.

〈表 Ⅲ-44〉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業形態

			( = 111 /17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법인관리자	0.0( 0.0)	0.2( 0.5)	0.0( 0.0)
종합 관리자	1.3( 1.3)	2.3( 1.8)	3.0( 3.6)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1.7( 1.3)	1.0( 1.0)	1.9( 2.7)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0.0( 0.0)	0.0( 0.0)	0.5( 0.5)
교육 전문가	0.8( 0.9)	1.0( 1.0)	2.2( 2.5)
기타 전문가	0.8( 0.9)	0.7( 0.8)	0.0( 0.0)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2.1( 2.6)	1.6( 2.5)	3.3( 3.8)
생명과학 보건 준전문가	0.0( 0.0)	0.2( 0.5)	0.3( 0.3)
교육 준전문가	2.1( 1.7)	0.8( 1.0)	0.5( 0.5)
기타 준전문가	5.8( 7.2)	8.1( 7.5)	9.2( 9.1)
일반 사무직	4.6( 4.3)	6.9(5.6)	11.9( 8.8)
고객봉사 사무직	0.0(1.3)	1.6( 1.7)	1.1( 1.6)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11.7(12.8)	8.4( 8.5)	9.2( 8.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9.2( 6.8)	9.2( 9.3)	8.4( 8.5)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0( 0.0)	0.2( 0.2)	0.0( 0.0)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자	14.6(11.1)	7.6( 7.3)	6.5( 8.0)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9(8.5)	8.5(12.1)	7.9( 7.1)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1.7( 1.7)	1.3( 1.2)	0.3(0.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관련자	4.6( 5.1)	4.9( 4.5)	1.6( 1.9)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1.7( 1.3)	1.5( 1.5)	1.6( 1.6)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2( 4.7)	9.4( 8.3)	8.1( 9.1)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12.9(12.8)	12.7(13.6)	11.4(10.2)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10.8(10.6)	8.4( 9.5)	7.9( 8.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0.0( 0.9)	0.0( 0.5)	0.0( 0.0)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노무자	1.7( 2.6)	3.6( 3.0)	3.3( 2.7)
71			

註: ()안은 '99년의 통계

서민층의 계층이동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층의 계층 잔류율 49.5%는 절대빈곤층에 비해서는 적지 만 상대적 빈곤층 28.9%에 비해서는 매우 크다. 그러나 중상위층으로 의 이동률 30.1%는 상대적 빈곤층이하로 내려간 비율보다는 적지만 상대적 빈곤층의 차상위층으로의 이동률 46.1% 보다는 매우 적었다.

둘째, 가구원의 취업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

내려간 비율은 적어졌지만, 차상위로 올라간 비율은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중상위층으로의 계층 상승에는 취업인 수이외의 비 근로소득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 취업인이 없는 서민층가 구의 27.9%('99년 기준 27.1%)가 중상위층으로 이동하였다.

셋째, 서민층에서 중상위층으로의 이동은 경영자 및 자유업 직종, 행정, 교육, 복지나 음식/숙박업종, 일반 및 기타 사무직, 각종 전문가 및 관리자 직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넷째, 서민층의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전락률은 무직 및 임시/일 용직, 무직/분류불능의 직종 및 건설 산업, 추출 및 건축기능 직업 등 에서 가장 컸다.

다섯째, 계층 잔류율은 정규 생산직,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 경영 및 자유업의 직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 산업, 기계조작원 및 조립 원,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 등에서 높았다.

## 2) 一般的 特性

서민층에서는 가구규모의 증대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 전락할 가능성은 적어져, 전락률이 '98년 기준으로 2인 가구 26.5%에서 7인 가구 7.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상위층으로의 상향 이동은 '98년 기준으로는 6인 가구 38.1%, 4인 가구 31.3%로서 가장 크고 '99년 기준으로는 2인 36.5% 및 3인 35.3%로 가장 크지만 가구규모와 분명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인당 소비수준의 중상위층으로의 이동에는 가구규모와 관계없는 다른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민층에의 잔류율은 2~3인 가구에서 적지만, 그 이상의가구에서는 대부분 50%를 상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층이동은 2인및 3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민층에서 가구내 세대수의 계층변동과의 관계는 '98년 기준으로 볼 때 가구규모 보다 분명하다.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상위층으 로의 이동률은 증가하여 1세대 24.3%('99년 기준 21.1%)에서 4세대 36.3%('99년 기준 25.5%)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며, 상대적 빈곤층으 로의 전락률은 1세대 27.8%('99년 기준 28.1%)에서 4세대 19.7%('99년 기준 29.0%)까지 감소경향을 가졌다. 계층 잔류율은 가장 큰 구성 세 대인 2세대가 51.3%로서 가장 크고, 불안정 계층은 잔류율 43.9%를 보이고 있는 4세대이다.

〈表 Ⅲ-45〉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規模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2인	14.8(12.1)	11.1(11.5)	9.5(15.7)
3인	28.4(20.8)	22.2(22.0)	24.7(27.5)
4인	40.2(46.2)	47.3(48.4)	47.8(42.7)
5인	13.6(16.3)	14.5(13.1)	13.1(10.5)
6인	1.9( 3.4)	3.3( 3.1)	4.1( 3.1)
7인	0.4( 0.4)	1.6( 1.9)	0.5(0.3)
8인	0.8( 0.8)	0.2( 0.0)	0.3(0.3)

註: ()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46〉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同居世代數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1 세대	12.1( 9.1)	8.6( 9.0)	7.2( 8.2)
2 세대	61.0(59.1)	66.9(66.3)	63.2(61.4)
3 세대	15.2(17.8)	13.6(14.4)	14.7(19.3)
4 세대	11.7(14.0)	10.8(10.3)	14.7(10.8)
5 세대 이상	0.0( 0.0)	0.2( 0.0)	0.3( 0.3)

註: ()안은 '99년의 통계

다른 저소득계층에서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일반가구가 가장 계 층 안정적인 비율('98년 및 '99년 기준 잔류율 각각 50.2% 및 51.0%)을 보인다.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도 다른 저소득층에서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에서 가장 커 33.3%('99년 기준 51.9%)를 보였다.

〈表 Ⅲ-47〉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配偶者 形態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배우자와 동거	84.1(84.5)	87.1(86.9)	85.3(80.5)
배우자와 동거안함	3.0( 3.8)	2.2( 2.3)	2.8( 6.9)
배우자 없음	12.9(11.7)	10.8(10.8)	11.8(12.6)

註: ()안은 '99년의 통계

배우자가 없는 가구 25.3%('99년 기준 32.9%)와 있는 가구 29.9%('99년 기준 28.7%)는 연도기준에 따라 중상위층으로의 상승률에서 우열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서민층 여성가구주의 계층 상승률은 '98년 기준 29.9%, '99년 기준 32.5%이어서 남성가구주의 '98년 기준 30.1%과 '99년 기준 29.5%와 우위가 불확실하다.

이에 반해 계층 전략률은 23.2%('99년 기준 23.7%)로서 남성가구주 가구의 20.0%('99년 기준 19.7%) 보다 커서 저소득계층에서와 동일한 상태이어서,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으로 보인다.

〈表 Ⅲ-48〉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의 性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여성가구주 비율	15.5(20.5)	12.9(15.6)	13.6(19.0)
# ( \d) 0 1001 d)	E -11	•	•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서민층 가구주 연령이 10~20대 및 40대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을 보여 각각 33.6%('99년 기준 32.5%) 및 32.4%('99년 기준 32.8%)이었다. 특히 40대 가구주 가구는 상대적 빈

곤 이하의 계층으로의 전략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17.8%이어서 안정적 인 세대로 볼 수 있다.

10~20대는 상하향 이동률이 가장 큰 가장 불안한 계층이어서 계층 잔류율이 가장 적은 40.1%('99년 기준 42.5%)이었다. 이에 반해 30대, 40대 및 50대 가구주 가구는 계층 잔류율이 각각 52.1%('99년 기준 50.9%), 49.9%('99년 기준 49.2%), 50.8%('99년 기준 52.1%)이어서 상향 안정적인 가구로 볼 수 있다.

60대 이상의 노인가구주 가구는 전락률이 26.1%('99년 기준 27.3%)이어서 10~20대와 같이 전락률이 크나, 상향 이동률이 27.3%('99년 기준 25.3%)이어서, 잔류율은 46.4%('99년 기준 47.5%)로 비교적 서민층에의 안정 비율이 높다.

〈表 Ⅲ-49〉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年齡

(단위: 세,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균	40.8(41.7)	41.1(41.9)	40.9(41.7)
최소 연령	20(20)	17(18)	21(20)
최고 연령	79(80)	84(85)	74(74)
10대 및 20대(%)	15.2(11.4)	9.5( 8.0)	13.1(10.0)
30대(%)	39.7(41.3)	43.1(41.3)	38.3(37.8)
40대(%)	23.1(25.0)	26.7(28.1)	28.5(30.9)
50대(%)	13.7(12.1)	14.6(15.3)	14.2(14.9)
60대(%)	6.4( 8.3)	5.3( 5.7)	5.6( 5.4)
70대 이상(%)	1.9( 1.9)	0.8( 1.6)	0.3( 1.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노인으로만 구성된 서민층 노인가구는 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이 절대적으로 큰 40.7%('99년 기준 34.4%)인 반면 중상위층으로의 상향 이동률은 18.5%('99년 기준 31.3%)로 가장 적어 하향 안정의 가구로 볼 수있다.

이에 비해 모자가구는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이 36.8%('99년 기준 54.3%)로 맞벌이가구의 28.5%('99년 기준 30.6%)나 기타 가구의 30.9%('99년 기준 29.1%)를 능가하여 가장 활발한 계층 상승을 보일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전락률도 5.3%('99년 기준 17.1%)에 그쳐 가장 상향 안정적 가구이다.

이에 반해 맞벌이 가구는 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은 17.6%('99년 기준 16.9%)로 낮지만 중상층으로의 상승률도 모자가구나 기타가구에 비해적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었다.

〈表 Ⅲ-50〉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類型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노인가구	4.2( 4.2)	1.7( 1.7)	1.3( 2.6)
모자가구	3.0( 2.3)	1.7( 1.6)	1.8( 4.9)
 맞벌이가구	17.8(18.2)	22.5(23.2)	19.5(22.4)
 기타	75.0(75.4)	74.1(72.5)	77.4(70.2)

註: ()안은 '99년의 통계

서민층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98년 기준으로 볼 때, 서민층 이하의 생활계층에서와 같이 계층 이동률의 방향과 비교적 분명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에서부터 대학원 졸업에 이르기까지 서민층의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전략률은 24.0%에 서부터 14.3%까지 감소세를 뚜렷이 하고 있다. 중상위층으로의 이동에서는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26.8%에서부터 대학원 졸업의 42.9%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가구주 가구는 하위 계층으로의 이 동률이 적을 뿐 아니라 상향 이동률도 컸다. 예컨대, 고등학교 이하 의 학력 가구주 가구의 상향 이동률은 경향이 뚜렷하지 못하여 '99년 기준으로도 27.7~29.3% 사이에 있으나, 전문대 이상에서는 37.4~49.1% 사이에 있다.

반면 초등학교 학력가구주의 가구는 상향 이동률도 29.6%로 높고 전략률도 가장 커 상대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었다. 그리고 대 학교 및 대학원 학력의 가구주 가구는 상향률이 커 상향 안정적인 계층이었다.

〈表 Ⅲ-51〉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教育水準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초등학교 졸업 및 중퇴	11.3(12.2)	9.0( 9.3)	9.6(8.5)
중등학교 졸업 및 중퇴	15.3(15.6)	15.5(16.3)	14.2(15.3)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54.3(54.2)	52.1(50.5)	44.9(46.1)
전문대학 졸업 및 중퇴	5.8( 6.2)	7.9(8.4)	8.8( 9.6)
대학교 졸업 및 중퇴	12.5(11.0)	14.6(14.1)	20.9(18.2)
대학원 졸업	0.8( 0.8)	0.9( 1.4)	1.6( 2.3)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서민층 거주형태에서 볼 때 월세 및 사글세 가구에서 가장 커 중상 위층으로의 상향 이동률은 각각 20.0%('99년 기준 13.6%) 및 18.5%('99년 기준 25.9%)로서 매우 적은 반면, 빈곤층으로의 전락률은 가장 커 각각 40.0%('99년 기준 37.0%) 및 37.0%('99년 기준 27.3%) 뚜렷한 하향 계층화를 보였다. 그러나 자가 및 전세가구는 중상위층 으로의 상승률이 각각 32.8%('99년 기준 32.6%) 및 28.2%('99년 기준 28.0%)로 매우 큰 비율을 보인 대신, 하위층으로의 전락률은 각각 18.2%('99년 기준 18.1%) 및 22.5%('99년 기준 23.0%)로서 낮은 비율 을 보여 상향 안정을 보였다.

주택소유여부도 계층변동에 분명한 차이를 주어 주택을 소유한 가 구는 상향이동률이 32.3%('99년 기준 32.7%)로서 무소유가구의 26.9%('99년 기준 26.1%)보다 낮고, 계층 전락률은 17.2%('99년 기준 17.6%)로서 무소유가구의 24.9%('99년 기준 24.6%)보다 적어서 주택소 유여부가 서민층의 계층변동과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表 Ⅲ-52〉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形態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자가	47.3(46.6)	52.3(52.1)	57.8(56.8)
무상주택	1.9( 3.0)	2.7( 2.8)	1.5( 2.1)
사택	0.8( 0.8)	0.9( 0.9)	0.8( 0.8)
전세	35.6(36.7)	32.1(32.3)	30.3(30.3)
보증부 월세	8.3(6.8)	9.2( 8.3)	7.5( 7.5)
사글세	3.8( 3.8)	1.9( 1.6)	1.3( 1.8)
월세	2.3( 2.3)	0.9(2.0)	0.8( 0.8)

註: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53〉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所有 與否

(단위: %)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주택소유	49.6(51.9)	59.4(60.2)	62.7(65.3)

註: ()안은 '99년의 통계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서민층 가구의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은 가장 큰 34.6%('99년 기준 34.9%)이었고,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전락률은 13.2%('99년 기준 13.3%)로 가장 적으며, 계층 잔류율도 52.2%('99년 기준 52.6%)로 가장 커서, 가장 상향 안정적인 주택 형태의 가구이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은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이 가장 적은 27.9%('99년 기준 28.0%)이고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전략률은 가장 큰 23.5%('99년 기준 23.6%)이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다.

〈表 Ⅲ-54〉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住宅 形態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단독 주택	60.6(61.0)	51.5(51.5)	48.8(49.1)
아파트	18.2(18.2)	29.6(29.6)	32.4(32.4)
연립주택/다가구	18.6(17.8)	16.2(16.2)	15.9(15.9)
기타	2.7( 3.0)	2.7( 2.7)	2.8( 2.6)

註: ()안은 '99년의 통계

아파트 입주가구를 중심한 서민층의 중상위 소비수준으로의 향상에 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용주거면적은 절대빈곤층의 상향가구의 평균 보다 불과 3.3평이 넓은 17.6평에 불과하다. 계층잔류가구의 전용 평 수도 상향가구와 거의 같은 16.8평으로서 절대빈곤 유지가구의 14평 보다 2.8평이 클 뿐이어서 4인가구가 주류인 서민층의 거주 면적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Ⅲ-55〉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 專用面積

(단위: 평)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5.9(15.9)	16.8(16.8)	17.6(17.6)
최소액	3(3)	3(3)	3(3)
최대액	40(50)	45(45)	48(48)

註: ()안은 '99년의 통계

좁은 주거면적에 비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다른 계층에서와 마찬 가지로 매우 크다. 이들 계층의 상한 값인 일인당 소비수준 '98년의 40.6만원에 비교할 때 상향이동가구의 월세 평가액 47.7만원은 물론 월세액 16.6만원도 적지 않은 것이며, 계층 하향가구(상한 소비수준 30.6만원)의 15.3만원은 더욱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9년에는 이들 계층에서 모두 월세액이 올라 월세가구의 부담을 증대시켰다. 또한 서민층 잔류가구의 보증금액은 상향가구 보 다 불과 약 170만원 싸고 상대적 빈곤층에의 잔류가구의 보증금 보다 약 200만원 비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큼을 알 수 있다.

〈表 Ⅲ-56〉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 評價額 -月貰家口 以外 (단위: 천원)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416.6(395.9)	451.9(434.2)	477.3(451.8)
최소액	0.0(0.0)	0.0(0.0)	0.0(0.0)
최대액	2400(1800)	1500(1650)	1800(18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57〉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額

(단위: 천원)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53.4(159.0)	144.3(148.8)	165.7(169.0)
최소액	20(34)	30(20)	30(30)
최대액	350(350)	400(400)	420(4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58〉 庶民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傳貰 또는 保證金液 — 傳貰, 保證負 月貰 및 사글貰 家口

(단위: 천원)

	하향이동	유지	상향이동
평 균	19,464(19,394)	21,743(21,757)	23,460(22,751)
최소액	600(600)	250(419)	108(200)
최대액	75,000(65,000)	75,000(75,000)	60,000(60,000)

註: ()안은 '99년의 통계

서민층 가구의 계층이동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서민층 가구의 가구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 전락률은 감소 하나, 중상위층으로의 상향 이동률은 가구규모와 뚜렷한 관계를 보이 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구내의 세대수는 서민층의 계층이동과 보다 분명한 관계를 보여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 은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전락률은 감소하였다.

둘째, 서민층의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가구주 연령 40대 가구, 모자가구 등에서 가장 컸고, 상향이동은 적고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전락률은 큰 가장 불안한 서민층은 배우자와 별거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 등이었다.

셋째, 초등학교 학력의 가구주 가구나 월세 및 사글세의 가구, 주택 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은 상대적 빈곤 층으로의 전락률은 크고 중상위층으로의 이동률은 적은 계층 불안정 계층이었다.

넷째, 대학 및 대학원 학력의 가구주 가구, 자가 및 전세 가구, 주 택소유가구, 아파트 입주가구 등은 전락률은 적고 중상위층으로의 이 동률은 큰 상향 안정적인 서민층이었다.

다섯째, 서민층의 가구특성이 계층이동과 상대적으로 분명한 관계 를 보이는 특성은 전락률에서는 가구규모, 가구주 학력이고, 상하향의 양방향에서 가구내 세대수뿐이다.

# 라. 中上位層의 殘留 및 移動 家口의 特性

중상위층가구의 중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은 23.5%로서 다른 하위 계층에 비해 계층 안정성이 크나, 이는 다른 계층의 중상위층으로의 이동에 비해 커서 중상위층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았다.

# 1) 經濟活動의 特性

다른 소비계층의 결과에서 유추해보면, 중상위층 가구 내에 취업인수가 많으면 중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은 떨어지나 3인 취업 가구의 전략률이 2인 이하 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중하위층으로의 전략에 다른 변수가 주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취업인이 없는 중상위층 가구는 중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이 가장 큰 26.8%('99년 기준 29.7%)이었고, 1인 취업가구는 25.5%('99년 기준 24.5%)이었다. 그러나 3인 취업가구는 25.54%('99년 기준 29.1%)이지만 2인 취업 가구의 전략률은 20.4%('99년 기준 19.7%)이어서, 취업 이외에 취업의 질이나 소비수준을 감소시키는 다른 요인이 취업의 소비수준 증대효과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表 Ⅲ-59〉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就業人員數

취업인원수	유지	하향이동
0	5.1(6.3)	6.0(8.7)
1	49.8(52.4)	55.3(55.3)
2	39.5(35.6)	33.0(28.4)
3	4.7(4.8)	5.2(6.4)
4	0.8(0.9)	0.2(1.0)
5	0.1(0.0)	0.2(0.2)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중상위층 가구주가 종사하는 직종에서 중하위층으로의 이동률이 가장 큰 것은 임시/일용 생산직 46.7%('99년 기준 32.9%)이고, 기타 정규생산 직 30.2%('99년 기준 30.2%), 무직 29.0%('99년 기준 31.1%), 피용자 없는 상인 27.0%('99년 기준 26.5%)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상위 층 잔류가 가장 큰 직종은 경영자 및 자유업자 92.9%('99년 기준 91.6%) 이고, 공무원 86.1%('99년 기준 86.8%), 기타 사무직 82.4%('99년 기준 84.0%), 1~4인 고용의 상인82.1%('99년 기준 79.0%)이었다.

〈表 Ⅲ-60〉 中上位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種 形態 (단위: %)

	유지	하향이동
공무원	11.1( 9.7)	5.8( 4.8)
위 외에 사무직	24.6(23.4)	17.1(14.5)
생산직(정규직)	19.6(18.8)	27.6(26.6)
생산직(임시\$일용직)	2.0( 2.9)	5.6(4.6)
상인(피고용자없음)	17.6(17.8)	21.1(20.9)
상인(1-4인의 피고용자)	8.8( 9.1)	6.2(7.8)
개인경영자	2.7( 3.0)	0.6( 1.0)
법인경영자	1.4( 1.4)	0.2( 0.0)
자유업자	0.8( 1.0)	0.4( 0.6)
무직	11.5(13.0)	15.3(19.1)
표본 계	1,616(1,616)	497(497)

註: ()안은 '99년의 통계

중상위층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에서 농림어업 및 광업은 무직 및 분류불능, 음식/숙박업산업과 더불어 중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이 가장 커서, 전략률이 각각 40.0%('99년 기준 30.0%), 38.2%('99년 기준 30.2%) 및 34.5%('99년 기준 34.8%)에 이른다. 이 이외에도 건설업 29.7%('99년 기준 26.7%) 제조업 25.6%('99년 기준 22.5%),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5.6%('99년 기준 20.7%) 등도 높은 전략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중상위층의 유지율이 큰 산업은 행정, 교육, 보건 및 복지 85.8%('99년 기준 85.1%), 금융/보험업 83.0%('99년 기준 83.5%),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8.2%('99년 기준 76.4%), 도소매업 77.1%('99년기준 75.7%), 운수/창고/통신업 76.3%('99년 기준 75.9%) 등이었다.

〈表 Ⅲ-61〉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産業

(단위: %)

	유지	하향이동
농림업	0.2( 0.2)	0.4( 0.4)
어업	0.1( 0.1)	0.2( 0.2)
	0.1( 0.1)	0.2( 0.0)
 제조업	18.2(17.9)	20.3(16.9)
전기/ 가스/ 수도업	0.4( 0.3)	0.8( 0.4)
건설업	8.8( 7.5)	12.1( 8.9)
도소매업	17.7(17.5)	17.1(18.3)
음식/숙박업	2.2( 2.8)	3.8( 4.8)
운수/ 창고/ 통신업	8.8( 8.8)	8.9( 9.1)
금융/보험업	4.8( 4.4)	3.2( 2.8)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7.1( 7.4)	6.4( 7.4)
행정	7.0( 6.6)	4.0( 3.4)
교육	7.6( 7.1)	3.6( 3.4)
보건 및 복지	1.4( 1.5)	1.0( 1.6)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	3.8( 4.3)	4.2( 3.6)
자영업	0.1( 0.2)	0.2( 0.6)
무직 및 분류불	11.6(12.9)	13.5(18.1)
	<u> </u>	· · · · · · · · · · · · · · · · · · ·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중상위층 가구주의 직업 중에서 가구소비가 중하위층으로의 전락한 비율은 '98년 기준으로는 농림어업, 광업 및 건설업 등과 관련된 노무 자가 44.7%('99년 기준 30.0%)로 가장 크고, '99년 기준으로는 정밀, 수공예 등과 기타 기능 및 관련된 기능 45.2%('98년 기준 43.6%)로서 가장 크다. 기타 추출 및 건축 기능 35.5% 등에서 전략률이 높다.

〈表 Ⅲ-62〉 中産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從事 職業 形態 (단위: %)

		(211.70)
	유지	하향이동
법인관리자	1.7( 2.0)	0.7( 0.0)
종합 관리자	6.2( 6.3)	2.0( 1.8)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3.0( 2.4)	2.0( 1.4)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1.1( 1.0)	0.0( 0.2)
교육 전문가	6.0( 6.0)	2.6( 2.5)
기타 전문가	1.5( 1.5)	0.4( 0.7)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2.2( 3.0)	2.0( 2.3)
생면과학 및 보건 관련 준존문가	0.3( 0.1)	0.4( 1.1)
교육 준전문가	0.9( 1.0)	0.7( 0.9)
 기타 준전문가	12.2(14.7)	7.2( 7.5)
일반 사무직	12.0( 9.7)	11.1( 8.2)
고객봉사 사무직	2.1( 1.6)	2.0( 1.8)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7.1( 7.5)	8.5(10.7)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11.0(10.2)	9.6(10.5)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0( 0.1)	0.4( 0.5)
	4.3( 3.9)	7.6( 5.7)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근로자	6.3( 6.0)	9.0( 6.6)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0.3( 0.4)	1.3( 1.8)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관련자	2.1( 2.1)	4.6( 4.8)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0.9( 1.0)	1.5( 1.8)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5( 4.6)	5.5( 5.9)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7.2( 6.9)	10.7(1 1.2)
행상 및 단순서비스 근로자	5.9( 6.3)	6.8( 9.6)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0.1( 0.1)	0.2( 0.5)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노무자	1.2( 1.6)	3.3( 2.1)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이에 반해, 중상위층의 유지율은 각종 관리직 90.8%('99년 기준 93.7%), 각종 전문직 88.2%('99년 기준 88.4%), 각종 준전문가 83.2%('99년 기준 84.8%) 등에서 높았고, 중상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인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78.8%('99년 기준 76.0%), 사무직 77.8%('99년 기준 78.5%) 등에서도 유지율이 높았다.

중상위 소비계층의 계층이동 상태를 종합하면, 첫째, 중상위층의 대부분의 가구는 중하위층으로 전략하고 있지 않지만, 중하위층에서 중상위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중하위층으로 전략하여, 빈부격차의 확대와 중산층의 축소에 기여하였다.

둘째, 중하위층으로의 전락률은 취업인이 없는 가구에서 가장 크지만, 1인 및 3인의 취업인이 있는 가구에서도 비슷한 전락률을 보여, 취업의 질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2인 가구의 전락률은 3인 가구보다 적어 취업인 규모이외에 전락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주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취업을 하여도 서민층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종, 농림어업 및 광업 등의 산업, 그리고 농림어업, 광업 및 건설업 등의 노무와 정밀, 수공예, 기타 등과 관련된 기능에 종사의 경우는 그 가구의 중하위 층으로의 전략률이 크게 높았다.

넷째, 가구주가 경영자 및 자유업,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 1-4인 이상 고용 상업인 직종, 행정, 교육, 보건 및 복지, 금융/보험 산업, 그리고 각종 관리직, (준)전문직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는 중상위층을 유지하는 비율이 컸다.

## 2) 一般的 特性

중상위층의 가구규모나 가구 내 세대수의 변화는 '99년 기준으로 할 때 중하위층으로의 전락률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가구규모 가 2인에서 6인 이상 가구에 이르기까지는 17.4%에서 64.1%까지 전락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98년 기준으로 가구원 규모가 6 인 이상인 중상위층 가구의 전략률 32.1%로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 는 2인가구의 전락률(25.6%)이 큰 등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전락률(3인 22.6%, 4인 22.3%, 5인 23.2%)은 가구규모 이외의 취 약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Ⅲ-63〉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規模

(단위: %)

	유지	하향이동
2인	23.9(24.3)	26.8(16.7)
3인	29.0(30.9)	27.6(30.6)
4인	35.8(35.0)	33.4(36.4)
5인	8.8(7.7)	8.7(11.3)
6인	2.0( 0.4)	2.6( 3.6)
7인	0.4( 0.4)	0.8( 1.0)
8인	0.0 ( 0.1)	0.2( 0.4)

註: ()안은 '99년의 통계

세대수에서도 '99년 기준으로는 1세대 하향률 16.2%에서 4세대 30.9%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98년 기준으로는 3세대 가구의 전락률 28.5%가 가장 크고, 1세대(24.5%) 및 4세대 가구(24.4%)는 비슷하여 세대수 이외의 다른 설명 요인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없는 중상위층 가구의 31.2%('99년 기준 30.8%)는 중하위층 으로 전략하여 별거 가구의 전략률 24.1%('99년 기준 18.5%)나 동거가 구 22.7%('99년 기준 23.0%)를 크게 능가하고 있어, 서민층 가구에서 별 거가구의 전락률이 가장 컸던 것과는 다르다. 이는 별거 및 이별가구의 중상위층으로의 진출 및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다.

〈表 Ⅲ-64〉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同居世代數

	유지	하향이동
1 세대	19.4(18.5)	20.5(11.7)
2 세대	59.3(59.6)	53.5(58.6)
3 세대	13.8(15.4)	17.9(19.7)
4 세대	7.5( 6.4)	7.8( 9.3)
5 세대 이상	0.0( 0.1)	0.2( 0.8)

註: ()안은 '99년의 통계

마찬가지로 여성가구주의 중상위층 가구의 26.6%('99년 기준 25.6%) 는 '99년 중하위층으로 전략함으로써 남성의 전략률 23.0%('99년 기준 23.1%)를 능가하였고, 이는 별거 및 이별가구의 동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表 Ⅲ-65〉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配偶者 形態

(단위: %)

		(2 11 70)
	유지	하향이동
배우자와 동거	86.4(85.1)	82.3(82.7)
배우자와 동거안함	5.1( 6.0)	5.2( 4.4)
배우자 없음	8.5( 8.9)	12.5(12.9)

註: ( )안은 '99년의 통계

## 〈表 Ⅲ-66〉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의 性

(단위, %)

여성가구주 비율 13.7(16.2)	16.1(18.1)

註: ()안은 '99년의 통계

중상위층에서 가구주 연령이 10~20대나 60대 이상인 가구의 중하 위층으로의 전략률이 커서, 각각 31.3%('99년 기준 30.6%) 및 27.5%('99년 기준 36.7%)에 이른다. 이에 비해 40대 및 50대는 중상위 층에의 잔류율이 각각 80.7%('99년 기준 80.7%) 및 80.5%('99년 기준 80.0%)에 이르러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表 Ⅲ-67〉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年齡

(단위: %)

	유지	하향이동
평균(세)	43.6(44.4)	42.0(42.8)
최소 연령(세)	18(19)	15( 16)
최고 연령(세)	81(83)	81( 82)
10대 및 20대(%)	9.8( 8.4)	14.5(12.1)
30대(%)	28.1(26.5)	33.4(33.0)
40대(%)	32.9(33.3)	25.5(25.9)
50대(%)	21.2(22.1)	16.7(17.9)
60대(%)	7.3( 8.5)	8.1( 8.9)
70대 이상(%)	0.7( 1.2)	1.8( 2.2)

註: ()안은 '99년의 통계

가구주 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상위층 노인가구는 '98년 기준으로 할 때 중하위층으로 전략한 비율이 27.7%로 가장 크고, '99년 기준으로 할 때 모자가구의 전략률이 24.3%로서 기타가구의 25.5% 다음으로 크다. 따라서 노인 및 모자가구가 중하위층에서와는 달리 중상위에서 하위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맞벌이 가구의 82.9%('99년 기준 83.0%)는 '99년에도 중상위 층 소비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表 Ⅲ-68〉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類型

	유지	하향이동
노인가구	2.9( 3.2)	3.6(2.8)
모자가구	3.0( 3.3)	3.4( 3.4)
맞벌이가구	26.4(23.8)	17.7(15.9)
기타	67.8(69.8)	75.3(77.9)

註: ()안은 '99년의 통계

중상위층의 가구주 학력에서 전문대 학력 소유 가구는 그 이하의 학력 가구에 비해서도 중하위층으로의 전락률('98년 및 '99년 기준 각 각 28.0% 및 27.5%)이 커서 중하위 계층 특히 빈곤층에서 나타난 학 력수준의 전락률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表 Ⅲ-69〉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家口主 教育水準

(단위: %)

	유지	하향이동
초등학교 졸업 및 중퇴	5.8( 6.0)	10.8(11.4)
중등학교 졸업 및 중퇴	9.7( 9.8)	16.5(15.3)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42.1(41.7)	43.9(43.8)
전문대학 졸업 및 중퇴	5.9( 6.4)	7.4( 7.9)
대학교 졸업 및 중퇴	31.8(30.4)	20.4(20.6)
대학원 졸업	4.7( 5.7)	1.0( 1.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그러나 중상위층에서도 가구주 학력이 초등학교인 가구의 중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은 36.5%('99년 기준 37.0%)에 이르러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 가구의 전략률 각각 24.3%('99년 기준 32.5%) 및 24.3%('99년 기준 24.4%)를 크게 능가하였다. 대학교 학력의 가구는 16.4%('99년 기준 17.2%) '99년에 중하위층으로 전략하였다.

중상위층 가구의 주거상태에 따라 중하위층으로의 전략이 크게 차 이가 있었다. 즉, 자가가구의 전략률은 가장 적은 19.4%('99년 기준 19.5%)이었지만, 보증부 월세, 무상주택 및 사택, 월세 가구의 전락률 은 각각 37.4%('99년 기준 7.1%), 35.1%('99년 기준 30.2%), 33.3%('99 년 기준 45.5%)이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전세가구의 전락률도 평 균을 넘는 27.9%이었다. 따라서 자가 이외의 거주형태에서 중상위층 가구는 소비수준이 중하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表 Ⅲ-70〉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形態

(단위: %)

	유지	하향이동
자가	65.1(65.0)	50.9(51.1)
무상주택	0.9( 1.2)	1.2( 1.4)
사택	0.6( 0.7)	1.4( 1.2)
 전세	26.1(25.9)	32.8(32.8)
보증부 월세	5.4( 5.3)	10.5(10.3)
사글세	1.6( 1.5)	2.2( 2.2)
월세	0.4( 0.4)	1.0( 1.0)

註: ()안은 '99년의 통계

이러한 현상은 주택소유여부에서도 나타나 주택을 소유한 중상위층 가구는 중하위층으로의 전락률이 19.5%('99년 기준 20.1%)이나, 주택 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는 32.5%('99년 기준 31.6%)에 이르렀다.

〈表 Ⅲ-71〉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所有 與否

	유지	하향이동
 주택소유	72.9(73.6)	57.5(60.4)
=1. ( ) a) ( +0.01 ] a) = -1)	, ,	` '

註: ()안은 '99년의 통계

중하위 이하의 소비계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 중상위층가 구의 계층안정성이 가장 커, 이들이 '99년에도 중상위층에 머무른 가구 비율은 80.9%('99년 기준 80.9%)로서 단독가구 74.1%('99년 기준 73.9%)를 능가하였다. 반면에 연립/다가구주택 거주 중상위층 가구의 30.2%('99년 기준 29.4%)는 중하위층으로 전략하여 중하위 계층 이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불안한 계층이었다.

〈表 Ⅲ-72〉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居住 住宅 形態

(단위: %)

	유지	하향이동
단독 주택	44.1(43.6)	50.1(50.7)
아파트	43.4(43.4)	33.4(33.4)
연립주택/다가구	10.7(10.7)	15.1(14.5)
기타	1.8( 2.3)	1.4( 1.4)

註: ()안은 '99년의 통계

1인당 소비수준인 중상위층의 전용 주거면적도 21평에 그치고, 중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전용 거주면적은 17.4평으로서 유지 가구에 비해 뚜렷이 적으나 중하위층 중 상향 이동한 가구의 주거 면적과는 비슷하다.

〈表 Ⅲ-73〉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住宅 專用面積

(단위: 평)

	유지	하향이동
평 균	21.0(21.0)	17.4(17.4)
최소액	3(3)	2(2)
최대액	100(80)	45(64)

註: ()안은 '99년의 통계

월세 평가액도 중하위로 내려 간 가구의 값은 중하위층 유지 가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중상위층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월세 평가액 64만 4천원은 중하위에서 상향 이동한 가구의 평균 월세 평가액 47만 7천 원 보다 크게 많아 한계 계층과 일반 중상위 계층 사이에 주거상 태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Ⅲ-74〉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 評價額

(단위: 천원)

	유지	하향이동
평 균	644.4(616.7)	450.9(434.0)
최소액	0.0(0.0)	0.0 (0.0)
최대액	5200(5000)	1800(1500)

註: ()안은 '99년의 통계

〈表 Ⅲ-75〉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月貰額

(단위: 천원)

	유지	하향이동
평 균	177.6(178.1)	157.2(152.4)
최소액	20 (20)	32 (32)
최대액	650(650)	400(3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계층간의 주거상태의 차이는 양 계층의 보증금액의 차이에서도 나타나, 중상위층 유지가구의 보증금액 약 3057만원은 중하위에서 상향이동한 가구의 보증금액 2346만원에 비해 현저히 크다. 그러나 월세가구의 월세액은 양계층 사이의 차이는 1만 2천원 정도 밖에 나지 않았다.

〈表 Ⅲ-76〉 中上位層 移動 및 殘留家口의 前世 또는 保證金液 - 傳貰, 保證附 月貰 및 사글貰 家口

(단위: 천원)

		· · · · · · · · · · · · · · · · · · ·
	유지	하향이동
평 균	30,574(29,881)	22,359(21,533)
최소액	150(130)	300(260)
최대액	300,000(250,000)	93,000(85,000)

註: () 안은 '99년의 통계

중상위층 가구의 계층이동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9년 기준으로는 중상위층의 가구규모나 세대수는 계층이동 과 분명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98년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 어, 이들의 계층이동에는 다른 요인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상위층 가구 중 중하위로 전략률이 큰 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주 연령 10~20대 및 60대 이상인 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가구주 학력 초등학교인 가구,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 연립/다가구 주택 거주가구 등이었다.

셋째, 남성가구주, 가구주 연령 40~50대의 가구, 맞벌이 가구, 대학 및 대학원 학력의 가구, 자가 및 아파트 입주 가구 등은 중상위층을 유지하는 비율이 컸다.

넷째, 중하위 이하의 계층에서 보인 가구규모, 세대수, 가구주 학력 과 같은 특성이 계층 이동과 가진 보다 뚜렷하고 일정한 관계가 중상 위층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 IV. 階層歸屬 및 移動의 原因 및 期間 分析

Ⅲ장에서는 1998년과 19'99년도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구를 4개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에의 잔류 및 이동실태를 분석하였다. Ⅲ장의 분석에 의하면 4개 계층의 잔류, 하위 혹은 상위로의 계층이 동은 경제적 특성이나 일반적인 가구의 특성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모집단에서의 이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도시가구가 각 특성에서 어떠한 계층으로 귀속되는가 그리고 귀속된 후 이들이 계층을 상향 혹은 하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중요한 가구특성이 있는지, 있으면 기여도는 얼마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계층에의 잔류 혹은 경험기간은 가구특성과 얼마나 관계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의 분석을 위해서는 Multi-nomial Logit Analysis 그리고 후자의 분석을 위해서는 Tobit 계량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들 분석은 계층의 하위 전략을 막고, 하위 계층의 잔류기간을 줄이기 위해 어떤 가구특성이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어야할 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 1. 패널資料를 利用한 階層 歸屬에 대한 要因分析

먼저, 도시가구가 지난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 과정에서 경험한 경제적 및 일반적인 가구특성의 변화로 인해 일인당 소비수준으로 표현된 중하위층화를 경험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다만, Ⅲ장에서와 같은 연간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부딪치는 연중 변화한 가구특성,

특히 경제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서의 변화를 연중 상태로 평균화 할 수밖에 없던 한계를 피하고, 가능한 특성의 변화를 분기 내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곳에서는 각 계층에서의 이동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가 각 분기의 특성 변화에 따라 귀속될 계층이 영향받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각 특성에서 각 가구는 4개의 계층 중 어느 곳으로 귀속되는가를 보는 종속변수로서 4개의 선택이 가능한 Multi-nomial Logit Analysis 16)을 시도하였다.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자료중 최근까지 입수 가능하고 패널화가 가능한 가구들로서 '98년 1/4분기부터 2000년 2/4분기까지 10개의 분기의 Panel 자료이다. 10분기(30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는 '99년 총 조사가구 5,246가구중 2,447가구이었다.

추정식에서 종속변수는 4개 계층에의 귀속여부이다. 독립변수로는 도시가계연보에서 입수 가능하고 III장에서 활용된 특성변수 중 다른 변수와 다중상관이 큰 가구규모, 세대수, 가구유형, 가구주 종사산업, 주택소유 여부17) 등은 제거하고 남은 변수로서 경제적 특성 변수인 취업인수, 가구주 종사 직종 및 직업, 가구주의 학력, 연령, 성과 부부 동거여부, 주거형태 등을 더미 변수화하여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기준 더미 변수는 〈表 IV-1〉에 제시되어 있다.

<sup>16)</sup> 이용된 컴퓨터 패키지는 LIMDEP Version 7.0, Econometric Software Inc., 1998 판으로서, 자료는 통계청의 분기별 자료를 패키지에 맞도록 패널화하여 이용하였음.

<sup>17)</sup> 건설업과 상관도가 큰 직종은 일용/임시직(상관계수 0.393)이었고, 직업은 기능관 련 직업(0.315), 농어업, 건설의 단순노무(0.295)이었다. 도소매산업과 상관도가 큰 직종은 개인 및 법인 경영자(0.393)이었고, 직업은 서비스 및 판매원(0.310)이었다.

〈表 IV-1〉 階層 歸屬에 대한 家口特性의 影響度 推定

	구 분	절대빈곤층	상대빈곤층	서민층	중상위층		
	丁 ゼ	(확률 7.1%)	(확률 9.3%)	(확률 32.0%)	(확률 51.5%)		
	상수	108***	—.119***	.018	.209***		
취업인 수	취업인수 0	.039***	.001	021	019		
(기준:취업	취업인수 2	031***	008*	.008	.032***		
인수 1)	취업인수 3이상	042***	005	.077***	030**		
	정규생산직	.065***	.078***	.048***	190***		
ココス スパ	일용/임시생산직	.109***	.115***	.084***	309***		
가구주 종사	상인	.077***	.087***	.048***	212***		
직종 더미	개인 및 법인	.036***	.073***	031*	079***		
(기준: 사무직)	경영인						
	무직	.113***	.077***	.066***	256***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038***	025***	028**	.091***		
	서비스/판매원	—.011	026**	.012	.024		
가구주 종사	기능관련자	012	023**	.052***	016		
직업 더미	조작/조립원	038***	037***	.059***	.015		
(기준:일반	행상/단순서비스	.016	010	.044**	050**		
사무직)	농어업/건설	.001	019	.082***	064**		
,	단순노무						
	무직 및 분류불능	041***	005	003	.049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010**	015**	.025**	020		
가구주	중졸이하	.038***	.031***	.026***	095***		
교육수준	전문대	000	037***	028*	.065***		
(기준:고졸)	대학 이상	054***	033***	058***	.145***		
	10대 및 20대	.002	034***	005	.038**		
가구주	40대	043***	066***	124***	.233***		
연령 더미	50대	066***	079***	—.166***	.312***		
(기준:30대)	60대 이상	028***	062***	122***	.211***		
기ス취데	무상주택 및 사택	.020*	.059***	.071***	150***		
거주형태	전세	.039***	.041***	.026***	106***		
더미 (기조,기기)	보증부 월세	.050***	.036***	.073***	—.1 <b>5</b> 9***		
(기준:자가)	사글세 및 월세	.099***	.028	.071*	198***		
동거여부	별거	108***	041***	.122***	.272***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017***	.027***	019	.009		
	ı		1	1			

註: \*\*\*p<.01, \*\*p<.05, \*p<.10

Multi-nomial Logit에 의한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평균치에서 추정되는 도시가구의 4개 계층 귀속확률은 절대빈곤 7.1%, 상대빈곤 9.3%, 서민층 32.0%, 중상위층 51.5%인데, 각 가구의 특성은 계층귀속에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영향을 주고 있다. 독립변수로 이용된 특성은 범주형이어서 기준을 중심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경제상태에서 가구주 종사 직종이 계층 귀속결정에 매우 유의하고 기여도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도시가구가 절대빈곤화 되는데 있어서, 기준변수인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에 비해 가구주의 무직상태는 빈곤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이 일용/임시직 및 상인 직종이다. 또한 가구 내에 취업인 없고 있느냐가 절대빈곤화에 중요하고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취업인 수가 증가하면 도시가구의 절대빈곤화의 기여를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가구주 종사 직업은 일반 사무직을 기준변수로 할 때, 관리 및 전문직, 각종 조작 및 조립, 무직 및 분류불능 등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구주 직업보다는 직종, 가구주 취업여부 및 가구원 취업인수 등이 절대빈곤에 유의하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학력, 연령,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및 거주형태도 절대빈곤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2000년 6월까지의 10분기(30개월) 동안 가구주와의 별거 및 이별은 오히려 배우자와의 동거가구에 비해절대빈곤 가능성을 감소시켰으며, 그 영향의 크기도 다른 가구특성에비해 컸다. 이는 다른 중하위층에서도 나타나지만, 일인당 소비수준으로 표시된 계층에서 비동거 및 무 배우자 가구는 가구규모의 감소로인한 일인당 소비수준의 증가와 이들 가구의 특성 예컨대, 모자가구의 자녀교육비에 따른 일인당 소비증대효과로 인해 소비수준이 상향

된 것으로 보인다. 자가를 기준한 사글세 및 월세 거주가구의 절대빈 곤에의 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는 전세가구의 2배가 크게 넘는다. 그리고 30대 가구주 가구에 비해 60대 가구주 가구는 절대빈곤화 할 가능성이 적으나 50대 및 40대 가구주에 비해서는 절대빈곤화 가능성 이 매우 크다. 가구주 학력이 고졸에 비해 대졸은 절대빈곤의 가능성 을 낮추나 그 영향도는 다른 특성들과 비교할 때 크지 않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도 절대빈곤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나 그 영향은 역시 크지 않다. 절대빈곤화에 영향도가 큰 일반가구 특성은 배우자 와 별거, 사글세 및 월세의 거주, 50대가구주의 가구 등이다.

소비수준의 상대적 빈곤화에서도 가구주 직종의 영향은 매우 유의 하고 중요하지만, 영향도에서는 절대빈곤에서 보다 크게 적다. 공무원 등의 기준 변수에서 볼 때 상대빈곤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직종은 임시/일용직이고 그 다음이 상인이다. 정규생산직은 무직과 거의 같은 정도로 빈곤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구주 종사 직업은 일반 사무직 기준 변수에 비해 조작 및 조립, 서비스 및 판매, 관리 및 전문직, 기 능 관련직 등에서 도시가구의 상대빈곤화가 감소되는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영향도의 크기는 직종에서 비해 매우 적어, 절대빈곤화에 서와 같이 역시 직종이 직업보다 계층 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가구의 일반적 특성도 도시가구의 상대적 빈곤화에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준 특성에 비한 영향도의 크기는 별거 및 거 주형태에서 큰 영향도를 보였던 절대빈곤에서와는 달리 가구주 연령 의 영향이 크다. 즉, 30대가구주 가구는 50대 및 40대 심지어는 60대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도 상대빈곤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이한 것은 무 배우자 가구의 절대빈곤화에서와는 달리 상대빈곤화 는 동거가구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도시가구의 서민화에서 가구주의 경제상태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준 특성변수에 비한 영향도에서는 경제변수보다는 가구주 연령, 별거 및 거주형태 변수의 영향도가 크다. 특히 50대 가구주 가구에 비한 30대 가구주 가구의 서민화의 가능성은 매우 크고, 별거가구에 비한 동거가구의 서민화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보증부 월세 및 사글세·월세의 자가에 비한 도시가구 서민화의 기여도도 매우 크다.

경제변수 중 직종에서는 임시/일용직 및 무직의 서민화의 기여도가 가장 크나, 기여의 크기는 절대 및 상대적 빈곤화에서 보다는 많이 적다. 반면에 일반 사무직에 비한 기타의 직업의 서민화의 기여도는 빈곤화에서보다 크고, 특히 농어업 및 건설업 등에서의 단순노무, 기능 관련 직업, 그리고 행상 및 단순서비스 등에서는 빈곤화에의 기여도보다는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시가구의 중상위층화에서는 경제 및 일반가구의 특성이 모두 유의 수준이나 기여도에서 다른 계층에서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준 특성에 비해 중상위층화에 양 혹은 음의 방향으로 현저히 기여하는 특성으로는 경제변수로는 임시/일용직, 무직 및 상인, 일반 특성 변수로는 30대에 비한 50대 및 40대 가구주 가구, 별거가구, 사글세및 월세 등이었다. 그러나, 학력을 포함한 다른 특성에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추정치가 현저히 큰 것이 많았다. 따라서, 중상위층화에서 경제적 및 일반가구의 특성은 다른 계층에서 보다 기여도가 현저히 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첫째, 경제변수는 절대 및 상대적 빈곤화 계층으로 귀속하는데 다른 가구 특성요인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민화를 제외하고는 가구주 종사 직업보다는 직종이 각 계층화에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하고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일반가구의 특성은 모든 계층화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서민화에서는 경제변수보다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일반가구 특성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별거, 가구주 연 령, 거주 형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중상층화에서 가 구주의 종사 직종이 중요하나, 가구주 연령 및 별거특성과도 매우 중 요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일반 가구특성 중에서 배우자와의 별거상태는 중하위층화의 가능성은 줄이고 중상위층화의 가능성은 증 대시키는 특이한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Ⅲ장에서 모자가구의 중하위층 탈피의 가능성이 큰 것과 같은 맥락이 어서, 자녀교육 등으로 소비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가족해체에 따 른 가구규모의 축소효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30대 가 구주의 가구는 40대 및 50대 심지어는 60대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도 중하위층 특히 서민화의 가능성이 크고 중상위층화의 가능성은 적어 '98년 이후 경제 위기 및 변화기에 가장 생활위험이 큰 계층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일곱째, 거주형태는 계층화와 매우 큰 유의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나, 그 기여도는 중상위층화에서 가장 크고 서민화에서도 빈곤 화에서 보다 현저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덟째, 가구주의 학력은 어 느 계층에서나 기준 변수에 비한 계층화의 기여도가 가장 적어, 적어도 가구주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 2. 階層 移動의 要因 分析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개 계층의 하위 혹은 상위로의 계층이 동은 경제적 특성이나 일반적인 가구의 특성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집단에서의 이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Multi-nomial Logit Analysis 계량 기법을 이용하였다. 〈表 IV-2〉부터 〈表 Ⅳ-5〉까지에서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특성변수가 평균값에 서 상하 계층이동 확률에의 기억분을 t 값과 더불어 제시하였다. 종속 변수로는 절대빈곤층과 중상위층은 각각 상위층으로의 빈곤 탈피 및 하위층으로의 전략률에 각 특성변수가 얼마나 기억하는가를 보았고, 상대적 빈곤층과 서민층은 하위층으로의 전략률 및 상위층으로의 이동률에의 기억도를 추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경험기간의 분석에서 이용된 것과 같다. 추정에 있어서 가구의 특성이 '99년에 '98년과 달라진 가구가 있어서, 각 연도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98년 기준 및 '99년 기준의 가구특성과 계층간의 이동관계를 각각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취업인 수, 직종 및 직업, 가족관계 등 불변의 변수인 가구주학력 등을 제외하면 1년 사이에 가구특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가. 絶對貧困層

절대빈곤층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98년 및 '99년 기준 모두 절대빈곤층에서의 탈피율에서 취업인수 및 가구주 종사직종(따라서 이 변수와 상관관계가 큰 산업), 그리고 부부의 별거 및 이별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취업인 수는 비록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10%이지만 '98년 기준을 이용할 때 더욱 분명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99년 기준을 이용할 때는 취업인 수가 1인 기준 더미변수와 비교할 때 취업인이 없는 상태는 절대빈곤을 탈피할 가능성을줄이는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가 종사하는 직종 및 직업은 특히 '99년 특성을 이용할 때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매우 큰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종사 직종이 공무원 및 이외의 사무직의 빈곤탈피 가능성과 비교할 때,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생산직 근로자는 정규이든 비정규이든 '99년에도 빈곤층을탈피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특히 임시/일용직의 경우그 가능성은 정규직이나 상인에 비해서도 더욱 적음을 보여 주고 있

다. 또한 '99년의 가구주 종사 직업유형은 빈곤탈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98년의 직업은 '99년의 빈곤수준 탈피여부와 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99년의 빈곤탈피에 있어서 당 년의 가구주 직업의 변화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 사무직(clerk)에 비해 다른 직업이 빈곤탈피에 양의 기여를 하고 있고, 그 효과의 크기는 직업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빈곤층이 종사 하고 있는 사무직의 성격이 매우 열등한 유형일 것이고, 관리직 및 전문가 그리고 기술직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열등한 직업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에 Ⅲ장에서 탈피율과 주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 학력 및 성 그리고 거주형태는 '98년 및 '99년의 어느 특성기준을 이용하여 도 전혀 유의한 관계를 통계학적으로 실증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가 구주 성 및 배우자의 존재여부와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특성인 모자 가구는 Ⅲ장에서 높은 빈곤 탈피율을 보였지만, 통계학적 추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만 배우자와 동거 가구에 비해 빈곤탈피에 양의 기여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하고 있고, 여성가구주는 통계학적 유 의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남성가구주에 비해 오히려 빈곤을 탈피 할 개연성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 연령 변수도 40 대 연령의 가구주 가구 이외에는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Ⅲ장에서 본 노인가구의 높은 빈곤층 잔류율을 실증하지 못하고 있 다. 주거상태에서도 아파트 입주 등 자가의 높은 탈빈곤이 여러 유형 의 월세가구의 빈곤 탈피 가능성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못하고 있다.

〈表 Ⅳ-2〉 絶對貧困層의 貧困脫皮確率에 대한 寄與效果

(Log Likelihood function= -292, N= 474)

		(,	5			
구 분		확률기여효과	મ('98년기준)	확률기여효과('99년기준)		
		기여효과	t 값	기여효과	t 값	
	상수	010	07	326	-1.74**	
취업인 수	취업인수 0	299	-1.81*	—.474	-2.50*	
(기준:취업인	취업인수 2	.110	1.72*	.028	.47	
수 1)	취업인수 3 이상	226	-1.62*	.011	.09	
	정규생산직	169	-1.07	396	-2.22**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251	-1.49	—.516	-2.74**	
직종 더미	상인	141	89	401	-2.31**	
(기준:	개인 및 법인	245	-1.33	393	-1.98**	
사무직)	경영인					
	무직	292	-1.72*	348	-1.75*	
	관리자 전문가	0.47	269	707	2.01++	
	기술공	—.047        —.268	—.268	.707	2.91**	
コフス スパ	서비스/판매원	044	236	.583	2.34**	
가구주 종사	기능관련자	.140	.76	.682	2.67**	
직업 더미	조작/조립원	.264	1.39	.764	2.99**	
(기준:일반	행상/단순서비스	.090	.47	.643	2.46**	
사무직)	농어업/건설	444	02	.700	2.57**	
	단순노무					
	무직 및 분류불능	.194	.81	.889	2.76**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038	42	-1.431	-1.73*	
가구주	중졸 이하	075	-1.20	054	86	
교육수준	전문대	—.197	15	018	14	
(기준:고졸)	대학 이상	.113	1.11	040	36	
가구주 연령	10대 및 20대	.075	.783	051	—.49	
가구구 연명 더미	40대	.167	2.54**	.143	2.05**	
	50대	.132	1.25	.078	.73	
(기준:30대)	60대 이상	.018	.187	120	-1.09	
기ス치리	무상주택 및 사택	.014	.08	.218	1.26	
거주형태 디미	전세	282	48	047	72	
더미 (기즈.기기)	보증부 월세	091	-1.11	026	32	
(기준:자가)	사글세 및 월세	206	-1.21	225	-1.42	
동거여부	별거	.365	1.56	.308	1.93*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254	2.67**	.361	4.09**	
	•	•	•	•		

주: \*\*\*p<.01, \*\*p<.05, \*p<.10

#### 나. 相對的 貧困層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 이동 및 잔류에서도 가구주가 종사하는 직종 및 직업의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기여의 크기도 절대빈곤 층의 계층이동에서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요직종인 임시/일용직은 공무원 등 사무직을 기준에서 절대빈곤층의 계층상승에의 음의 기여 크기는 -0.52이지만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상승에의 음의 기여 크기는 -0.45이어 서 조금 적었다. 다른 변수에서도 기여의 크기는 현저한 차이가 없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먼저, 취업인 수는 1인의 취업에 비해 3인의 취 업은 상대적 빈곤에서 차상위층으로의 이동에 양의 기여를 절대빈곤 으로의 전락에는 음의 기여를 하고 있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실 증된다. 그러나, 2인 가구원의 취업은 계층이동에 분명한 기여를 못하 고 있는데 이는 취업의 성격이 1인 취업에 비해 불완전한데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임시/일용직 및 상인의 직종은 반대로 절대 빈곤으로의 전락에는 양의 기여를 차상위로의 이동에는 음의 기여를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함으로써,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형 태가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취업인이 없는 가구의 계층이동 도 불분명한데, 이는 가구주의 무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 여 주고 있어, 이와 관계되어 신뢰성이 적게 추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구주 종사의 직종은 계층 이동과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록 공무원 등의 사무직을 기준 변수로 할 때 가구주가 종사하는 기타 직종 변수는 상대적 빈곤층에 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확률에는 양의 기여를 하고, 차상위층으 로의 이동 확률에는 음의 기여를 하고 있다. 예컨대, 일용/임시직종은 상대적 빈곤층이 절대적 빈곤층으로의 전락률에는 공무원 등의 사무 직을 기준으로 양의 기여를 하고 있고 '99년의 특성에서 볼 때 기여

의 크기도 사무직을 1로 할 때 0.28만큼의 전략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평균치에서의 한계기여임). 반대로 이 계층이 차상위층으로의 향상하는 데에서는 0.466만큼을 한계에서 기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임시/일용직종은 공무원 등 사무직에 비해 잔류율에의 기여 0.255와 더불어 상대적 빈곤층에서 절대 빈곤층으로의 전략 혹은 잔류하게 하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절대빈곤층이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사무직에서 기타의 직종이 빈곤을 탈피하는데 음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직종 종사 빈도와 기여율을 고려하면, 일용/임시직, 무직, 상인, 정규생산직 등은 공무원 등의 사무직과 비교할 때상대적 빈곤층의 계층 향상보다는 유지 및 전략에의 기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그리고, 가구주 종사 직업은 '99년 특성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 빈 곤충의 계층이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98년 기준에서는 역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양자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계층이동 전의 직업이 오히려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 상하향 이동과 관계가 유의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불확실하다. 이는 '98년에 비해 '99년에 상대적 빈곤층의 가구주 종사 직업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상대적 빈곤층에서의 계층이동은 과거의 직업에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이 발견되었다. 전년도의 가구주 직업이 기준 직업인 일반 사무직(Clerk)에 비해 계층상승 확률에 양의기역도가 크고, 잔류율 및 전략률에서 유의한 음의 기여를 하는 직업으로는 무직 및 분류불능 직업과 각종 조작 및 조립직 등이었다. 그러나 행상 및 단순 서비스직, 서비스 및 판매직 및 농어업 및 건설업등에서의 단순노무직은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이동에서 통계적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거주형태를 제외한 가구주 성, 학력, 연령, 동거여부 변수 등 일반 가구특성 변수는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 이동과 통계학적 관계가 취약 하여, Ⅲ장에서 이들과 상관관계가 큰 가구유형 및 가구규모 등의 특성 이 보였던 뚜렷한 계층 이동률에의 영향이 실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99년 기준 별거 및 전세거주 형태의 가구특성은 '98년에 비해 계층 이동과 보다 큰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와 별거하는 가구는 동거하는 가구에 비해 절대빈곤으로의 전락에는 음의 기여를 차상위층으로의 계층상승에는 양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또한, 상대적 빈곤층의 전세가구는 자가가구에 비해 계층상승의 가 능성은 적고 절대빈곤층으로의 전락가능성은 큰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여성가구주 및 배우자 존재여부의 변수와 연령 변수의 추정 치가 유의하지 못하여, 노인가구 및 모자가구의 계층이동 가능성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실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구주 교육수준은 계층이동과 전혀 유의한 관계로 추정되지 못하여, 상대적 빈곤에서 가구주 교육의 역할은 무시될 수 있을지 모른다.

〈表 IV-3〉 相對貧困層의 移動確率에 대한 寄與效果

(Log Likelihood function= - 442, N=471)

			'98년 특성 기준	
	구 분	전락확률(.227) 에	유지확률(.266)	상승확률(.507)에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대한 기여
	상수	81(.95)	12(1.22)	.20(1.87*)
취업인 수	취업인수 0	.29(1.30)	06(.23)	23(.94)
(기준:취업인	취업인수 2	03(.56)	36(.69)	.06(1.05)
수 1)	취업인수 3 이상	40(2.52**)	.04(.30)	.36(2.56**)
	정규생산직	.26(2.54**)	.09(.79)	35(2.65**)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21(1.76*)	.26(2.02**)	47(3.08**)
직종 더미	상인	.22(2.10**)	.17(1.52)	39(2.92**)
(기준:	개인 및 법인	.18(1.24)	.41(2.99**)	59(3.27**)
사무직)	경영인			
	무직	.43(3.52**)	15(.86)	29(1.69*)
	관리자 전문가	09(.94)	03(.30)	.12(1.05)
	기술공			
가구주 종사	서비스/판매원	—.18(1.66*)	—.23(1.72*)	.40(2.75**)
직업 더미	기능관련자	23(2.19**)	05(.43)	.29(1.98**)
(기준:일반	조작/조립원	35(3.10**)	.03(.27)	.32(2.13**)
(기판·필립 사무직)	행상/단순서비스	31(2.51*)	67(.46)	.38(2.33**)
^r <del>~</del> ~	농어업/건설	46(2.89**)	.09(.58)	.37(1.95*)
	단순노무			
	무직 및 분류불능	56(2.32**)	.14(.49)	.42(.1.48)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06(.84)	04(.54)	.10(1.19)
가구주	중졸 이하	.03(.50)	.02(.39)	05(.74)
교육수준	전문대	17(1.25)	.11(.99)	.06(.44)
(기준:고졸)	대학 이상	04(.60)	06(.86)	.10(1.27)
가구주 연령	10대 및 20대	.03(.44)	10(1.21)	.07(.75)
거구구 현영	40대	.02(.32)	07(1.21)	.05(.77)
(기준:30대)	50대	.07(.80)	11(1.06)	.04(.34)
(万世.30年)	60대 이상	.06(.74)	08(.88)	.02(.19)
거주형태	무상주택 및 사택	.07(.60)	26(1.37)	.19(1.16)
기가 장네 더미	전세	.01(.11)	.11(2.15**)	—.11(1.94*)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092(1.24)	.101(1.19)	19(1.93*)
(/ 1 T · / 1/ L)	사글세 및 월세	.04(.30)	.06(.41)	10(.59)
동거여부	별거	24(1.19)	.13(.82)	.11(.58)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01(.13)	.03(.31)	03(.38)

〈表 IV-3〉 계속

	, · · ·	Г		
			'99년 특성 기준	
	구 분	전락확률(.218) 에	유지확률(.270)	상승확률(.512)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u> 상수</u>	23(2.19**)	19(1.69*)	.42(3.40**)
취업인 수	취업인수 0	.26(1.71*)	26(1.51)	00(.00)
(기준:	취업인수 2	05(1.09)	05(.95)	.10(1.68*)
취업인수1)	취업인수 3 이상	—.07(.76)	—.16(1. <b>5</b> 1)	.23(2.04**)
가구주	정규생산직	.18(1.64*)	.25(2.07**)	—.44 (3.09**)
종사 직종	일용/임시생산직	.28(2.17**)	.17(1.19)	45 (2.68**)
더미	상인	.28(2.55**)	.22(1.82*)	—.50 (3.54**)
(기준:	개인및법인경영인	.28(2.31**)	.23(1.72*)	—.51 (3.35**)
사무직)	무직	.39(3.25**)	.08(.51)	—.47 (2.90**)
	관리자 전문가	—.05(.47)	.06(.54)	01(.06)
가구주	기술공	.03(.47)	.00(.34)	.01(.00)
77ㅜㅜ 종사 직업	서비스/판매원	11(1.00)	08(.62)	.19(1.32)
당기 역표	기능관련자	08(.74)	.02(.17)	.06(.42)
기준:일반	조작/조립원	17(1.36)	.00(.02)	.16(1.04)
•	행상/단순서비스	07(.59)	05(.33)	.12(.73)
사무직)	농어업/건설단순노무	07(.47)	08(.45)	.15(.76)
	무직및 분류불능	28(1.53)	.29(1.41)	.01(.04)
가구주 성별	! 더미 (기준:남)	00(.01)	12(1.52)	.12(1.40)
가구주	중졸 이하	.08(1.55)	.01(.25)	10(1.38)
교육수준	전문대	03(.29)	05(.05)	.03(.28)
(기준:고졸)	대학 이상	05(.76)	01(.09)	.06(.72)
 가구주	10대 및 20대	.21(2.45**)	17(1.55)	04(.32)
연령 더미	40대	03(.60)	—.10(1.75*)	.13(1.98**)
(기준:30대)	50대	03(.42)	04(.50)	.08(.77)
(기世.30年)	60대 이상	—.01(.16)	15(1.58)	.17(1.59)
거주형태	무상주택 및 사택	.19(1.64*)	25(1.53)	.12(.79)
기구영대 더미	전세	.28(2.17**)	.13(2.52**)	16 (2.77**)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28(2.55**)	.06(.77)	16(1.65*)
(/14./1/1)	사글세 및 월세	.39(3.26**)	.02(.13)	13(.77)
동거여부	별거	44(2.07**)	.05(.28)	.39(2.06**)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15(2.06**)	.01(.13)	.14(1.51)
	-			

註: \*\*\*p<.01, \*\*p<.05, \*p<.10. ( )안은 t값.

#### 다. 庶民層

서민층의 계층이동에서도 가구주 종사 직종 및 직업이 주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서민층의 계층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있지만, 영향의 크기나 통계학적 유의도는 절대빈 곤층에서나 상대적 빈곤층에서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취업인수 3인은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상승에 0.23의 한계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서민층의 계층상승에는 0.11의 한계적 기여밖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98년 기준으로 상인직은 상대적 빈곤층의 절대빈곤으로의 전략에의 한계적 기여는 0.22이었지만 서민층의 하향에의 한계적 기여는 0.14뿐이었다.

가구주 종사 직종에서 계층이동과 가장 분명한 관계는 무직, 상인, 임시/일용직에서 발견된다. 이들 직종은 서민층의 잔류와 상대적 빈곤층 이하로의 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무직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가구주 종사 직업에서는 특히 '98년의 경제특성이 '99년의 계층이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서민층 직업의 기준변수인 사무직은 절대빈곤층 및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계층상 승에 음의 영향을 주는 열등한 직업이었는데 반해, 서민층 가구주가종사하는 직업은 반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양의 기여, 즉, 다른 직업들은 사무직에 비해 음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등한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의 분류도 그 수준에 따라 계층이동에 있어서 상이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민층의 계층이동에 있어서 상이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민층의 계층이동에 유의하면서도 영향도가 큰 직업은 무직 및 분류불능직, 행상 및 단순서비스, 서비스 및 판매직 등이지만, 영향의 크기는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에 비해서도 크게 적었다.

일반적 특성 변수의 영향은 상대적 빈곤층에 비해 학력 및 연령 등

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유의하여 변수 전체의 유의한 기여를 실증하기는 어렵고, 영향을 주는 변수의 기여 크기도 상대적 빈곤층에서보다는 크게 적어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전세 및 보증부 월세와 같은 주거변수는 계층 잔류와 상향 이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관계의 정도는 크게 떨어져 전세변수의 경우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상승에의 영향은 -0.16 이었으나 서민층의 계층상승에서는 -0.08뿐이었다. 별거변수도 '99년 특성기준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나 역시 그 영향의 크기는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이동에서 보다 적다. 그리고 가구주 성 및 가구주 학력 변수는 전혀 유의한 영향을 못 주고 있다.

〈表 Ⅳ-4〉 庶民層의 移動確率에 대한 寄與效果

(Log Likelihood function= -1256, N=1,294)

			'98년 특성 기준	
	구 분	전락확률(.178)	유지확률(.524)	상승확률(.298)
		에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상수	30(5.32**)	.27(4.15**)	.04(.69)
취업인 수	취업인수 0	132(1.26)	.37(1.95*)	24(1.58)
(기준:취업인	취업인수 2	03(1.12)	16(.49)	.04(1.43)
수 1)	취업인수 3 이상	24(3.73**)	.16(2.46**)	.08(1.52)
	정규생산직	.04(.80)	07(1.18)	.04(.62)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15(2.50**)	.16(.18)	17(1.91*)
직종 더미	상인	.14(2.91**)	13(2.02**)	01(.10)
(기준:	개인 및 법인	.09(1.69*)	06(.90)	—.26(.41)
사무직)	경영인	22(4 (2)444)		06(70)
	무직	.23(4.63**)	18(2.29**)	<del>06(.79)</del>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14(2.34**)	06(.94)	08(1.46)
コフス スパ	서비스/판매원	.16(2.44**)	.04(.49)	193(2.93**)
가구주 종사	기능관련자	.18(2.68**)	01(.14)	16(2.39**)
직업 더미 (기준:일반	조작/조립원	.09(1.32)	.06(.79)	15(2.20*)
(기판·필원 사무직)	행상/단순서비스	.18(2.46**)	02(.23)	16(1.98**)
7177)	농어업/건설 단순노무	.07(.78)	17(1.43)	.10(.95)
	무직및 분류불능	.13(1.11)	30(1.51)	.17(1.11)
가구주 성별	<u>  1 그곳 문마물                                   </u>	02(.50)	04(.61)	.06(1.10)
가구주	중졸 이하	00(.06)	01(.28)	.01(.35)
교육수준	전문대	01(.16)	03(.47)	.04(.68)
고 + F 문 (기준:고졸)	대학 이상	01(.39)	06(1.32)	.07(1.82*)
	10대 및 20대	.09(2.36**)	21(3.85**)	.118(2.50)
가구주 연령	40대	06(1.81)	.00(.08)	.05(1.43)
더미	50대	01(.13)	01(.22)	.02(.35)
(기준:30대)	60대 이상	.04(.70)	00(.02)	04(.48)
기고취에	무상주택 및 사택	.01(.14)	.15(1.60)	16(1.71*)
거주형태 디미	전세	.04(1.45)	.26(.78)	06(2.00**)
더미 (기즈,기기)	보증부 월세	04(1.00)	.122(2.16**)	08(1.46)
(기준:자가)	사글세 및 월세	.10(1.25)	.06(.48)	160(1.16)
동거여부	별거	06(.69)	.08(.67)	02(.19)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01(.11)	.08(1.33)	07(1.35)
	•			-

〈表 IV-4〉 계속

-				
			'99년 특성 기준	
	구 분	전락확률(.175)	유지확률(.525)	상승확률(.300)
		에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에 대한 기여
	상수	—.15(2.97**)	.13(1.93*)	.24(.43)
취업인 수	취업인수 0	03(.43)	.13(.10)	.02(.17)
(기준:	취업인수 2	03(1.03)	02(.58)	.04(1.46)
취업인수1)	취업인수 3 이상	18(3.18**)	.07(1.18)	.11(2.09**)
가구주	정규생산직	01(.18)	.25(.40)	02(.29)
종사 직종	일용/임시생산직	.06(1.07)	08(1.00)	02(.26)
더미	상인	.05(1.17)	.02(.25)	07(1.24)
(기준:	개인 및 법인경영인	.11(2.02**)	04(.54)	07(.98)
사무직)	무직	.16(2.81**)	33(3.40**)	.16(2.10**)
コフス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03(.52)	.03(.45)	05(1.03)
가구주	서비스/판매원	.03(.40)	.10(1.30)	13(1.86*)
종사 직업	기능관련자	.05(.75)	.06(.76)	11(1.53)
(기조 이미	조작/조립원	01(.17)	.10(1.25)	09(1.30)
(기준:일반 사무직)	행상/단순서비스	.04(.61)	.17(1.83*)	21(2.56**)
^[구석)	농어업/건설단순노무	.13(1.53)	.04(.31)	17(1.46)
	무직 및 분류불능	01(.11)	.33(2.10**)	32(2.32**)
가구주 성별	더미(기준: 남)	.01(.29)	05(1.6)	.04(.91)
가구주	중졸 이하	.01(.28)	.04(1.02)	05(1.32)
교육수준	전문대	08(1.61)	01(.12)	.09(1.66*)
(기준:고졸)	대학 이상	06(1.77*)	.03(.61)	.04(.86)
 가구주	10대 및 20대	.05(1.10)	09(1.50)	.04(.79)
/r구구 연령 더미	40대	02(.75)	05(1.27)	.07(2.01**)
	50대	04(.95)	04(.07)	.04(.89)
(기준:30대)	60대 이상	.02(.35)	03(.45)	.01(.23)
 거주형태	무상주택 및 사택	01(.11)	.08(.93)	07(.91)
기구영대 더미	전세	.04(1.46)	.04(1.31)	08(2.55**)
년 년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09(1.93*)	.13(2.27**)	04(.71)
(/ で:^ト/ト)	사글세 및 월세	.07(.92)	.05(.47)	12(1.06)
동거여부	별거	.04(.64)	18(1.84*)	.14(1.68*)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01(.19)	.01(.20)	01(.07)

註: \*\*\*p<.01, \*\*p<.05, \*p<.10. ( )안은 t값.

#### 라. 中上位層

중상위층의 중하위층으로의 전략률에의 기여는 기여정도는 상대적 빈곤층에서보다는 적지만, 거주형태 및 가구주 종사 직종이 매우 유 의한 양의 기여를 연령은 매우 유의한 음의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 고 중상위층의 계층전략에서는 가구주의 교육도 매우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가구주 종사 취업인 수나 직종은 중상위층의 중하위층으로의 전략을 억제하는데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나 영향의 크기는 절대빈곤층 및 상대적 빈곤층에서보다는 적었다. 예컨대, 임시/일용직 의 계층 하락에의 영향은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0.28이었지만 중상위 층에서는 0.175에 그쳤다. 그러나 기준 변수인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 종에 비해 다른 직종은 매우 유의하게 계층하락에 기여를 하였고, 특 히 가구주 종사직종이 무직인 경우 그 기여도는 컸다.

중상위층의 계층 하락에서 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다소 적었지만, 기타의 가구특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어 계층이동의 원인이 분산되어 있다. 상대적 빈곤층이나 절대 빈곤층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던 가구주 교육수준이나 유의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가구주 연령에서도 통계적 유의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예컨대, 30대 가구주 가구에 비해  $40\sim50$ 대의 가구주 가구는 중하위층으로의 전락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중졸 이하의 가구주 학력은 관련 가구가 중하위층으로 전락하는 데 기여를 하였고, 대졸 이상의 가구주 학력은 관련가구의 전락을 억제하는 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향의 크기는 특성별로 차이가 있어, 배우자와의 별거변수는 상대적 빈곤층이나 서민층에서 전락에의 기여에서 보다 크고, 가구주 연

령변수도 상대적 빈곤층에서 보다 컸다. 그러나 중상위층의 전락률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월세, 보증부 월세는 한계적 영향의 크기는 상대적 빈곤층에서 보다 적었다. 사글세 및 월세는 0.114이어서 상대적 빈곤층의 0.28보다 크게 적어, 거주형태와계층하향과의 관계는 상대적 빈곤층에서 보다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마. 分析結果 綜合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4개 계층의 계층이동률에서 가구주가 종사하는 직종 및 직업 그리고 취업인 수 등이 주요한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가구주 무직, 임시/일용직, 상인의 직종의 종사는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을 탈피와 중상위층의 중하위로의 전략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가구주 종사 직업에 비해 직종이 계층이동에 더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직종은 모든 계층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가구주 직업은 '99년 특성 기준의 상대적 빈곤층이나 '98년 '99년 양기준의 중상위층에서는 거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가구주가 어느 직업에 종사하느냐 보다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근로자냐 상인이냐, 무직여부 등과 같은 직종이 계층이동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특히 경제변수의 계층 이동에의 영향의 크기는 절대빈곤의 탈피율과 상대적 빈곤층에서 절대빈곤으로의 전략률의 증대 및 차상 위층으로의 향상을 감소시키는 데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서민층에서의 이동률이나 중상위층에서 중하위로 이동률에서 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 영향도는 이하 계층에서와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하였다. 경제변수의 계층이동에 영향의 중요성 정도는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 > 서민층> 중상위층의 순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영향의 크기 정도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계층에 따라 가구주가 종사하는 각 직종은 기준 변수인 공무원 및 기타 사무직이 모든 계층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우등한 직종이어서 계층이동에 있어서도 기타 직종은 계층 전략에는 양의 기여를계층 상승에서는 부의 영향을 주어, 직종의 형태가 계층이동에 일관되게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구주 종사 직업의 영향은 계층에따라 방향이 다르다. 예컨대, 일반 사무직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업의기여효과의 방향이 다르다.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일반 사무직에 비해 기타 직업은 절대빈곤 탈피와 상대적 빈곤에서의 계층상승에양의 효과를 가짐으로, 이들이 종사하는 일반사무직은 열등한 직업이므로, 기타의 직업으로 전환 혹은 훈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민층 및 중상위층에서는 일반 사무직에 비해 기타 직업은 계층 상승에 부의 효과를 주고 있어 이들 계층이 종사하는 일반 사무직이상대적으로 우등한 직업이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구주 직업을 권장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비경제적 변수의 계층이동의 영향은 중상위층 및 상대적 빈곤층에서 유의성이 크다. 그러나 Ⅲ장에서 계층이동과 주요한 관계 를 보였던 학력(중상층의 경우 제외) 및 가구주 성은 전혀 유의한 관 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모자가구 등 가구유형의 이동률 에의 영향도 실증되지 못하였다.

여섯째, 비경제특성 변수 중 가구주 연령은 모든 계층에서 부분적 인 연령 대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40대 계층은 상대적 빈곤층 및 서민층의 계층유지 및 향상에 기여를 하고, 절대빈곤층의 계층 상승과 중상위층의 계층전락을 억제하는 데 매우 유의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층의 높은 하위 이동률 가설은 중상위층의 중 하위로 이동에서만 실증되었다. 일곱째, 거주형태 변수는 절대빈곤층 이외의 계층에서는 비교적 유 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가가 아닌 월세 및 전세와 같은 취약한 주거유형의 중상위층 및 상대적 빈곤층의 가구는 하위계층으로의 전 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째,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절대빈곤의 탈피,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 상하향 이동과 중상위층의 전락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계층에서 배우자와의 별거가구가 일인당 소비수준을 변화시키는 요인의 구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대적 빈곤층의 별거는 계층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중상위층의 중하위로의 전락에 유의한 기여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홉째, 중상위층의 계층이동에서는 경제변수가 계층전락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변수이지만 기타의 가구특성도 유의한 관계를 보여, 영향의 크기는 그 만큼 분산되었다. 따라서 중산층에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는 경제변수 이외의 교육을 포함한 연령별, 가족관계, 주거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表 IV-5〉 中上位層의 下位移動確率에 대한 寄與效果

(Log Likelihood function= -1007, N=2,113)

(208 2.110111000 1.110111011 1.1011111111111							
구 분		확률기여효과('98년기준)		확률기여효:	<u>라('99년기준)</u>		
	1 £	기여효과	t 값	기여효과	t 값		
	상수	183	-5.68**	162	<del></del> 4.79**		
취업인 수	취업인수 0	033	— . <b>4</b> 9	046	—.83		
(기준:취업인	취업인수 2	041	-2.07**	044	-2.25**		
수 1)	취업인수 3 이상	007	— .19	.033	.94		
	정규생산직	.081	2.21**	.082	2.31**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175	3.31**	.167	3.25**		
직종 더미	상인	.100	2.99**	.108	3.21**		
(기준:	개인 및	011	27	101	2 70 de de		
사무직)	법인 경영인	.011	.27	.101	2.78**		
	무직	.156	4.09**	.182	4.63**		
	관리자 전문가	020	00	000	2 71 dads		
	기술공	028	—.89	089	-2.71**		
177 71	서비스/판매원	037	93	029	<del>71</del>		
가구주 종사	기능관련자	.019	.46	044	-1.03		
직업 더미	조작/조립원	002	05	.003	.06		
(기준: 일반	행상/단순서비스	062	-1.18	.026	.55		
사무직)	농어업/건설	222	.28	084	—1.07		
	단순노무	—.222					
	무직 및 분류불능	070	-1.06	025	40		
가구주 성별	더미(기준: 남)	026	—.70	024	<del>72</del>		
	중졸 이하	.054	2.25**	.057	2.51**		
교육수준	전문대	.027	.73	.003	.08		
(기준:고졸)	대학 이상	095	-3.75**	077	-3.12**		
	10대 및 20대	.002	.05	.030	.93		
가구주 연령	40대	112	-4.73**	103	-4.39**		
더미 (기조·20대)	50대	107	-3.80**	129	-4.54**		
(기준:30대)	60대 이상	052	-1.37	088	-2.53**		
기ス치미	무상주택 및 사택	.128	1.74*	.107	1.66*		
거주형태 디미	전세	.063	3.10**	.036	1.79*		
더미 (기즈,기기)	보증부 월세	.127	3.97**	.114	3.39**		
(기준:자가)	사글세 및 월세	.055	.67	048	60		
동거여부	별거	021	39	—.1 <b>5</b> 9	-2.88**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009	23	001	04		
	•				•		

註: \*\*\*p<.01, \*\*p<.05, \*p<.10

# 3. 階層 經驗期間의 實態 및 期間 決定要因 分析

분기별 자료를 통하여 패널가구들의 계층 이동횟수 및 평균 잔류기간을 살펴볼 수 있다. 빈곤층 및 중상위층의 잔류정도가 큼을 연간자료를 통하여 보았지만, 이들이 얼마나 각 계층에 귀속되었었는지,혹은 계속 동일 계층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몇 차례의 이동경험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경험기간만을 분석하였다.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 서민층, 중상위층 등의 경험기간과 각 가구의특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각 Panel가구의 계층 경험기간을 분석하였다.

2447개의 도시 패널가구의 일인당 소비수준이 절대 및 상대적 빈곤 층, 서민층, 그리고 중상위층을 경험한 분기회수를 보면, 10분기 동안에 절대빈곤을 경험한 평균적 분기 수는 1.05이고 상대적 빈곤까지합하면 2.05분기로서 평균적 가구가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은 본 분석에서 정의한 20% 정도의 가구를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한 수준과거의 일치한다. 그럼으로, 빈곤 발생 확률과 평균가구의 10개 분기 중 빈곤체류기간의 비율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10분기를 한 기간으로 간주한다면 약 48.6%의 도시가구는 중상위층의 소비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고 51.4%는 중하위의 소비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분기 중에 1분기 이상의 절대 빈곤을 경험한 패널가구는 29.1%이고 상대적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41.9%이었다. 반면에 중상위층의 소비수준에 한 분기도 진입해 본 적이 없는 가구의 비율도 17.1%에 이르고 있어 만성적 서민층이 되고 있다. 10분기 동안 계속 절대빈곤층에 있었던 가구는 1.2%이고 5분기 이상 절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전 도시가구의 7.1%이어서 만성적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분기 중 5분기 이상 상대적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1.4%이어서 5 분기 이상의 상대적 빈곤 이하의 빈곤한 소비수준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8.5%이다. 그러나 서민층의 소비수준을 5분기 이상 경험한 가구는 20.5%이어서, 5분기 이상 서민층 이하의 소비수준을 경험한 가구는 29.0%에 이른다. 분석기간 동안 서민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17.1%와 더불어 약 30%의 도시가구가 서민가구로 볼 수 있다.

〈表 Ⅳ-6〉 패널家口의 各 階層 經驗 分期回數(期間)

(단위: %)

구 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평균횟수
절대빈곤	70.9	8.6	5.3	3.4	2.8	2.0	1.8	1.5	1.6	1.0	1.2	1.05
상대빈곤	58.1	14.7	11.3	7.2	5.0	2.0	1.3	0.2	0.1	0.0	0.0	1.00
서민층	22.8	12.5	11.3	11.5	10.9	10.4	8.7	6.3	3.1	2.0	0.4	3.09
중상위층	17.1	11.0	8.3	7.3	5.7	6.9	5.1	5.6	6.3	7.7	19.0	4.86

이와 같이 각 계층에의 잔류기간이 각 가구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 가를 보기 위하여 계층경험 분기회수와 2000년 2/4분기의 각 가구의 특성을 회귀 분석하였다. 다만, 절대빈곤에의 집중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T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경험 분기회수의 추정 값이 0 또는 (-)인 경우 그 값을 0으로 하고 양인경우는 추정 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도시 전가구의 절대빈곤층의 잔류분기 회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表 IV-7〉과 같다. 1인당 소비수준이 절대빈곤층의 수준을 경험하는 분기회수(기간)는 발생빈도가 높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절대 빈곤의 경험기간은 기준에 비해 하위의 직종, 학력, 거주형태 등에서는 증가함으로 양의 기여도가 커질 것이고, 상위의 직업, 연령 등에서는 절대빈곤 경험기간을 줄이는 음의 기여도가 커질 것이다. 절대빈 곤의 기간을 증가시키는 양의 기여변수로서는 가구주 종사 직종, 거

주형태, 부부별거 변수가 주요한 특성이었고, 음의 기여변수로는 가구 주 종사 직업, 연령, 학력의 순으로 기간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전체 적으로 절대빈곤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가구특성은 먼저 가구주 종사 직 종, 직업형태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취업인수, 거주형태, 연령, 학력, 부부동거여부 등이 기간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경제활동상태의 변수는 절대빈곤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가구주의 직종, 직업 및 이들 변수와 상관도가 큰 가구주 종사 산업이 빈곤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직가구 의 절대빈곤 경험기간은 가구주가 공무원 등 사무직 에 종사하는 가 구에 비해 총 10분기 중 약 6분기 정도 긴 것으로 추정되어, 가구주 의 취업여부가 무엇보다도 절대빈곤기간의 결정에 주요하다. 이는 절 대 빈곤층에 들어 간 무직 가구가 빈곤을 탈피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과도 연관되어, 무직 가구는 빈곤화 확률 및 빈곤에 잔류할 확률이 클 뿐 아니라 다른 직종의 가구에 비해 빈곤의 기간도 길다. 기여순 위가 3위인 임시/일용직의 가구의 빈곤기간은 무직가구에 비해 10분 기 중 약 2.2분기가 짧다. 가구주 종사 직종이 공무원 등 사무직, 상 인, 정규생산직, 임시/일용직의 순위로 빈곤기간을 짧게 함으로 주요 경제 가구원인 가구주의 종사 직종이 위의 직종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 직업에 있어서도 많은 가구주가 종사하는 일반 사무직(clerks)에 비해 종합 관리자 는 2.6분기, 각종 조작 및 조립원은 약 2분기 정도 빈곤기간이 짧으므로 직업의 분포도 빈곤기간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이는 <表 Ⅲ-8>에서 관리자 및 전문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및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직업 가구의 '99년 빈곤탈피율이 컸던 것 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취업인 수는 1인의 취업인이 증가할 때 가구의 절대빈곤기간을 0.51만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통계 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 그러나, 이 효과는 취업인 없는 가구에 비한

1인의 가구원이 취업할 때 매우 유의하고, 2인 이상의 취업에서는 취업규모와 빈곤기간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못하여, 역시 가구주 혹은 가구원의 취업 유무가 빈곤기간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절대빈곤 기간의 증대에 부부간의 동거가 별거 가구에 비해 약 3.7분기 길은 것으로 추정되어 <表 Ⅲ-11>에서 동거가구의 절대빈 곤 탈피율이 별거가구보다 적은 것과 같은 성향을 보였다. 가구주 연 령이 절대빈곤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30대 가구주 가구를 기준으 로 할 때 40대는 약 1.4분기 정도 빈곤기간이 짧고 <表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탈피율도 가장 커서, 40대 가구주의 가구가 가장 빈곤으로 벗어날 가능성 큼을 알 수 있다. 40대 이후 빈곤 탈피율은 감소하였지만 빈곤기간은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적어 30대에 비 해 약 2.5분기 짧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론을 얻지 못해 노인가구 및 고령자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잔류의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추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빈곤탈피율에 유의한 기여를 못한데 반해, 빈 곤기간에는 유의하고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학력의 변수도 표 III-16 에서 빈곤탈피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으나 통계적 증명은 안되고 있으며, 오직 고등학교 학력에 비해 대학교 이상의 학력 가구 주 가구의 빈곤기간은 약 2.1분기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 반가구의 특성의 측면에서 보면, 부부동거, 연령 및 거주형태는 빈곤 탈피 가능성에서와 같은 빈곤기간과 유의하고 주요한 관계를 가지나 학력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8).

<sup>18)</sup> 본 연구의 분석에서 고려되지 못한 변수로는 만성질환, 장애여부 등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나 도시가계연보에서 조사되지 않는 항목들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表 Ⅳ-7〉 絶對的 貧困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Log Likelihood function= -2789)

구분		추정계수	t값	기여순위( 양의 기여	(기준중심) 음의 기여
상수		-3.377	<del>-4.52**</del>	89 719	급의 기억
 취	 업인원수	512	-2.52**		
	정규생산직	3.093	4.33**	4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4.747	5.95**	3	
직종 더미	상인	2.872	4.42**	5	
(기준: 사무직)	개인 및 법인경영인	<b>—.537</b>	<b>—.50</b>		
	무직	5.935	5.78**	1	
	관리자	-2.567	-2.00**		3
	각종 전문가	-1.367	-1.32		
	기술공및준전문가	-1.432	-1.85*		7
가구주 종사	서비스/판매원	—.823	—.97		
직업 더미	기능관련자	—.988	-1.15		
(기준:일반사무직)	조작/조립원	1.988	-2.25**		6
	행상/단순서비스	095	—.10		
	농어업/건설/단순노무	443	39		
	무직및 분류불능	-3.188	-2.63**		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644	1.46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11	4.74**	9	
(기준:고졸)	전문대	051	—.09		
(기世. 上宣)	대학 이상	-2.143	-4.63**		5
 가구주 연령	10대 및 20대	1.099	1.66*	10	
어미	40대	-1.392	-3.84**		8
(기준:30대)	50대	-2.543	-5.42**		4
(月世:30年)	60대 이상	534	-1.00		
	무상주택 및 사택	2.031	2.55**	7	
거주형태 더미	전세	1.992	6.14**	8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2.264	4.13**	6	
	사글세 및 월세	4.804	4.37**	2	
동거여부	별거	-3.672	-4.27**		1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436	—.85		

#### 註: \*\*\*p<.01, \*\*p<.05, \*p<.10.

취업인 수를 더미변수로 바꾸었을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정값의 크기나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취업인수를 더미변수(1인 기준)화 했을 때의 계수값(t 값)은 취 업인 0: 3.98(3.86\*\*), 취업인 2 : -.29(.93), 취업인 3 : -.82(1.61).

상대적 빈곤을 경험한 분기회수(기간)에서도 기준 변수에 비해 빈곤 기간을 늘리는 중요 변수로는 가구주 종사의 직종, 거주형태, 학력의 순서이어서 영향 기간의 정도는 적지만 절대빈곤기간에의 영향순위와 동일하다.

첫째, 가구주 종사 직종은 상대적 빈곤기간에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영향의 크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임시/일용직은 공무원 등의사무직에 비해 상대적 빈곤기간이 총 10분기 중 1.9분기 길고, 무직은 1.6분기 길다. 그러나 직업의 기여도는 통계적 유의성이 대부분 적고,관리 및 전문직에서만 유의성이 있으나 기여의 크기는 직종에서 보다작다. 취업인 수는 통계적 유의도가 없다. 비록 취업인 더미변수를 이용하였을 때는 취업인 0와 3인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를 보였지만, 그영향의 크기가 절대빈곤에 비해서는 매우 적어 전체적으로 상대적 빈곤기간에의 영향은 유의성이 크게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가구의 기타 특성에서는 기준변수에 비해 빈곤기간을 줄이는 순위는 연령, 주거, 별거, 학력의 순위로써 별거, 주거, 연령, 학력의 순위를 보인 절대빈곤에의 영향순위와는 차이가 있다. 부부동거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상대적 빈곤 경험 기간은 별거에 비해 약 1분기 정도만 증대하여 절대빈곤의 경험 기간증대(약3.7분기) 보다는 크게 적다. 가구주 연령도 절대빈곤기간에서의 영향보다 크게 적어 40대 및 50대 가구주 가구의 경험기간 감소도 절대빈곤 영향기간보다 약0.2분기 및 0.8분기 정도만 적다. 가구주의 학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고졸에 비한 대졸 학력가구의 상대적 빈곤기간 감소효과는 절대빈곤에의 영향(약2.1분기)보다 크게 적은0.8분기에 불과하다. 거주유형의 상대적 빈곤 증대기간도 크게 적다. 예컨대, 자가에 비해 보증부 월세입 가구의 상대적 빈곤기간은 0.7분기밖에 증가하지 않아 절대빈곤에의 영향(약2.3분기)보다 크게 적다. 따

라서 동거여부, 가구주 연령, 학력, 거주형태 등의 일반가구 특성이 상대적 빈곤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영향을 받는 기간정도는 절대빈곤에서 보다 크게 적다. 이러한 적은 효과는 절대빈곤층의 빈 곤탈피율 보다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 탈출률 특히 차상위층으로의 이 동률이 매우 큰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학력, 고령가구주 및 단독주택 가구의 탈피율이 상대적으로 큼으로써 상대적 빈곤 경험기간을 감소 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빈곤기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특성은 절대빈곤에서와 같이 경제활동 변수이나, 이 특성의 기간에의 영향은 역시 적다. 예컨 대, 상대적 빈곤에의 영향이 가장 큰 직종인 일용/임시직은 기준변수 인 공무원 등의 사무직에 비해 상대적 빈곤기간을 약 1.9분기 증대시 키나, 절대빈곤 기간의 증대 효과인 약 4.8분기보다 현저히 적다. 무 직변수의 상대적 빈곤기간 증대 효과도 약 1.6분기에 그쳐 절대빈곤 의 약 6분기에 비해 크게 적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기간에의 영향에 서 가구주 종사의 경제상태의 변수 특히 직종 변수는 전장에서 본 바 와 같이 상대적 빈곤의 탈피율에도 주요한 영향요소이었고 상대적 빈 곤의 경험기간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영향을 받는 기간은 절대 빈곤에서 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表 Ⅳ-8〉 相對的 貧困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Log Likelihood function= -3291)

구분 추정계수 từ 기여순위(기준중심) 양의 기여 음의 기여 상수565 -1.65* 취업인원수 .1161 1.23 10 의용 기구주 종사 집중 더미 (기준: 사무직) 된 변인경영인 .127 .30 무직 1.571 3.05** 2 의원(기준중심) 기술 전원(기준중심) 기원 및 법인경영인 .127 .30 무직 1.571 3.05** 2 의원(기준 전원)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21 -2.52** 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21 -2.52** 4 기술관 및 준전문가 -3.79 -1.12 서비스/관매원 -3.67 -9.6 기능관리자 -2.62 -6.7 조작/존립원 3.376 -9.4 행상/단순서비스 등어업/건설단순노무 -2.33 -4.3 무직 및 분류불능552 -9.2 기준 및 분류불능 -5.552 -9.2 기준 및 문제대학 이상 -849 -4.16** 6 의자 기준 연령 더미 (기준: 남) 10 .33			(-	Log Lines	mood rune	3271)	
상수565 -1.65*   Squ 기여 음의 기여 임상 인공 기에 임상 인공 기에 임을 기어 임상 인공 기에 임상 이름을 기어 임의 임의 기에 임의 임의 기에 임의 임의 기에 임의 임의 임의 기에 임의 임의 임의 기에 임의		그님		4 7 L	기여순위(기준중심)		
취업인원수1161 1.23 10  정규생산직 1.168 3.65** 6 일용/임시생산직 1.875 5.08** 1 상인 1.177 4.14** 5 개인 및 법인경영인 .127 .30 무직 1.571 3.05** 2 관리자 -1.534 -2.84** 2 각종 전문가 -1.121 -2.52** 4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9 -1.12 서비스/판매원36796 기능관련자26267 조작/조립원37694 행상/단순서비스12128 농어업/건설/단순노무23343 무직 및 분류불능552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전문대559 -1.93* 8 다마 (기준:30대)559 -1.93* 8 다마 (기준:30대)121 -7.21** 3 5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대 이상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가주형태 더미 (기준:자가) 보증부 원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ナタタナ	【纸	양의 기여	음의 기여	
지구주 종사 직종 더미 (기준: 사무직)		상수	565	-1.65*			
가구주 종사 집중 더미 (기준: 사무직) 변인	취	업인원수	.1161	1.23	10		
지종 더미 (기준: 사무직) 상인 1.177 4.14** 5 기간 및 법인경영인 .127 .30 무직 1.571 3.05** 2 관리자 -1.534 -2.84**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34 -2.84**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9 -1.1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67 -9.6 기능관련자 -2.62 -6.67 기능관련자 -2.62 -6.67 조작/조립원 3항상/단순서비스 -1.21 -2.88 농어업/건설/단순노무 -2.23343 무직 및 분류불능 -5.52 -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중졸 이하 전문대 -5.59 -1.93* 8 대학 이상 -8.49 -4.16** 9 전문대 대학 이상 -8.49 -4.16** 6 기수구 요육수준 너미 (기준:30대) 전에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 -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전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정규생산직	1.168	3.65**	6		
(기준: 사무직) 개인 및 법인경영인 .127 .30 무직 1.571 3.05** 2  관리자 -1.534 -2.84** 2 각종 전문가 -1.121 -2.52** 4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9 -1.12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1.875	5.08**	1		
무직 1.571 3.05** 2 관리자 -1.534 -2.84** 2 각종 전문가 -1.121 -2.52** 4 기술공 및 준전문가 -3.379 -1.1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379 -1.12 시비스/판매원 -3.367 -96 기능관련자 -2.62 -6.67 조작/조립원 -3.76 -94 행상/단순서비스 -1.21 -2.8 농어업/건설/단순노무 -2.3343 무직 및 분류불능 -5.52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이하 .691 4.16** 9 전문대 -5.59 -1.93* 8 대학 이상 -849 -4.16** 6 10대 및 20대 .110 .33 가구주 연령 더미 (기준:3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전에 이상 -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전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직종 더미	상인	1.177	4.14**	5		
관리자 각종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승관련자 기승관련자 기승관련자 기승관련자 기승관련자 기승관련자 기승관련자 기승관련자26267 조작/조립원 행상/단순서비스12128 농어업/건설/단순노무23343 무직 및 분류불능552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전문대 대학 이상849 -4.16** 이어 및 20대 기준:30대) 기주형태 더미 (기준:30대) 가주형태 더미 (기준: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및 월세104 -2.59**  보증부 일세 사글세 및 월세104 -2.59**  4  4  4  4  -1.534 -2.84** 2  4  -1.121 -2.52** 4  -376 -94  -94  -94  -94  -95  -92	(기준: 사무직)	개인 및 법인경영인	.127	.30			
자구주 종사 지업 더미 (기준:일반사무직) (기준:일반사무직) (기준:일반사무직) (기준:일반사무직) (기준:일반사무직) (기준:일반사무직) (기준:의반사무직) (기준:의반사무직) (기준:의법) (기준:의법) (기준:의법) (기준:기준)		무직	1.571	3.05**	2		
기술공 및 준전문가379 -1.12		관리자	-1.534	-2.84**		2	
가구주 종사 직업 더미 (기준:일반사무직) 조작/조립원36794 행상/단순서비스12128 농어업/건설/단순노무23343 무직 및 분류불능552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전문대559 -1.93* 8 대학 이상849 -4.16** 9 간단대 및 20대 .110 .33 가구주 연령 더미 (기준:3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823 -3.24** 7 거주형태 더미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1411 3.64** 3 가구후 열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각종 전문가	-1.121	-2.52**		4	
지숙입 더미 (기준:일반사무직) 조작/조립원37694 행상/단순서비스12128 농어업/건설/단순노무23343 무직 및 분류불능552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9	-1.12			
직업 더미 (기준:일반사무직)	가구주 좋사	서비스/판매원	367	—.96			
(기준:일반사무직) 조작/조립원37694 행상/단순서비스12128 농어업/건설/단순노무23343 무직 및 분류불능552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전문대559 -1.93* 8 대학 이상849 -4.16** 6 10대 및 20대 .110 .33		기능관련자	262	—.67			
행상/단순서비스12128 농어업/건설/단순노무23343 무직 및 분류불능55292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전문대559 -1.93* 8 대학 이상849 -4.16** 6 10대 및 20대 .110 .33 가구주 연령 더미 (기준:3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전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조작/조립원	376	—.94			
무직 및 분류불능	(12.2211 ))	행상/단순서비스	121	—.28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전문대559 -1.93* 8  전문대559 -1.93* 6  가구주 연령 더미 (기준:30대) 10대 및 20대 .110 .33  4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전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농어업/건설/단순노무	233	43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이하 .691 4.16** 9 전문대 .559 -1.93* 8 대학 이상849 -4.16** 6  가구주 연령 더미 (기준:30대) 5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전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무직 및 분류불능	552	92			
지구구 교육구는 (기준:고졸) 전문대559 -1.93* 8 대학 이상849 -4.16** 6 10대 및 20대 .110 .33 4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전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10	.48			
(기준:고졸) 전문내559 -1.93* 8 대학 이상849 -4.16** 6  가구주 연령 더미 (기준:30대) -1.231 -7.21** 3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823 -3.24** 7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거주형태 더미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910 5.88** 7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コユス コウムス	중졸 이하	.691	4.16**	9		
지구주 연령 더미 (기준:30대)		전문대	<b>—.559</b>	-1.93*		8	
기구수 연당 더미 (기준:30대) $\frac{40 \text{ II}}{50 \text{ II}} -1.231 -7.21**$ 3 $\frac{50 \text{ II}}{60 \text{ II}} -1.720 -7.86**$ 1 $\frac{60 \text{ II}}{60 \text{ II}}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世:五三)	대학 이상	849	-4.16**		6	
더미 (기준: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이상 823 3.24**     1 	기그즈 어려	10대 및 20대	.110	.33			
(기준:30대) 50대 -1.720 -7.86** 1 60대 이상823 -3.24**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40대	-1.231	<del></del> 7.21**		3	
Head Substitute		50대	-1.720	<del></del> 7.86**		1	
거주형태 더미 전세 .910 5.88** 7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月世:30年)	60대 이상	823	-3.24**		7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무상주택 및 사택	1.411	3.64**	3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전세	.910	5.88**	7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보증부 월세	.719	2.65**	8		
		사글세 및 월세	.140	.233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145 .58	동거여부	별거	-1.04	-2.59**		5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145	.58			

#### 註: \*\*\*p<.01, \*\*p<.05, \*p<.10.

취업인 수를 더미변수로 바꾸었을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정값의 크기나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취업인수를 더미변수(1인 기준)화 했을 때의 계수값(t 값)은 취업인 0: .95(2.04\*\*), 취업인 2 : .03(.21), 취업인 3 : .50(2.15).

다음으로 일인당 소비수준이 서민층인 기간을 증가시키는 특성의 영향의 순위를 살펴보면 거주형태, 직종 및 취업인수, 가구주 성, 학력 등의 순서이고, 경험기간을 감소시키는 순위는 직업, 가구주 연령, 동거여부, 학력이다. 그러나, 이들 특성의 기간에의 영향은 절대 및 상대적 빈곤기간에의 영향에서 보다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가구주 경제상태의 서민층 기간에의 효과는 관리자 직업 변수를 제외하면 각종 전문가 직업이 일반사무직에 비해 약 1.1분기만적어, 서민층 경험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직종군 및 직업군의 변수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이들의 영향기간도 매우 미약하다. 이는 III장에서나 Multi-nomial Logit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서민층의 차상위층으로의 이동률에서 경제변수의 기여가 적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으나, 비교적 상하 이동률이 컸던 임시/일용직 및 추출 및 건축기능 직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의 산업의 영향이 추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취업인 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주로 취업인 1인 및 3인의 유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인 수의 기간에의 영향은 서민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에서 보다 크다. 2인의 취업은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에서와 같이 역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아 2인 가구원의 취업의 질이 다른 규모와 상이한 것으로 즉, 열악한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반면에 가구주 연령, 거주형태, 동거여부, 가구주 성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과 더불어 서민층 경험기간에의 영향도 1~1.9분기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Ⅲ장의 서민층 탈피율에서경제변수 보다 일반가구특성 변수가 보다 뚜렷한 영향을 준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서민층의 경험 기간은 경제 변수 보다 연령 및 거주형태 등 그 동안의 축적된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비경제변수 중 별거의 서민층 경험 기간 감소효과가 가장 큰데, 별

거가구는 동거 기간에 비해 중하위 모든 계층에서의 경험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되어, Multi-nomial 분석에서 별거가 상향이동보다는 계층전락혹은 중하위층 잔류효과가 컸던 것과 같은 결과가 추정되었다.

가구주의 고 연령은 30대 가구주 가구에 비해 서민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중하위층에서 30대 가구주 가구의 서민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구주 학력은 유의한 효과를 가지나, 다른특성 변수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 고등학교 학력에 비한 전문대 학력은 서민층 기간을 불과 0.5분기만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기타의 변수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거주 형태는 보증부 월세를 제외하면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그 영향기간도 자가에 비해 오직 0.6분기만 길뿐이다.

〈表 IV-9〉 庶民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Log Likelihood function= -5230)

		(-	208 2111011			
	구분	추정계수	t값	기여순위(기준중심)		
	丁七			양의 기여	음의 기여	
	상수	2.854	8.59**			
취	업인원수	.366	3.87**	4		
	정규생산직	.456	1.47	2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474	1.29			
직종 더미	상인	.211	.78			
(기준: 사무직)	개인 및 법인경영인	202	—.53			
	무직	.483	.94			
	관리자	-2.189	-4.54**		1	
	각종 전문가	-1.127	-2.84**		5	
	기술공 및 준전문가	— .11 <b>5</b>	—.36			
가구주 종사	서비스/판매원	023	06			
직업 더미	기능관련자	209	.55			
(기준:일반사무직)	조작/조립원	.514	1.31			
	행상/단순서비스	—.275	07			
	농어업/건설/단순노무	270	49		-	
	무직 및 분류불능	107	18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368	1.62	3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7	2.04**	5		
	전문대	525	-1.83*		9	
(기준:고졸)	대학 이상	-1.031	-5.23**		7	
 가구주 연령	10대 및 20대	070	20			
어머 현장	40대	-1.061	6.28**		6	
(기준:30대)	50대	-1.860	-8.72**		2	
(/ [전.30])	60대 이상	-1.203	-4.68**		4	
	무상주택 및 사택	.520	1.25			
거주형태 더미	전세	.227	1.43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587	2.08**	1		
	사글세 및 월세	—.977	-1.53		8	
동거여부	별거	-1.389	-3.46**		3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124	—.05			

#### 註: \*\*\*p<.01, \*\*p<.05, \*p<.10.

취업인 수를 더미변수로 바꾸었을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정값의 크기나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취업인수를 더미변수(1인 기준)화 했을 때의 계수값(t 값)은 취 업인 0: -.91(2.04\*\*), 취업인 2: .12(.83), 취업인 3: .88(3.69\*\*).

다음으로 중상위층에 대해 살펴보면, 중상위층의 경험기간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은 중하위의 3개 계층에서의 영향 추정과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직종 및 거주 형태 등의 양의기여 변수가 음의 기여 변수로 바뀌고, 직업, 연령 등 음의 기여 변수가 양의 기여 변수로 바꾸었다. 그러나 영향의 순위에서는 방향만을 달리하지 중하위층에서와 비슷하여, 음의 기여가 큰 순위는 직종, 거주 형태 및 학력의 순이고, 양의순위는 연령, 직업, 동거여부 및 학력과 같다. 다만, 가구주 성과 같은 변수는 중상위층의 경험기간에는 영향을 유의하게 주지 못하고 있다.

먼저, 중상위층의 경험기간에는 가구주의 경제상태, 특히 종사 직종이 주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종이 임시/일용직 및 무직인 경우 중상층 경험기간을 10분기 중 각각 약 3.2 분기 감소시키고, 직업이 각종전문가나 관리자이면 일반 사무직 보다 중상층 경험기간이 10분기 중 각각 1.9 및 3.2분기만큼 길다. 이는 <表 III-59>에서 <表 III-60>까지에서 임시/일용직의 중하위층으로의 전략률이 컸고 전문직 및 관리직의중상위층 잔류율이 컸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경제변수는 중상위층의 이동률뿐 아니라 경험기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구주 종사 직업은 전문직 및 관리직에서만 유의성을보여 Multi-nomial 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인 수도 유의한 기여를 못하고 있으며, 3인 취업의 유의한 관계도 크기가 적다.

둘째, 일반가구의 특성도 중상위층의 경험기간에 서민층이나 상대적 빈곤층에서 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가구주 연령은 중상위층의 경험기간에 큰 영향을 주어 50대 가구주 가구는 기준변수인 30대가구주 가구에 비해 10분기 중 4.1분기 정도 더 길게 중상층소비수준을 경험한다. 40대 가구주 가구는 2.5분기 더 길게 중상층소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가의 가구는 10분기 중 월세가구보다 3.0분기, 보증부 월세보다 2.4분기 전세가구보다 1.7분기 더 길게

중상위층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다른 계층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거나 효과가 적었던 가구 학력이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매우 유의하고 기여도도 크게 추정되었다. 대졸 가구주 가구는 고졸 가구주 가구 보다 2.3분기, 부부별거가구는 동거가구보다 3.0분기 더 길게 중상층 수준의 소비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Ⅲ장의 분석과 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인 중상위층 잔류율이 고학력, 거주형태, 연령 등과 관련이 컸던 과 같은 방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상위층의 경험기간은 절대빈곤층의 경험기간에서와 같이 경제 및일반가구의 특성이 유의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각 계층의 잔류율에의 영향에서 와도 같다.

〈表 Ⅳ-10〉 中上位層 經驗期間에 대한 推定

(Log Likelihood function= -5395)

		(1	Log Like	mood runci	10113393)
	·	, 7L	기여순위(기준중심)		
구분		추정계수	t값	양의 기여	음의 기여
	상수	4.807	9.15**		
취	업인원수	200	-1.33		
	정규생산직	-1.674	-3.41**		6
가구주 종사	일용/임시생산직	-3.252	-5.50**		1
직종 더미	상인	-1.453	-3.40**		7
(기준: 사무직)	개인 및 법인경영인	.356	.58		
	무직	-3.178	-3.87**		2
	관리자	3.228	4.22**	2	
	각종 전문가	1.891	3.01**	6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3	1.15		
가구주 종사	서비스/판매원	.055	09		
직업 더미	기능관련자	143	24		
(기준:일반사무직)	조작/조립원	022	04		
	행상/단순서비스	560	84		
	농어업/건설/단순노무	.114	.13		
	무직 및 분류불능	.1313	1.38		
가구주 성별 더미 (기준: 남)		—.479	-1.32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1.405	-5.15**		8
	전문대	1.114	2.45**	8	
(기준:고졸)	대학 이상	2.257	7.22**	5	
가구주 연령	10대 및 20대	.214	.38		
기구구 현명 더미	40대	2.472	9.11**	3	
	50대	4.142	12.10**	1	
(기준:30대)	60대 이상	1.867	4.56**	7	
	무상주택 및 사택	-1.351	-2.04**		9
거주형태 더미	전세	-1.740	-6.83**		5
(기준:자가)	보증부 월세	-2.434	-5.30**		4
	사글세 및 월세	-3.002	-2.83**		3
동거여부	별거	2.998	4.71**	3	
(기준:동거)	배우자 없음	.026	.06		

### 註: \*\*\*p<.01, \*\*p<.05, \*p<.10.

취업인 수를 더미변수로 바꾸었을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정값의 크기나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취업인수를 더미변수(1인 기준)화 했을 때의 계수값(t 값)은 취업인 0: -1.13(1.62), 취업인 2: .03(.13), 취업인 3: -.79(2.10\*\*).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각 계층에서의 이동률과 계층 경험 기간에 영향을 주는 가구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특성이 계층 이동률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나 계층경험기간의 결정에 서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민층을 제외한 모 든 계층에서 가구주 종사 직종이 경험기간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영향 기간은 절대빈곤층 > 중상위층 > 상대빈곤층의 순으로서 Multi-nomial 분석에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가구주 종사 직종의 이동률에서 와 경험기간에 대한 효과가 다르다. 즉, 절대빈곤에서는 가구주 종사 직종이 빈곤탈피 및 빈곤기간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만, 중상위층에서 는 직종의 계층 전락효과는 적으나 계층존속 즉, 안정효과는 크다. 취 업인 수는 절대빈곤층 기간에서 주요한 영향을 주었고, 상대적 빈곤 층 및 중상위층의 경험기간에는 주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2인의 취업은 모든 계층의 경험기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여, 2인 취업의 성격이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가구의 취약특성은 계층이동 및 경험기간 모두 중상위층에서 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그리고 절대 빈곤 경험기간에도 주요한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서민층과 중상위층에서의 가 구특성의 계층 경험기간에의 영향은 경제변수의 영향을 오히려 능가 하고 있다. 특히 중상위층에서는 50대 가구주 연령 변수는 임시/일용 직이나 무직의 직종 보다 경험기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주거, 학력, 별거 변수 등도 기타 직종 보다 경험기간에의 영향이 크다.

셋째, 따라서 경제적 변수는 계층이동 발생 확률과 경험기간에 모 두, 그리고 일반적 가구특성은 계층 경험기간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빈곤의 예방 및 중하위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고 중상위층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장기 빈곤화 계층의 대상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는 중하위층 소비수준의 경험을 많이 한 가구의 특성은 경제활동 뿐 아니라 일반가구의 특성도 취약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절대 및 상대적 빈곤의 경험이 분석기간의 1/2을 넘고 전 가구의 약8.5%에 이르는 가구의 특성은 고연령, 저학력, 주거형태 등에서의 취약성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어, 취업의 취약과 더불어 주요하다.

다섯째, 가구주 학력은 중하위층의 계층이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못 주었지만, 서민층의 계층 경험기간 특히 중상위층의 중하위층으로의 전락 및 중상위층의 존속기간에도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가 구주 학력관련 서민대책 혹은 중산층 보호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IV장에서 분석한 계층귀속, 이동과 경험기간의 결과를 요약하면<sup>19</sup>), 첫째, 가구주 종사 직종을 중심한 경제변수는 계층의 귀속, 이동 및 존속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변수는 절대 및 상대빈곤화는 물론 중상위층화에서도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크고, 기여도도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구주 종사 직종이며, 이 중에서도 임시/일용직, 무직, 상인 등의 직종이 기준변수인 공무원 등 사무직에 비한 계층 귀속, 이동 및 경험기간에의 기여도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변수는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의 계층이동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서민 및 중상위층에서는 계층 귀속 및 경험기간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도시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서민층화(귀속) 및 중상위층화(귀속) 그리고 이 계층의 경험기간에서는 경제변수보다 더 중요한 혹은 비슷한 정도의 기여를 함으로써, 경제변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중상위층에서 중하위로의 하향이나 서민층의 계층 이동에서 일

<sup>19)</sup> 이동경험 유 및 무 가구의 특성분석과 다빈도 이동가구의 특징, 그리고 양 유형 가구의 정책참여여부 및 참여수준도 분석될 필요가 있음.

반특성은 경제변수 보다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기타 유의할 특징 은 배우자와의 별거가구와 30대에 비한 50대 및 40대 가구주, 자가에 비한 사글세 및 월세의 거주형태 가구의 계층 귀속 및 이동 그리고 경험기간에서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다. 가구주 연령 및 거주형태의 기준 특성에 비한 기여의 방향은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배 우자와의 동거가구에 비한 별거가구의 특성은 다른 계층에서와는 달 리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절대빈곤으로의 하향화에 더욱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계층에서는 계층 상향 이동, 귀속 및 경험기간 에 모두 양의 기여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 은 다른 일반 특성에 비해 기여도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지만, 중상위층의 하위층으로의 계층전락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 며, 특히 계층귀속 및 경험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 를 보이고 있다.

셋째, 따라서 경제적 변수는 계층 귀속, 기간 및 이동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고 중요한 기여를 하고, 일반 가구특성은 계층 귀속 및 경험기간, 특히 서민층 및 중상위층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반 가구특성은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의 계 층 귀속 및 경험기간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빈곤층은 경제 특성뿐 아니라 일반 가구특성에서도 취약한 상 태임을 실증하고 있다.

넷째, 절대빈곤층은 빈곤탈피 및 귀속에서 경제변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빈곤기간에 있어서는 일반가구의 특성에 의 해서도 다른 계층에서 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어 경제상태는 물론 가 구 일반적 취약특성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귀속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 구주 종사 직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연령, 가족관계, 주택, 교육에

걸쳐 전반적인 가구특성에 대한 대책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상대적 빈곤층은 절대빈곤층과 더불어 가구주 종사 직종에 가장 큰 영향을 특히 계층 귀속 및 이동에서 받고 있다. 그리고 일반 가구 특성 특히 가족관계 및 거주형태는 상대적 빈곤 계층하락과 주요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서민층은 계층귀속, 이동 및 경험기간에서 경제 및 가구 특성과 유의한 관계도가 네 계층에서 가장 적다. 그러나, 서민층에의 계층 귀속 및 타 계층으로의 이동에서 경제변수 보다는 가구의 일반특성의 영향도가 크고, 경험기간에서도 경제변수 보다는 일반가구의 특성변수의 유의도가 크고 다양하다.

# V. 貧富隔差 緩和 政策 現況 및 改善方案

## 1. 階層別 租稅・福祉・勞動政策事業의 現況

소득 및 지출분포에서 상위층 이하의 대부분 계층의 전반적인 점유비중 감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하위 10% 및 상위 5~10%으로의 편의화 그리고 중산층의 서민화와 같은 계층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패널가구의 서민층 이하의 경험기간이 10분기 중 5분기 이상인 가구비율이 29.0%이며, 상대적 빈곤 이하의 경험기간이 5분기 이상인 가구의 비율도 8.5%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이에 대응하여 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 가. 俸給生活者의 各種 所得稅 輕減政策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 정책을 통하여 분배효과를 증진시킬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감정책이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에 따른 부담 경감액은 9000억원에 이르러 방대한 규모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액 자체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및 주민세의 경감 등에서도 약 4000억원이 경감되고 있으나,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이 적용 받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대책 효과는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급자의 소득세 경감액은 1999년에 총 1조 7735억원이고, 2000년에는 약 1조 973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경감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층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서민층 이상의 계층이 가장 큰 규모의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V-1〉 俸給生活者의 年間 總 所得稅 輕減效果(1999)

구 분	세부담경감액	내 역
근로소득공제	Δ9,000억원	2000년 연간급여액 500만원까지 전액 공제, 500~1,500만원 40%, 1,500만원 이상 10% 공제(한도 연 1,200만원)
신용카드공제	Δ750억원 (2000년 Δ2,000억원)	신용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 초과시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한도 연 300만원)
특별공제	Δ3,800억원	
(보험료공제한도인상)	(Δ 900억원)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인상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교육비공제한도인상)	(Δ1,100억원)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70에서 100만원, 대학교: 연 230에서 300만원으로
(의료비공제한도인상)	(Δ1,200억원)	연급여 3%를 초과한 의료비공제한도: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주택구입차입금공제)	(Δ 600억원)	주택차입금 상환액 공제: 연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근로자우대주택	Δ550억원	
주민세경감	Δ3,635억원	
합 계	Δ17,735억원 (2000년 추정 경감액 19,735억원)	

資料: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1999, pp.257~259.

# 나. 庶民層 生活安定 支援 및 融資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예산은 1999년 1조 848억원에 이른다. 창업지원 예산 2790억원을 제외하여도 약 8000억원이 서민들의 주택, 교육, 경영 및 생계 융자의 예산으로 대부분 책정되고 있다.

〈表 V-2〉 中産層과 庶民層의 生活安定 豫算(1999)

		(76 35(7) (1000)
<del></del> 구분	소요예산	비고
। ਦ	(억원)	1177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2,790	
· 신용보증기금확충	2,000	최대 4조원 보증효과
·신기술 보유인력 창업지원	140	
· 신기술창업보육센터입주자확대	150	
・정보통신S/W벤처기업창업지원	400	
· 여성기업 창업지원	100	
서민생활 부담완화	7,155	
· 자녀교육비지원	1.155	
학자금융자 확대	99	대학생 학자금 215 천명
지방교육재정지원	1000	
- 특기, 적성교육활동	(380)	사교육비 경감 위해 150천명
- 중학교급식시설 확충	(620)	저소득층지역의 286개교
저소득자녀 유치원학비지원	56	생보대상자와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23천명, 6개월
· 지역의료보험지원	1,000	
·근로자주택 및 전세금 확대	5,000	재정융자 특별회계: 주택구입 및 전 세금융자 각 3천만원 및 2천만원 한 도
농어민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358	농·수·축협자금 1.1조원 으로 융자
장기체불근로자 등 지원	350	
·생계비 대부	250	재특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지원 (8.5% 저리)
·생계곤란 저소득 근로자 융자	100	의료비, 혼례비 저리융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95	854개 경로식당 무료급식 38억원, 장 애인의 자녀 수업료 지원 및 재가복 지센터 28억원 지원 등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지원	100	중소유통업의 유통정보화시설 구입 지원 30억원, 물류거점시설 건설지원 70억원
합 계	10,848	

資料: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1999, pp.260~265.

복지부 예산에 반영된 저소득자녀 유치원비 지원, 지역의료보험지원,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을 제외한, 6807억원이 1999년 복지부 이외의 예산으로 추가 배정되었다.

#### 다. 福祉部의 福祉政策 豫算

저소득층 복지의 주무 부처로 볼 수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예산은 2000년 총 4조 272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조 1432억원과 특별회계(재정융자, 농특세) 1296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예산에 1조 6621억원과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 예산에 2조 6107억원으로 구분된다. 총 사회복지예산은 다시 동 예산의 72.6%인생활보호예산 1조 8960억원과 기타 사회복지예산 714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회계인 영세민 생업자금을 제외한 2000년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 중 가장 큰 사업은 생활보호예산의 생계보호 34.2%, 의료보호 31.3%이고, 기타 생활보호인 교육보호 및 공공근로는 각각 3.6% 및 3.7%이었다. 기타 일반 사회복지예산 중에는 노인복지 예산이 가장 큰 39.3%, 아동 29.0%, 장애인 22.1%, 사회복지전문요원 5.5%, 사회복지관 2.5%, 여성 1.4%의 순서이다.

사회복지예산 중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현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보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생계보호,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수당, 재가노인에 대한 경노연금, 소년소녀가장보호, 입양아 양육보조,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저소득 아동 보육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1조 2245억원이어서, 사회보험을 제외한 사회복지 일반예산 2조 5427억원의 48.2%이다.

여기에 복지부의 생활보호 특별회계 예산을 400억원을 포함한 재정 융자특별회계 예산 680억원을 포함하면 사회보험을 제외한 복지예산은 2조 6107억원이고, 현금급여는 1조 2645억원이 되어 비중은 48.4%로 소폭 증대한다.

〈表 V-3〉 福祉部 一般會計 社會保障豫算의 構成(2000年)

(단위: 억원)

구분	총예산	현금	서비스	시설	기타
전 체	41,432	-	-	-	-
생활보호	18,560	9,419	8,884	-	257
생계보호	8,689	8,483	-	-	206
교육보호	915	-	915	-	-
의료보호	7,969	-	7,969	-	-
공공근로	936	936	-	-	-
기타사회복지	6,867	2,826	317	3,673	51
사회복지관	169	-	-	169	-
복지전문요원	379	-	-	379	-
장애인	1,521	277	104	1,116	24
노인	2,702	1,999	118	571	14
아동	1,988	550	94	1,343	0
여성	96	-	1	95	0
의료보험	15,233				
국민연금	771				

資料: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2000.

의료보호를 포함한 직접적인 서비스 급여는 교육보호, 장애인 의료 및 자녀학비 지원, 재가노인의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건강 진단, 경노당 무료급식,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민간보육시설교재 및 교구비, 만 5세아 무상보육 등 9201억원에 이르러 사회복지 일반 예산의 36.2%이다. 특별회계 예산인 재가장애인보호 및 재가 부모자 지원 220억원을 포함하면 서비스 급여예산은 9401억 원으로서 총 사 회복지예산의 36.0%이다. 따라서 일반회계예산에서 저소득층에게 직 접 급여되는 현금 및 서비스는 2조 1460억원으로서 전체 사회복지예 산의 84.4%이고, 시설을 통해 급여되는 서비스의 예산은 14.4%이다

특히 〈表 V-3〉에서 보면 생활보호를 제외한 기타 일반회계 사회 복지예산 중 시설의 운영 및 신개축 등에 대한 지원은 53.5%에 이르 고, 수당 현금지원을 제외한 서비스 지원은 불과 4.6%에 불과하여 취 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시설지원에 따른 대상자 수의 제한과 시설운영의 비리 등 각종 현안과제의 발생 근거가 되고 있다

〈表 V-4〉 政府 部處別 社會保障關聯 特別會計(2000年)

	(3) 1 1/ 政州 山龙州 州至 州平山州州 中山州 中山州					
 구 분	예산(백만원)	비고				
전 체	1,149,600					
복지부 재정융자특별회계	68,000	복지부 사회보장 부문 특별회계는 생활보호 항목(영세민생업자금융자금) 과 기타사회복지항목(재가장애인보호, 가정의례지원, 재가부모자지원)으로 구성됨.				
생활보호	40,000	영세민생업자금융자금				
기타사회복지	28,000					
재가장애인보호	18,000					
가정의례지원	6,000	장례식장건립지원융자, 납골당건립지원융자				
재가부모자 지원	4,000	저소득 부모자 가정지원				
복지부 농특세관리특별회계	61,600	사회보장 항목내의 농어민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보상금, 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보상금임.				
노동부 재정융자특별회계	20,000	사회보장 부문 특별회계로는 장기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임.				
행정자치부 재정융자특별회계	1,000,000	전액 공무원 연금부담금				

資料: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2000. 노동부, 『세입세출예산』, 2000.

보건복지부의 사회보험예산은 지역 및 공교의료보험 지원예산 1조 5233억원, 국민연금 지원예산 771억원과 농어민연금과 관련된 특별회계예산 616억원으로서 총 1조 6620억원에 이른다. 이들 예산은 소득계층과는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교의료보험가입자의 1997년 총 보험급여비 중 표준월급액이 79.5만원이상인 가입자(54.6%)가 점유하는 비중은 약 61.4%, 105.5만원이상의표준월급액 가입자의 점유 비중이 34.1%나 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지역연금 가입대상자의 신고소득분포를 보면 82만원이하의 가입자

비율이 68.7%20)이어서, 지역연금과 의료보험가입자의 소득분포가 동 일하다면, 불과 약 30%의 중상류층 수준의 소득가구가 의료보험급여 비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및 공교 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분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21), 2000년 지역 의료보험의 정부지원예산 1조 3227억원의 61.4%인 약 8121억원이 지 역의보 가입자의 상위 소득자 약 30%를 위해 지원되는 것이며, 다른 보험도 같다면 약 1조원의 정부예산이 상위계층의 보험급여비를 위해 이용되는 역진적 급여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건부분의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정신질환, 결핵, 암 등 병의원 시설의 운영 지원이나 보건교육 및 보건소의 예방접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예산이 계층을 의식하지 않고 투입되고 있 다. 다만,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책의 계층적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모자보건관리비인 임산부검진, 영 유아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모자보건시범보건소 운영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비 그리고 질병관리예산 중 암질환관리 예산의 합인 429억원으로서 전 보건예산의 3262억원의 13.1%이다. 시설지원 예산은 결핵 및 나병원, 검역소 등의 전염병 관리 예산 268억원과 암 질환 관리를 제외한 613억원, 민간병원 등 차관상환 303억원 등의 합 계인 1184억원으로서 36.3%이다. 기타 보건교육, 보건사회행정, 공공 의료기반확충 등에 1295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계층적 배려가 없는 예산이 대부분의 보건예산을 점유하고 있다.

<sup>20) 『</sup>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4, 표 V-9.

<sup>21) 1997</sup>년 직장의보 및 공교의보의 표준보수월액의 분포를 보면 845천원 이하의 가 구비율이 직장의보 41.0%, 공교의보 36.6%임. 따라서 지역의보의 보수월액의 분 포는 직장의보의 분포 비율보다 더욱 적을 것이어서, 공교의보의 분포비율과는 실제로 차이가 클 것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과 문 제점』, 1999, p.45)

〈表 V-5〉 公教醫療保險加入者의 標準月給與額 區間別 保險料, 診療件數,診療費 및 給與費(1997)

(단위: 명, 백만원, 천원, 건)

					`				
	피보험자수	총보험료	Ł (A)	진료건수	총진료비	급여비	(D)	D/A	D/D
구분	피모임사구	금액	비율	(B)	(C)	금액	비율	D/A	D/B
—————————————————————————————————————	1,149,482	472,856	100	28,718,038	927,152	602,707	100	1.27	21.0
	1,149,462	(411)	100	(25.0)	(807)	(524)	100	1.2/	21.0
280 미만	1,621	193	0.04	11,485	315	197	0.03	1.02	17.2
200 기년	1,021	(119.3)	0.04	(7.1)	(194.7)	(121.8)	0.03	1.02	17.2
360 미만	35,522	5,294	1.1	743,801	24,767	16,504	2.7	3.12	22.2
300 - LT	33,322	(149.0)	1,1	(20.9)	(697.2)	(464.6)	2.7	3.12	<i>LL.L</i>
360~465미만	49,076	9,602	2.0	638,361	20,940	13,794	2.3	1.44	21.6
300 403 TE	49,070	(195.6)	2.0	(13.0)	(426.7)	(281.1)	2.3	1.44	21.0
465~615미만	187,491	46,736	9.9	3,343,145	108,560	71,327	11.8	1.53	21.4
403 -013학단	167,491	(249.3)	9.9	(17.8)	(579.0)	(380.4)	11.0	1.55	21.4
615~795미만	248,010	79,432	16.8	6,596,141	201,761	130,832	21.7	1.65	19.8
013 - 793학원	246,010	(320.2)	10.8	(26.6)	(813.5)	(527.5)	21.7	1.03	19.0
795~	291,598	122,284	25.9	8,521,643	254,337	164,604	27.3	1 25	19.3
1,055 미만	291,396	(419.5)	23.9	(29.2)	(872.4)	(564.6)	27.3	1.35	19.3
1,055~	230,195	128,373	27.1	6,264,587	209,352	136,122	22.6	1.06	21.7
1,450 미만	230,193	(557.7)	27.1	(27.2)	(909.5)	(591.3)	22.0	.0 1.00	21./
1,450~	102,224	74,514	15.6	2,479,269	100,559	65,112	10.8	0.87	26.2
1,900 미만	102,224	(728.9)	(24.3)	(983.7)	(637.0)	10.0	0.07	20.2	
1,900이상	6,368	5,809	1.2	131.091	6,932,685	4,409	0.7	0.76	33.6
1,3000	0,508	(912.3)	1.2	(20.6)	(1,088.7)	(692.5)	0.7	0.70	33.0

註: ()안은 피보험자 일인당 금액이며 천원단위임. 資料: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의료보험통계연보』, 1998.

정부의 보건지원 예산은 의료보험지원 예산을 포함하면 1조 8495억원에 이르나, 의료보험예산을 제외하면 불과 17.6%만이 보건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예산의 60% 이상이 저소득층 이상의 계층에게 급여비로 충당되고 있고, 보건예산의 86.9%가 이들 계층에게 귀속될가능성이 있어, 전체 보건관련 정부 일반회계예산의 약 65.8%인 약 1조 2000억원이 빈곤선 이상의 상위계층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 라. 勞動部 및 行自部의 勤勞者 福祉政策의 豫算

행자부의 복지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 잡히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약 3029억원과 행자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 원연금 부담금 1조원인 총계 1조 3029억원이다. 이 중 특별회계예산 인 공무원 연금은 고용주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복지예산 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2001년 공무원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 국고 보조금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2조 463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의료보험에서와 같이 정부지원이 빈곤선 상위 30%에게 약 60% 를 지원하는 역진적 현상이 공무원연금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공공근로예산은 복지부 936억원, 노동부 759억원과 행자부의 3029 억원을 합하면 총 4724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복지부 사업을 제외하 면 공공근로사업이 빈곤선 이상의 계층에게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 다. 예컨대, 행자부의 국가기록물 관리사업 예산 약 29억원과 노동부 의 각 조사사업 및 인턴사원훈련활성화로 주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그러하다. 따라서 적어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노 동부 예산 및 행자부의 기록물관리사업예산 788억원(전체의 16.7%)은 빈곤층 이상의 자에게 투입된다.

노동부 예산은 대부분이 부처의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로 들어가 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혹은 현금급여로 들어가는 예산은, 민 간 및 자치단체의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 및 수당으로 지급될 경상보조금 약 623억원, 고령자은행의 민간경상보조 9.6억원, 공공근로사업 759억원인 약 1392억원뿐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는 계층이 동네의 부인 등이 컴퓨터나 꽃꽂이 등의 훈련을 받는다는 비 판이 있는 것과 같이, 급여의 계층간 분포가 불분명하고, 분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령자은행의 예산도 민간기관 요원의 인건비이고, 공공근로사업에서도 대부분이 민간에게 직접 지 급되는 예산도 인턴사원에게 급여되고 있고, 다른 예산도 고용보험확 대조사, 노동통계조사, 실업대책모니터링, 퇴직금운영제도실태조사 등 의 조사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계층간의 예산분포가 분배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表 V-6〉 行政自治部 社會保障部門 一般會計 豫算

(2) (2) (3) (3) (4) (4) (4) (4) (4) (4) (4) (4) (4) (4				
 구 분	예 산 (백만원)	구 분	예 산	
전체	302,875			
지자체공공근로사업	300,000	국가기록물관리공공근로사업	2,875	
관서운영비	146	비정규직보수	2,419	
여비	10	관서운영비	161	
업무추진비	29	업무추진비	250	
보상금	150	자산취득비	45	
자치단체경상이전	299,665			

註: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 및 행정비를 포함함.

資料: 세입세출예산(대한민국정부), 2000.

### 마. 庶民層을 위한 各種 政策豫算의 綜合

정책의 계층별 Target이 뚜렷한 사업은 생활보호나 사회보험 등 소수이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혹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과 서민층의 계층 간의 정책적 구분이 분명치 않은 사업이 많고, 중상위계층 조차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업도 적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表 V-7〉 所得階層 및 支援類型別 福祉事業 國聯事業의 比較

〈衣 V	二// 所侍陷僧 吴 又拨類望別 幅心事果 關聯事果의 比較
구분	지원 내용(금액: 억원, 대상자: 명)
구빈충	생계·교육보호(9604억원, 1,571,602명), 의료보호(7969억원) 공공근로(936억원), 사회복지전문요원(379억원) 재가장애인지원(350억원, 생보자 90,049명), 경노연금(1999억원, 715,108명)² 재가장애인시설(234억원, 250개소)³,경노식당·가정봉사원센터·노인주간·단기보호(115억원, 827개소)³,노인수용시설(455억원, 10,505명)³ 사회복지관 운영(169억원)⁴, 장애인수용시설(740, 20745명)⁴ 경노당지원(116억원, 28,580개소)⁴ 모자보건관리(정기예방접종제외; 32억원, 45,870명)²,암질환관리(397억원)² 정기예방접종(34억원, 4,421,169명)⁴,기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1993억원)⁴
차상위 빈곤충	지자체공공근로사업(3000억원)³,창업·취업·고용촉진훈련사업(623억원)³ 장애인자녀학지지원(31억원, 6,894명), 장애인자립자금융자(120억원, 1000명) 근로자주택 및 전세금융자지원(5000억원)², 농어민 특별경영자금저리융자 (358억원)², 장기체불근로자생계비·의료비·혼례비융자(35억원)² 의료보험(1조 5233억원) 및 국민연금지원(771억원)³
	고령자 인재은행(2억원, 30개소) <sup>3</sup> ,
서민층 	대학생자녀학자금융자 및 특기·적성교육지원(479억원, 365천명) 소득세경감(2조원)²
	중상위층

- 註: 1) 위 첨자 2, 3, 4는 표시된 칸의 계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들이 포함된 수를 의미함. 예컨대, 극빈층 칸의 상첨자 3은 그 사업이 극빈층에서 서민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차상위 빈곤층의 위 첨자 3은 그 계층과 중상위 계층까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 2) 이와 같은 예산적용 대상계층의 분류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음.

### 바. 階層別 豫算政策의 綜合評價

이상에서 살펴본 복지관련 주요 정책들의 예산을 다시 극빈층, 일 반빈곤층, 서민층 및 중상위계층의 정책으로 나누어 보면,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극빈층을 위한 사업이나 중상위계층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

먼저, 극빈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예산과 대상규모를 보면, 오직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表 V-7>의 위첨자가 없는 정책인데, 이는 1조 9238억원으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인약 157만명으로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 첨자 2인 사업의 대부분이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위첨자 3인 사업의 적지 않은 부분이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층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첨자 2까지의 예산 2428억원의 대부분은 극빈층의 지원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극빈층만을 위한 지원예산은 총 2조 1666억원이고, 대상규모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으면 233만 2천명에 이른다.

둘째, 일반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예산과 대상규모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극빈층에 포함되지 않치만,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에 처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극빈층 란의 위첨자 2, 3, 4인 사업과 차상위 빈곤층 란의 사업들로 구성되고 있 다. 그러나, 극빈층이 아닌 차상위 빈곤층만을 위한 사업은 예산 151 억원과 대상 7894명뿐이고, 차상위 빈곤층이 주요 대상인 사업으로는 극빈층 란의 위 첨자 3의 사업과 차상위 빈곤층 란의 위 첨자 2인 사 업들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총합하면 일반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조 730억원이고, 대상자는 시설 이용자를 제 외하면 약 45천명 혹은 가구일 것으로 추산된다. 융자사업비의 5000 억원은 기금의 이용이어서 실제 정부의 부담은 민간부담을 제외한 이 자금액인 150~200억원에 불과할 것이고, 대상자는 주택 및 전세 융 자 사업의 참여자가 2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고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용 및 이용시설 1,077개소에의 참여자를 고려하면, 차상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의 예산은 약 5100억원 이내와 대상자는 4만 5 천명 이상과 복지부이외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시설 이용자 규모 의 합일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약 86%는 복지부 공공근로사업의 공

공근로사업예산이고, 대상자의 대부분도 공공근로사업 및 복지시설 이용자들로 구성되었다.

셋째, 서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예산과 대상규모를 보면, 서민 층만을 위한 사업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및 과외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특기 및 적성교육지원 비용인 479억원뿐이고, 대상은 365천명이나, 학자금융자사업의 이자부담만 고려하면 실제 정부지원예산은 400억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극빈층 란의 위첨자 4의 사업과사회보험을 제외한 차상위 빈곤층 란의 위첨자 3의 사업들을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면, 총 예산 약 3500억원을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대상자와 장애인 시설 수용자인 38만 6천명, 경노당및 고령자 인재은행 이용자, 정기예방 접종자 442만 1천명, 그리고 국가기록물관리 공공근로 참여자이다. 그러나 예산의 약 86%는 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 수용시설, 경노당 지원,기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이용되고 있고, 대상자도 학자금융자 혹은 지원이나 경노당 이용자로구성되어 있어, 서민층에게 직접 귀착되는 정부지원은 거의 없다.

넷째, 중상위 소득계층을 위한 정책 및 대상규모를 보면, 정부의 사회보험관리 및 급여 지원금과 소득세 경감 조치는 계층별 차별화 되어 있지 않아,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규모가 큰 중상위층 이상의 가구들이 편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직접 및 간접적 지원액 3조 6000억원 예산의 주요 수급자는 중상위층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총 직·간접 투입 예산 약 6조 6000억원 중 2조 2000억원은 극빈층의 생활보호 그리고 3조 6000억원은 주로 중상위층에게 급여가 귀속되는 사회보험 및 소득세 경감사업에 나누어 투입되고 있어,일반 빈곤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더욱이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대상은 극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또한 정책의 특성이 중상위층의 중심이 되는 사회보험을 제외하면, 극빈층의 현금지원정책에 편중되어, 전근대적 구빈정책과 근대적인 보험정책의 양극단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예산을 제외한 사회보장 예산에서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지원 예산은 9201억원으로서 35.2%이며, 시설 서비스를 포함하면 49.3%이다.

〈表 V-8〉 階層別 政府支援 豫算 및 對象規模

 주요 대상	예산	대상 규모
 극빈층	2조 1,666억원	233만 2천명
일반 빈곤층	5,100억원 (복지부 이외의 공공근로 예산 3,759억원)	4만 5천명 및 복지시설 이용자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서민층	3,500억원 (시설지원 및 보건/생활환경개선 3,018억원)	38만 6천명 및 정기예방접종자 기록물관리 공공근로자
중상위층	3조 6,000억원	의료 및 연금보험 가입자 소득세 경감자
계	6조 6,266억원	

# 2. 政策方向

# 가. 貧富隔差 縮小를 위한 主要 政策方向

격차확대가 진행중인 빈부간의 문제는 단순히 기존의 재분배를 통한 기존의 복지정책으로 해결을 시도하기에는 복지 이외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빈부격차 확대과정을 경험해 온 그래서 20대 80의 사회라는 양분화 사회현상을 경험한 구미 선진국에서는 분배문제 해소를 위해 주로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

왔다. 유럽대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 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영미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국가에서는 교육 및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유승준, 2000; 박순일, 1998).

그러나, 한국에 빈부격차 확대, 즉, 중하위 계층으로의 귀속이나, 차 상위로의 상향 혹은 하위층으로의 전락에 있어서 가구의 경제적 상태 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가족관계, 가구주 연령, 거주형태 등 전통 적인 복지 분야를 넘어 섬으로써, 복지 이외에도 노동, 조세, 자산과 같은 경제대책은 물론, 가족, 교육, 주거 등과 같은 사회정책적 고려 가 우선 필요하다. 복지와 사회정책의 발전이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구미 선진국에 비해 사회발전이 본격화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큼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도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은 빈곤의 늪으로부터 탈 출하거나 빠져 들어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가족관련 변수도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지출의 중요성과 아울러 취약특성(모자 가구 등)이 빈부격차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ley의 추정결과에 의하면(Oxley, 2000:32~46). 이미 사회정책 기본이 확립되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의 탈피와 진입에서 가족상태(별거 및 이 혼, 소년 및 소녀가장, 가구주 변화, 가구원수 등)의 변화가 동시에 중 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고용상태(취업인이 없음, 일 부 가구원 실업, 근로시간 감소 등)의 변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캐나다, 스웨덴, 영국, 미국 등에서는 고용상 태 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추정되었다.

Ⅲ장 및 N장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계층화 및 기간의 지속에서 는 경제적 변수의 중요성은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가 구 특성과 같은 사회적 특성도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중상위층 및 서민층에서 영향도가 컸다. 따라서 계층화에서 경제적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은 독립적이기보다는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절대 및 상대적 빈곤층에서는 경제적 변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구의 일반특성도 중요함을 보았으며, 특히절대빈곤의 탈피에서도 가족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줌을 보았다. 셋째, 그러나 서민층 및 중상위층의 이동에서는 사회적 특성이 경제적 특성보다 중요하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빈부격차의 대응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본문의 분석에서 밝혀지지 않은 자산, 실업 및 고용구조 같은 거시 경제정책이 빈부격차의 근원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어,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분배적 시각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별가구의 노동 및 경제상태에 대응하는 취업인 수 및 종사직종과 같은 미시적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이 중요하다.

둘째, 경제상태 변화가 독립적으로 계층화를 발생시키지 않음은 특히 계층귀속 및 기간에서 보았다. 즉, 모든 특성이 (거의)동시적으로 계층화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이들 특성은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그리고 큰 변화기를 맞고 있으므로 가족관계 등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거시적 사회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관계, 가구주 학력, 자녀교육비, 주거비 등과 같은 기본수 요에 대한 소비수요가 소비생활의 계층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중 요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련된 미시적 가족 및 사회정책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넷째, 개별가구 혹은 미시적 변수들은 계층별로 어느 정도 상이한 의미와 크기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층별로 정책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 나. 巨視的 經濟·社會政策

1) 統合的 豫算政策과 效率的 傳達體系의 推進을 통한 資源 利用의 效率性 増大

예산정책에서 기존 정책 중심의 한계적 조정에서 통합적 시각에서의 적정배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01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6.1% 증가하여 교육(19.3%) 및 과학기술(16.2%)에 이어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전년 대비 52.9%인 약1조원에 가까운 9873억원이 추가되어 2조 8539억 원에 이르렀다. 주로 중하위계층에 귀착될 복지부 예산도 38.6% 오른 6조 2749억원이되었다. '97년 이후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의 급속한 신장은 금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이 빠른 신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 예산의 활용에는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 총 예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과, 둘째, 제도 및 관리의 효율을 증대시켜 기존 예산의 사업효과를 촉진하는 것이다.

#### 가) 適正 豫算配分政策의 必要

먼저 예산의 적정배분을 위하여,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1999년 중앙정부의 부조예산은 약 3조원에 가까우며,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포함하면 약 6조원에 이르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의 배분효과는 극빈층 및 중상위층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 빈곤층이나 서민층에 대한 정책효과

가 극히 불충분하다. 극빈층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지만 서민층 이하의 정책예산이 극히 부족한 반면에 중상위층으로 귀속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중상위층에의 급여규모가 큰 사회보험급여, 근로소득세 경감, 그리고 생활안정 융자 등에서 보편적인 정책적용보다는 2~3단계의 계층별로 차등화되고 계층에 대한 통합적 시각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을 보완하며 복지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관련 부조정책과 각종 현물급여 및 수당제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복지 및 노동의 전반적 체계를 기초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수당 및 서비스 등도 생활보호와 묶어 기초생활보장의 내용에 흡수하여 통합 적 계획 아래 운영토록 함으로써 현물 및 현금 급여의 효율적 체계 위에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政策서비스 傳達體系의 效率化

첫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하는 부처 및 관리기관간의 이해대립을 극복 조정하여 예산을 효과적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의 사회정책조정기구의 설치와 지역단위의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이에는 정책 결정 및 행정에서 보다 지방화 및 민주화되어야한다. 어떠한 정책도 적합한 대상자의 적절한 욕구에 효과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정책의 결정 및 관리에 있어 독선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이 되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더 나아가 정책의 불신에 이르게 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시민

정보 소유의 확대와 주권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일방 적이고 관료적이며 비효율적인 정치와 행정 풍토가 지속되면 시민과 의 갈등은 더욱 증대되고, 사회의 발전도 제약하여 세계적인 경쟁은 물론 동북아의 경쟁에서도 밀려 또 다시 지난 천년의 동북아 열등 국 가의 위치를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남길 것이다. 인력의 배분에서도 지금까지는 관리 중심이어서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부서의 비대화 등 을 낳았고, 반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정책서비스를 전달하는 부서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고용 및 복지관련 서비스에서 긴 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몇 배 에 이르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실업관련 공공 서비스 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생계보조 등 각종 서 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함으로, 적정인력 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도, 이러한 인력을 늘이는데 많은 행정적 제약으로 전혀 발전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복지대 상자에 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활성화, 다양한 시 민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민간들의 복지서비스에의 경쟁적 참여, 하의 상달의 민주적 절차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결정의 민간에의 개방 등 과 같은 혁신적 정책전환이 긴요하다.

셋째, 이는 복지자원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내용의 급여가 적절한 수준으로 배분되기 위한 지역의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지역행정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각 서비스의 상호연계 및 영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할 ONE-STOP-SERVICE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전문조 직은 전문적 서비스의 공급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실직자의 전직이 대부분 임시직 및 일용직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용안정센터 의 기능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치단체인 지역 주민센터 즉, 읍면동에 이관(예산포함)시키고, 이곳에서는 지역복지, 지역정보, 공공근로사업지원, 타 행정기관과의 최초 정보접점 기능 등 전문성이 적으면서 종합적인 고용 및 생활안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한다. 이에 비해 취업알선상담 등 전문적인 업무는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하여, 동 기관이 취업알선, 직업훈련, 고용유지지원사업 등 전문적 서비스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 어야 한다. 행정조직의 시혜적 및 독선적 판단이 낳을 문제를 제거하 기 위해 민간의 행정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현재 예산제도는 매 우 보수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속한 상황 변화에 임시적이고 독선적 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예산, 집행을 총괄 평 가하는 상위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수요자 선에서도 정책사업의 효과 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평가 감시할 수 있는 지역평가시스템이 수 요자와 민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실업자, 근 로취약계층,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및 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난 '98~'99년간 15조원이 넘는 사회안전망 사업예산의 실업자에게 귀착된 효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어렵게 동원된 복지예산의 불요불급한 시설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사적 이익에의 전용,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행 태 등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예산의 정책수립에서 최종사용에 이르기 까지 관민의 협동적 평가가 시민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산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의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와 고발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 보수적 관료체제를 정보화 및 시민화의 새 흐름에의 적응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 물론 지역별로 프로그램 진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책소비자, 민간조직, 지방정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저소득생활안정정책평가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십 개에 이르는 노동복지대책사업 평가를 위해 각 지역에 사업별로 10여 명 이상의 실업자를 공익서비스 요원으로 1년 계약 고용하여 민간조직 및 공무원과 더불어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개선의 최종단계로 "주민자립·보호센터"(가칭)의 설치 및 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실시하여 모든 주민이 함께 하는 복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시·군·구 혹은 동·읍·면 단위에 정부 및 민간 합동의 주민자립·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부당하게 노동복지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참여방법을 모르거나, 부적절한 사람이 참여하였거나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고발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대상 및 급여의 고발에 대해서는 절약된 예산의약 30% 정도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포상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의 지원아 래 지역 정부, 단체 및 주민이 지도록 한다(지역의 자치적 노력 강화). 누구도 끼니를 거르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거나, 거처가 없어 노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문제 발견의 책임은 지역자치단체가 지며, 문제 발견 후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역정부, 친인척 및 주민이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문제를 보고 받은 후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사회안전망을 설치토록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완벽을 위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 및 개인 혹은 이웃은 해결을 즉각 친인척, 지역 및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2) 所得 및 資産政策

빈부격차의 확대에 있어서 중산층의 자산감소가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을 지금까지의 경제동향 및 장의 분석에서 알 수 있다. 증권 가격지수는 분석기간 동안 매우 격동적으로 변하여 '98년 1/4분기 주

가 535.8에서 '99년 4/4분기 952.8까지 오르다가 2000년 2/4분기는 759.5로 그리고 2000년 말에는 500대 선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자금력과 정보력이 떨어지는 중산층을 중심한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을 보았고, 최근 유력한 자산 보유수단인 주식 가격의하락은 중산층의 쇠퇴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 및 귀속 등에서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임시/일용 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42.0%이었으나 2000년 3월 52.6%로 증가하였고, OECD의 보고<sup>22)</sup>에 의하면 비 임금근로자를 포함할 때 정규직은 30%뿐이어서 직종의 형태는 빈부격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보인다. 유경준(2000)의 분석에 의하면 임금소득의 분배지수에 가장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계약기간(tenure years) 즉, 정규직 여부가 중요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의 OECD의 보고게 의하면한국의 정규 근로자들은 정리해고법안이 실시되어 노동유연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용보장 및 상여금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1986-93년간의 임금분배 지수에서 계약기간의 기여비율은 15.4%로서교육 13.9% 및 직업 11.2%를 앞서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 및 서민의 자산 및 그와 관련된 소득 및 소비를 증대시킬 자산증대정책과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득불안정을 해소할 정책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 정책으로서 첫째, 주식시장에서의 서민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정보의 부족 및 국내외의 큰손의 횡포 및 투기꾼들의 주가조작 등에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일시적인 주식거래의 억제 및 일일거래와 같은 정보력 우위자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를

<sup>22)</sup> OECD(2000),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참조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서민층 등 개인 투자가의 정보입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정보망의 설치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셋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봉제를 실 질화해야 한다. 어느 조직의 총 근로자 급여액은 일정하고 결국 이를 정규 및 비정규직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므로 양자간의 임금 및 상여 금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이 파트타임의 직업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직장에서 수입을 벌어 부족한 총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정책은 고용주의 해고능력을 증대시켰지만, 근로자의 신축적인 노동시간의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 일방적 정책에 그쳤다.

노동조합과 비 노동조합원 사이에의 임금격차도 줄여야 한다. 외환 위기 이후에 임금 분담을 통한 고통분담이 제시되었지만, 노동조합 등 교섭력과 쟁의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원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결국 필요한 총임금의 감소는 비 노조원에서 귀착 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비노조원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대 부분일 것이다.

### 3) 經濟. 勞動 및 福祉의 統合的 視角의 政策 必要

사회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인 경제성장 및 고 용정책에서의 성공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동 및 사회문제를 배제한 순수한 시장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우며, 시장실패의 사후적 치유만으로는 현재의 국제 및 국내적 환경에서 볼 때 치유 가능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치유과정의 지연 등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크게 손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미래의 경제 및 사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의 효율화뿐 아니라, 경제와 복지의 적정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과 경기침체 이후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정 책은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예컨대, Lazar & Stokyo(1998년) 에 의하면 사회민주형 복지국가에서조차도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보다 신축적이고, 덜 분배적이며, 그리고 축소된(leaner) 제도로 수렴의 경향 을 보이고 있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로서 이해되고 비판받고 있 다. 한국도 세계화 및 정보화의 대전환의 물결 속에 이미 들어가 있 다. 그러나 우리의 국내적 환경은 서구 산업국보다도 경제변화에 대 응한 사회적 및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실업, 불완전 고용, 복지제도의 불충분함과 전통적 상부상조 가치의 쇠퇴에 따른 서민생 활의 위협,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 제 및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특성에 맞는 사회 및 복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 우리의 경제 이념 으로서 인본적 시장주의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23). 기든스의 표 현대로 제3의 길이 사회민주주의 경제를 시장경제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 시장주의는 시장경제를 효율 중심에서 인간의 가치 중심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업 및 개인의 독점적 시장지배가 매우 광범위한 우리의 시장체제에서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간격확대, 단기 경쟁력이 큰 산업이 장기 경쟁력이 큰 산업의 시장 축출 등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시장경제에 의존한 자본의효율적 이용증대효과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sup>23)</sup> 박순일(2000), 서경련, p.181~5 참조

보여온 노동단체 등의 격렬한 저항과 그 경제 및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열등한 자의 경쟁력을 배양할기회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인본적 시장주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경제성장과정에서 사회발전의 주요 지표인 소득분배 및 빈곤의 축소를 통한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후 치유적 정책 중심에서 빈부격차 확대의 예방적 차원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소득의 분배지수가 커지지 않기위해 비정규직 노동 및 노동조합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산소득간, 혹은 자산 및 기타 소득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증권및 부동산 정책에서 서민 자산 증대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량기업의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재정 부실 대기업의 부동산의 피고용자들에의 분할 매각 등 중산층 및 서민들의 자산증대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구조조정과정의 급속한 진행에서 합의 과정의 취약도 있지만, 이들의실직 혹은 고용불안상태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의 취약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제시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립이 중요하다.

둘째, 시장실패의 사후적 치유도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절대 빈 곤율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빈곤율(예컨대, 약 5~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빈곤화 및 중하위층화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재 전 문성이 부족한 복지부의 조건부 급여사업을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부조제도를 신설하여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기타의 각종 노동

관련 지원제도를 흡수하고, 이 제도에 의한 부조는 가능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여되도록 한다. 특히, 정책의 기획 추진은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등의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추진체인 "사회정책조정심의추진단(가칭)"을 총리실 등 상위 부서에 설치하고, 여기서 각 종 사회 및 경제정책의 도입에서 정책간의 균형 조정과 기존 제도의 종합및 정비, 그리고 예산의 배정 등에서 심의를 하도록 한다.

셋째,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키는 보건의료, 교육, 주택, 의식주 등에서의 소비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하여 각종 사회적 불안 소요가 예방되고, 경제와 사회의 상합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한다. 농어촌 등 산업발전 부진 지역의 생활곤란은 물론, 거주지역의계층별 문화 이중현상도 완화하여 지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수준의격차가 적정수준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넷째, 물질적 소비의 발전 이외에도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관계의 증진에서도 상응하는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은 인간생활의 다른 영역 정치 및 문화의 발전과도 상 호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계층, 지역, 부문간 격차가 일 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장경제의 기능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경제제도 내에 법 및 행정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에 걸 맞는 사회적 발전이 시장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한 자동 조정적 제도 설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한편에는 기계주의 및 총량주의적 시장 경제론에 입각한 효율성 및 경쟁력 우선 정책이 지배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래의 전근대적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지배의식을 중심한 행정, 개발시대의 독점력을 유지 확장하려는 새로운 경제적 권위체제, 그리고 사회주의적 배분원리에 기울어진 탈 시장주의적 사고가 시장 및 시민의 자유를 제약시키고 있는 이중적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 및 도덕적 해이의 요소는 우리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사회경제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에 경도된 부분을 일부 제한하고, 다른 한편 관료 및 경제적 엘리트의 권위와 탈 시장적 병적 요소가 치유되며 시장이 아닌 시민주도로 기본생활이 자율적으로 보장되는 인간이 중심된 시장 즉, 인본적 시장주의 혹은 효율 지향적 신 인본주의의 기조 위에서 생성되어야 하며, 또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4) 巨視 社會政策

앞의 계층분석에서 보면, 계층귀속 및 경험기간에서 가족관계, 가구주 연령, 주거형태, 가구주 학력 등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 특히, 서민층 및 중 상위계층의 계층이동에서는 경제적 변수 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주고 있어, 분배문제가 사회문제와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중하위층으로의 계층하락 문제를 축소하는데 경제 이외의 사회정책이 중요하다. 또한 '97년의 외환 및 경제위기 이후 이혼 및 가족분리 등의 가족구조의 붕괴, 가족관계의 악화, 교육의 중도 포기, 아동 및 여성문제 등이 급격히 증가한 경험을 하였다. 즉, 사회문제도 경제문제와 독립적이지 않음을 보아왔다.

#### 가) 家族政策의 强化

가구의 계층전락을 방지하고 계층 보존 및 상향을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인 가족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은 삶의 중심 그리고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단위이기 때문이다. 서구와는 달리

일반 사회보다 가족 및 이웃에서의 관계에서 더욱 행·불행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동양적 의식 구조에서는, 서구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 부 관리적 복지체제보다는 가족적 및 지역적 복지공유가 복지증진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에 직면해 서 구에서 보여온 단순한 국가 복지정책의 축소지향 보다는 국가와 가족 및 지역이 함께 우리의 풍토에 맞는 적절한 관계 위에 복지와 사회문 제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더 효과적 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 지역 - 국가 3중 생활보장 혹 은 개인 - 국가의 2중 생활보장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는 개 인 - 가족, 친족 - 직장, 지역 - 국가의 4중 보장이 더 효과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와는 달리 동양적 가족주의 사상에서는 개인의 만족을 얻는 원천이 복지 공동체인 가족에서 시작 되는 경향이 매우 큼으로 이타적 행복(inter-personal utility)이 가장 큰 순위로 복지전달이 이루어질 때 급여의 효용창출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보장이 생활 공동체에서부터 이루어지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소득세의 감면 은 위의 순위 보장단계로 강화한다. 예컨대, 가족부양 공제비율을 정할 때도 동률이 아니라 평균을 1로 할 때, 노부모 2, 아동 1.5와 같은 방 식으로 정하면 가족복지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정부의 지원 및 이전지출의 운영 순위에서도 가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어도 5대 생활비목의 상당부분은 가족 및 친지, 지역, 직장 단위의 기금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및 친 지, 지역 및 직장 단위의 복지 및 사회활동에 대해 정부가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셋째,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험에서 취약계층 생활안정 성격의 급여 를 강화한다. 예컨대, 장애급여, 유족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및 고 용안정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여 가족단위의 생활안정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가족과 사회의 노인부 모 공양의무의 동양적 전통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부과방식 으로의 재편은 현재의 적립식 기금제도의 기금부족 문제를 적정한 급 여수준의 범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가정 및 개인의 문제는 불특정의 전문가들 보다 가장 가까 이 있는 가족, 친지, 직장,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활동을 장려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서구의 Post-fordism의 사 회적 문제의 전염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 사회적 행위가 결국은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의존하 므로, 물질문명의 극치와 정신적 만족의 한계, 끊임없는 이해대립의 지속 상태에서 정신적 안정의 현실적 기반으로서 자아발견과 자아의 가장 가까운 연장인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동양적 전통문화에의 의존을 통하여 복 지와 사회문제는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향후의 사회는 우 리의 전통적 가치 특히 가족주의적 복지체계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동양적 가족관은 우리의 재벌경영이나 가족경제의 운영 및 동 기부여에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가족경영의 비효율성과 역기능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의 증대와 가족의 경제적 번영에 중요한 역 할을 하여 왔던 긍정적 측면도 있다. 21세기 정보화 및 문화경쟁에서 획일적인 서구식 삶의 양식 보다 한국적 음식, 예술 그리고 이를 살 린 상품 및 서비스이면서도 보편적 진선미를 갖춘 한국적 가치와 문 화가 세계화의 첨병이 될 수 있고 다양성 있는 세계문화를 창조·조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4).

<sup>24)</sup> 뚜 웨이밍, p.24~25 참조

### 나) 정부와 민간 역할 관계의 발전적 체계화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는 정부가 총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족 관계의 복잡한 문제는 물론 자녀의 교육, 가족의 경제활동 등 제반 사정을 일관되고 대형의 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소규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생긴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대규모의 사업을 기획하고 종합 관리하는 데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의 일방적이며 관료적 성격과 행정요원의 부족으로 그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관계의 제반문제에 지역사회를 중심한 민간조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과 지역성을 갖춘 인사들이 조직화하여 지역 및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서비스의전달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지리적 잇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기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서비스의 발견과 제공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상호의장점을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의 조직화에 있어서 일선에서 퇴직한 전문적인 인사들이 능동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이 없는 자원봉사에 의존하면 충분한 서비스제공을 유도할 수 없음으로 적절한 금전적 및 사회적 사례를 사회정책 지원비로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조직의 자선기금의 모금활동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1999/2000 회계연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조성 510억원 1900 만원을 포함하여 '99년 약 2600억원이 민간모금으로 모아졌으며, 이중 70%는 연말의 불우이웃돕기 등의 일시적 후원금이었다25). 이는 미국의 자선기부금 총액 150억불(약 230조원)의 0.18%에 불과하다. 이러

한 재원으로서 민간으로부터 적절한 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 자선금의 모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공동회 모금의 약 51.6%는 기업이고, 사회종교단체는 13.8%에 불 과하다26. 한국에서와 같이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에 대한 지원이 아 닌 불특정 이웃에 대한 자선금의 기부는 드물고 앞으로도 획기적 증 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종교기관의 모금은 매우 큰데 비해 이의 재정실태 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많은 사회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것 이 사교가 발흥하는 원인 되기도 한다. 따라서 종교기관의 조세의무 강화는 물론 재정실태의 신도와 사회에 대한 공개가 긴요하다. 종교 기관에 모여진 돈도 결국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재정실태 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회 건물의 대형화 및 고급화 등의 폐해를 줄이고 교인들 및 이웃의 복지에 더 많은 재원이 할당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階層別 對策

#### 1) 絶對貧困層 對策

빈곤문제를 줄이는 데는 경제성장이 효과적임은 지난 '99년 이후의 절대빈곤율의 감소경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절대빈 곤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등의 지원이 필 요하다. 그리고 절대빈곤층이 빈곤을 탈피하는데는 거시적 성장률 증 대이외에도 고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현금급여 보다는 이들의 취업이나 소득이 높은 직종으로의 전환이 또한 중요하다. 그

<sup>25)</sup> 한겨레 2000년 1월 16일자

<sup>26)</sup> 기타 개인 28.9% 및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 5.7%임(한겨레 상기 일자)

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빈곤의 탈피에 기여하지만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빈곤가구의 해체 및 분리를 방지할 정책이 필요하다.

### 가) 絶對貧困層의 勤勞所得 增大 方案

절대빈곤충의 빈곤탈피를 막는 주요 요인은 가구주가 무직이거나 혹은 취업인이 가구 내에 없거나 혹은 가구주가 종사하는 직종이 열등한데에 있음을 보았다. 이들의 기술 및 숙련도가 취약할 뿐 아니라, 직업경험이 부족한 30대가 40대에 비해 빈곤을 탈피하는데 매우 불리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99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가구의 35.9%가 생계비의 지원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동시에 원하고 있고 정부의 사회부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41.2%도 기초생활 지원 이외에 자립기반 조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위기 이후 빈곤충의 주류는 실직자들이므로 일자리제공 및 직업훈련과 더불어 참여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득지원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병행 추진될 수 있다. 즉, 이들이 보다 나은 직종으로 옮기기 위한 훈련 및 교육과 취업활동에 현금급여를 보조함으로써 단기의 생활불안 해소와 장기의 생활안정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회복은 물론 성장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살리기 위하여, 실업자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서도 근로활동의 증대와 생산력 증진을 동반하게 하는 근로부조제도가 도입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부 조적 지출은 가능한 인적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혹은 기회확충 등과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 및 독일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표방되고 있는 제3의 길이나, 스 웨덴에서 추진되어 온 사회민주주의 등 그럴 듯한 표어 뒤에 구체적 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충분한 생 산적 일자리의 제공이나, 취업이 용이하고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경쟁 력을 갖춘 취업기회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이 라도 근로능력이 있고 기존의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국민의 5~7%에 이르는 빈곤층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재원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생활보장과 생산적 기여를 통합하는 노 동복지정책으로서 근로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공근로 사업, 실직자 생활안정사업 등 임시적 제도들은 대상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사업규모 및 내용이 실업자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 이 결정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간의 자금의 신축적 전용이 불 가능하여 무리한 사업을 개발하여 희소재원을 낭비하거나, 적합한 사 업수요자에게 지원을 못 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따라서 이 들의 보다 나은 직종으로의 전환이나 일은 고되나 소득이 더 큰 직종 예컨대, 3D업종과 민간시장에서 현행의 높은 임금수준이나 작업환경 의 열악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한 일자리 등에서의 실직자의 취업의욕 을 고취하고 민간기업의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가구주의 무직이나 가구내의 취업이 없는 것은 가구의 빈곤화에 매우 크고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들이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지 모르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이 긴요하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 조건부 수급자의 신청자는 현재 당초의 예상 대상자 약 20만 명의 1/3이 안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실시할 실질적인 사업도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생산적 복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이 급속히 진행되기 어렵고 경기회복 이후에도 상당한 실업자 및 불완전 취업자가 남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볼 때, 단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이의 유효 전략으로서 공공서비스 부문의 대규 모 일자리 창출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공공부문의 근로자는 유럽의 선진국의 약 5% 수준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으므로,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적절한 이윤발생이 어려워 시장에서 스스로 창출되지 못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국방, 방송, 통신 등 이외에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으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많은 공익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실직자의 20~30%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개발이 필요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이러한 분야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복지정책 평가 및 감시(읍면동 혹은 시군구 별 사업의 적절성, 그리고 참여자, 근로활동 및 급여수준 의 적절성 등을 평가 감시하는 서비스), 복지서비스(노숙자, 치매 및 무 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을 위한 가정봉사요원, 실업가정 등에 대한 상담 등), 의료서비스(방문간호사, 저소득층가구를 위한 간병인, 재활센터, 요양원, 양노원 특수병원 봉사 등), 고용관련서 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서비스), 환경서비스(국공립공원 관리, 상수도 보호활동, 환경감시 및 보존활동), 교통서비스(횡단보도 및 지하철 등 질서 지키기, 불법운행 적발 등), 교육서비스(방과후 과외활 동지원 서비스 및 상담) 등이 공공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은 높은 실직률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적인 실업률 증대에 대한 대책보다는 장기의 상시적 사 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시적 제도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기의 제한을 받는 소모성 예산의 배분보다는 상 시적이고 회기에 관계없이 필요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더욱이 관련 부처 및 예산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효율적 공조가 안되고 있어, 생산적 복지는 지난 2년에 걸쳐 진척도 가 매우 부진하므로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직업훈련 능력 부족, 사업 발견능력 부족 등으로 근로조건 사업이 기존의 취로사업을 답습할 경우, 신제 도의 생산적 복지의 성격은 소멸되고, 단순 현금급여대상자의 확대에 만 그치게 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 등은 보다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 산하의 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 등과 연결 된 종합적인 실직자 노무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사정에 밝은 민간기관 혹은 실직자 자신들이 설립 할 자활공동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의 자활지 원 경험이 적은 현재의 여건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지원 자금의 안전성 에 집착하여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면 자활노력은 싹을 틔우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지역정보수집능력의 우월성 및 강력한 사업에의 참여의 지 등을 살리기 위해, 현재와 같은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하려는 허가 중심의 관료적 안이한 행정보다는 신고와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장점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나) 基礎生活保障制度의 效果性 增大 方案

절대빈곤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과거의 생활보호의 제한된 현금급여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고, 생활보호시대의 예산 약 1조원에서 법이 도입이 시 도된 지난 2년 약 2조원이 추가되어 2001년에는 근 3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흡하며, 기존의 대상자가 탈락되거나 급여수준이 적어졌다 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는 현 급여대상자의 약 3배에 이르는데도, 모든 빈곤층에게 현금을 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지되어 결국, 국민의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키우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모든 절대빈곤층에 대해 현금급여를 못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력은 그에 더욱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의 급속히 팽창된 예산을 같은 정도의 속도로 증대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첫째, 현재와 같은 빈곤층에 대한 현금급여확대 욕구의 함정에서 벗어나 현물급여 중심의 선진적 사회부조체계로 전환하여야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실정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조사에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 가구의 사정과 욕구가 복잡하고다양하여 현금급여로 이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및 임시직 등의 소득조사의 어려움은 소득을 속여 정부지원금을 타려는 각종 시도를 발생시킬 것이고 이를 막기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소득이 밝혀지면 일을 안하고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 감퇴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선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모두 현금급여를 한다는 발상을 현물급여중심의 선진적 부조체계로 전환해서 이웃이 보기에 분명한 생활의 필요부분을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효과의 증대 및 근로의욕의감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현물급여를 활성화하면 부적절한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없애고 과잉급여를 줄여서 현재의 예산규모 내에서도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적합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내용의 급여수준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를 포함한 전 빈민층에게 하나 이상의 정부부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책이 부족한 예산으로 협소한 대상에게 부적절한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지하는 것보다 사회적 복지효과를 증대시

키는 적극적 정책이 되고, 현실성이 있는 민심안정대책이 될 것이다.

셋째, 정책대상의 선정 기준을 표준적 최저생계비에서 주거, 의료 및 교육 등의 빈곤선으로 바꾸고, 이들 계층에 적합한 의료, 교육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협을 보장함으로써 기초생활의 내용과 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다.

넷째, 의료보호의 예산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문제 는 비용부담 면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99년 저소득층 조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돈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의 19.2%에 이르고 있으며, 고액치료를 위해 자식이나 부모 이외의 남의 힘을 빌리거나 재산을 줄이는 가구가 저소득층의 45.3%에 이른다. 이에는 친구 및 친지 도움 18.5%, 사채 등 빚 10.8%, 금융대출 5.9%, 재산처분 3.4% 전세비 축소 0.9%가 포함되어 있다(이 현주 등, 1999:112~4).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는 가구도 드물다. 이러 한 열악한 의료이용실태에서도 정부의 재원은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 보호의 안정과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의료빈곤층으로의 보호대상을 넓히되 경질 환 및 약의 이용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을 강화하고, 고액 진료 등에서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 및 국공 립 병원의 의료진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고 시설도 정비하여 빈곤층 및 서민층이 민간의료 대신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하면, 의료보호예산의 일부를 공공의료기관의 개선에 활용하여 시급 히 빈곤 및 서민층의 의료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의료시장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대를 억제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지적 서비스 시장에서와 같이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자격증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시도하여 의료인의 국제시장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 다) 個別가구의 脆弱特性에 대한 政策의 强化

먼저, 서민 및 중상위층은 물론 절대빈곤층의 계층화 및 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별거 및 무 배우자 가구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모·부자가구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계층상승경향은 일인당 소비수준의 상승에서 옴으로 소비증가의원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위기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혼율의 급증이나 가족분리의 확대 등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근간이 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가족해체 같은 극단적인 대처방안이 경제력의 증진에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음은 모든 계층의귀속, 이동 및 경험기간에서 별거 혹은 무 배우 상태 변수의 기여가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성이 있고, 심지어는 기여도가 높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서 실증되고 있다. 가족의 해체 및 분리가 단순히 가구의경제력을 증진시키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와 이것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분리된 가구의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가족의 분리 및 해체의 원인이 경제 문제일 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제의 가정에 대한 장기적 생활비 융자나 각종 사회부조제도에의 우선적 편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정상화 노력보다는 비정상 상태로의 이전을 미리 막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용이한 정책이 될 것이다.

둘째, 배우자 결핍가구의 계층 상향성은 이들 계층의 높은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모 부자가구는 다른 계층에 비해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 수 있다. 이들 가구의 가족유대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발전하여 과외 및 특기활동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 이외의 교육비 및 관련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교육기관 의 교육자의 수를 대폭 증대시켜, 정규수업 이후의 개인적 과외를 학교 밖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교내에서 다른 학교 및 학원의 교사를 초청하 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부족한 분야의 교사의 질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 배우가구에는 노인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이들의 전반적인 생 활수준은 어려워도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일인당 소비수준의 계층이 상승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하위층의 의료비의 일 시적 과잉 지출을 장기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병의원에 고액 의료비 장기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고, 특히 신용카드 이용 시에 장기분할 지급 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병의원의 재정에 어려움을 주 는 경우 정부에 의료안정기금을 설치하여, 환자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次上位(相對的) 貧困層 對策

상대적 빈곤층에서 이 계층의 상향이동에 있어서 취업 및 직종의 전환의 노동대책이 가장 중요함을 <表 Ⅳ-3>에서 보았다. 상대적 빈 곤층의 계층상향을 가장 억제하는 직종인 상인, 자영업, 임시/일용직 등의 직종에서 보다 소득이 향상될 직종으로 전환해서 소득을 증대시 키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가구주의 직업도 계층이동에 유의성이 큰 요인이었으므로 직종 내에서도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층은 절대빈곤층보다 는 전문성 및 숙련도가 크고 직업경험기간이 길 것이므로, 단순한 공 익서비스보다는 전문적인 성격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종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서비스의 성격이 다양한 내용의 전문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움으로 민간기업의 다양한 노동수요특히 IT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발견 혹은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기업의 고용에 대한 임금보조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

## 가) 賃金補助金制度의 擴大

OECD 국가들은 1996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액의 11% 정도를 고용보조금 사업에 지출하였고, 일본도 매우 높은 48%를 지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임금보조금제도는 대체효과, 효율성 감소(deadweight loss) 등으로 순 고용효과는 낮았지만(전 실업프로그램 고용효과의 약 20~50%), 일부 국가(예, 덴마크)의 경우 장기실업자 등 취약집단의 고용촉진수단으로 상당히 효과를 가졌다. 자연실업률 용어의 창출자로 저명한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 야수적 자유방임주의와 실패한 근시안적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용보조금제도를 제창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고용보조금제도로 대체함으로써, 의료부조, 방범, 기타 식품권 제도 등의 복지제도에서 총 750억불의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 중인 채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여 실직자 및 불완전 취업자들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시장의 경쟁력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공익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생산성만큼만 근로부조제도에서 지급하고, 경쟁력이 있으나 실현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시장임금에서 기업에 의 생산성 기여분만큼을 제한 임금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하여 그들 의 능력과 경제의 잠재력을 현재화시킴으로써, 무 노동 복지급여에서

발생되는 도덕적 해이와 정부 및 국민의 복지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및 생활의 자신감을 주어 건강한 복지사 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보 조제도는 고용효과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보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둘째, 고용안정센터 등에의 전문 및 전담인력 의 확대 공급이 중요하다. 소수의 직원에 의해 수많은 중소기업의 노 동수요와 수많은 취업수요의 정보를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자 의 성격과 일자리 수요에 대한 성격의 질적 파악은 물론 수요량의 양 적 파악도 힘든 상태에서 제도의 이행은 많은 남오용의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전문 및 전담인력의 적정규모로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셋째, 보조금의 지급과 고용 및 근무상태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에서 부적절한 대상자가 선택되고 허위교육으 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는 현실을 극복하고, 또한 민간기업이 자신 의 종업원의 허위 실업과 채용으로 임금지급을 정부지원금으로 하는 등의 비리가 빈번한 가운데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 서 행정가는 물론 민간조직과 실업 및 실직자 자신들이 참여하여 평 가하는 사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 나) 老人, 障碍人, 兒童福祉서비스 供給 擴大

50대 및 고령 가구주 가구의 빈곤계층에의 귀속 가능성은 서민층 및 중상위층에의 가능성 보다 매우 큼을 <表 IV-10>에서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Ⅲ장에서 노인가구는 모자 및 일반가 구에 비해 빈곤탈피는 어렵고 하위층으로의 전락가능성이 큼을 보았다. 장애인 가구도 절대빈곤이 아니면 상대적 빈곤층에 귀속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그리고 <表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 및 의료 보호예산을 제외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예산은 극히 적으며,

시설의 운영 및 신개축 비용을 제외하면 서비스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생활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안정 대책이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이 빈곤층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가장 취약한 복지분야이고, 이에 따른 비용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서비스시장이 협소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태에서는 이들의 생활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리고 향후의 생활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의 증가추세에서 볼 때 개인 서비스 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될 전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민간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서비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최저생계의 소득보장은 물론, 일상적 생계이외의 식품, 의료, 주거, 교육, 복지서비스 등 주요 생활분야에서 긴급한 생활수요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현물급여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빈곤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대인서비스 등의 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은 지금의 획일적인 적용 중심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와 같이 각 기의 경우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예컨대, 첫째, 민간의 급식을 받고 있는 아동의 50%가생활보호대상자인 형편이므로 부모의 취업관계로 끼니를 거르는 서민층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급식문제는 부랑인 문제와 더불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문제이다.

둘째,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질환의 보험급여 증대, 노인전문 병원 및 병실의 확보, 말기환자 및 치매환자의 장기요양 및 치료시설 의 증설, 건강진단 및 교육 강화 등으로 노인건강 및 치료서비스를 확 대하여야 한다. 고액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한 가정의 생활을 몰 락시킬 수 있으므로, 말기환자 및 치매환자 등의 노인보호를 위한 간 병인 이용의 지원을 포함하여 본인부담 절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정보화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 저소 득층 지역 및 농어촌 학교에 컴퓨터의 완전공급은 물론 정보화 및 어 학 교육시스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기업은 다양한 서비스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 유전인자에 대한 정보량의 증대는 개인특성에 맞는 맞춤식 약품 투입 및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지금까지의 획일적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정책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부응한 맞춤식 정책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기타 노임 등 취약계층의 증대와 의료복지 욕구의 증대에 부응한 기초의료보장사업 및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 아직도 단칸방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쾌적한 주거시설 및 환경의 마련과 같은 삶의 질을 선진적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3) 庶民生活 對策

#### 가) 租稅政策

빈부격차의 주요 근원이 최상위 5~10%의 소득 증대와 중산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서민화에 있으므로, 이것을 개선할 조세정책이 필요 하다. 먼저, 최상위 소득계층이 적절한 조세 부담 없이 부를 증식할 기회가 많이 존재한다. 주식거래를 이용한 편법의 상속은 지금 세간의 관심사이지만 법치주의가 상식을 크게 손상하면서도 조세 형평주의를 실천하지 못함은 법치의 목적을 망각한 족쇄에 빠진 것이다. 수조원의 실질적 상속을 수십억원의 상속세로 마감하는 것은 조세법의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자의 법의 기본 상식과 철학을 의심할수밖에 없는 부패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주식의 구입 및 판매단계에서 거래 이익에 대한 누진과세 뿐 아니라,편법에 대응한 조세법의 운용의 미를 발휘하여 상식에 부합되는 과세가 되도록 방안을 찾는 노력이 크게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아직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1995년 현재 조세 부담률은 한국이 22.3%인데 비해 일본 28.5%, 미국 27.9%, 영국 35.5%, 스웨덴 49.7%에 이른다. 소득의 사회적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그러나 우리의 직접세 부담률은 이미 세율의 수준이나 구조는 선 진적이고 국세 기준으로 소득세 등 직접세의 점유율도 '99년 40.5%로 서 일본 59.3%('98년), 영국 56.9%('97년)보다는 작지만 독일 45.4%('98 년), 불란서(39.6%)와 비슷한 상태이다. 특히 후자의 국가들은 조세부 담률이 40%대를 크게 넘는 국가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조 세 부담률을 30%대로 올리려면 간접세의 획기적 인상 방안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다. 소득세 과표의 현실화나 세원의 확대 등 탈루 방지 등의 방안은 필요하나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 별소비세 특히 최상위 5~10%가 주로 구입하는 고가의 사치성 제품 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물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전제 품 및 자동차 등이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화 되고 있지만, 특별소비세 의 대상은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제품의 질과 가격이므로 단순한 특 소세 폐지경향과는 다른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 별소비세는 복지자원화 하여 빈곤층뿐 아니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융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소비 세의 명칭도 과거의 소비억제 위주시의 작명을 벗어나 소비를 하되 분배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행위로 정당성을 부과할 수 있는 복지세(가칭)로 차제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선의 정도는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각종 유흥 오락, 병의원 및 변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영 및 자유업자 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나) 生活安定基金의 造成

상대적 빈곤층을 포함하는 서민층은 정부의 사회부조 대상이 되지 는 못한다. 다만, 이들의 대부분은 생애의 주기에서 생활의 어려운 과 정에 처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현상이고 미래의 어느 시기에는 중산층 이상으로 향상이 가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는 일시적 위협에서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자금의 융자가 필요 하다. 지금 실업이나 퇴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 급여되고 있는 실 업, 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험기금을 평상시의 생활위협의 방어에서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제안한 특별소비세 혹은 복지세의 수입은 생활안정기 금으로 조성하여 서민들의 일시적 생활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 고 실업의 예상 등에 따라 연초에 급속히 마련되는 저 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 용도의 사회안전망 예산을 기금화하여 상시 적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庶民層의 住居, 醫療 및 教育 등 基本的 生活安定 政策

첫째, 중상위층의 전략, 서민층의 계층 잔류, 그리고 상대적 빈곤층에서의 계층이동과 빈곤기간은 주거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으므로, 서민 이하의 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이 필요하다. IV장의 분석에서 보면 거주형태가 계층의 귀속 및 기간과 중요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서민층 이하의 주거빈곤문제는 민간 주택시장에 의존해서는 해결이 안되므로,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확보하여 서민층의 주택을 지어 장기 임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Ⅲ장에서 본 바와 같이 빈곤층의 월세 부담이 일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므로, 임대 서민주택의 공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월세 보조금은 극빈층에게만 적용하고, 기타의 차 상위 빈곤층 및 서민층은 임대주택의 공급증대 및 주거서비스 가격의 하락을 통한 시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전 빈곤층에 대한 기초의료보장의 실시는 물론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서민생활의 위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이미 약 150만명에 대해 현금급여를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추가 재원은 서민들의 의료비지원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비 융자의 대폭 확대와 더불어 고액치료비의 보험기금 부담증대와 경질환의 본인부담의 증대와 같은 보험급여구조의 조정과 서민들의 고액의료비 질환의 민간보험에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등의 유인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의료비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의료기능의 폭 확대가 빈곤층에 대한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셋째, 가구주 학력은 빈곤층에서는 계층 귀속 및 경험기간은 물론 이동에서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서민층에서는 계층귀속과 경험기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중상위층에서는 계층 전락에서도 매 우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의 학력 은 계층의 상향이동에는 분명한 기여를 실증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지 만, 서민층 이하의 귀속과 경험기간의 지속에는 유의하고 중요한 기 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상위층의 전락을 막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 다. 특히 정보화 및 세계화의 대전환기에 지식기반의 직종 및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의 양적 확대 이외에 질적인 개선과 서비스의 중산층 및 서민층 에 대한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IT산업 서비스 의 공적인 공급의 확대와 동시에 이들의 민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자녀의 교육과 성인의 재훈련을 위한 장학제도의 대폭적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및 영세민촌 등 첨단산업의 영향 이 늦게 도달하는 곳과 계층에서부터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라) 脆弱家口特性에 대한 對策

모자가구는 빈곤층에서의 탈피에 있어서 노인가구는 물론 일반가구 에 비해서도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중상위층에서 하 위층으로의 전락가능성은 노인가구와 비슷한 정도로 큼을 Ⅲ장에서 보았다. 이는 모자가구의 낮은 소비수준에서 보다는 소득부족에 따른 지출능력의 취약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0대가구주 가구는 40대 가구주 가구에 비해 생활불안이 큼 을 모든 계층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민 층 및 중상위층에서는 계층 귀속 및 이동에의 영향이 다른 계층에서 보다도 크게 나타났으며, 기여도도 다른 특성 변수보다 크게 추정되 고 있다. 이러한 30대 가구주의 생활불안은 주로 이들의 경제적 위치 의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중상위층의 모자가구와 중하위층의 노인가구의 계층 하락과 30대 가구주의 생활위협을 방어하고 계층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대책이 특히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첫째, 30대 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임금보조제도의 적용 시 우선 순위를 높이어 지식기반의 경제에서 이들 가구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모자가구 및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부조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계층 내 생활안정 혹은 상승을 유 도하여 빈부격차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社會保險制度의 全面改革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뿐 아니라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임금격차의 완화와 경제안정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기둥인 사회보험제도를 빈부격차 축소 및 생활안정의 증대를 위한 효율적 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또한, 사회보험이 생활향상의 근간이 될 경제의 균형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은 사회보험의 재원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서 비롯된다. 공적연금보험 급여만도 기업 및 근로자의 임금의 20%가까이 부담해야 될 사정에 이르고 의료보험 부담도 10%에 육박하는 상태에 이르면, 이미 사회보험은 경제활동 중립적인 역할은 크게 벗어나 매우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좁은 보호대상과 불충분한 보호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및 특수계층에게는 정부의 재정을 동원하여 기초보장 이상의 과잉급여의 혜택을 주는 무원칙한 복지제도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고비

용 복지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발생된 빈곤 및 빈부격차의 문제와 미래의 복지문제를 고려하면서 경제 상합적인 방향에서 사회보험 체계의 방 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경쟁력 있는 경제제도와 모든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 전면 재편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이 강화된 사회보험 이상의 고 급여는 가능한 민간보험과 결합되 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성장과 상합하면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부 담 및 급여의 체계를 발견해야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 규칙에서는 연 금의 급여대체율이 60%에 이르러, 미래세대의 연금 보험료 부담은 급 여의 20% 수준까지 증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의 과소 부담은 연금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없게 함으로 급여의 적정화가 피할 수 없다. 적정 수준의 급여 수준을 발견하기 위해 퇴 직후 소비의 특성을 보면, 도시 퇴직가구의 소비지출은 퇴직 후 소비 에서 교육비와 조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를 제외하면 현재 일반가구의 평균 소비수준의 82% 정도이다. 그리고 퇴직가구의 가구규모를 2인으 로 가정할 때 필요한 소비는 평균가구의 약 60%가 되므로, 2인 가구 원의 퇴직가구는 평균가구의 49.2% 정도를 평균적으로 소비하게 된 다. 따라서, 연금급여 수준을 일반가구 평균 소비의 70% 혹은 그 이 하로 하면, 보험료 부담률을 소득의 15% 이하가 되어, 현재의 예상된 는 부담률 약 21%에서27)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추가의 소요 비

<sup>27)</sup> 연금가입기간 35년과 연금수급기간 15년을 평균으로 할 때, 공적연금의 노후소비 보장률은 보험료 부담은 소득의 약 21%이어서 우리의 경제성장 노력과 공존하기 힘들 것임.

용은 근로 및 저축(민간보험 포함)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보험료율이 12.4%이고 급여대체율은 40%대이다.

셋째, 소득비례부분도 단순 비례가 아니라 급여수준이 누진적으로 감소하여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게 하여, 고소득자의 안정된 생활을 민간연금에 의존시키고 연금기금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을 양분하여 별도 운영하되 후자도 강제 보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차 기금이 GDP규모로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복지병의 가장 큰 질환이 될 국민연금제도의 기금순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현재와 같이 모든 가입자의 화폐적 수익률이 1보다 큰 급여체계는 1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편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이고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향후 30년 내의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우려 및 이미 고갈상태에 들어 간 군인 연금 및 수년 내에 고갈 상태에 들어 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에서 현재도 수조 원에 이르는 정부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리고 후세대의 과잉부담과 이의 경제적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보험료 및 급여 계획안을 제시하여 단계별로 그리고 당사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그리고 보다 나은 복지수준의 향유를 위해서는 자율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의 복지재정수준은 경제적 및 복지적 고려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정부의 복지 재정은 일정 총액(예, GDP의 약 15~20%)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정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율이 1980~90년대에 11~15% 사이에 있던 영미 및 캐나다의 기초보장형 및 지중해권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출의 비율이 각각

10.3~14.5% 및 15.8~17.4%에 이르고, 같은 기간에 빈곤율이 5~7% 이었던 불란서 및 독일 등의 조합주의 국가들과 스칸디나비아의 포괄 형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출의 비율이 각각 22.5~22.4%와 15.5~ 22.0%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28) 미래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 장 부담률이 15%를 크게 넘기는 어렵다. 물론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기초보장의 현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합한 복지재정수준을 서구 선진국에까지 증대시키는 것은 쉽지 않 다. 적정복지수준의 달성도 지금까지의 복지투자 속도로 보아 시일 내에 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경제와 복지의 상합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빈곤 및 저소득층 복지 - 적정복지 -자율 및 대중복지와 같은 3단계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29).

## 3. 硏究의 制限點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계층분포 및 이동실태나 현 정부의 예산 정책의 분석과 더불어 각 계층에서의 복지수요와 적정공급(지원 대상 및 수준)의 분석과 우선순위 등이 연구되어야 하나, 현재의 자료로서 는 접근이 안되고 있다. 즉, 정책의 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정책대상 및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발견되어야 한다. 참고로 복지 수요의 자료는 기존의 조사표 예컨대, 사회통계조사에서 일부 입수가 능 할지 모른다('98년 노동 및 복지조사, 의식조사, '99년 질병 등의 조사). 또한 적정복지 공급의 이론적 틀 제시하여 양자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의 순위 및 방향 제시가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

<sup>28)</sup> T. Makinen(1999), 표 1 및 2

<sup>29)</sup> 박순일, 복지사회를 복지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와 민간사회복지사업, 현대경제사 회연구원 6주년 기념세미나, 1992년 10월

# 參考文獻

권순원 외, 『분배불평등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원, 1992.

- 박순일, 「고실업시대의 한국복지 정책방안」, 『한국사회정책』, 제5집 1호, 1998.
- \_\_\_\_\_, 「빈부격차의 해소 및 한국사회정책의 방향모색」, 『21세기 한 국사회경제의 발전전략』, 서경연 총서 WII, 여강출판사, 2000.
- 배무기,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분배율의 추계」, 『경제론집』, 서울대, 1984.
- 변형윤 외, 『한국경제론』, 유풍출판사, 2001.
- 변형윤, 『분배의 경제학』, 한길사, 1984.
- 변형윤·이정전, 『분배의 정의』, 집문당, 1994.
- 유경준,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한 국개발연구원, 2000. 3.
- 윤석범, 『한국의 빈곤』, 세경사, 1994.
-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1.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89.
- 이현주 외, 『저소득층 보건복지욕구 기초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1999.
-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상)』, KDI, 1982.
- 주학중·윤주현, 『1982년 계층별 소득분배의 추계와 변동요인』, KDI, 1984년 3월.
- 노동부,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2000.
- 대한민국정부, 『세입세출예산』, 2000.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2000.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1999, pp.257~259.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_\_\_\_\_,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 Bark Soon-il, et al., *Poverty Profiles in Korea*, 세계은행제출 보고서, 2000. 7.
- Fields, G. S. and Kyeongjoon Yoo, "Falling Labour Income Inequality In Korea's Economic Growth: Patterns and Underlying Caus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No.2, June 2000.
- Kakwani, N. and Hyun H. Son, "Economic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Korea and Thailand", a presented paper in Public Policy Conference on 'Perspective on Public Policies in the 21th Century' held in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ep. 1999.
- Khan, A. Rahman, Macro Economic Policies and Poverty: An Analysis of the Experience in Ten Asian Countries,
- Lazar, H. & Stokyo P.,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51, 1998.
- Lillard, Lee A and C. W. A. Panis, "Panel Attrition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XXXIII 2, Summer 1999.
- Makinen T., "Structural Pressures, Social Policy and Povert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Bulletin, 1999.
- Mookherjee, D and A. Shrrocks,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Dec.

1982.

- OECD,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2000.
- Oxley, H., T. T. Dang, & P. Antolin, "Poverty Dynamics in Six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30, 2000.1.
- Schwarze, J., "How Income Inequality Changed In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An Empirical Analysis Using Decomposable Inequality Measur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No.1, March 1996.
- Shrrocks, J., "The Class of Additively Decomposable Inequality Measures", *Econometrica*, Vol.48.
- Stevens, A. H.,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Measuring the Persistence of Poverty Over Multiple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XXXIV 3, Summer 1999.

# 附 錄

〈附表 1〉 保健福祉部 保健部門 一般會計 豫算(歳出)

(1) DC 1/ PK KETHITE	HIP IN IXE		<b>当日</b>
구분	예산 (백만원)	대상자(기관)	비고
I. 인구대책	7,415		다음의 가족보건 항목에 대한 예산
가. 가족보건	295		차관상환(AID 전대차원리금상환)
나. 모자보건관리	6,641		
임산부검진	43	15,290명	1차검진: 13,900명, 2차검진: 1,390명
영유아검진	21	15,290명	1차검진: 13,900명, 2차검진: 1,391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540	15,290명	검사비및 사후관리비
정기예방접종	3,419	4,421,169명	
모자보건시범보건소	800		
운영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 상아지원비	817		
다. 기타	479		가족계획시술(관서운영비, 여비, 자 치단체경상이전)
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318,766		
1. 보건	239,025		
가. 보건교육	39,550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나. 전염병관리	26,805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여비
1) 마산결핵병원	3,268		
2) 목포결핵병원	2,138		
3) 소록도병원	5,460		
4) 검역소	5,827		
5) 기타	10,112		
3) 소록도병원 4) 검역소	5,460 5,827		

資料: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2000.

## 〈附表 1〉 계속

예산	대상자	비고
(백만원)	(기관)수	1177
100,966		
1		
194		
23		
5		
39,667		
20,745		
15,516	16,892명	서울:640명, 지방: 16,252명
1,505	25명	서울; 4개소, 지방: 21개소
3,724		자치단체 자본보조, 인건비
9,706		
4,349		
5,408		
2,527		
4,974		
3,401		
1,834		
4,016		
1,878		
2,241		
66,704		
996		
10,632		
30,311		
5,000		
446		
79,295		
	(백단원) 100,966  222 194  23  5 39,667 20,745 15,516 1,505 3,724 9,706 4,349 5,408 2,527 4,974 3,401 1,834 4,016 1,878 2,241 66,704 996 10,632 30,311 5,000 446	(백만원) (기관)수 100,966  222 194  23  5 39,667 20,745 15,516 16,892명 1,505 25명 3,724 9,706 4,349 5,408 2,527 4,974 3,401 1,834 4,016 1,878 2,241 66,704 996 10,632 30,311 5,000 446

〈附表 2〉 保健福祉部 社會保障部門 一般會計 豫算(歲出)

구분 예산(백만원) 대상자(기관) 비고 의료보험+기타사회복지 + 국민연금	〈附表 2〉 徐健崛祉部	社會保障	部門 一般曾	曾計 隊昇(威出)
1. 사회보항     4,143,196     +국민연금       가. 의료보험     1,523,329     연금보험국 기본사업비 포함       지역의료보험     200,594     보상금       나. 사회복지     2,542,721     생활보호와기타사회복지로구분       1) 생활보호     1,856,0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분만고려       생계보호     868,864     자치단체경상보조부분만고려       -거택보호     490,204     391,185명     서울 17,942가구, 29,60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립부차입양곡상환분       -생보자증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증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료     37,856     71,108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인문계교수업료     25,631     41,060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교수업료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행보자인문계교수업료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만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용비, 여보, 업무용비, 여보, 업무용비, 여보, 업무용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경상보조 <td>구 분</td> <td>예산(백만원)</td> <td>대상자(기관)</td> <td></td>	구 분	예산(백만원)	대상자(기관)	
지역의료보험 1,523,329 연금보험국 기본사업비 포함 지역의료보험 1,322,735 판서운영비,여비,용역비 등 공교의료보험 200,594 보상금 나. 사회복지 2,542,721 생활보호와기타사회복지로구분 1) 생활보호 1,856,043 생계보호 868,864 자치단체경상보조부분만고려 서울 17,942가구, 29,60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사활장제비 215,685 48,1049명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앙곡상환분 사회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중학생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료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급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요합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기초생활보장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1 시청日자	1 112 106		
지역의료보험 1,322,735 관서운영비,여비,용역비 등 공교의료보험 200,594 보상급 나 사회복지 2,542,721 생활보호와기타사회복지로구분 1) 생활보호 1,856,043 생계보호 868,864 자치단체경상보조부분만고려 서울 17,942가구, 29,60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 자활상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자치단체정상보조부문만고려 -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로 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49,172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 생보자신문계고수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 생보자인문계고수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정상보조 보상금, 만간정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관사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관사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관사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관사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아리,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아리,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의전(자활지원센터운영,	1. 사회도성	4,143,190		
공교의료보험 200,594 보상금 나. 사회복지 2,542,721 생활보호의기타사회복지로구분 1) 생활보호 1,856,043 생계보호 868,864 자치단체경상보조부분만고려 - 거택보호 490,204 391,18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 생보자인문계고수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급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모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가. 의료보험	1,523,329		연금보험국 기본사업비 포함
나. 사회복지         2,542,721         생활보호의           1) 생활보호         1,856,043           생계보호         868,864         자치단체경상보조부분만고려서울 17,942가구, 29,605명지방 219,130가구, 361,580명서울 17,942가구, 29,605명지방 219,130가구, 361,580명서울 18,049명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시원 2,109         서울 17,942가구, 29,605명지방 219,130가구, 361,580명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지방 219,130가구, 361,580명서울 12,506명, 지방 12,648구식용,100가구(2000년9월까지)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448,190가구(2000년10월부터)           -추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20,579 동림부차입양곡상환분자원 20,579 동림부차입양곡상환분자원 32,000명 구대화집상보조부문만고려면서 34차 25,18명 서울 8,016명,지방 49,172명 사용보자증학생입학금           -생보자증학생입학금         131         15,000명서울 2,109명,지방 12,891명 서울 2,109명,지방 12,891명 사용 6,245명,지방 64,863명 서울 2,191명,지방 22,618명 서울 6,245명,지방 64,863명 서울 2,191명,지방 22,618명 사용 2,191명,지방 22,618명 사용 2,191명,지방 38,341명 보자인문계고입학급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급         267         24,809명 서울 2,191명,지방 38,341명 보상금자인문계고입학급           -한시생보자의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보상금,자리단체경상보조보조보상금,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항시병보자의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보상금,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기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서운영비,여비 수당,관심 20,000명의 20,000명	지역의료보험	1,322,735		관서운영비,여비,용역비 등
1) 생활보호 1,855,043 생계보호 868,864 자치단체경상보조부분만고려 -거택보호 490,204 391,185명 지방 219,130가구, 29,60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립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증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료 37,856 71,108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금 141,060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금 169 16,939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고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지원대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공교의료보험	200,594		보상금
생계보호 490,204 391,185명 서울 17,942가구, 29,60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전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증학생습학금 131 15,000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로 73,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금 25,631 41,060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장, 관식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가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 가장단체경상보조	나. 사회복지	2,542,721		생활보호와기타사회복지로구분
-거택보호 490,204 391,185명 서울 17,942가구, 29,60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18,1007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증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급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급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모산상급, 만간경상보조 보상급, 만간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가당, 관서운영비, 여비수기초생활보장 3,788	1) 생활보호	1,856,043		
- 거택모호 490,204 391,185명 지방 219,130가구, 361,580명 -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 생보자실업계고입학급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22,618명 - 생보자인문계고수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급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수지원내 기초생활보장 3,788	생계보호	868,864		
지방 219,130가구, 361,380명 -시설보호 68,785 81,049명 서울 12,506명, 지방 68,543명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중학생습학금 131 15,000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습업 37,856 71,108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습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행보자인문계고입학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모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그태 내 중	400 204	201 195명	
-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서울 852구, 지방 12,648구 -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동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 생보자신문계고수업 로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모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기억모오	490,204	391,163 %	
- 자활보호생계비 215,685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 생보자실업계고입학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 생보자인문계고입학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급의 연기용역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68,785	81,049명	
-사활모호생계미 215,685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41,433 640,828가구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자활장제비	2,109	13,500구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주거비지원	기하 H 중 새케비	215 605		448,190가구(2000년9월까지)
-한시생계비추가지원 30,070 32,000명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료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 금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료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사일도오경세미	213,063		1,067,368명(2000년10월부터)
-국내차입금상환 20,579 농림부차입양곡상환분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로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대상보자실업계고입학 금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대상보자인문계고입학 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기초생활보장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41,433	640,828가구	
교육보호 91,543 자치단체경상보조부문만고려 -생보자중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기초생활보장 3,788 2,788		30,070	32,000명	
-생보자증학생수업료 20,868 57,188명 서울 8,016명, 지방 49,172명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기초생활보장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국내차입금상환	20,579		
-생보자중학생입학금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경우생활보장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91,543		
-생보자실업계고수업 로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급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료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급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기초생활보장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20,868		
교 37,856 71,108명 서울 6,245명, 지방 64,863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1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131	15,000명	서울 2,109명, 지방 12,891명
-생보자실업계고입학 금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지방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경우 존신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생보자실업계고수업	37.856	71 108명	서우 6 245명 지바 64 863명
금 267 24,809명 서울 2,191명, 시항 22,618명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로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급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상금, 마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	71,106 8	기골 0,243 중, 시청 04,803 중
-생보자인문계고수업 료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 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생보자실업계고입학	267	24 800時	서우 2 101명 지바 22 618명
료     25,631     41,060명     서울 2,719명, 지방 38,341명       -생보자인문계고입학 금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기초생활보장     3,788     추장,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207	24,009 6	7 2,191 8, 7 8 22,018 8
-생보자인문계고입학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지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기초생활보장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생보자인문계고수업	25 631	41.060명	서우 2 710명 지바 38 341명
급 169 16,939명 서울 1,131명, 시방 15,808명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	41,000 6	기를 2,719 6, 기 6 36,3 <del>1</del> 1 6
-한시생보자지원 6,620 17,600명 160,000명의11%(17,600)만 지원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 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169	16 030명	서우 1 131명 지반 15 808명
의료보호 796,868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 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	
공공근로사업 93,626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 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기초생활보장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17,600명	
상용근로사업     93,626     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의료보호	796,868		
단체경상모소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93.626		
기초생활보장 3,788 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기초생활보장 3,788 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치단체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기본사업비	1,354		
기조생활보상 3,788 경상이전(자활지원센터운영,				
경상이선(사왈지원센터운영,	기추생활보장	3,788		
청소년 교실운영)	/ 1上 0 巨上 0			
				청소년 교실운영)

資料: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 2000.

〈附表 2〉 계속

〈附表 2〉 계等			
<del></del> 구 분	예산(백만원)	대상자(기관)	비고
2) 기타사회복지	686,678		
사회복지관운영	16,935		
사회복지기본사업비	396		
사회복지전문요원	37,884		
장애인복지기본사업비	144		관서운영비, 여비, 업 무 추진비
	77,886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17,652	80개소	
-장애인재기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1,472	40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25	40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190	21개소	
-장애인재활의료시설운영지원	1,373	15개소	
-장애인체육관운영지원	277	11개소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457	13,150명	생활보호대상 중심
-장애인의료비지원	6,949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적용
-장애인자녀학비지원	3,054	6,894명	생활보호대상자의 차 상위계층
-장애인수당지급	27,656	76,899명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 증 1 및 2급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	1,149	21개소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	433	21개소	
-장애인등록진단비	1,613	128,734명	
-전국장애인체육대회순회개최	560		
-장애인생산품공판장지원	240	10개소	
-기타	14,028		시설및 장비 보강, 복 지관 신증축 등 자본 보조
장애인복지시설보호	65,761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1,816	16,525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4,558	4,220명	
-장애인생활시설	6,147		시설신축, 시설증개축,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편의시설설치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40		시설신축, 시설증개축,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편의시설설치 등

## 〈附表 2〉 계속

(附衣 2/ カラ			
 구 분	예산	대상자	비고
丁 世	(백만원)	(기관)	1177
재활원운영	5,252		
재활원기본사업비	3,013		
가정복지기본사업비	839		
재가노인지원	224,644		
-경로당운영	11,118	28,580개 소	
-경로연금	199,867	715,108명	생보자 75세 및 65세이상 각 5만 원 4만원, 일반저소득층 3만원
-주간보호사업	824	40개소	저소득 및 일반계층
-노인단기보호사업	494	20개소	상동
-가정봉사원육성사업	2,551	94개소	파견사업: 78개소, 양성사업 16개소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중심
-노인건강진단	277	30,000명	1차진단: 27,000명, 2차진단: 3,000명 생활보호대상자만 적용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7,672	50명*673 개소	사회복지관 등에 개설된 식당
-경로당활성화사업	440	44개소	
-기타	1,440		연구개발비(프로그램개발), 민간경상 보조
노인시설보호	45,526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720	500가구	
-무료시설운영비지원	23,233		양로시설, 요양시설, 치매요양시설로 구성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중심
양로시설	8,590	4,624명	
요양시설	8,292	4,061명	
치매요양시설	6,351	1,820명	
-실비노인복지시설운영비	264	16개소	
-사할린동포입소시설난 방비지원	19		
-기타	21,291		보상금, 자치단체자본이전(시설개보 수, 설립)
아동시설보호	41,268		주로 고아원
-시설운영		17,820명	서울 3,745명, 1지방 4,075명

## 〈附表 2〉 계속

〈附表 2〉 계곡			
<del></del> 구 분	예산 (백만원)	대상자(기관)	비고
아동건전육성	11,852		
-결연기관운영	1,289	16개소	
-입양기관운영	117	20개소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9,569	15,390명	
-입양아동양육보조금	91	100명	고아원 수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의 보호	550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100명	서울 200명, 지방 900명
 보육사업	145,723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44,827	128,140명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3,363	7,878개소	
-보육정보센터운영비	330	6개소	
-만5세아 무상보육	5,941	14,700명	전액 농어촌 지원
-기타	91,262		민간경상보조운영비, 자치단체 자본보조(시설개보수, 신설)
 여성복지시설	8,485		성폭력상담소
-모자복지시설운영	3,784	3,012명	서울 510명, 지방 2,493명
-선도보호시설운영	1,347	489명	서울 70명, 지방 419명
-성폭력방지/ 피해자지원	1,290		성폭력상담소 47개소, 정활검사비
-기타	2.062		자치단체자본보조(모자보호시설개
-/IF 	2,063		보수, 장비구입, 여성회관신축)
가정폭력방지	1,070		
-가정폭력상담소	710	46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93	19개소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67	1,692명	
다. 국민연금	77,145		
국민연금	94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4대보험및 공사연금	0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	77,051		

〈附表 3〉 勞動部 勞動事業部門 一般會計 豫算(歲出)

〈附衣 3/ 労動部 労事	サポーツリ	一八百百	涿昇(滅山)
<del></del> 구 분	예 산 (백만원)	대상자 (기관)수	비고
1. 직업훈련사업	253,384	(12)1	직업훈련사업의 주요사업비는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교육대학, 기능대학에 대한 정부출연금과 창업 및 취업훈련지원을 위한민간경상보조, 바우처제도운영을위한 일반수용비, 직업능력평가를위한 연구개발비, 고용촉진훈련을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직업능연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신상업분야인력양성을 위한연구개발비및민간경상보조비로구성됨. 본연구와 관련된 항목을중심으로 재정리하면, 다음항목과 같음.
가. 창업및 취업훈련지원	25,602		전액 민간경상보조금(3가지 항목 으로 구성)으로 구성
1) 취업훈련지원	7,812		
훈련비	5,292	4,200명	
훈련수당	2,520	4,200명	
2) 창업훈련지원	2,790		
훈련비	1,890		
 훈련수당	900		
3) 취업유망분야훈련지원	15,000		
훈련비	12,000		
훈련수당	3,000		
나. 고용촉진훈련	36,691		자치단체경상보조
훈련비	22,579		
훈련수당	14,112		
다. 신산업분야인력양성	0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
라. 기타	191,091		직업훈련사업 중 위의 3가지를 제외한 항목

註: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도 고려함.

資料: 노동부,『세입세출예산』, 2000.

〈附表 3〉 계속

〈附衣 3〉 계音			
<del></del> 구분	예산 (백만원)	대상자 (기관)수	비고
2. 직업안정	154,774		
가. 고용정책실	60,342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지원형 태임.
1) 주요사업비	57,486		고용정책실 내의 주요사업비
가) 고용관리	50,673		노동부 비정규직 보수 및 행정 비용임.
비정규직보수(일용임금)	31,430		노동부에서 고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인력은행 운영요원	1,312		전문상담원, 일반상담원, 고용정 보관리인에 대한 보수
민간직업상담원	29,601		
일일취업센터	517		
기타	19,243		관서운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민간경상이 전 등 행정비용임. 따라서 비해당
나) 실업대책지원	300		비정규직보수,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비해당
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지원사업	515		비정규직보수, 일반수용비(사무 용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 매식비, 운영수당, 여비, 잡비 등 으로 비해당
라) 기타	5,998		고용관리, 실업대책지원, 실업극 복국민운동지원사업 이외의 사업 비
나.고용정책실기본사업비	962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지원형 태임.
1) 고령자인재은행	216	30개소	민간경상보조 항목내 고령자인 재은행지원요원에 대한 인건비
2) 기타	746		고령자인재은행 이외의 고용정책실 기본사업비

## 〈附表 3〉 계속

〈附衣 3〉 게音			
 구분	예산 (백만원)	대상자 (기관)수	비고
다. 공공근로사업	75,890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 지 원형태임.
1) 주요사업비	69,612		
가) 공용보험확대대상 사업장조사	3,428		
비정규직보수	2,736		
관서운용비	452		
여비	240		
나) 노동통계조사	186		
비정규직 보수	144		
관서운용비	30		
여비	13		
다) 실업대책모니터링	814		민간경상보조 항목내 실업대 책모니터링의 인건비, 출장비, 기타경비로 간접적으로 관련
라) 인턴사원훈련활성화	65,000		민간경상보조금
마) 퇴직금제도운영 실태조사	183		
바)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6,278		비정규직보수, 관서운영비, 여 비로 간접적 관련
3. 사회보장	179,836		의료보험, 근로자복지 관련 행정관리비용.